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범위와 제한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져온 인권신장의 노력 속에서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탄생하였다. 이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보호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참여권을 행사하는 자율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사회에서도 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아동·청소년권리 보장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널리 알리고, 매 5년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진전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 심사결과, 경제적 취약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장애청소년 및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 인권보장,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상설 중앙기구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소년권 관련 소위원회 설립 등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약에 의한 권고와 사회 전반적인 권리 인식 확산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아동·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관심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은 유교적 전통과 미성숙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틀 속에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는 등 권리향유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1)]

우리사회는 아직도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키며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사회발전 속도를 늦추고 있다. 또한 연령기준이라는 비합리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연령차별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켜 건강한 사회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한 청소년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

1)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7%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입시제도 및 과다한 학습과제'와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가 가장 크게 꼽혔으며,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김영지·이용교·김세진, 2003).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구체적으로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이 '청소년자율과 참여'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낸 것에 이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은 이러한 흐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2)]

이렇듯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전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며, 추상적인 정책지향으로서의 관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외국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새로운 실천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범사회적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아동복지분야에서도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수립(2002. 5), 아동권리지표 개발(2003), 아동백서 발간 추진(2004),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논의(2003) 등을 통해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청소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참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18세 미만 인구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연령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한국 청소년인권 현황과 정책 현단계 검토

청소년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 및 민간단체 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검토,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인권 현황과 인권정책의 현단계를 직시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나, 북한의 청소년인권 관련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두 차례의 북한 정부 보고서 심의 결과 권고문을 수집·번역하여 부록에 제시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2)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 파악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인권신장 노력의 전망과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특히, 각 국가별로 주요 청소년 인권정책 및 법·제도 사례, 인권교육 현황, 인권관련 활동프로그램, 민간과 정부의 협력프로그램, 범사회적 홍보와 의식 개선 노력 등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례를 발굴·조사하도록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7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긍정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7개의 조사 대상 국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권 분야 시사점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얻을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선정하되, 현실적으로 최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능한 2000년도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권고문을 받은 국가 중심으로 선정)

(3)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을 위한 시사점 분석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 파악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노력과 사회제반의 다양한 주체가 수행할 역할과 기능,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과 요인 등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주요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자료를 발굴·번역하여 부록으로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기준(CRC/C/58)',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CRC/GC/2003/5)').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인권실태와 인권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현단계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내용과 방향설정, 연구 분석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효과적 진행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틀, 청소년인권 분야의 선진 외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 논의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자료 수집·분석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활발한 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가별 인터넷 사이트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아동권리위원회 사이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및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옴부즈맨 의견서,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서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국가별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국가별 정부보고서 제출현황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영국	1994	2002	-
프랑스	1993	2003	-
독일	1994	2003	-
일본	1996	2003	-
스웨덴	1992	1998	2002
노르웨이	1993	1998	2003
캐나다	1994	2003	-

(4) 현지 조사출장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2004년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스위스(제네바)와 프랑스(파리, 스트라스부르크)를 방문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을 방문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6차 회의를 참관하였다. 또한 유럽의 아동·청소년 옴부즈맨 제도의 한 사례로서 프랑스의 옴부즈맨(Defenseur des enfants)을 방문하여 자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수집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네스코(UNESCO)를 방문하여 인권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장을 통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아동인권 담당 Paulo David 사무총장에게 연구협력을 요청해 놓음으로써 이후 각국의 보고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연구범위와 제한점

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만큼, 방대하고 종합적인 작업으로, 기초적인 자료 수집부터 매우 험난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모든 권리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각국은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을 담은 인권정책백서 성격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처음 2년 이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매 5년마다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진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정부정책과 인권현황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을 모니터한 결과를 담은 민간단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에 대해 논평하고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3)]

3) 한국정부는 1994년에 1차, 2000년도에 2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민간단체보고서는 각각 1996년과 2002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996년 1월 18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때 1차 심의를, 2003년 1월 15일 제32차 회기때 2차 심의를 받고 권고의견을 받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가능성 고려, 자료 분석 기준 통일, 효과적인 시사점 분석틀 구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분석 대상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자료는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나 옴부즈맨 의견서 등이다.

각국의 보고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기준(CRC/C/58)'에 따라 기본적으로 <표Ⅰ-2>와 같은 통일된 틀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틀에 기반하여 각국의 인권정책 현황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분석을 위한 주요자료인 각국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보고서 등은 제한된 지면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전반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개괄적 현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책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내용, 그리고 각 사례별 배경 파악 및 정책효과와 장단점 등의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담고 있는 만큼 이에 기반한 연구 결과는 향후 세부 인권영역별 심층연구를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인권의 세부 영역별로 외국사례를 정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주제로 각 국가별로 방대한 자료를 종합·정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국가의 국가보고서와 유엔 권고의견을 종합정리한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분야의 의미있는 기초자료로서 청소년인권 관련 현장과 정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표 Ⅰ-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구성틀

정부보고서 일반목차 구성	보고서 분석틀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①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② 아동관련 정책의 규정과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③ 협약 공표 ④ 보고서 보급 2) 아동의 정의 ① 대부분의 연령 ② 의료처치 ③ 법적인 상담 및 충고 ④ 의무교육의 끝 ⑤ 고용 ⑥ 성적허용 ⑦ 법정에서의 증인 ⑧ 범죄책임 ⑨ 자유박탈 및 투옥 ⑩ 음주 3) 일반원칙 ① 비차별 원칙 ②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③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④ 아동의사존중의 원칙	1.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개요 - 해당국가 아동·청소년인권 개괄적 논의
4) 시민권과 자유 ① 이름과 국적 ② 신분유지 ③ 표현의 자유 ④ 정보접근권 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⑥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⑦ 사생활보호권 ⑧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① 부모의 지도 ② 부모의 책임 ③ 부모로부터의 분리 ④ 가정의 분리 ⑤ 가정의 재결합 ⑥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⑦ 가정 환경 상실 아동 ⑧ 입양 ⑨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 ⑩ 아동학대와 방임 ⑪ 정기적인 재검토 6) 기초보건 및 복지 ① 생존 및 발달 ② 장애 아동 ③ 보건서비스 ④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 서비스, 시설 ⑤ 생활수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①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② 교육의 목표 ③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① 비상사태의 아동: 난민아동,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무력분쟁 갈등의 아동 ② 법률과 관련한 갈등: 청소년법 집행, 감금, 투옥, 보호소에서의 감금을 포함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특히 극형과 종신형을 금지한 형벌 ③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노동력착취 :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력(경제력)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와 성학대, 다른 형태의 착취, 매매, 거래부정 및 유괴 ④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보호	2. 주요 청소년인권현황과 정책 - 주요 인권 영역별 현황과 정책 소개 -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하위내용은 융통성있게 구성 -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옴부즈맨 보고서, 국제기구 보고서 보완을 통해 비판적 분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제안 및 권고	3. 시사점 분석 - 유엔 권고의견 분석 - 시사점 추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Ⅱ

Ⅱ.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개관

1.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2. 청소년 인권정책의 현단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Ⅱ.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개관[4)]

1.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유유서를 강조하였고, 가부장제 생활양식이 뿌리깊기에 아동・청소년은 한 인격체로 대우받기 어려웠다. 아동의 권리신장에 관심을 가진 선각자들이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아동의 권리 공약3장을 선포하였지만, 연령차별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 실태는 협약의 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4년 11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000년 5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에 관심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2002년 6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보고서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사를 마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31일에 한국정부에 제2차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국

4) 이 장은 광주대학교 이용교교수가 집필하였다. 한국의 청소년인권 현황과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김영지・김경준・이혜연・김세진, 2004,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를 참고하기 바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가보고서와 민간단체의 보고서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과 심사후에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이 글의 '아동'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이 포괄되어 있다.

(1)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권,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의사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권과 불합리한 차별 및 연좌제를 금지함으로써 아동에 부당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민족간의 분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27).

그런데, 한국에서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20세 이하 외국인 아동의 수는 53,627명이고 전체 외국인의 9.71%를 차지한다(대한민국, 2003: 3). 그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이고, 이들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국민만을 다루지 않고, 자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인종 차별이다.

한국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경시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의사존중의 원칙'이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관철할 법적 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909조는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명시하여 자녀인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부모에게 유보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를 지정할 때 15세 미만은 “의사표명권”조차도 없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생활양식’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봉건적 가치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조차도 법령은 부모에게 관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발달단계에 상응한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동권리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담은 주요 내용에는 민법과 국적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 12월에 개정된 민법은 제781조 제1항 가운데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의 국적 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적법 제2조 제1항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고, 개정된 국적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아동이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민법과 국적법은 한국인 아내가 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인 남편사이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때, 자녀의 국적을 취득하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또한,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연좌제의 일종이다. 이들 자녀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에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재될 수 없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도 없으며,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등재하는 편법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동은 부모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중에는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 민주정부가 수립된 것이 55년이 지났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1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는 아동에 대하여도 차등없이 적용된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35)고 주장하지만, 20세 미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칙의 51.2%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정당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치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9). 학교당국은 학생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조차 ‘정치활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규제는 교육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민적 권리는 직접 실천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마치, 날개짓을 한 어린 새만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아동도 스스로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때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심지어 아동은 “비인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체벌을 제도적으로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고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3월 18일에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한 훈육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에도 없는 체벌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각급 학교의 교칙이 체벌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2000년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학생들에게 체벌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 중·고생 503명 대상 조사 결과 한달 동안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7%(69명)로,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 8.8%(4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14).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0,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에 체벌 허용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65.7%와, 중·고교의 각각 80.2%가 체벌을 허용했다(한겨레, 2003년 9월 15일).

(3)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신장된 영역은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의 사회화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2002년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2만여개소이고 보육을 받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는 아동은 7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의 50%을 감면하기 때문에 보육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은 법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를 보고받는 1차 기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이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시도 지역센터가 17개소가 있다.

2001년 한해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고된 2,606건의 사례 중 2,105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다. 학대 유형을 보면 방임이 31.9%(67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체적 학대 22.6%(476명), 유기 6.4%(134명), 정서적 학대 5.4%(114명), 성적 학대 4.1%(86명), 그리고 복합적 학대가 29.6%(623명)이었다(대한민국, 2003: 6).

학대받는 아동이 보다 적절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치료형 보호시설이 시급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위기상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의 53.0%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나머지는 시설보호(18.0%), 센터의 임시보호(15.0%), 친인척보호(7.0%), 다른 기관에 위탁(7.0%) 등으로 보호되지만(대한민국, 2002: 7), 치료형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학대받는 아동들이 별 대책없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생활권단위(인구 50만명 수준)에 1개소씩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소년이 가장이 될 수 있느냐”는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접한 한국 정부는 아동과 동거하는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지정하고, 가정위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3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도에 1개소씩 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치하였다.

한국정부는 극단적으로 양육위기에 빠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였지만, 부모의 이혼시에 자녀의 의사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후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으며,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는 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이혼한 부부가 13만 5천쌍에 이르고, 그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70%이므로 매년 새로 이혼가정에서 살게 되는 아동이 1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 이혼시에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혼시 판사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녀의 의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를 묻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있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없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를 바꾸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2차보고서에 대한 추가 서면답변에서도 “국내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에 관해서는 이혼과 아동보호에 관련된 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여(대한민국, 2003: 13), 조만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혼시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종속물이고,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친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또한,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15),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이 큰 문제이다. 외국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불하고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비 지급의무자(대체로 이혼한 아버지)의 직장에서 임금의 일부를 직접 양육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입양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21조(a)를 유보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입양된 아동은 4,046명이고, 그중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전체의 58.3%이다. 이는 과거 입양아동의 2/3가 국외입양인 것에 비교할 때, 국외입양이 줄었다. 하지만,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주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2001년 한 해 동안만도 2,360명에 이른 것은 아동을 위한 입양이라기보다는 부모를 위한 입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외입양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입양알선기관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알선기관은 국내입양의 비용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수수료를 국내보다 4~5배가량 많이 받을 수 있는 국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다.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서 입양알선기관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외입양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4) 기초보건과 복지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서 아동의 기초보건과 복지에 획기적인 신장이 있었다. 1980년에 출생 1,000명당 17.3명이던 영아사망율이 1990년에는 12.8명으로 저하되었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51).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그러나, 정부보고서가 인용한 '1997년 통계청 사망통계연보'를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0~9세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사고사망자는 30명이어서 일본의 10명, 영국의 7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아동의 사고사망률이 높은 것은 안전시설과 점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6).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이 매우 커서 1997년의 경우 1~9세와 10~19세 사망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이었다. 2001년 한해동안 19세 이하로 자살한 사람은 271명에 이르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757명이다(대한민국, 2003: 8).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하며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했다. 국가는 소득이 낮은 국민 중 150만여 명을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그런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아동수당제도가 없고 도입할 계획조차 없다. 2001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도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비용을 사실상 부모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기초보건과 복지분야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아동의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긴다면, 빈곤가족의 아동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급여의 적용대상자와 급여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급여를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대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취학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헌법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0%이고, 진학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99.9%,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94.8%, 일반고에서 대학교로 93.9%, 실업고에서 대학교로 54.4%이기에 취학률과 진학률은 매우 높다(문화관광부, 2002).

그런데, 한국의 학교교육은 내용과 질, 만족도 등에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게 하는 "0교시"와 방과후에도 저녁 10시까지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심화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청소년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여가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칙, 선도규정, 용어규정 등을 통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선도규정과 용의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고, 이에 의거하여 학생을 징계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실행된다.

2003년에 새로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대된다. 학교에서 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아동·청소년이 여가와 문화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 특별보호조치

한국에서 소년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루냐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소년범죄자는 138,03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5.7%이다.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997년 7.8%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서 2001년에는 5.7%로 감소하였다. 소년범죄의 유형은 폭력범이 37.0%, 재산범이 24.5%, 교통사범이 30.3%,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5%이었다.

아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소년범죄를 보면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우범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까지도 사법적 관점에서 다룬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2000년 한해 동안 보호처분을 받은 32,270명 중에서 보호자(대체로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 28,572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한 처분은 896명,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은 10명에 불과했다. 약물오남용을 한 경우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설이 없어서 보호소년을 보호관찰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문화관광부, 2001: 543-544).

한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성인들은 형사처벌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성매수 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 2001년에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과 미성년자는 매매춘 41명, 강간 등 2,205명, 성매수 대상자 1,102명이지만, 보호·재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1,222명에 불과하다(대한민국, 2003: 12).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은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고 의료적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법률체계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그 피해를 증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이를 기피하여 고소를 취하한다. 이때 역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가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청소년 인권정책의 현단계

(1) 국가적 권리기구

한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시행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과 협약 이행사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아동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위한 상설 "국가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다. 한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국가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답변했다가, 제2차 국가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상설 국가위원회는 없다고 해명했다. 즉, 정부대표단은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그렇다. 우리 대표단과 나는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민간단체와 조정 노력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이해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약의 평가에 관하여 상설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인권운동사랑방 역, 2003: 12).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11명 위원중에 아동권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1년 2개월동안 3천건이 넘는 진정 사건 중에서 아동권에 관한 것은 단 한 건(장애아라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이 거절당한 사건)에 불과했다는 사실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국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위원회' 혹은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로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비상설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되어야 하고,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강력한 행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행히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상설기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이행 감시·조정 및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2) 통계확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통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은 통계청인데, 이 기관은 전체 인구 혹은 5세 간격으로 계층화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통계는 많지 않고, 다른 연령대가 포함된 통계가 산출되기 쉽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구, 건강, 학업, 직업, 주거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도록 했고, 향후 5년마다 아동권리지표를 평가해서 2005년부터 매5년마다 백서를 출간할 것이라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했다(대한민국, 2003: 15).

그런데, 이 지표는 아동의 권리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유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된 국가보고서를 준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작업을 보면 지표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서 각급 학교의 종류와 그 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취학률, 진학률, 교육예산 등만 다루고 있다. 학생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시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평준화교육,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킨 교칙·선도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교육통계연보, 범죄백서 등의 통계자료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자료만을 뽑아서 만든 통계가 아닌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가족에서의 행복지수 등과 같이 아동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통계도 다수 포함시켜야 한다.

(3) 모니터활동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는 집단은 아직 없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아동의 권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권리교육을 실시하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 상황을 모니터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모니터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인권운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모니터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모니터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퍼슨(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웨덴 정부는 1993년 14명의 직원을 둔 아동문제 옴부즈퍼슨 사무국의 옴부즈퍼슨을 임명하였다. 사무국은 스웨덴의 보건사회부 산하에 속해 있으며 스웨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하는 일이 주된 임무이다. 아동문제 옴부즈퍼슨의 일은 4개 분야로 나뉘는데, 그것은 아동의 성장 상황, 심리·사회적 문제, 아동안전, 그리고 사회계획이다. 아동문제 옴부즈퍼슨은 1994년 5월에 스웨덴 정부에 첫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재연, 1997: 12).

정부의 활동과 별도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책임있는 모니터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연례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구가 중심이 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두차례나 강력히 권고하였다. 한국정부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에 '아동인권동화'를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와 같이 아동의 권리 중에서 일부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고, 모든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부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체적·성적 학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인의 행동,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아동을 소외시킨 관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의 권리를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권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의 목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5) 민간단체 육성

국가적 아동권리기구가 상설 설치되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통계확보, 모니터활동, 인권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할 때,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각국의 아동권리상황을 심의할 때, 각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아동권리학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 민간단체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정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두차례나 제출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아동권리 관련 학술활동을 할 때 지원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은 아직 약하다. 정부는 민간의 다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단체들간의 협력활동, 그리고 국내외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주기적으로 아동권리백서를 발간하도록 후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6) 관련법의 개정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법령을 개폐하고, 아동을 경시하는 관습을 아동을 존중하는 관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기에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다루고 법정에서도 판결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법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도록 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이익에 의해서 박탈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 뿌리깊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하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등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정신은 아동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아동의 발달권을 억압하고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Ⅲ

Ⅲ. 영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Ⅲ. 영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5)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과의 조화

영국은 1991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1992년 12월 16일 이 협약을 발효하였다. 협약 비준당시 제32조와 제37조항의 비준을 유보하였으나, 1997년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는 37조 c 항을 제외하고 두개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였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다. 각 지역 모두 독립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내용은 지역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도 각기 조금씩 다르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1차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영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이 영국내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법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1997년 이래로 영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5) 이 장은 황옥경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가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반영하는 일련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해 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은 1991년부터 시행된 아동법 1989,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아동법 1995, 북아일랜드는 아동시행령 1995(Children Order 1995: NI) 를 근거로 아동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법 1999가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영국의 2차보고서 작성은 보건부의 주관아래 1차보고서 이후 신설된 아동・청소년국(Child and youth Unit)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아동법(Children Act) 1989

아동법 1989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동들의 성장과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특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두 가지 기본전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아동법을 근거로 구성된 아동위원회(Children Act Advisory Committee)는 아동법 중 사법영역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상원의장(Lord Chancellor),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 보건부장관(Secretary of States for Health)그리고 가족담당 대법관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부장관은 아동법의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관련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조사결과들과 보건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다. 아동법 이행에 대한 평가가 정부부처의 공공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법의 원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동법 제정 이후 전통적으로 부모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어 온 자녀양육에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아동법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중 하나이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정책수립과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아동법은 다양한 영역의 아동서비스 실행과정에서 각 지방의 사회사업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스코틀랜드 아동법(Children Act 1995)과 가족법(Family Act)

스코틀랜드 아동법(1995)은 스코틀랜드 아동보호의 사실상의 법적 준거이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 아동보호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법 1995는 1968년 사회복지법에서 제시한 아동청문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본원리, 운영방식 등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세부 절차와 내용을 수정하였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아동법 1조~15조),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아동청문제도와 아동보호에 관한 조항, 부모의 책임에 관한 부분(아동법 16조~93조), 입양법을 수정한 내용(아동법 94조~98조), 추가조항 등(아동법 99조~105조) 총 네 부분 10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동과 가족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아동은 가족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아동법 제16조). 아동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아동은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고 있는 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다. 재판부나 아동청문위원들이 아동보호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와 아동청문회는 아동과 관련한 판결이나 어떤 보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처분도 하지 않는다. 아동과 가족의 필요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아동과 관련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가 재판부의 판결과 아동청문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스크틀랜드 아동법 1995는 재판부와 아동청문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동보호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아동법 제41조)과 이들이 아동청문제도에서 결정된 개입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다. 아동법 이전에는 아동의 이익과 부모의 이익이 갈등을 빚을 때만 아동보호위원이 아동보호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동법은 모든 아동청문회와 사법부의 모든 과정에 아동보호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24시간 내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보호조치(Child Protecrtion Order)와 아동학대 평가조치(Child Abuse Assessment Order)도 추가하였다(아동법 제57조, 58조). 격리보호 조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하고 있다. 학대당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동법 제76조). 이것은 학대당한 아동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를 존중하는 조항이다. 이로써 학대당한 아동은 학대 그 자체 때문에 겪는 고통과 가족이나 자신을 돌봐주는 환경에서 격리됨으로써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제도는 사회사업가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리포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리포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사회정책, 인간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터는 의뢰된 사례에 대한 초기 사정을 통해서 아동청문회를 열어야 할 지, 법적 개입이 필요 없다면 그 외의 다른 보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아동을 사례회의로 의뢰해야 할 지, 의뢰된 아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리포터의 역할 때문에 리포터를 흔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청문제도의 수문장이라고 평가한다. 지방정부법 1994에 근거해서 스코틀랜드 아동리포터 협회(Scottish Children's Reporter Adminatration: SCRA)를 창설하고 리포터 대표(Deputy Report)를 선임하였다. 이들은 1996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의 아동청문제도는 영국의 아동권리협약 제37조의 유보를 철회하도록 유도하였다. 아동법 1995가 37조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보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국정부는 1997년 4월에 이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부모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만이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동법은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책임을 중시한다.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이에 합당한 적절한 준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개입의 준거는 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규정이 된다. 아동법 1995에서 부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하며,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야 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스코틀랜드는 1999년 가족법(Family Act 1999)을 개정하여 아동의 어머니가 동의할 경우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라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재판부는 아동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아울러 부모들이 이혼이나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한 규정도 있다.

아동법 1995는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정부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는 모호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매년 보완하여 발행한다. 의료진을 위한 지침서,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지침서,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지침서, 복지기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등이 시달되고 있다.

③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8년 유럽인권 협약이 왕실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는 유럽인권협약이 영국내 관련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은 영국내 법 개·제정의 주요한 준거이다. 유럽인권협약이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동권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인권 협약의 많은 조항들은, 예컨대, 고문금지 조항, 가족과 개인생활을 존중할 권리,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의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영국정부는 관련법들이 유럽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재판부에 의뢰하였고 이에 부합된다고 판정된 법 조항들을 장관령으로(의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수정하였다. 사법부는 계속해서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규정과 일치하는 법을 마련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유럽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부서의 정책결정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인권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집약한 것으로 영국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00년 각 부처 장관들은 관계 정책을 유럽인권협약의 내용과 일치되게 수정, 보완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아동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회와 행정부는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방법을 대부분 채택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④ 아동복지 사업계획의 수립(Children Services Planning)

영국은 각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안(Children Services Planning)을 마련함으로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한다. 1992년부터 각 지방정부의 주도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안(Children Services Planning)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아동복지사업 계획으로 수립된 내용들이 다양하고, 그 효과도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의 정책을 Social Services Inspectorate(SSI)와 Audit Commission가 평가하였다. 그 결과 Social Services Inspectorate(SSI)와 Audit Commission는 지방정부가 아동복지 사업을 계획(Children Services Planning)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 아동법 1989에 의거하여 마련된 아동복지 사업계획 시행령(Children's Service Planning Order)이 제정되었고, 모든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아동들의 복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을 수립(Children Services Planning)하기에 이르렀다. 아동복지사업계획 시행령은 1997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도 각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1998년 출간된 SSI의 세 번째 보고서 Partners in Planning에서 아동복지사업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한 이후에 지방정부의 각 부처간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체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건부의 의뢰를 받아 법제화에 대한 정책 평가를 실시한 아동국(National Children's Bureau)도 이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동국(NCB)은 여전히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부가 아동복지 사업 계획 내용을 모니터링해주고 있고 아동국(NCB)은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비스 전달까지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을 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⑤ 북아일랜드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실제

1997년 10월 북아일랜드의 교육부는 “Youth Work : A Model for Effective Practice” 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⑥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 : 국제개발기구(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창설

영국정부는 국제개발기구(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를 창설하고 빈곤국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DFID는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빈곤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DFID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다. 이로써 모든 프로젝트는 정책개발로 이어진다.

⑦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는 1996년 Look After 규정을 공시하였다. 이 규정은 위탁아동, 시설아동, 집에서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을 지방정부가 보호할 때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사람들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들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부는 아동들의 학습수준을 올리는데도 역점을 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고 있다.

정부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 살기 시작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아동법 1995는 고교 졸업 후에 청소년들이 혼자 살 경우 이들이 지방정부의 안내와 도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정부가 21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임을 맡는다. 지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 및 각종 훈련비, 주거비용 등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아동법 1995는 지방정부가 돌보는 아동·청소년들의 종교, 인종, 문화, 언어배경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연령에 관한 법 1991(Age of Legal Capacity(Scotland) Act 1991)은 16세 이하 아동이 자신에 대한 문제를 진술할 경우 법적지원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연령에 관한 법 1991(Age of Legal Capacity(Scotland) Act 1991) 2항은 아동이 자신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를 이해 할 수 있는 "발달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아동이 의료진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⑧ 부모의 자녀체벌권리 제한법 2004

영국에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내 체벌금지 조항을 아동법에 추가하기 위해 수백 개 아동관련 단체가 '가정내에서의 체벌 근절'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영국은 부모의 자녀 체벌권리 제한법을 제정(한겨레, 2004. 7. 6)하였다. 영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는 아동법 개정안이 7월 5일 저녁 영국 상원을 통과하였다. 아동법 개정안은 아동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행위, 피부가 붉게 변할 정도의 타격을 가하는 행위, 정신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한 부모는 국가에 의해 체포 기소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⑨ 기타 관련 정책

영아돌연사 감소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등은 아동권리협약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성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련영역들이 “함께하기(Working Together)”를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실행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부는 내무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지침을 배포하였다.

스코틀랜드는 1999~2000년까지 홈리스를 위해 300만 파운드를 투입하였다. 1997년 12월 마련된 홈리스 처리지침(Scottish Code of Guidances)에서 홈리스 청소년들이 성적착취와 경제적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아동기구(Chidren's Issues Unit)’는 “우리의 생활 프로젝트(Our Lives Project)”를 실행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아동시행령 1995(Children Order 1995)를 발효하여 199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보다 이 시행령에서 아동권리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1998년 제정된 가정폭력법 시행령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정폭력법이다.

웨일즈 정부는 “아동먼저(Children First)”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보건부에서 발표한 “질적보호(Quality Protects)” 기준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요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 특히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2000년까지 500만 파운드가 이 사업에 사용되었다. 1999년 4월부터 시작된 웨일즈에서의 “Sure Start” 운동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500백만 파운드가 사용되었다. 1995년 이후 영유아 보육의 확충과 질적성장을 위해 웨일즈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1998년 아동부 장관은 “아동보육전략(A Childcare Strategy for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Wales)"을 발표하였다. 이는 영국 전역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마침내 영국정부는 2000년 Child Care Standard Act를 제정하였고, 영국내 0세에서부터 14세 아동을 위한 모든 보육프로그램이 이 법을 준거로 실행되고 있다.

(2)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조정기구

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신설

아동권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서 관장하고, 보건부 내에 몇 개의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영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1994)는 보건부 산하의 아동권리개발기구(Children's Rights Development Unit)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1998년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청소년기구 (Children and Young People Unit)가 신설되었고 3차 국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997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놀이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전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아동·청소년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부산하의 아동보호부(Children's Safeguard Unit)는 2000년 National Care Standard Act(2000)를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의 Children's Rights Director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가 보호 기준 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의 지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방정부와 보건부의 사회와 보건서비스 업무를 아동부로 이관하고 이 부서는 주거, 위생, 교육, 환경, 노동 및 매춘 등과 관련한 정책 과정을 2002년 4월부터 관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업무를 실행하는 아동위원(Children's Rights Director)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두고있다. 그러나 영국내의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들은 아동위원(Childrn's Rights Director)의 역할과 기능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많은 부분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관 이외에도 아동권리협의회(Children's Advocacy Consortium)가 보건부와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에 1차 보고서를, 1998년에 2차 보고서를 유엔의 아동권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영국의 아동권리 실행상황에 대한 1차보고서(1994)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 실행을 모니터링할 독립기구의 창설을 적극 권장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아동·청소년부가 생겼다.

스코틀랜드는 '아동기구(Children's Issues Unit)'를 설립하고 1997년 7월에 아동장관(Minister for Children's Issues)을 임명하였다. 이 기구는 스코틀랜드 정부내 각 부처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NGO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기구는 스코틀랜드 아동권리 연맹(Scottish Alliance For Children's Rights : SACR) 창설을 위한 세미나도 후원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있었고, 이것이 스코틀랜드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웨일즈 지방정부 역시 1997년에 아동부를 창설하고 아동부장관(Minister for children)을 임명하고 이 산하에 아동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위원회(Departmental Committee on Children's Issues)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을 한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영국정부는 아동권리를 추진하는 관련부서간의 역할과 기능의 충돌,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독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구성에 관한 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조직, 후원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지원책을 개발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그 중 1997년부터 NCB를 통해 영국정부는 0세에서 3세 아동을 위한 Sure Start 프로그램(실조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기구 창설

아동권리 이행의 국가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 크게 옴부즈제도와 아동권리위원(Children's Rights Commissioner)이 있다. 영국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아동권리 위원회를 창설·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잉글랜드는 런던에만 아동권리위원이 런던 시 소속으로 지명되었을 뿐, 아직 잉글랜드 전체 아동에 대한 권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100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단체들이 영국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영국이 이미 1971년 이후로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와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가 조직되었고 1999년 4월 장애인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가 발족하였다는 점을 들어 더욱 강력하게 아동권리위원의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권리연맹이 지원하는 아동권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작된 '여기 지금 바로(Here and Right Now)' 프로젝트에 잉글랜드 각 지역에서 선발된 20명의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잉글랜드에 아동권리위원을 선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단체이다. 이 협회는 1973년에서 2000년까지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다가 사망한 아동 100명에 대한 조사한 결과, 병원과 시설에서 아동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였다. 이후 아동권리위원회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웨일즈는 아동보호 기준법(Child Care Standard Act, 2000)이 통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과되면서 아동권리위원을 2000년 11월에 구성하였다. 그러나 웨일즈의 아동권리위원은 영국 전체의회에서 보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옴부즈퍼슨이나 아동권리위원에 비해 그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2002년 2월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권리위원을 임명하였다.

영국 내에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창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기구 간의 역할조정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립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이 새로운 기구와 기존의 관련부처나 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복되어 이를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기이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스코틀랜드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그들은 이미 아동법 1995의 아동청문제도(Children's Hearings System)가 아동권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위원의 지정에 신중을 기하였다(Scottish Office, 2001).

잉글랜드 지역의 아동권리위원 임명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2000년 3월에 창설된 런던 아동권리위원의 활동은 눈여겨 볼만하다(Office of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 정부의 체벌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최근 이 기구의 역점사업이다. '아동보호, 부모지원'이라는 아동 체벌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체벌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0개 아동단체가 '아동은 맞아서는 안된다(Child Are Unbeatable)'는 배너를 운영하고 있다. 런던 아동권리위원은 복권기금(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의 재정지원을 받고, Children's Society, Save the Children, 그리고 NSPCC의 지원을 받는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동·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다. 런던 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는 15명의 청소년들이 사무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아동·청소년들도 이 기구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무조직과 사회복지 기관 등도 여기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런던 아동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여 출간하고 있다.

③ 비정부단체(NGO)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영국내 NGO 단체들은 아동권리 증진이라는 최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아동권리 연합(Children's Rights Alliance)

아동권리 연합(Children's Rights Alliance)은 정부가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면서 1991년부터 있었던 정부산하의 아동권리개발기구(Children's Rights Development Unit)와 아동권리 사무국(Children' Rights Office)이 1999년 4월 회원단체로 개편되면서 조직된 아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170개의 민간조직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권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아동자문단(Child advisory Board)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선발된 아동대표와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참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2001년 12월 8일에 아동권리 행진을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10주년 기념 케익을 갖고 6명의 아동·청소년이 영국총리를 방문하였다.

- NSPCC(Natioan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는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한 영국의 주도적인 자선단체로 1889년에 Benjamin Waugh 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NSPCC는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영국의 기관이다. NSPCC는 모든 사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아동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산하에 1,800명의 직원이 있으며 180개의 아동보호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200개 지역 지부를 두고있다. 중앙본부의 자원개발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 17,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영국사회 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근절하자는 Full STOP 캠페인이다. 이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NSPCC의 아동학대 근절 선언에 서명하였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2001년에 가장 영향력있는 자선단체로 NSPCC를 선정하였다. NSPCC가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폐해성에 대해 교육하는데 내무부(Home Office)는 1500백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2002년 5월 NSPCC가 제정한 어린이 날은 어린아동을 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이다.

- 아동권리 증진활동과 방송매체

영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서 BBC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방송캐스터들은 “바람직한 품행과 예절에 어긋나거나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대중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정해진 시간 전에 방영할 수 없는 성인프로그램을 선별한다. 상업방송들 역시 아동 광고에 대한 특별지침을 지켜야 한다. 아동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영되는 광고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도덕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광고인지 판단한 후 방영한다.

BBC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 세상(A world for Children)’ 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을 아동 자신이 보고하는 것으로 세계 각 지역 아동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송의 목적은 권리협약의 내용을 세계 각국이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 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다. BBC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권리교육도 하고 있다.

④ 협약의 홍보 및 보고서의 보급

보건부와 각 지방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인쇄하여 각 지역별 보건관련 부처 및 기구, 의료보호(NHS) 사무국, 각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배포하였다. 웨일즈 정부는 1994년 7월부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리플렛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소책자나 리플렛 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관련 내용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아동국(NCB)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각 급학교에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협약의 내용이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이되었다. 아동국(NCB)은 아동권리협약을 아동관련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내 NGO 단체들은 교육계, 사회복지계 등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권리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로비활동도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영국정부는 이것을 각 지방정부와 보건국을 포함한 의료기관, 정부부처와 사회복지 단체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들의 검토와 분석, 평가를 거쳐 보고서 최종안을 작성하였고, 이 내용은 1998년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서도 발표되었다.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아동들의 참여가 미미하였으나 2차 보고서 작성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렸으며, 2차 보고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아동의 정의

영국은 민법에서 아동 연령을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내 아동관련 법들은 실질적으로 관련정책의 대상아동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 1989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주거공간이나 접촉권을 재판부에 청원할 수 있지만 청원을 하기 전에 아동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보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16세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 등을 통해서 혹은 자신 스스로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도 법적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법은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아동들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아동법 1989에 의하면 아동은 소아정신치료나 의료처치 혹은 응급보호조치나 아동평가 과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그들이 받게 될 임상적 처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동의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아동은 만 16세가 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13세가 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다. 종일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이다. 대부분 규정에서 보건원 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의약품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갖지 않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부모가 동의하면 16세에 결혼할 수 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혼을 심의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나 재판부의 허락없이 결혼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고 이는 범법행위이다. 스코틀랜드는 16세가 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모든 아동들은 범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0세에서 13세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고 인정하면 이들은 유죄를 선고받는다. 1993년에 발효된 성학대법은 14세 이하의 남아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예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14세 이하의 남아는 16세 이하 여아와의 불법적인 성관계와 강간 등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18세 아동은 성인으로 취급받는다.

스코틀랜드에서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령은 8세이다. 범법행위를 한 8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들은 아동청문제도에 의뢰된다. 16세 이상의 아동은 어른과 똑같이 재판정에 선다. 범법행위에 어른이 개입된 경우 이 아동도 어른과 같은 재판정에 선다. 북아일랜드는 10세 이하의 아동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에서 14세 아동은 범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수감된다.

14세 아동이 식당 등에서 맥주, 와인 등 곡류로 만든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를 팔수 없으며, 선술집에서 술을 팔 수 있는 연령은 18세이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은 알코올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3)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영국정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몇 가지 법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성차별법 1975, 인종관계법 1976 등을 제정하였고 국가, 종교, 인종,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동법은 아동의 종교, 인종, 문화, 언어적 배경과 상관없이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 위탁부모를 선정하거나 아동을 보호기관에 배치할 때 인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시설보호시 직원들은 아동이 자란 가정의 특성과 관련해서 보호지침과 절차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인종배경과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보호시설의 직원들은 아동의 인종과 성장배경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직원의 비율도 조정한다.

북아일랜드의 모든 정부부처와 시민사무국은 차별을 배제하고 아동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아동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지침들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 독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각기 다른 인종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법 1944가 1980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각 지방 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uty: LEAs)은 모든 연령의 학령기 아동들에게 자신의 연령과 능력, 적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이 지역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스코틀랜드 교육법1980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인종법(Race Relations Act) 1976은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립학교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동법 1989,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와 아동시행령(북아일랜드) 1995는 모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된다. 영국정부는 관련법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결과정에서도 아동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영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의료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환자들은 약 조제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진료 및 치료받는다. 16세 이하의 아동은 약 조제비용도 무료이다.

영국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혁신적인 영국정부의 노력은 예방접종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영아 돌연사가 1991에서 1992년 사이에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사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사망도 점차 줄고 있다. 아동에 대한 소아정신치료, 신경학, 그리고 심리 치료 지원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들의 신체와 감각발달의 손상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신기간 동안 주치의의 보호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신시에도 장애아 검사를 실시한다. 신생아가 태어난 후 1주일 동안 산파가 신생아의 집을 방문하여 신생아의 발육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평가하고, 영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문간호사(health visitor)가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집에 와서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건강, 보건, 예방 접종, 수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생아의 발육상태와 가정환경을 평가한다. 생후 7개월이 되면 모든 아동들은 청각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거쳐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 아동은 매 6개월 마다 방문간호사에 의해 발달검사를 받게 되며, 발달지체나, 특정장애가 의심되면 정밀검사에 의뢰되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기 발달검사는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영국에서의 아동참여는 아동법 1989와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 1989와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의 핵심 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칙은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정이 자녀 양육권을 어느 부모에게 주느냐를 결정할 때 아동의 바램이나 감정 등 아동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아동은 재판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아동의 의사가 재판에서 반영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이 아닌 공법에서는 대부분 아동이 대리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말한다. 만일 아동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대리인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을 지정할 때도 아동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지방정부는 아동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질지, 어디로 배치될지 등을 말해야 한다. 재판부가 지정한 대리인은 아동이 배석한 가운데 설명해야 하며, 만일 아동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동은 지방정부에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아동, 부모 혹은 다른 보호자가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단체나 아동의 집 등도 아동의 불만을 접수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아동법 1995는 아동청문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학교에서의 종교행위, 교과과정, 각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을 교육개혁법 1988에서 명시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이 교육관할 부처에 대해 불평을 갖고 이것이 보고되면, 이 부처는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학교의 처벌을 규정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있는 학교법 1993은 주임교사는 아동에게 설명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법에 따라 아동과 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 Council)는 TV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들의 불평을 신중하게 분석, 평가한다. BSC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며, 아동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1953년 사망과 출생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할 지역에 등록한다. 성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되며, 이 둘을 결합한 완전히 다른 성을 만들 수도 있다. 등록시 어떤 실수가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성이 너무 흔하거나 사라졌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북아일랜드에서도 1976년 제정된 출생과 사망에 관한 시행령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어린 아동은 부모가 동의해도 자신의 이름을 바꿀 권한이 없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등록하기도 한다. 부모 모두의 동의 하에 아버지 이름을 출생신고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다. 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름을 바꾸는 경우에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만일 이런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 판결을 의뢰한다.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슬하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영국시민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시민이 될 수 없다. 부모가 영국인이 아닐 경우 아동이 10세가 되고 외국에서 일년에 90일 이상을 살지 않으면 아동은 영국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정한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당하는데, 여왕에 대해 위엄과 충성심을 표하지 않거나, 최근 5년 동안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일 경우이다. 이런 일은 아동들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2)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국 아동들은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권리만이 제한된다. 공법 시행령 1986(Public Order Act 1986)에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곤궁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 사항을 문서와 언어로 알려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최고 지휘부는 대중사회를 보호하고 심각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교육법 1986 제44조에 의해 학교지도부와 주임교사는 12세 미만의 아동들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학교교사들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못한다. 45조항에 따라 특정 정치적 이슈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학생들이 균형된 사고를 하도록 교사들은 반대 의견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향유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다.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종교를 바꿀 수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아동의 종교, 인종, 문화와 언어적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기준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이 1999년에 개정되면서 매일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공립학교와 기부금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특정종교를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종교 예식을 갖춘 예배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부모들은 학교 예배에 자녀들을 참석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사생활 보호의 자유

아동은 모든 법에서 어른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자료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은 아동에 대한 자료 등 모든 개인 정보자료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1998년 자료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규정(Children's Homes Regulations)은 시설에서 아동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통화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정보접근권

영국에서 대중매체는 아동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기제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법 1989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매우 중요하게 지각하고 모든 아동들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고 있다.

'방송법 1990'은 '채널3'이 아동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Indenpendent Television Commisssion: ITC)는 방송사가 매주 최소 10시간을 오락, 드라마, 그리고 정보 제공프로그램과 취학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널 4'는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며 BBC는 양질의 아동프로그램을 방영하고, TV와 라디오를 통해 연간 30주 이상 교육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5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음악, 춤, 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규정도 있다. 영국영화위원회(British Film Institute: BFI)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대중매체교육을 하며, 아동TV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한다. '도서관과 박물관법 1964'는 지방정부가 아동 도서를 제공하고 시청각교재와 영화, 도서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통제한다. '방송법 1990'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데 고심한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자료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테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12월 테러에 관한 모든 규정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1998년 3월 발표하였고, 유럽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각 인권협약에 맞는 테러 관련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 및 책임

아동법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은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만 부모의 책임이 사라진다. 부모는 책임과 동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갖는다. 1991년에 출간된 부모헌장(Parent's Charter)에서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동의하거나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정부는 부모를 도와야 한다.

스코틀랜드도 부모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도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부모와 정부가 협조체제를 이루는 가운데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부모들에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8년 11월, 정부는 '가족지원(Supporting Families)' 보고서에서 가족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소유물을 늘려 아동빈곤을 줄일 수 있으며, 기능적 가족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부모들이 아동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가족해체를 막을 수 있고, 가정폭력과 십대 임신 등 가족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가족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 이후 영국정부는 가족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조처들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단행했다. 즉 재정지원을 늘리고, 아동수당을 늘렸으며, 취업가족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Sure start 프로그램에 5,400백만 파운드를 투입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 가족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교육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생활 교육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초 학습능력이 없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심을 집중한다. 부모와 그들 자녀들의 문자교육 프로젝트가 1998~1999년 사이에 6,0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4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실시되었다. 기초수학 교육에도 1백만 파운드가 투입되었다.

이외에도 '가족지원(Supporting Families)' 보고서에서는 부모, 조부모,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이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정부는 정규 학교교육에서 가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성, 사회, 건강교육을 하는 National Advisory Group은 학생들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중·고교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다. '인간관계와 성역할 발달(Personal Relationaship and Developing Sexuality)'은 교사들이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재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부모역할교육에 3년간 1,500백만 파운드를 배정하였다.

(2) 아동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영국정부는 모든 아동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동법 1989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교육, 경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아동과 관련된 영역들 간의 협조체계를 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간한 “함께하기(Working Together Under the Children Act 1989)”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내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핵심 지침서이다. 1995년 정부는 “아동보호 연구결과로부터의 교훈(Child Protection : Messages from Research)”을 발간하여 아동보호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학대발생 전부터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Working Together’ 지침은 영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1997년 11월 발간된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에 관한 보고(Review of Safeguards for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에서 보호시설에서의 중복학대를 경고하였다. 10명의 관련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팀이 구성되었다. 보고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People like Us)’에서 제안된 원칙들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였다. 여기서 수많은 규정들이 검토·제안되었다. 정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수립하였고, 마침내 이 보고서는 위탁가정과 시설, 학교, 그리고 아동 근로현장에서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20개의 기본 원칙과 130개의 관련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은 교육, 법제정, 기관간의 협력, 아동을 고용한 사람들, 사법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정부는 각 영역에서의 이 원칙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추진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스코틀랜드 Roger Kent는 1996년 시설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평가연구를 실시하였고, 학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nt는 1997년 “Children’s Safeguard Review”를 출간하고 여기서 각 영역에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Kent는 아동을 적절한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았고,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Kent는 1998년에 61개의 규정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전략의 준거가 되었다. 정부는 그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근간으로 몇 가지 정책적 조처를 취했다.

영국정부는 시설보호를 줄이고 위탁보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심사와 평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0년까지 총 367백만 파운드의 추경예산중 1,500백만 파운드가 아동 보호를 위해 배정되었다.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각 지방정부 사회사업과에 있고, 경찰과 NSPCC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교육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지방사회사업과에 신고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정부는 아동보호 유관기관들간의 협조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인 'Protecting Scotland's Children - A Shared Responsibility'를 출간하였다. 어느 기관이 어떤 사례에 대해 어떻게 협력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대아동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어떤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1998년 11월 1997년에 출간한 'Protecting Children - A Shared Responsibility'를 수정·보완하였다.

영국은 학교, 가정, 아동보호 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Chief Inspector of Social Services는 1997년 5월, 모든 지방정부에게 아동법의 규정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3) 부모로부터의 분리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아동이 누구와 같이 살아야 하는지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아동이 같이 살아야 할 부모를 지정할 수 있다. 양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가족법 1996은 불가피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경우에만 결혼이 해체될 수 있고 결혼해체를 판정하기 전에 논의과정에 부부가 참여해야 하며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내에는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많은 입양관련 기관들이 있다. 입양기관은 매 3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중간에 보고서를 내야하고 연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양명령은 재판부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부모가 입양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입양기관이 "허가명령(freeing order)"을 청구할 수 있다. "입양허가(free for adoption)"가 결정되면 부모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영국입양과 위탁기관(British Agencies for Adoption and Fostering)'은 국가간 입양시 양국가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입양의 행정처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1997년 정부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폭력과 연루된 범법행위를 했거나 등의 범죄행위와 연관된 사람들은 입양이나 위탁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 규정 1983, 위탁규정 1991, 아동 시설보호 규정 1991이 부분 개정되었다.

1997년 7월부터 입양아동의 출생배경에 대한 정보를 입양부모에게 공개하였다. '입양기관과 아동규정 1997(Adoption Agencies and Children Regulation 1997)'은 입양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18세의 입양아동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책임

정부는 1998년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아버지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였다. 아동법 1995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은 혼인관계 여부를 떠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혼인한 아버지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면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부모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는 법원에 부모책임 조처를 청원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획득하는 절차가 간편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8년 6월 28일 자녀의 출생신고시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가 같이 사인하면 부모책임이 자연적으로 아버지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아동법에 추가하였다.

(5) 자녀양육비의 징수

영국 정부는 부모들이 아동에게 재정적·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동지원규정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혼자 사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녀와 살지 않는 부모들이 지불한 자녀 양육비는 1997년에서부터 1998년까지 총 5,500백만 파운드였다. 1998년 5월 현재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35%만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10명 중 7명은 오히려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Child Support Agency는 부모의 직장에 소득의 일부를 양육비로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부모가 실업상태일 경우에 수입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다.

1998년 7월 정부는 '아동먼저 : 아동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Children First : a new approach to child support)'을 출간하고 각 지역별 아동지원 규정을 발표하였다. 빈곤여성과 빈곤아동에게 생계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비를 지급한다. 수입보조를 받고 있는 부모들은 주당 자녀양육비로 10파운드씩 지급받고 있다. 주당 200백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아버지는 한명의 자녀를 위해서 수입의 15%, 두 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수입의 20%, 세 명 이상일 경우는 수입의 25%를 자녀양육비로 지불해야 한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아동보건 서비스

영국정부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기본요소로 본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본다. 보건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제공된다.

영국정부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아동이 받고 있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보건 조사위원회는 400개 단체들과 개인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아동보건관리의 원칙을 담은 보고서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Hospital, Child Health in the Community” 와 “A Handbook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를 출간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침이 된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는 장애아동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과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세운 아동을 위한 보건서비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국민건강보호의 차별을 없애고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 서비스의 이용율을 높이고 지역간 보건서비스 수혜 대상자간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의 차이를 줄인다

-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서비스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아동의 필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

- 전문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NGO들은 아동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세 미만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5.6명으로 낮아졌지만 영아돌연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영아돌연사가 60%감소하였지만 의료 보건센터들은 영아들의 침대에서의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책자를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뒤통수를 바닥에 대고 재우기(Back to Sleep)" "아기 침대사망율 줄이기(Reduce the Risk of cot Death)"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Confidential Enquiry into Stillbirths and Deaths in Infancy(CESDI)는 1세 미만의 아동건강보호 상태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출간한다.

영국은 건강한 학교(National Healthy School Awards)를 선정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건강생활도 국가 건강전략의 핵심요소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학교 건강생활에 대한 기본개념이다. 건강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지방 건강국과 각 지역 교육국에서 한다. 이미 영국내 많은 학교들이 건강한 학교 혹은 건강을 지향하는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교육국(Health Education Authority)이 보건부가 협력하여 해마다 20만 파운드의 기금을 청소년건강네트워크(Young People's Health Network: YPHN) 형성을 위해 사용한다.

1999년 실시된 4세에서 18세 아동의 영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따르면 약 2000명의 아동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 건강한 학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식의 중요성을 알린다.

정부는 모든 임산부들이 임신 첫 12주 동안 빈혈방지를 위해 엽산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유수유 산모를 늘리고 수유기간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전략도 주친하고 있다. 모유수유의 날을 정해 대중 캠페인도 벌인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늘고 있다. 품행장애, 우울증은 아동·청소년들이 보이는 두 가지 주된 장애이다. 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조처들을 제안하였다.

보건부는 일차 진료 기관에서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줄이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 1999년 각 지방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를 설립하였고, 1999년~2002년까지 8400백만 파운드를 투입하였다. NHS와 Social care Region이 여기에 소요되는 기금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아동 정신건강과 관련한 민간단체들로는 Young Minds, Mental Health Foundation, Facult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National Children's Bureau, Who Cares? Trust(WCT), Trust for the Study of Adolescence(TSA)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20%가 진단 가능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TSA는 내무부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상담자들을 훈련한다.

(2) 십대부모의 감소

영국은 세계에서 십대부모가 가장 많다. 정부는 십대부모의 발생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사회적 박탈의 한 증후로 본다. 16세 이하의 임신이 1980년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1990년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 1000당 10.1명이 임신하여 십대임신이 최고조에 달했다. 1997년에는 8.9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걱정할 만한 수준이다. 십대부모의 지역분포는 차이가 있다. 십대부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성교육과 대중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3) 장애아동

영국 정부는 1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장애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1995년에 'Expert opinions: a national of parents caring for a severly disabled child'로 출간되었다. Rowntree Foundation은 장애아동 가족의 현실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연령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추가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일반아동보다 3배의 양육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나도(Banardo)가 출간한 "Accessing Human rights: disabled Children and the Children Act"는 아동법 1989에서 장애아동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이로 인해 영국내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연구가 개별단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것도 장애정책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영국정부는 장애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를 16세 이하 196,000명의 아동들에게 성인장애인과 같은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72,500명이 추가 양육비용을 지급받았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버스와 기차를 도입하였다.

영국정부는 장애소득지원(Disability Income Guarantee)을 통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용(Housing benefit)의 일부를 지원받고, 세금공제 혜택도 있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서비스

영국은 빈곤가정을 집중 지원하고, 취업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며, 부모가 헤어질 경우에도 자녀가 재정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닌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추진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아동들의 미래에 높은 기대를 갖고 국민들의 기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에 대한 최선의 지원이라고 본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기 보다는, 가족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만이 아동에 대한 최선의 양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수당은 가족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 아동수당은 일차적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일주일에 16시간 미만 일하는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들을 위해 소득지원(Income Support)이 추가로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16시간 이상 일하는 저소득층 가족도 취업부모 세금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가족세금공제(Family Credit)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된다. 1999년 10월부터는 가족세금공제제도 대신 취업부모 세금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1998년부터 11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어온 아동수당(Child Personal Allowances) 지급액이 늘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수당은 1999년 2.60파운드 증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액이 물가변동에 따라 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향 조정되었다.

0세에서 3세와 열악한 지역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Sure start가 1998년 7월에 발표되었다. 이는 사회적 소외의 원인을 아이들의 생의 초기에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동과 관련한 영국정부의 역점사업중 하나이다.

영국정부는 보육시설을 늘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매 3년마다 아동보육 실태조사를 한다. 보육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은 현실적으로 지원액을 합산하면 보육비용의 95%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아동보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은 14세까지 지급받고 경우에 따라 16세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가 영유아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수립하고 0세부터 14세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5월 출간된 Childcare Challenge에 양질의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정부의 정책목표가 나타나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 단체, 보육시설 운영자들, 부모, 교육부가 총 망라하여 일구어낸 보고서이다. 이어서 영국정부는 1998년 영유아보육 지침서(Guidance to 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를 출간하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998년 조기교육계획(Early Development Plans: EYDPS)를 발표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취학전 아동교육이 의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2년부터 3세아 무상보육을 하고 있다. 1999년~2002년 보육예산으로 13,800백만 파운드가 추가 배정되었다. 이로서 보육예산은 38,200백만 파운드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방안을 일부 마련하였다. 취학전 1년 혹은 6개월동안 부모가 원할 경우 유치원에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안을 확정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영국정부는 앞으로도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5개의 Early Excellence centre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모델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육을 위해 4,900백만 파운드가 지원되었고 영아를 둔 가정을 위해 4,200백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

1998년 7월부터 2002년까지 보육기관의 3세 아동 수용인원을 두 배로 늘렸다. 보육에 대한 국가전략은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잉글랜드에서만 1993년 이래로 122,745개의 방과후 교실이 신설되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이 3,500개에 달한다.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복권기금(Lottery New Opportunities Fund) 2,200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스코틀랜드도 이와 비슷한데 9,100만 파운드를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로부터 지원받아 이 중 4,900만 파운드는 아동보육 사업을 지원하고 4,200만 파운드는 어린 아동을 둔 가족을 지원하였다. 복권기금은 스코틀랜드의 방과후 보육을 위해 2,500백만 파운드를 기부하였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학교 폭력근절을 정부의 우선정책으로 내어놓았다. 학교교육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모든 학교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교수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4)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정부는 모든 학교교육 여건이 최고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지출을 1998년~1999년 4.6%에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001년~2002년까지는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3백82억 파운드에서 4백78억 파운드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문자해독과 숫자학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조정하였다. 학급당 아동수가 5세, 6세, 7세 아동의 경우 30명을 넘지 않는다.

교육지역(Education Action Zone)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평생학습으로 이어진다. 25개의 Education Action Zone이 생겨났고, 47개존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와 부모, 그리고 사업장, 사회기관들 그리고 여타의 행정조직들이 함께 참여한다. NGO 단체들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처를 환영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NGO들은 Education Action Zone 수혜자격이 18세에서 24세인 연령규정을 좀 더 낮추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와 직장도 다니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16세, 17세 청소년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6세와 17세 아동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정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은 빈곤을 줄이고 기본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2) 도덕성·사회성 발달과 시민으로서의 역할

대다수 학교가 학생들이 책임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가치와 기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많은 학교들이 이미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이다. 해마다 잉글랜드 아동들 백만명이 학교의 허락없이 최소한 하루 반일 수업을 빠진다. 50,000명의 아동들은 일주일에 하루 결석한다. 학교의 정학처분 심사에서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학 심사과정 중 학생이 출석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 중도 포기자를 2002년까지 줄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경비 2,300백만 파운드를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3) 학교에서의 폭력

쉐필드 대학에 의해 실시된 학교폭력 연구에서 1991년~1993년까지 10%의 초등학교 학생과 4%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학교폭력을 당하였다. 뒤이어 계속된 연구들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학교는 없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1994년 이후 교육과 노동부는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영화를 제작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였고, 리플렛을 제작하여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비폭력 자료집을 출간하여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학교 폭력은 정부의 주도로 제작된 이 자료들을 이용한 이후로 줄었다.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제61조 4항의 b에서 학교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또래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스코틀랜드 정부는 1994년에 학교폭력근절에 관한 리플렛을 모든 학교에 배포하였고, 1995년 8월에는 부모와 가족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95년 가을 Scottish School Ethos Network이 발족되었고, 이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영국정부는 교사자격취득과정의 교과과정을 강화하고 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 예컨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갖고, 학생들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영국정부는 장애아동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는 장애아동들에게 규정된 정해진 교과를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고 장애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교과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들과 똑같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 지방정부들은 장애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각급학교는 이 지침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1997년 출간된 Excellence for All Children: Meeting Special Educational Needs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서비스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5) 소수민족 아동

소수민족 아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와 문화, 전통, 언어, 그리고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국 아동들과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도록 한다. 인종법 1976에서 교육, 고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훈련, 제화의 공급, 서비스의 제공등에서 인종차별은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6)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

국가복권기금은 방과후 아동보육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음악, 춤, 연극, 영화 등과 같은 문화활동 분야의 방과후 활동에 집중 지원되었다. 이러한 문화활동이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내 모든 방송은 양질의 아동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편성해야 한다. “아동 BBC”와 “아동 ITV”가 있다.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BBC와 채널 4는 방송대학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범죄를 유발하거나 장애 혹은 공격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성인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특정시간대까지 방영될 수 없다. 아동이 광고에 등장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광고에 사용되지 않는다.

영국에는 4,500개의 지역 도서관이 있고 모두 무료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법 1664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오락과, 교육, 문화, 필요한 정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방과후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과 갤러리를 방문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수천만명의 아동들이 매년 공립박물관을 방문하고 2,500개 박물관 방문객의 1/3이 학생들이다. 대부분이 박물관들은 학생할인 혜택을 주고, 미리 예약할 경우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

영국정부는 아동발달에서 놀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아동의 놀이에 관한 정책을 편다. 1996년 이래 “National Playing Fields”와 협약을 맺어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National Playing Fields”는 ‘Play Today’라는 신문을 매월 제작하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산하에 청소년스포츠개발단을 창설하여 학교에서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공급하고 있다.

5) 특별보호조치

(1)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

잉글랜드 정부는 1995년에 약물퇴치를 위한 전략 보고서 “약물퇴치 함께하기(Tackling Drugs Together)”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며, 약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약물남용 대응팀을 구성하였다. 정부는 1998년 향후 10년간의 약물퇴치 전략을 발표하였다. 약물사용 문제는 사회적 소외 등과 연관이 있고, 일부 소수 청소년들만이 약물을 사용해도 약물사용 문제는 심각하다.

내무부의 약물방지부가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12명의 약물예방팀이 구성되었고 이 기구는 1999년 약물예방국으로 개편, 확대되었다.

아동안전시행령은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10세 이하의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너무 일찍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는 일정시간 아동이 집에 있어야 한다거나 특정사람이나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부모조치(Parenting Order)는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부는 부모들에게 아동보호과정에서 상담 시간 등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잘 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육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자녀가 학교에 잘 가는지 특정장소나 개인을 피하지는 않는지 등을 조사한다. 아무런 이유없이 이 조치에 불응하게 되면 부모 혹은 보호자는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2) 난민아동

난민과 이민법 1996이 영국내 모든 난민문제를 다루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에 따르면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난민 아동이 최우선의 지원대상이다.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18세 이하 아동들을 영국에서 강제 출국시키지는 않는다. 내무부는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아동들에게 부모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이들을 모두 난민 명단에 등록한다. 난민아동들은 학교에 다니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추가로 영어교육도 받는다.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민국 직원은 전문교육을 받는다.

난민들은 사회보장규정 1996과 난민과 이민법 1996에 따라서 처리된다. 재판부가 난민 청원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래 아동법 1989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이를 관장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아동법에 난민청원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다. 난민들의 주거 등의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지방정부는 더 이상 이 업무를 맡지 않는다.

(3) 아동증언

영국정부는 1991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을 제정하고 성학대 아동이나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들의 비디오 녹화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법조사과정에서 아동에게 진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성학대 등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비디오 증거자료도 채택된다. 비디오로 기록된 증거자료를 채택함으로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이 직접 재판정에서 증인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아동은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조사받고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아동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법적인 반박이 다소 해소되었고, 아동의 증언은 어른과 마찬가지의 증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영국이 1차 보고서에서, 재판과정에서 비디오 등을 통한 아동증언을 허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증거수집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와 경찰로 구성된 Steering Group on Child Evidence(SGCE)가 아동증언 자료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분석, 평가한다. 1997년 NSPCC와 아동의 전화(Childline) 등의 아동관련 단체들도 이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SGCE는 판사와 변호사가 아동증언을 다룰 때 참고가 될 만한 시행지침을 출간하였다. NSPCC는 아동증언 소책자를 발행하였고, 아동부모, 보호자 등을 위한 리플렛도 발행하였다.

모든 재판정은 아동증언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아동증언 사무관을 배치해야 한다. 아동증언과 관련해서 비디오 녹화나 TV와 연결해서 증언하는 등의 아동증언 방법들은 17세 이하 아동증언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아동법 1989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아동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인쇄제작을 금한다.

국립아동학대 예방협회(NSPCC)와 아동의 전화(Childline), 그리고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이 아동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방안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4) 성학대와 성착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조치

성범죄에 관한 법 1997(Sex Offender Act 1997)은 성학대 조사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관련된 법률로, 영국정부는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해서 추가하였다. 성범죄에 관한 법 1997(Sex Offender Act 1997)에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만일 14일 이상 거주지가 바뀔 경우 바뀐 주소지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형을 선고받게 된다. 30개월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성학대 가해자의 거주지가 바뀌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이름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이 관리한다. 성학대 가해자의 96%가 경찰에 의해 기록, 관리되고 있다. 두 번째 성학대를 범할 경우 형사법 1997(Crime Act 1997)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형사법은 14세 이하 아동을 성학대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영국정부는 아동이 성착취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역들간의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8년 내무부와 보건부가 공동으로 성착취 상황에 있는 아동을 다룰 때 필요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아동 성착취 문제에 함께 대응하게 될 때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동을 성학대의 희생자로 보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이 성착취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아동들이 포르노그라피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1996년 인터넷감시단(Internet Watch Foundaton: IWF)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996년 핫라인을 설치하여 웹사이트에서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IWF의 활동으로 아동들이 포르노그라피에 노출되는 것이 감소했다.

영국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수 있다. 영국정부는 국제 아동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1998년 여권법을 개정하였다. 모든 아동들이 점진적으로 부모와 다른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아동유기에 대한 처벌에 제한이 없다.

3. 시사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1)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1995년 1월 24일과 25일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의 아동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고, 협약의 이행을 위해 각 지자체 별로 정책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아동노동 규정을 개정하고, 1993년 아동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가족폭력과 장애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특수아동을 위한 실행지침을 만들어 이 내용이 1993년 개정된 교육법에 반영된 것, 영아돌연사(Sudden Infant Death Syndrome)가 감소되었고, 학교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함께하기(Working Together)” 운동을 펼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협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보조항에 대한 검토 촉구
- 아동법과 협약의정서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창설할 것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무교육을 늘리며 아동근로를 방지할 것.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의 건강상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소수민족 아동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홈리스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것

- 아동권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사, 경찰, 판사,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종사자,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교육을 실시할 것

-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할 것

- 양부모가 똑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십대부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 가족내에서 신체체벌을 법적으로 금지 할 것

- 학교 운영에서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법처리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 할 것

- 성착취와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것

- 방임 성적착취, 학대, 가족폭력, 약물남용 등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할 것

- 집시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

(2)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의 2차 보고서를 2002년 9월 14일과 9월 19일에 열린 제811차와 제81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추가조치가 필요한 권고안을 2002년 10월 4일 제83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심의 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정부가 협약 32조와 37조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비준한 점, 1973년의 최소연령 협약을 승인하고 1999년의 국제노동기구의 아동노동협약을 승인한 것, 1998년도에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을 비준한 것, 북아일랜드에서 평화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경찰 옴부즈맨이 창설된 것, 인종법(race relations)1997을 제정한 것 등 영국 정부의 그동안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내 법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코틀랜드에서의 교육체계 개편과 웨일즈에서의 체벌금지 조치가 협약의 내용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아동권리 관련 법제정과 수정, 보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변화가 있다. 이 중 하나가 아동관련 예산의 증가이다. 정부는 빈곤아동을 201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협약 4조의 “이용할 자원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영국전체의 총수입을 산출하고 아동에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비율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가 단행한 정부 조직 개편 중 특히 2001년 아동・청소년 개발국을 창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협약의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기구가 없어 아동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책결정과 서비스 실행 권한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각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제할 우려도 있다.

위원회는 웨일즈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웨일즈 아동・청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가 된 것이 다행이지만 아동권리 보호에 기초한 정책개발이 여전히 미약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였다. 중앙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예를 들면 빈곤가정 아동, 소수민족 아동, 장애아동, 홈리스 아동,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 16~18세 사이의 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창설할 것

-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회복지 기관들은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아동관련 통계들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지역별로 수집되지 않고 영국 전체통계를 산출, 제공할 것

- 모든 아동, 부모, 공무원, 관련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인종법을 1997년에 제정하였지만 국적취득과 관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수민족 아동의 국적취득과 관련한 차별, 장애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 이혼, 입양, 그리고 교육, 보호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할 것

- 입양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규정할 것

-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당한 296명의 아동들(2000년과 2002년 2월 사이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 “이유가 있는 체벌”도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속히 만들 것

- 정부차원에서 아동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폭력으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

-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유수유 비율을 높일 것

- 십대임신을 줄이기 위해 학교교과정의 일부로 건강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고, 십대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

-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박탈된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교 학교교육에 포함시키고 교사들을 훈련할 것

- 군대징집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아동으로 할 것

- 청소년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 할 것

- 아동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필요인력을 배치할 것

-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연령을 높일 것

2)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시사점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법에 의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므로 아동권리 보호 현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영국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유엔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 아동법을 중심으로 청소년 권리정책 개발

영국 청소년 정책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모두 아동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관련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다.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아동법에서 아동참여, 학대아동보호, 아동근로문제, 군 징집문제, 시설보호, 학교폭력, 보육과 유아교육문제 등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정책 실행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동법에서 구체적인 실행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 예컨대, 입양, 부모의 이혼, 학교교육, 성착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들을 적극적으로 제정하였고, 이것이 아동법과 함께 청소년 권리를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법을 근거로 구성된 아동위원회(Children Act Advisory Committee)는, 상원의장(Lord Chancellor),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 보건부장관(Secretary of States for Health), 그리고 가족담당 대법관에게 매년 아동법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보건부장관은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부처 및 의회에 아동법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권리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 아동부의 신설과 아동부차관의 임명

영국 각 지역은 '아동기구(Chidren's Issues Unit)'를 설립하고 아동 장관(Minister for Children's Issues)을 임명하고 있다. 아동보호부(Children's Safeguard Unit)는 2000년 National Care Standard Act(2000)를 규정하였다. 웨일즈 지방정부 역시 1997년에 아동부를 창설하고 아동부장관(Minister for children)을 임명하고 이 산하에 아동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위원회(Departmental Committee on Children's Issues)를 두고 있다. 아동업무가 관련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여성이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가족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사정에 비하면 '아동'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이 가능한 정부직제로 평가된다. 아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아동부'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과 권리와의 조화

영국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부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중요하게 다룬다.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지원한 국가는 아동법 등 관련 규정에서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부모명령조치(Parent Order), 자녀양육비의 강제징수조치 등이다. 이로써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한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부모명령을 통해 부모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원칙을 근거로 한 가족지원 장기계획안을 2003년 9월 발표하였다(HMSO, 2003).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한계는 아동의 필요가 준거가 된다. 각종 수당제도를 통한 현물급여 외에 최근에는 교육 등을 통한 가족생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예로는 가족학습프로그램(family learning program), 아버지 지원 프로그램, 부모와 학교간의 의사소통 증진프로그램, 전문가가 직접 부모를 지원하는 가정방문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집단 모임 등이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당제도의 개발 및 시행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1945년 도입된 가족수당제도, 1974년에 실시된 아동수당 제도, 가족과 관련한 각종 세금공제제도, 주택수당 제도 등이 있다. 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처음부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여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87년 제정된 아동법에 의하여 종전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은 아동급여(Child Benefit)로 대체되어 모든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원조를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인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아동양육지원급여(Child Support Maintenance)를 받던 저소득층의 실직자가 취업을 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동양육보너스(Child Maintenance)를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가족의 소득부조 프로그램으로 가족수당(family credit)이 있다. 가족의 순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아동의 수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 취업부모에게 보육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 아동보호 세금 공제(Childcare Tax Credit)제도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취업부부가 일주일에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8000파운드 미만의 저축액을 갖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일주일에 95.50파운드를 한 아동당 지급받는다. 둘 이상일 경우는 일주일에 140파운드를 받는다. 보육료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135파운드에서 2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보육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2003년 만3세아까지 무상보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택지원(housing benefit)은 무주택자들이 지방자치체의 각 시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주택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각종 수당제도의 개발과 체계적인 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5) 무상의료보호 서비스 및 모자보건 서비스

영국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보호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16세까지는 각종 의약품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무상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건강, 의료보건 서비스의 차별이 있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은 의료보호서비스가 전적으로 개인의 재원사용 가능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개발해야 할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발달검사제를 통해 생후 3세까지 발달장애를 조기에 판별하며, 그 이후에도 무상의료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는 장애의 조기진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6) 체벌근절을 위한 정책

영국에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내 체벌금지 조항을 아동법에 추가하기 위해 아동관련 수백 개 단체가 '가정내에서의 체벌 근절'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영국은 부모의 자녀 체벌권리 제한법을 제정(한겨레, 2004. 7. 6)하였다. 체벌이 자녀훈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학교체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체벌을 금지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체벌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인종차별 금지법을 통한 난민 가족의 아동지원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난민 국가의 아동들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난민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정책은 외국 이주 노동자 가정 아동의 수가 늘고 있고, 이들의 국적취득이 문제가 되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에 참고할 사항이다. 인종간 사회계층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성차별법 1975, 인종관계법 1976 등을 제정하였고 국가, 종교, 인종,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동법은 또한 아동의 종교, 인종, 문화, 언어적 배경과 상관없이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8) 빈곤아동 정책

영국정부는 현재 태어난 모든 아동이 똑같은 경험과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정책이 향후 65년동안 경제상황과 연관된다는 것을 주시하면서, 아동권리보호차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기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빈곤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에서 1997년부터 시작된 “Sure start”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생의 초기에 긍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 Sure start” 날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빈곤아동을 201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것과 박탈된 환경에 있는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영국전체의 총수입을 산출하고 아동에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비율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현재 1백만명 이상의 빈곤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빈곤아동의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학업성취, 사회, 정서적 안정 등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 Sure start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영국의 정책과 아동예산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 유엔의 의견은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된다.

(9) 법적 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법적 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1991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91)을 제정하고 16세 이하의 성학대 아동이나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들의 비디오 녹화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법조사과정에서 아동이 갖는 진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성학대에 대한 사전 비디오 증거자료만을 증거로 일부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아동관련 증언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10) 아동복지 사업계획 수립(Children Services Planning)

영국은 각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안(Children Services Planning)을 1992년부터 마련함으로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각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포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1) 위탁아동, 시설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자신의 가정에서 자랄 수 없거나 돌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지방정부의 지휘감독하에 시설에서 보호하고, 아동들의 일상생활 지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 살기 시작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아동법 1995는 고교 졸업 후에 청소년들이 혼자 살 경우 이들이 지방정부의 안내와 도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지방정부가 21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임을 맡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 및 각종 훈련비, 주거비용 등도 지급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시설보호 정책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고, 요보호 아동을 시설에 배치하면 아동양육계획이 시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설보호가 운영이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각 지역별 교육지역(Education Action Zone) 선정

각 지역별 교육지역(Education Action Zone)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각 지역사회가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청년실업 문제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Ⅳ. 프랑스의 청소년 인권정책

Ⅳ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Ⅳ. 프랑스의 청소년 인권정책 6)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

(1) 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프랑스는 1990년 1월 26일에 서명하고 7월 2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9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아동권리협약 비준시 한 가지 사항을 유보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석적 선언을 하였다. 유보 사항은 아동권리협약 제30조이며, 이는 아동이 고유의 종족, 종교, 언어가 있는 경우 그 아동들이 그들 종족 고유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은 공화국 모든 시민은 출신, 종족, 종교와 무관하게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소수 민족이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두 가지 해석적 선언은, 첫째는 협약 제6조에서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낙태를 허용하는 프랑스 법 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협약 제40조 제2항으로, 협약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프랑스는 청소년에 대한 경찰법원 판결 및 일반 범죄에 대한 순회재판 판결은 상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해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반범죄 재판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15일 법으로 기존

6) 이 장은 서문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순회재판 법정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된 데 비하여 3명이 추가된 12명으로 구성된 다른 순회재판 법정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프랑스는 1994년 4월 11일, 12일 1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마친 후 약 10여 년 후인 2004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7] 심의를 받았는데, 그 동안 아동의 기대와 보호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아동권리협약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가족정책으로, 부양아동 세금공제 기준을 낮추고 아동수당 정책을 확대하였으며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부모권한법(Parental Authority Act)으로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자녀간호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종일 또는 부분적으로 유급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8]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00~3,000프랑의 그랜트를 주고, 아동이 18~30개월인 경우는 2달 동안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부모의 삶으로부터 아동이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00년 6월 가족에 관한 회의에서 부모의 프랑스 국적자 여부에 따른 아동간의 평등원칙을 천명하였고, 2000년 6월 30일 법으로 이혼시 보조금 등 부부의 재정상태 변화시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3일 법으로 사생사에 대한 상속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고, 2002년 3월 4일 부모권한 및 이름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아동학대보호는 1989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최근에 보호 수당을 도입하고, 성적 남용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였다. 특히 1996년 아동의 상업적 성 이용에 관한 세계 의회(스톡홀름 의회) 이후 정책을 강화하여 1997년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9로 통일되었고, 1998년 6월

7) 프랑스는 1997년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 9월에 제출하였다.

8) 종일 휴가는 월 800유로, 반일은 50%를 삭감한 400유로, 20~50% 휴가는 243유로이며, 편부모는 가산급을 지급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7일 법으로 행정가 임용, 희생자 증언 비디오·오디오 촬영, 의학 심리적 검사, 의료비 100% 보험으로 지불, 성폭행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을 취하였다. 또한 집단 괴롭힘으로 문제가 되어 온 신입생 환영 의식을 1997년부터 교육부가 금지하였으며, 1998년 6월부터는 벌칙조항을 징역 6개월 벌금 50,000프랑을 규정하고 있다.

(2) 모니터링 및 조정 기구

프랑스에서는 정부, 국회, 아동옴부즈퍼슨((Institution of an Ombudsperson for Children), 국가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민간단체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989년부터 아동권리는 고용 및 통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lidarity)에서 총괄하고 국제적인 문제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서 관장한다.

둘째, 1993년 1월 23일 법으로 해마다 국회에 협약의 이행 상태 및 세계어린이 상황 개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9년에 단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1997년에는 국회에 국회인권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출생과 관련된 아동의 알 권리 증진, 합법적 아동과 자연적 아동간의 부모 권한 조건, 합법적 아동과 사생아간의 상속상의 평등, 법적 도움이나 아동 범죄자 권리 등을 위하여 변호사 지원 의무화, 재혼 가정의 부모 권한 관련 새로운 부모의 위치 관련 토론 제언, 가정의 물질 문화 재정적 빈곤, 중재자 확립, 미취학 아동 지원, 교육 지침, 정보사회에서의 아동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2000년 3월 6일 법 개정으로 같은 해 5월부터 아동옴부즈퍼슨 제도(Institution of an Ombudsperson for Children)를 도입하였다. 이는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개별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해결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에게 집단적으로 역기능을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기존 법이나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30명의 정치, 과학, 의료, 법, 단체 및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14~17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문위원회를 두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동 옴부즈퍼슨은 3회에 걸쳐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9] 2003년부터 아동옴부즈퍼슨은 사건을 국가윤리자문위원회(a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Ethics)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

넷째, 국무총리실 산하 법률에 관한 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Legislation)에서도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권고를 하는 등 아동권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보고서 심의 시 법률에 관한 국가 인권 자문위원회의 조정기능 부족을 지적하고 국가 및 부처간, 해외 영토 및 부처를 포함하여 불균형 및 차별을 제거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보완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섯째, 1988년부터 다양한 단체가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1992년에 결성된 프랑스아동권리단체협의회(French Council of Associations for the Rights of Children)는 1996년 4월 법으로 11월 20일을 아동권리의 날로 제정하는데 기여하였고, 1998년부터 건강, 교육, 보호, 노동 참여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아동보호 프랑스 지부(the French branch of 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가 해외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프랑스 아동정책은 다양한 부처와 기구에서 아동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 사회복지기관, 법률기관, 경찰, 교육단체 및 공공 및 법

9) 2001년은 외국 아동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002년은 보건의료 서비스에의 접근, 2003년 교육받을 권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원이 지원하는 민간이 자발적 기구에서 아동 문제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는 없다. 프랑스는 1999년 국제아동가족센터가 폐쇄된 이후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4년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국가 감시기구(National Observatory for Childhood in Danger)가 생겨서 그 공백을 다소 메우게 되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로 아동의 문제는 지방 당국(Department)[10]이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조정 및 지역 간 불균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치 산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 수 추정도 6,000명부터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3) 프랑스의 배경

①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체계는 매우 다양한데, 아동 보호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책임을 국가에서 지방(Departments)으로의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는 가족관련 법률 제정, 사회개발 서비스 수준 개선, 세금 자산조사 수당 훈련 및 교육 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된 구조는 한편으로는 조정의 한계로 지역간 불평등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복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는 지방당국(Departments)이 책임지지만 주택 문제는 복지체계가 다르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조치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혼자 온 외국소년의 경우가 많아서 인신매매 대상이 될 위험이 많다. 지방정부는 거처가 없는 소년을 위하여 중앙에 보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청소년 판사는 보호와 처벌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10) 프랑스는 22개 지역(Region)으로 나누어져 이는 다시 약 100개 이상의 지방(Department)으로 나누어져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아동 행정서비스를 위탁함으로써 보호 기능을 소홀히 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

프랑스의 출산율은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증가는 1990년대의 경우 80%는 순수 증가한 반면에 20%는 이민에 의한 것이다. 여성취업률은 64% 수준으로 대부분이 취업과 2자녀를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39%가 미혼 및 싱글 모에게서 출생하고 있으며, 40~44세 중 18% 남자, 16% 여자가 두 번 이상 결혼한 경험이 있다.

③ 고용지원 및 통합

프랑스는 젊은 사람들의 사회통합 및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25세 미고용률이 24.3%로 높다. 1997년 청소년 취업정책(New Services - Jobs for Young People)으로 18~25세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개발하는 등으로 국가·단체·지역사회가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3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01년부터 연 1인당 15,540프랑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를 못 마치고 사회에 나간 16~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TRAC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최장 18개월까지로 1998년부터 9,500명이 등록하였고, 특히 2000년에 6,000명이 등록하였다. 1982년부터 지역 청소년고용사무소에서 사회통합 및 취업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취업뿐 아니라 훈련, 건강, 주택·문화·스포츠·레저·시민의식 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00개 지방사무소 및 350개 정보안내센터 등 총 650개 사무소에서 10만 명의 퇴학, 해체, 노숙, 마약, 실업, 이민자, 해외영토, 에이즈 등 문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홍보

프랑스는 국가보고서 홍보 등 아동권리협약을 널리 홍보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건강, 교육, 사법, 사회사업가, 경찰, 교도소 관계자 등 아동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아동권리 실천에 관한 유럽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s)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2) 아동의 정의

(1) 아동권리 실천

아동(minor)[11]은 18세까지는 법적 권리가 없으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스스로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학적 측면에서 부모 동의 없이 진료, 피임약 및 도구에의 접근, 성병 검사,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의료 처치시 본인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간, 부모와 아동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과 관련해서 아동은 청소년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 16세 이상에게는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야 하고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13세 이상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 한 이름, 입양 관련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결혼 연령은 여자 15세, 남자 18세이다.

부모가 외국 국적자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된다. 13~16세는 대리인의 동의로, 16세 이상은 스스로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17세 반~19세 사이에는 다른 국적이 있으면 프랑스 국

11) 프랑스는 아동(child) 용어 대신 소년(min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적은 말소된다. 15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여권 소지 및 여행이 가능하다. 17세부터 군 입대가 가능하고 16세에 의무교육을 마치면 근로가 가능하다. 16세부터 범죄 경력이 없으면 자신 재산의 반을 관리할 수 있다. 범죄자라도 13세 이하는 처벌이 면제되고, 13~16세 아동은 범죄에 관해서만 재판 전 구속이 가능하며,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 16세 이상으로, 독립하면 부모 권한이 정지되고 성인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아동은 영주권이 없어서 16세 이후 도제, 대안학교 훈련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사법관련 권리

유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가 유럽 아동권리실천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s)을 제정하였는데 프랑스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가족 소송 절차, 특히 부모 책임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판사 앞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항, 가족 관련 친권, 거주, 방문, 부모자식관계, 합법성, 입양, 후견인, 재산관리, 청취, 부모권한 철회 및 제한, 비인도적 처사로부터 아동보호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아동은 재판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혼관련 재판에서는 아동이 변호인 앞에서 증언을 희망하면 스스로 설명하지 않고 판사가 법정에 재 명령한다. 소년이 당사자일 때 증언할 권리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도움 받을 권리 보장은 자산조사에 기초한다. 비행, 범죄 희생자로 민간 배상 재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관련 재판에서 아동의 의견이 항상 청취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받는 아동 중 부모의 변호사 선임 서류 미제출로 재정 지원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001년 12월 법으로 합법적 출생아와 사생아의 상속권 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2000년 6월 15일 법으로 1972년에 제정된 인지법(The Filiation Bill)에 평등 개념을 확립하여 법을 부성과 모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모의 성명도 출생증명서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차별철폐를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 보고서는 주택, 고용, 사회서비스의 문제가 있으나 무시되고 있고, 가족 재결합을 위하여 입국한 경우가 아닌 외국 부모 아동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피부색, 이름 등에서 차별 사례가 있는데, 특히 외국 영토와 프랑스와의 차별이 있음을[12] 지적하고 있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관련 문제 결정에 이익 최우선은 주요 기준이 된다. 가족법상 부모의 재판 신청, 결과 실천 시에도 아동 이익 최우선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판사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1월 8일 법은 아동 자신이 스스로 이익 최우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이 아동의 의사 표현을 듣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부모가 갈등 상태일 때는 제3자를 특별 행정가로 임명하여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별 행정가는 아동을 보호하는 후견인(Guardian)과는 다르다.

12) 메이요트(Mayotte)에서는 지역법을 적용하므로 아동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고, 프랜치 폴리네시아에서 프랑스 대표, 또는 폴리네시아 정부 대통령 중 누가 가족위원회를 맡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입양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프랑스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법으로 임신여성을 보호한다. 임신은 사회보장 대상이 되고, 출산전후 검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여학생은 임신한 경우에 가능한 좋은 조건에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출생전후 생존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근로자의 경우 임신시 임금 변경 없이 업무 및 자리 변경이 가능하고,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사회보장으로 지급한다. 또한 자녀의 3세 이하까지 육아휴직 및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혼모 및 이혼 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장소, 부모 위한 토론집단 조직, 부모 위한 센터 및 부모 및 청소년 위한 조정기구 설립, 이민부모 돕기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연 8,000명의 10대가 임신하여 이 중 70%가 출산하는데, 이들 10대 출산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프랑스령에서 심각하다.[13] 이러한 10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스스로 출산 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 임신 조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10대를 겨냥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2000년 2000-1209번 법에 근거하여 10대에게 비상피임약을 약국에서 무료로 주고 학교 간호사가 피임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2002년부터 두 종류의 비상피임약 사용을 허용하였다.

출산후 2~3일만에 병원을 퇴원하는 것도 부모가 없는 외국 아동에게 문제가 된다. 일부 사하라 아프리카에서는 할례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4) 아동의견 존중

아동 의견을 존중하며, 어른 정책결정자는 아동의견을 고려한다.

13) 프렌치 구아나(Guyana)에서는 출산의 8%가 11~13세 아동의 출산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자유 및 시민적 권리

(1) 이름, 국적, 부모를 알 권리

프랑스에서 그 동안 출생신고는 아버지의 권리이고, 아버지나 또는 출생을 먼저 인식한 사람이 신고하는데, 동시에 인식하면 부모이름 중 하나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가족이름법(Family Name Act) 개정으로 2003년부터 부모 중 한 명 아니면 둘 다 정하는 순서대로 기재하게 하였는데, 최근에 부모 이름을 모두 따르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 시행은 2005년으로 연기하였다.[14] 성, 이름의 변경도 1993년 입양 관련법으로 부모 자유선택 등 합법적 이해를 증명하면 변경이 가능한데, 13세 이상은 부모-자녀 관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적은 1998년 3월 16일 법으로 부모 중 1인이 프랑스 국민인 아동, 부모 중 1인이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가 프랑스 국적이 아니어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부모 국적을 물려받는 경우 제외)이면 누구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13세 미만 아동에게 신분증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매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연 25,000명이 새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는 모의 출생시 공개 거부나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부모의 권리와 아동 권리의 상충 문제는

14) 부모가 둘 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이름 2개를 주게 되는데 그 중 마지막 이름이 성이 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002년 전까지는 부모가 공개를 거부하면 이를 수용하였으나 2002년 1월 22일 법으로 익명을 유지하되 부모 정보는 비밀 봉투에 담아 관리하고, 익명의 부모를 둔 사람이 부모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당사자에게 알려주거나 거부하면 거부한다는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신분유지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동안 민법에 의하여 거주기간 관계없이 제공하였으나 2003년 법으로 3년 거주를 조건으로 제한하였다. 아동옴브즈퍼슨 보고서는 최근에 외국 신분증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프랑스는 청소년의 표현 및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학교 등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월에 청소년 스포츠부에서 청소년의회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16~28세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운동, 청소년 단체 및 개인 7개 분과, 즉 평등, 사회적 지위, 접근, 고용, 건강, 문화·스포츠·레저, 폭력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동일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 1995년부터 고등학교 의회도 운영하는데, 이는 학교위원회에서 뽑은 28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의사표현은 학교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 의사표현은 자유이지만 배포는 학교 당국이 허가하여야 가능하다.

의회에서 아동 증언에 대해서는 1998년 5월 14일 법으로 판사가 가족을 심리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고 종전에는 16세 이상에 한하여 가능하던 것을 연령과 상관없이 판별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유엔은 아동의 견해 존중은 가족, 학교, 기관, 법 및 행정 절차 상에서 아동견해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한 참여 증진과 촉진을 권고하였다. 아동에게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여기에 적절한 무게를 둘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 아동 등에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정보 접근

① 정보 접근

프랑스는 1,502개의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 이외에 정거장, 지하철 등에 인터넷 장비를 갖춘 정보 간이박스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계간지와 웹사이트, 특히 계간지에 사회생활, 문화, 직업훈련, 건강, 주택, 스포츠, 레저, 휴가 단체일, 시민권, 법률, 교육 등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 미디어 이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1983년에 훈련 및 정보 미디어 연계 센터를 세워서 학교에서 정보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6학년부터 학교 도큐멘테이션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특히 8학년생을 위한 자유와 권리 영상자료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조치

프랑스는 1949년부터 출판 관련법으로 만화, 보고(report), 소설, 삽화 등에 가벼운 강도, 거짓, 도둑, 게으름, 비겁, 증오, 방탕, 범죄로 분류되는 행동, 도덕성을 해치거나 종족 편견을 불러오고 유지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고, 법무부 안에 위원회를 두어서 연 4회 회의를 통하여 출판물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영화산업에 대한 규제로는 모든 영화를 그 성격에 따라 제한없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2세 미만 금지, 16세 미만 금지, 18세 미만 금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9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법(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ct)을 2000년에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오디오·비디오 미디어 위원회(The Audio-Visual Media Board)에서 등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등급 1은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고, 등급 2는 부모 동의가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며, 등급 3은 12세 미만 금지, 등급 4는 16세 미만 금지, 등급 5는 포르노로 비암호 채널 전면 금지 및 암호채널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금지하는 등이다. 등급 2는 아동 프로그램에서는 방영이 불가하고, 등급 3은 오후 10시전 방영이 불가하며, 등급 4는 오후 10시 30분 전에 상영할 수 없다.

라디오는 1987년 4월 법령으로 광고에서 아동을 이용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은 라디오로 광고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미니텔 및 오디오텔 서비스는 전화 회사와 계약에 의하는데, 도덕성을 해치는 출판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고 및 광고 규제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아동이 다른 온라인서비스 상담 및 부당하게 장시간 상담 및 서비스 관련 긴 시간 상담하도록 하는 메시지는 규제하고 있다. 비디오 카세트, 디스크 전자 게임 등에 대해서도 1998년 6월 17일 성범죄 예방 및 처벌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모니터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동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보호 규제는 매우 느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8세 미만 불가로 분류되는 영화는 드물고 시디롬, 비디오 게임 카세트에 대한 통제가 비효율적이다. 아동옴부즈퍼슨은 멀티미디어 부서가 만들어져서 유해 정보를 분류하고 한편으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프랑스는 교육·종교 분리 원칙 하에서 학교에서는 종교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정치적·종교적 전향을 금지한다. 그러나 학생 신앙심 표현은 허용하여 종교집단을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 있는 옷을 입는 일이 평화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전향 시도가 없다면 가능하고, 학생도 종교 의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업에 빠지는 것도 수업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허용된다. 그러나 아동옴부즈퍼슨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결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인종주의 및 반셈족 태도를 나타내는 성향이 있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 결사 및 평화적 집회

아동은 부모 동의를 얻으면 단체가입이 가능하고 선거하거나 출마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이나 회계 등의 담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가입은 허용하되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아동옴부즈퍼슨은 소년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기본적 법률의 재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단체에 청소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나 문화 활동도 권장하며, 학교에 사회교육호스텔, 학생단체, 헬스클럽, 운동단체 등과 연계하도록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단체가 가장 중요한 단체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집회 등을 알려주고 결사 등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사생활 보호

프랑스에서 허가 없이 아동의 사진이나 아동이 한 말을 공포하면 사생활 침해로 1년 이하 징역 30만 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0년 6월 15일 법으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여 피해자 신분을 공개하면 범죄로 간주하고 10만 프랑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였다. 도망, 유기, 자살 아동 신분도 밝혀서는 안 되고, 성 폭력·추행 아동희생자 보호도 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여 아동도 사생활이 보호된다. 미디어-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아동도 보호받는다고 한다. 우편은 부모가 모니터할 책임을 갖으며, 우편물은 부모나 보호자 서명이 있어야 아동에게 전달된다.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의료도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신중절도 성인만 동반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2) 가정 환경 및 대리보호

(1) 부모의 보호와 책임

지난 30년간 프랑스 가족 관련법은 근본적 변화를 겪어 왔다. 1970년 아동에 대한 권한의 귀속을 부(paternal)에서 부모(parental)의 권한으로 바꾸고 부모의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확립하였고, 1993년 1월 8일 법으로 부모 권한 실천도 공동으로 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특히 2002년도 부모권한법(Parental Authority Act)은 결혼 상태와는 관계없이 출생 1년 안에 부모관계를 정립하면 동일하게 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건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가족 중재는 개념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충분히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부모와의 분리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Exercise of Children's Rights)에서 확립된 하나의 원칙이 아동 이익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프랑스도 아동과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5년 2월 8일 법 개정으로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가 가족 중재자 제도로, 아동과 부모의 분리 판결시 제3자를 중재자로 지정하여 동의를 중재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과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중재자는 3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2002년 부모권한 관련법에 의하면 아동과 부모의 분리 판결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를 못 얻을 경우 종전의 관례, 아동의 표현, 부양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정책의 대상이다. 프랑스에는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동이 낮 동안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방이 100개이고 숙박 시설이 25개가 있다. 약 140,000명의 아동이 이 곳 방문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두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아동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지원한다. 감옥에서 출산하거나 영아를 데리고 온 경우 18개월까지 키울 수 있는데, 정부는 1999년에는 이러한 엄마에게 지침서를 제작하였고 엄마로서의 부모권한에 대한 핸드북을 준비중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위탁 시 아동이 위탁가정에 애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에게 심리 및 정서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가족 재결합

부모가 이민으로 합법적 거주자가 되면 그 자녀의 입국이 허용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 및 다른 한쪽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최소 1년 간 합법적으로 거주, 최소 1년 간 거주 승인, 지속적인 적절한 수입, 가족 도착 시점까지 주거지 확보, 평화를 방해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도착한 가족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가족이 합해져야 한다.

국적이 다른 부부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프랑스는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협정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4) 양육비 회수

부모 이혼시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아동의 요구와 부모의 상태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공공기금으로 가족수당 사무소에서 지급하고 고용주로부터 강제 징수 등의 방법으로 불이행자로부터 징수한다. 법적으로는 1991년 6월 9일 민법(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Reform) Act of 9 July 1991)에 기초하였으나 최근에는 형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애정이 없는 관계 속에서 양육비 지급 및 지불 능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부모들과 자녀의 접촉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중재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외국인 및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60여 개 국가가 1956년에 맺은 외국으로부터의 양육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약 2,000건 정도가 등록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만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5) 가정환경 상실 아동

프랑스 정부는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여 가족지원, 재정지원, 교육, 이웃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 법으로 부모와 자녀의 복지서비스 관련 권한을 확보하였다.

아동이 부모와 일시적으로 분리될 경우 믿을 만한 위탁가정이나 정부가 인정한 시설에 들어간다. 이를 법원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부모로부터 복지기관으로 넘겨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모든 부모 권한을 빼앗긴 경우, 법원이 유기아로 판단한 경우 등은 연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입양을 추진한다.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긴급 보호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모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부모는 3개월 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6) 입양

프랑스 입양 관련 절차는 1980년대부터 입양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현재 입양은 보호아동 가족위원회(Family Council of Children in Care)가 담당하고 있다. 입양기관은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입양기관은 추가로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회복지규정(Family and Social Welfare Code)에 의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입양아동은 급격히 감소하여 1997년 현재 3,300명 정도이다. 이 중 영유아는 약 1,000명 정도로 요보호 아동이 된 지 1년 안에 대부분 입양이 되지만, 연령이 많거나 장애 아동 입양은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입양에 실패한 아동을 위해서 1996년 민법을 개정하여 전면 입양(Full adoption)에 실패한 경우 단순입양(simple adoption)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66년 7월 법에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입양 조항은 없었으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한 부모가 재혼하여 아동을 입양시킬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 방문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 생존 부모의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96년 법으로 이를 완화하여 배우자 이외 부모가 부모 권한 포기, 사망하고 존속도 없는 경우이거나, 존속이 아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제입양은 미국 다음으로 많아서 1980년 2,000명에서 1990년 이후 3,000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7년 이후 3,500건 이상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15] 국제입양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자녀 이외의 외국아동을 입양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93년에 헤이그 협약(1993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을 비준하고 1998년 10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제입양사무소에서 비자발급, 입양기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도 1998년에 개통하였다. 국내법도 2001년에 개정되어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여 대가나 보상없이 실시되어야 하고 후에 입양 효과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양 절차나 허가 기준 등이 지방마다 차이가 많고, 일부 지방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하다. 국제입양은 35% 정도가 합법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입양의 상당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폴리네시아 프랑스령에서 국내입양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모든 입양이 법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프랑스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친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제3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법

15) 베트남과는 입양 일시 중단 이후 협상으로 2000년 2월 아동입양 조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다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중단기간에도 입양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연간 약 5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1980년 아동양육 결정 및 회복에 관한 인식 및 강제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concerning Custody of Children and on Restoration of Custody of Children(25 May 1980)), 국제아동 유괴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40여 개 국가가 가입한 헤이그 협약이 유용한 측면을 제공한다. 프랑스와 독일 부모간 권리에 관한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사법외 중재위원회를 두어서 이를 다루도록 하였다. 검찰청 1심 및 2심, 그리고 법 지원 사무소 등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간의 여러 협약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부부간 문제에 관한 사법, 인식 및 집행에 관한 유럽 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ional and Enforcement of Judgement in Matrimonial Matters)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집트, 말그래이브 국가, 레바논 등과 개별적 협약을 맺어 아동과 부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2년부터 유럽 국가간의 협약으로 불법송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6주 내에 판결하고 불리하면 1달 안에 본국 판사에게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8) 학대 및 유기

프랑스는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 금지가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폭력없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1989년 7월 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정보 수집 및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구를 설치하고 24시간 무료 전화 119 핫라인(the National Child Abuse Hotline)을 설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학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2000년 현재 학대아동은 18,300명인데 성적학대 6,600명, 신체적 학대 6,600명, 유기 및 심리적 학대 6,200명이다. 그러나 프랑스 복지 감시망에 의하면 이외에도 65,000명이 건강, 안전, 도덕, 교육적으로 위험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1주일에 15세 이하 아동 6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보호 아동은 주로 장애에 의한 것으로 1996년 113,000명인데 이중 54%는 위탁, 36%는 기관 입소이며, 4.5%는 청소년 등이고, 5.5%는 기타이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생존, 발달, 생활수준

그 동안 프랑스 가족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두었으나, 최근에 그 목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출생아 지원 이외에 아동양육비 증가 지원, 취약계층 가족 지원 등이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일을 조화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가족수당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수당, 출산 및 영아 관련수당, 특별수당, 한부모 관련 수당, 영유아보육수당 등 다양하고 매우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다(표 Ⅳ-1 참조). 2003년부터 학교 결석자에게 수당지급을 제외하던 조항은 삭제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표 Ⅳ-1> 프랑스 가족수당

구 분	내 용
○ 양육수당	
- 가족수당	- 2번째 이상 아동부터 시작, 아동수에 따라 차별
- 가족보조수당	- 모두 3세 이상 3자녀 이상 가족 - 자산조사 - 2000년 상한 연령은 20세에서 21세로 확대
○ 출산 및 영아관련수당	
- 영유아 수당	- 임신 4개월 째부터 3개월 - 4개월부터 3세 쌍태아 불인정하고 2번째 이상아부터 주는 가족수당 제외
- 부모 양육수당	- 2자녀 이상 출산으로 취업을 중단한 경우, 시간제 근무 및 직업 훈련 시에도 지급 - 2년 간 취업을 증명, 2번째는 5년, 3번째 이상은 10년, 네 번째 아이는 3번째 출산부터 계산 - 만3세까지, 세쌍둥아부터는 만 6세까지
○ 특별 수당	
- 학교 입학수당	- 한자녀 가정에 한하여 학교에 입학 첫해 수당 1999년부터 실시 - 가족수당, 주택수당, 장애성인 수당 수급자에 적용
- 입양수당	- 입양을 목적으로 위탁하는 가정 -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21개월
- 특별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 수당
○ 한부모 관련 수당	
- 한부모 수당	- 최저 소득 대상 한부모에 13개월 또는 만 3세까지
- 가족지원수당	- 고아를 부양하는 모든 가정이나 부모에 지급
○ 영유아보육수당	
- 가정 보육수당	- 취업 부모로 가정에서 6세아 보육을 위하여 사람을 고용한 경우 - 부모소득 및 아동연령별 차등
- 가정보육모 고용수당	- 6세 미만 보육하는 가정보육모 사회보장비용 가정에 직접 지원

② 기타

수당 이외에도 세제지원, 집세 보조금,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레크레이션활동 지원, 가정과 일의 조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지원은 소득공제와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공제로 가족수당 등 수당은 제외되고 자녀수를 고려하여 공제한다. 2002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기준으로 총 1,524백만 유로이다. 세금환급은 영유아보육비는 25% 최대 연 15,000프랑까지 환급해 주는데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13,800유로까지 환급해 준다. 가정보육은 비용의 50%, 최대 690유로까지 환급하는데 2002년 총 1,357백만 유로가 환급되었다. 학비는 중학생 61유로, 고등학생 153유로, 대학생 183유로, 2002년에 총 427백만 유로를 환급하였다.

집세 보조금으로 가족주거수당과 개인 렌트 보조금을 주고 가족주거수당과 개인 렌트 보조금 미 대상자에게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주택수당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으로 장학금, 기숙비, 사회 기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가족수당 사무소에서 모든 아이들이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과 일의 조화 정책으로 1994년부터 모든 기업이 부모 휴가를 허용하는데, 2002년부터 아버지 출산휴가를 허용하여 한 자녀는 11일, 두 자녀는 18일로 하였다. 16세 이하 아동 질병시 5일까지 병아보육무급휴가를 실시하다가 최근에 장기 휴가 및 재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6월 법으로 3개월 말기보호 휴가가 가능하고, 병아부모는 시간제 근무 6개월 및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5년 동안 2년간 취업한 부모는 양육수당, 시간제 근무자는 부분 수당을 준다. 이는 부부 모두에게 해당된다. 1994년 이후 두 번째 아동을 가진 여성 중 1/3이 취업을 중단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부분수당은 20% 정도이며, 1998년 법으로 3~5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소가족사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가족 안정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가진 가정에 물질, 후견,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복지 가정지원후견서비스가 있다. 아동건강, 안전, 도덕이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의 양육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소년법원이 후견지원을 명령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 후견지원은 검찰, 부모, 보호자, 아동 자신 등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정 지원 및 상담자를 지정하고, 부모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권한이 없는 부모와 동거, 아동을 다른 가정 및 기관 등에 배치하는 등을 명령한다.

2002년 3월 법령으로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모와 아동이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월 2일 법으로 형제 접촉 권리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1988년 12월 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외에 1990년 3월 주택보장, 1989년 사채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200백 명이 최저생활, 20만 명이 노숙자, 60만 명이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 7월 기본법(Framework Act)으로 기본권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는 취업에의 접근이 중요 이슈로 6만 명의 16~25세 청소년에게 최장 17개월 간의 훈련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문제는 1990년 Besson Act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1999년 재원 확충으로 사업을 강화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비어 있는 집 활용도를 높여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집세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개입하며, 전기, 수도, 전화 등 주거환경 문제 예방 및 재정·지원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빚을 탕감해 주고, 보건의료도 1999년 6월 전국민 의료보험 법 통과, 사회복지사 훈련, 건강 및 사회 서비스기관 개혁, 기관간 조정,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여 이들 대상의 정책을 평가하고 쉼터 및 자활센터 등에 지원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장애아동

프랑스는 1975년 장애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 7월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99년 4월 교육부, 고용 및 사회통합부 공통으로 핸디스콜 플랜(Handiscol Plan)을 마련하였다. 이는 장애아동 가이드, 학교설비, 아동・가정・교사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 및 건강 지원, 학생에게 조력자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01년에는 학교에 별도 장애아동 관련 부서 설치를 권장하였다. 휴일 및 레크레이션 센터에서도 장애아동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문제는 장애아동 추계치가 6,000~15,000명으로 추계마다 달라서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격차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는 성인 장애인 중 45%가 쓰기, 읽기 및 셈하기를 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는 아직 장애아동 교육이 충분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높이 평가하지만 발견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부모가 주된 부담을 지고 있어서 수천 명의 장애아가 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 건강 및 보건서비스

모자보건은 1898년 12월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정부(Department) 모자보건국(Protection Maternelle and Infantile)이 책임을 지는데, 관련 의료진은 약 만 명 정도이다. 이는 임신여성 산전산후 상담, 의료사회적 예방조치, 6세 미만, 특히 보육 아동상담 및 예방조치, 1967년 임신조절법에 의한 가족계획, 가정방문, 혼전 의료 증명서, 임신 기록, 아동건강기록, 건강 증명서 발급, 가정보육모 교육, 아동학대 및 학대아동보호 등이 포함된다. 모자보건국 서비스는 학교 건강증진 서비스와 연계된다.

6세 이상 아동의 건강은 학교건강증진 서비스가 담당한다. 1998년 학교보건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특히 교육우선지역 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생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6세와 15세에 건강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사, 부모, 사회서비스 요청에 의하여 의료검진을 하며 정기검진 및 사업장 법적 조치 모니터링, 학교환경 전반적인 보건 여건 모니터링, 학생, 부모, 교사, 보건 교육 평가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아동옴부즈퍼슨은 만 6세아의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없어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아정신과 의료진이 부족하여 문제 아동이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 후 의사를 면담하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사회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

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임금 현금 급여 및 각종 의료 약제비 급여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16세 이하 부양자녀가 포함되는데, 도제는 18세, 학생 및 장애아동은 20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여러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인 보험체계에 가입한다.

② 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

프랑스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유치원은 4~5세 모두와 3세 거의 전부 및 2세아의 35%가 이용하고, 이외에는 집단 보육과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집단보육으로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개방 보육원은 1998년 현재 정원이 136,300명이고 부모 운영 보육원 정원이 8,500명이다. 이는 주로 취업모의 2개월~3세 자녀가 이용하며, 이외에 59,100명의 아동이 지방정부가 인증한 가정보육모 집에서 보육된다. 부모 운영 보육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 책임을 진다. 일시 보육소도 55,500개소로 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방 정부, 단체 및 부모가 운영한다. 가정보육모는 집에서 3세 미만 및 초등학생을 보육하는 제도로, 그 자격은 지역위원회에서 5년 간 인증하고 60시간 교육후 다시 인증하는 등 승인 및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정부는 1992년 7월법으로 인증과정,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고, 1990년에 가정보육모 고용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주었으며, 1994년 가족법 및 2001년 사회보장 기금법으로 이를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옴부즈퍼슨은 보육제공자의 교육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육교사 2명이 25명 정도의 아동을 보육하여 아동의 생리적 리듬이나 언어, 신체 발달 및 지식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 보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교육·여가·문화활동

(1) 교육, 직업훈련 및 가이드

교육은 1898년 7월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1981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교구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취약성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및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아동의 학업을 증진시키고자 지정된 지역에 다양한 투자를 보다 많이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1997년 10월에 더욱 강화되었고 1998년 교육우선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투자우선지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1997~1998년도에 558개의 우선교육 지역에 백만 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지방과 교육부가 지방교육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의 18%만이 이를 계약하였다. 지방화가 지역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탈락 예방을 위하여 회복학급과 같은 개혁적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000년에는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 통합되었다. 학교 밖 교육설비, 학교 통합 네트워크, 지역 학교 지원 계약 등 하나의 시스템으로 학교시스템과 나란히 학생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훈련과 취업의 격차를 메우는 일도 주요 정책으로, 취업이 곤란한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배치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2) 교육의 목표

프랑스는 1898년 법에 의해 교육의 목표를 아동의 인격 개발 증진에 두고 있는데, 1998년부터는 시민교육을 초·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민정신 운동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중학교에서 평가하고 국가가 증명을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사회에 센터를 세우고, 150년 전 노예제도 폐지 및 인권선언 기념 등 행사에서 토론회를 개최, 활용하고 있다.

(3) 여가, 레크레이션, 문화 활동

프랑스에서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등은 아동의 전인적·조화적 발달에 필수적 요소로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학교스포츠연합(National School Sports Union)에 80만 명의 면허소지자가 60여종의 스포츠를 즐기고 예술 및 과학 워크숍과도 연계하고 있다. 지역사회 휴일 및 레저센터에서 특히 취약계층 아동 및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 11~18세 아동 대상 범죄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개방 학교 프로그램으로 문화, 스포츠, 학술, 레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 및 사회보장법(Family and Social Welfare Code)으로 휴일 및 레저센터는 양육자로서, 물질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모가 아동을 여기에 맡겨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체육부는 승인받은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 교육정책과 연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여 특별활동 및 학교외 활동을 지원한다. 1999년에는 휴일 및 레저 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점검하였다.

5) 특별보호 조치

(1) 비상사태 아동

국경에서 보호자 없이 망명을 요청하는 소년은 국경대기소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난 및 무국적자 보호 사무소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후견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주지가 요구된다. 이들은 대개 13~14세 소년으로, 언어 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이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2002년 3월 부모권한법(Parental Authority Act)으로 특별 행정가(ad hoc administrator)를 지정하여 소년이 프랑스 영토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1952년 망명권한법(the Rights of Asylum Act)을 2002년에 개정하여 검사가 특별행정가를 지정하여 피난민의 지위 신청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로시 공항 부근에 망명아동 지원센터를 적십자사가 마련하여 2002년부터 2달 가량 머물면서 상태를 평가하고 친척을 찾고 적절한 조언을 하는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옴부즈퍼슨 보고서는 공항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가는 아동이 있고, 성인과 같이 대기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합의에 의하여 상가티 아동보호센터를 없앤 이후에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가려는 아프간 및 이라크 성인 및 아동들이 더 안 좋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법적 조치 중인 아동

소년범에 대한 조치는 1945년 소년범 관련 법령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처벌보다는 보호를 우선한다. 1995년 2월 법으로 재범하는 소년범 및 소외되어 가고 있는 소년을 위한 특별 후견제도(Special tutelary arrangement)[16]를 실시하였고, 1996년 7월 법에 기초하여 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가 10개의 청소년 범죄 예방 팀을 구성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17]

특히 1998년에는 국가 안전위원회(the Internal Security Council)[18]가 청소년비행과의 전쟁에 동의하였다. 이는 네 가지 전략으로 구상되었다. 첫째, 초범에 잘 대처하고 검찰이 경찰 및 헌병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 둘째,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소환 우선, 법원에 조치 명령 요청, 아동에 적절한 판결 요청, 보호조치 마련, 교도소 개선, 판결집행 배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셋째, 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가 수당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아동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넷째는 법적 기구의 조정, 투명성 제고 및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원의 조치 공개 등을 추진한다.

1998년에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검찰청이 법적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경고, 수정, 기소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단체 및 사회복지 기구가 소년법원 판사와의 협의 하에 함께 지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위탁가정을 증가시켜 거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옴부즈퍼슨 보고

16) 특별 후견 시간은 3~6개월로, 24시간 후견, 가족과 같은 환경, 도시 및 시골에서의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7) 문제 지역 순찰, 청소년 범죄 및 범죄 우려자 관리, 곤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 아동 관련 단체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아동 예방 및 보호 캠페인,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범죄 변화 유형 분석 등의 업무이다.

18) 국가안전위원회는 1997년에 수립된 것으로 총리가 관장하고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의하면 법적 절차를 거친 아동 400명을 조사한 결과 75%가 아무런 상담, 예방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소년교도소 조건을 강화하였다. 우선 교도소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의료, 사회, 교육인력을 확충하고 후견제도를 확립하여 한사람이 꾸준하게 지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쇄신 작업이 시행 중이다. 안전위원회에서는 1999년 관련 검사 수 확대, 교도소에 교육부 교육팀 배치, 50개의 모니터링 비상센터 설치 및 법원의 즉각 보호조치, 훈련된 직원에 의한 24시간 감시, 아동 평가 및 가이드 제공, 2000년까지 피보호자 연계 기구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부서의 간수는 이동을 자제하고 교육을 시킨다. 또한 2000년부터 유죄 판결 전에는 무죄로 간주하고 희생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2001년 1월부터는 그들이 구금될 때까지 묵비권 행사, 기소 전에 청문, 조사에 기초한 구금 결정은 자유와 구금을 책임지는 조사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형사범의 경우 순회재판도 다른 순회법정에 의한 항소권 등이 보장된다.

한편 아동옴부즈퍼슨 보고서는 사법에서는 교육보다 억압적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행정관에게 보호기능을 맡기고 사법은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고, 교도소 아동수 증가 및 상태 악화, 교육시설 설치 영향은 미지수 등을 지적하였다. 국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장소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아동옴부즈퍼슨이 10~13세 아동의 24시간 구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를 12시간으로 개선하였다.

(3) 신체·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착취

① 경제적 착취

프랑스 아동은 의무교육 시한인 16세까지 노동이 금지된다. 15세부터는 도제는 가능하고 가벼운 일 및 휴일 일은 허용된다. 그러나 공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중도덕 위반으로 형사 범죄가 되는, 팔고 공급하고 전시하고 배부하는 인쇄물 포스터 그림 등을 준비, 판매 및 다루는 일에 고용은 금지된다. 유럽연합은 14~16세 아동은 저녁 8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하는 일의 금지 항목으로 농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음식점 및 소매업에 적용하였다. 옴부즈퍼슨은 가정 일을 돕느라고 학교를 못 가는 아동이 상당수라고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3년부터 의무교육 연령 이하 아동의 오락 산업, 라디오, TV에의 고용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개인적 허가를 받도록 하고, 1990년부터 광고 및 오디오·비디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1992년에는 승인조건 및 시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 이후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및 제거를 위한 즉각적 행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 of Child Labor)이 채택되었는데, 프랑스는 2001년 9월에 비준하였다. 이처럼 법으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강, 안전 및 도덕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훈련생, 특히 패션, 광고 오락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동연예인은 지방정부 위원회에서 허가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은 특히 불법 노동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외국아동의 경우 그 희생자로 부모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노동하는 아동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비준한 최소연령 및 최악의 노동 등 관련 협약을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실천하여 매매, 이용 네트워크를 없애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지원과 조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② 약물 중독

프랑스 아동의 약물 중독은 심각하여 15~19세 아동의 1/3이 마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화나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담배, 알코올, 약품 등 복합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3년 6월 법으로 16세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값을 청소년에게는 부담되는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 및 시민 책임에 관한 학교위원회와 학생자문위원회 등 단체와 공동으로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를 등 캠페인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또한 약물중독에 대해서는 1999년 안내로 형사정책 방침을 정하였다. 이는 단순 마약중독 아동은 견책이나 조건부 판결 등을 하고, 구금상태에 있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보호와 교육, 그리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가족, 사회 문제로부터 발생한 중독은 위험하다고 간주될 때 후견 조치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③ 성적 이용 및 남용

성적 이용 및 매매에 대해서는 1996년 세계총회(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이후 행동강령이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1997년 이를 우선 국가 과제로 채택하였다. 1998년 6월 98-468번 법으로 기소된 성범죄자의 사회적 법적 감독, 성범죄 및 인격 범죄 경고 및 엄벌, 아동 희생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성매매 매춘에 대하여 이를 줄이는 예방조치 강구, 관계 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희생자 보호조치 강구, 증인보호, 사회통합, 보건의료 및 심리적 지원 등 1996년 행동강령 및 2001년 총회에서 채택한 사항들의 시행을 추진하고 최근에 소년 성폭행 및 아동 매춘 범죄 조직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형법(Penal Code)은 성범죄를 성적노출, 성추행, 폭력・감금・위협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남용, 강간 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강간은 처벌기간은 최고 15년 징역인데 15세 이하 아동 대상, 근친, 직위 이용 및 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기 이용 시는 최고 20년으로 가중된다. 15세 미만아를 강간, 고문, 야만 행위 후 살해한 범죄는 휴가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19] 15세 이하 아동 대상 폭력이 없는 성추행 처벌이 2년 20만 프랑 대신 5년까지 50만 프랑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인터넷 아동포르노와 관련하여 포르노 사진 소지도 범죄로 본다. 2002년 부모 권한법으로 아동매춘을 범죄로 간주하였다. 미니텔 뷰데이터서비스 인터넷 등 범죄를 쉽게 하는 정보기술네트워크에도 대응하여 2001년부터 정보 및 통신기술 관련 범죄퇴치 중앙사무소가 불법 웹사이트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를 1,100개소로 보고하였다. 1994년 법으로 프랑스 국적자 및 거주자에 의하여 외국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희생자 보호조치로는 비밀보장, 접근가능 등 문제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 집행관, 사회사업가, 검사 등에게 아동을 적절하게 다루고 모니터하고 대처하는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 희생자 조사는 아동 및 보호자 동의로 녹화하고, 조사시 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가족, 소년 법원이 참석을 명한 행정가 등 제3자가 입회한다. 친척이나 아동보호단체, 희생자 방어 단체 지역위원회가 제출한 명단 중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는데, 아동 이익 대변에 충분하지 않으면 검사나 조사관이 특별행정가를 임명한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성범죄자 지문 전산화 및 생물학적 표본의 중앙집중적 저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 그러나 30년후 판사는 스스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의료 전문가에게 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신형자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등이 가능한데, 형사절차에 관한 법 227-26조에 의하여 이러한 성 범죄자 등은 3명의 전문가가 정신분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④ 매매 납치

범죄관련법으로 아동 납치, 감금, 바꾸기를 처벌하고 부모를 부추겨서 유기하게 하거나 배치 및 입양과정에서 중개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처벌한다. 새 형법으로도 이는 부모-자식 관계 범죄도 처벌대상이 된다. 프랑스는 2000년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고 2002년 이를 비준하였다.

⑤ 소수민족 아동

2001년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50만 명이 특정한 종파에 속하고 있다. 고용 및 사회통합부에서 부분적으로 이들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이것으로 소수민족 아동이 권리를 향유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인종주의, 외국인 싫어하기, 차별 등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지속적 조치를 권고하고, 유보사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하였다.

3. 시사점

프랑스 청소년 인권정책의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법규와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의 설치, 가족과 관련된 아동보호 조치, 법적 절차에 있는 아동보호, 망명 아동보호조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많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차 심의시 권고 사항인 유보 사항 철폐, 지역간 불균형, 출생 알 권리 보장, 최소 결혼연령, 아동의 의사표현 및 적절한 무게 두기, 아동 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용 방지, 청소년 사법, 의무교육 미이행 아동에 대한 조치, 주택 문제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동 관련 자료도 중앙에서 해외 영토를 포함한 18세 미만아의 자료수집 기능이 부족하고, 국회, 법집행 관련자, 변호사, 판사, 보건의료 인력, 교사, 학교행정가 등 아동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권고되는 부분 역시 우리가 정책의 시사점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프랑스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유엔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프랑스는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아동 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최악의 노동조건 금지 및 제거를 위한 즉각 조치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하였고, 1998년 성범죄 예방 및 억제 및 아동보호 조치를 취하였으며,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고 2001년 국제 입양 관련법을 개선하였으며, 2000년 법으로 이혼시 추가수당 지급을 실시하고, 2001년 법으로 출산 아동 상속 차별을 철폐하였으며, 2002년 부모권한법 개선, 2002년 성 관련 법 개정, 2004년 아동기 보호법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둘째,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으로 독립기구인 아동옴부즈퍼슨(Ombudsperson for Children)를 설치하였고, 이외 아동권리 조사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France), 아동권리 의회 대표(Parliamentary Deleg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험 아동 감시기구(National Observatory for Childhood in Danger) 등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4년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철폐하려는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셋째, 가족과 관련된 아동권리보호 조치들이다. 미혼모가 많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한을 평등하게 하여 아동을 보호하였고, 부모를 알 권리를 증진시켰으며, 부모의 이혼 등에 대하여 아동 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육비 회수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분리 문제를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에게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족 개입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정책으로 개발되어야 할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부모를 알 권리를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비밀로 한다는 것은 아동권리 보장에 어긋나는 측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성 매매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아동 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이나 1998년 성범죄 예방 및 억제 및 아동보호 조치로 기소된 성범죄자의 사회적 법적 감독, 성범죄 및 인격 범죄 경고 및 엄벌, 아동 희생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약물 남용, 특히 청소년의 흡연 감소 노력을 하였다. 특히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청소년 흡연감소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2004년 가족회의에서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 등은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도 유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학대아동 중 사망하는 아동수가 상당수이고, 아동 조사시 비디오 녹화도 실제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며, 체벌은 법으로 금지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교, 가정, 기관 등에서 아직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곱째,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지역단위에서 재활프로그램 부모 지원 등 전문가 및 재원을 투입할 것을 권고하고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권고하였다.

여덟째, 보건의료 측면에서 프랑스의 모자 및 학교보건 정책은 체계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고 10대의 임신, 정신보건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분권화로 보건의료부분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신의료 서비스 부족, 불법 이민자의 조건적 접근, 모유수유 증진 국가 조직 부재 등 역시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사안이다.

아홉째, 프랑스는 아동 불법 노동 강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외국 아동이 그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엔은 최소연령 및 최악의 노동 등 관련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실천하여 매매, 이용 네트워크를 없애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지원과 조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열번째, 프랑스는 법적 상태에 있는 아동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디오 녹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후견제도 실시, 특별행정가를 임명하여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 자산조사에 기초한 변호자 제도 등은 아동 이익 최우선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엔은 교도소 아동수 증가 및 상태 악화, 교육시설 설치 영향 불명확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사법적 기준과 관련하여 청소년 재판에서의 최소 규칙에 관한 유엔기준(베이징 규칙),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엔 지침 등을 지키도록 하였다. 구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단기로 사용하고 성인과 분리하며, 절차와 지원조치가 적절하고, 회복과 통합 증진 방법 등이 법률체계 안에 포함되며, 비행, 범죄, 마약 등을 유도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지원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특별행정가 제도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유엔의 권고는 우리의 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열한번째, 프랑스는 증가하는 망명아동에 대하여 특별보호조치로 이들을 보호하고 행정자를 임명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 조정 및 촉진에 대한 기본 지침 부재 등을 지적받고 정보 및 통계 수집, 교육, 건강, 법적 서비스 등 기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조정 행동규범 확립 등을 권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받았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나라도 탈북 아동의 수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Ⅴ. 독일의 청소년 인권정책

Ⅴ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Ⅴ. 독일의 청소년 인권정책 20)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와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기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가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었다면 제2차 보고서는 협약의 구체적 실천에 중점을 둔 보고서였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아동권리와 아동정책 구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청소년가족부(the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담당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8편(Social Code Book Eight)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복지는 청소년가족부가 전담하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가족부의 재정 지원규모는 1998년 180만 마르크, 1999년 192만 마르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법 분야에는 아동위원회(German Bundestag)가 있으며 아동이익의 보장은 위원회의 가장 두드러진 임무이다. 1998년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청소년가족부에 대한 아동위원회의 하위 위원회의 하나로서 각 당 대표자는 위원회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위원 1명씩을 지원하며 국회 내에서 아동의 복지와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로비를 책임진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동정책의 일차적 책임은 주청소년장관과 상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청소년관련 최고당국자회의(Supreme Land Youth Authorities)가 담당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국가연맹

20) 이 장은 이배근 회장(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National Coalition: NC)이 1999년 독일 청년상공회의소와 청소년가족부의 재정 지원 하에 90여 NGO들의 참여로 결성되었다. 주로 협약 실천에 관련된 기술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며 법적·정치적 제도나 장치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타의 아동정책을 위한 주요 기구로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건의를 담당하는 연방청소년회의(Bundesjugendkuratorium), 아동·청소년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위원회(Commissions), 아동·청소년 연합으로 구성된 연방독일청소년의 소리(Bundesjugendring), 청소년 복지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복지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집단을 위한 포럼인 청소년복지 실무연대(Arbeitsgemeinschaft fur Jugendhilfe) 등이 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측정항목은 부모 및 아동 관련법의 개정, 아동의 보육학교(nursery school) 배치에 대한 법적권리 부여, 가족수당 인상, 노동법에 있어서의 청소년 건강 및 안전관련 내용 개정,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의 기본법 포함, 아동학대, 아동매춘, 섹스관광 등의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공표, 청년실직에 대한 긴급대책과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기회부여사업 등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실천을 위한 입법, 행정 기타 조치에 있어 청소년장관회의(Conference of Youth Ministers)는 기존의 법에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며 이에 대한 법적강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천을 책임진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아동의 이익에 관한 기구로는 청소년가족부,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 of the German Bundestag), 국가연맹(NC) 등이 있다. 1998년 이래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 확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 공표로서 2002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차 기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심포지엄이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동권리 키트를 발간하였다.

② 참여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참여모델이 아동참여를 위한 실천도구가 되고 있다.

③ 법적개선으로는 폭력 없는 양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법조항에 포함시켰다.

④ 남녀아동의 평등 대우 조치로 여자 아동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소녀 2000"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⑤ 아동보육제도에 있어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전국어린이집 제도의 질적 개선'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주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실천을 위한 노력에 있어 North Rhine-Westphalia주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기초단체와의 협력 방안으로 매년 '아동을 위한 정책 의회'(Congress on Policies for Children)를 개최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 가운데 아동정책에 관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 민간단체로서 주청소년연맹(Landesjugendring)과 주스포츠연합회(Landessportbund)가 있으며 개신교교회연합이 교구 내에서의 아동정책 실천을 위한 포괄적 사역모델을 개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연맹(NC)에 소속된 주아동복지담당관회의(Conference of Child Welfare Officers) 제1차 회의가 1997년에 주지사와 장관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Herten주에서는 1997년 주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아동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지방행정당국과 기관단체에 제안과 권고를 담당하는 프로키즈(Prokids)를 설립하였다.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연방정부의 대표적 노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제1차 세계회의 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유럽회의가 독일연방정부 주도하에 개최되었다. 여성과 아동의 대인지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7년 4월 대인지뢰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0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개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독일은 1997년 12월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1999년 6월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최악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제182항의 기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② 개발도상국 아동·청소년들의 기초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가족복지, 약물중독, 기타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1996년 말 아동·청소년 관련 156개 사업, 20개 완결사업을 포함한 52개 아동·청소년 중심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1998년 중반까지 추진된 국제협력사업으로는 거리의 아동(street children), 근로아동, AIDS 고아, 약물중독, 소년병 출신아동, 여아매춘 등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21개 협력사업, 기초교육 분야의 33개 사업, 가족계획, 기초건강, AIDS 예방 등을 포함한 보건 및 성교육 분야를 위한 53개 사업, 18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직업교육, 취업증진을 위한 10개 사업, 난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정책개발에 관련한 6개 사업,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발 분야 2개 사업, 자원보호, 축산, 임야 등을 포함한 청소년 등의 욕구에 초점을 둔 9개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연방정부 경제협력부는 청소년들의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된 약 700개 NGO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제3세계의 아동권리 옹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다음을 수행하였다.

① 제3세계 아동지원을 위한 '인간의 대지재단'(terre des hommes)과 '긴급아동지원재단'(kindernothilfe) 활동

② 개신교 사회복지기관들의 아동매춘, 대인지뢰 예방 캠페인 실시

③ 캐럴노래 캠페인(carol-singing campaign)으로, 어린이사절단(Kindermissionswerk)이 아동을 위한 개발사업 기금을 모으고 1998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교도소에 감금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실시

(2) 협약의 공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의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의 아동권리의 홍보를 위한 각종 브로셔, 책자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연방정부의 선언을 포함한 협약 실천에 관한 요약 해설서인 성인용 브로셔 115,000부 발간

② '보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한 카라반(Caravan for a more child-oriented city)에 관련된 아동용 브로셔 30,000부 발간

③ 1999년 청소년가족부가 TV 방송국에서 제작한 아동용 협약 해설 브로셔 200,000부 발간

④ 국가연맹(NC) 브로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연방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포함

⑤ 독일아동보호회(Deutscher Kinderschutzbund)가 다양한 연령집단에 따른 협약 해설요약서 발간

⑥ 각 주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협약 브로셔 발간

⑦ 전국소아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의 요약을 월간지 '소아의학지'(kinderheilkunde)에 연속 게재

⑧ 독일 JC의 후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아동정책을 알리기 위한 웹 페이지인 '아동정책 정보(Infostelle kinderpolitik)' 운영

⑨ 1998년 여름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가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비정부청소년단체인 독일아동보호회(Deutsches Kinderhilfswerk)와 공동으로 "어린이들은 권리가 있다."라는 기치 하에 보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한 카라반(Caravan for a more child-oriented society)을 조직하였다. 이는 독일 최대 규모의 아동권리와 아동정책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위한 캠페인이며 동부 독일 각주에서 전통적으로 국제어린이날(International Children's Day)로 지켜온 6월 1일부터 세계 어린이날(World Children's Day)인 9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 카라반은 캠페인에 성공적으로 참가한 50개 마을 및 지역사회를 통과한다. 대규모의 아동 및 가족축제가 개최되며 지방정부, 각종 클럽, 단체들에 의해 지원된다. 통계에 의하면 총 49개 행사장에 253,000명이 참가했고 베를린에서 개최된 폐회식 행사에는 200,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카라반 기간동안에 독일 전체 국민 가운데 1억 6천만 명이 관련 미디어를 시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1999년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관련된 100여개 사항들이 개선되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에 대한 대표적인 홍보전략의 하나로 '아동권리 투표(children's rights ballots)'가 있으며 아동들 스스로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권리 조항을 선택하는 아동권리 투표는 아동권리 홍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Saxony-Anhalt주에서는 보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한 카라반과 연계하여 아동권리 투표가 이루어졌다. 놀랍게도 89.2%의 참여 하에 아동의 권리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폭력 없는 자녀양육, 상업적 또는 성적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아동의 권리,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권리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며 그들의 의견이 경청되어질 권리 등 3개 아동권리 사항이 아동권리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98~1999년에는 UNICEF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단체에 의해 아동권리 투표가 실시되었다.

(3) 보고서 보급

아동권리협약의 홍보를 위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보급 활동으로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이 실시되었다. 1996년 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회교육복지사(social education worker)들이 동부지역 여러 주정부에 채용되었고 협약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 1992년 North Rhine-Westphalia에서는 '아동의 권리'라는 소책자를 125,000부 발간 배포하였다. Lower Saxony주에서는 9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기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관련된 연례 '동요대회', '어린이 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2000년 9월 20일 세계 어린이날에는 '해변 마라톤(Coastal Marathon)'이라는 저명 마라토너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마라톤이 개최되었다. 독일아동보호회가 '아동중심의 사회'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자전거를 타고 전국 시·도 지방정부를 방문, 아동중심의 정책개발을 촉구하였다.

2) 아동의 정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다만 보호시설 수용보호절차에 있어서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16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3)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협약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인 무차별의 원칙에 있어 독일정부는 외국인 아동들의 차별철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독일에서는 외국인 아동들이라 하여도 자신의 문화, 모국어사용, 종교의 향유권이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1999년 2월 현재, 독일 내에는 7,300,000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 아동들은 1,700,000명이다. 이들 외국인 아동들 중 2/3 이상이 독일 내에서 출생한 2세 또는 3세 독일 외국인 아동들이고 대부분 영구적으로 독일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8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고 6년 이상 독일에서 학교에 다닌 경우 법적 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차에 따라 독일의 귀화가 가능하다. 2001년 1월 이후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아동들은 독일 아동들에 비해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한다. 독일 청소년들의 외국인 혐오 및 외국인들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해 독일청소년 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가 청소년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독일정부의 무차별 원칙에 있어서의 관심분야에는 여자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12조가 여자아동들에 대한 내용이며 연방정부가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임 맡았다. 청소년가족부는 '청소년복지에 있어서의 여자아동'(Girls in youth welfare)이라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1단계는 1991~1996년 기간에 실시되었고,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여자아동들에 대해 초점을 두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2단계는 1997년부터 실시되었고 여자아동들에 관한 사회사업, 교육, 청소년복지계획, 남자아동들이 연관된 성교육 등에 초점이 주어졌다. 청소년가족부는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1994~1999년에 2천2백만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법 제8편의 규정에 의해 여자아동들에 대한 정책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Thuringia주 청소년복지국에서는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의 지원 하에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 연구소의 협조로 청소년복지에 있어서의 여자아동들의 욕구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은 근로청소년, 외국인아동, 거리의 청소년(street children) 등이다. 1997년 한 해 동안 이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83,200명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어졌고, 정부 예산 가운데 1.5조 마르크가 투입되었다. 직업훈련 및 취업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1994~1997년 사이에 86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5천6백만 마르크가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 계획(Federal child and youth plan)을 통해 지원되었다.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동성애 아동 문제에 대해 청소년가족부는 연방아동·청소년 계획의 기금을 통해 동성애 청소년 전국연대를 지원하고 레즈비언들과 게이 집단들이 스스로 이 협회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지지하였다.

독일형법은 증오와 폭력을 자극하는 범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 16조에 규정된 정치범일시보호소의 기본권에 있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정치적 박해나 위험을 받은 모든 외국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범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외국인아동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없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시보호소 보호기간 동안 양육자 또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아동·청소년 복지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 안전이 포함되어 있다. 1994~1998년에 조치된 주요한 법적 조치로서 버스나 기타 승용차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 규칙이 고속도로법에 포함되었으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998년 아동의 승용차 내의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규정이 강화되었다. 특히 승용차 내에서의 아동의 안전벨트 착용을 홍보하기 위해 TV 광고를 통해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하며 연방정부 교통부는 연간 7억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헬멧착용 캠페인이 1995년 “냉정하고 보다 현명하게 - 머리에 헬멧을 쓰자(Cool and Clever-something up top)”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라는 모토 하에 연방정부 교통부와 청소년가족부, 독일청소년연맹, 독일교통감시단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주정부에서는 어린이 도로교통 안전의 적극개입을 위해 “어린이들은 사물을 어른들과 다르게 본다(Children see things differently).”라는 모토 하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동부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 개발에 있어 통일독일 정부의 동서간의 지역차를 근접시키는 것은 독일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의 지원 하에 독일청소년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에서 청소년복지와 사회변화라는 기존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평가연구가 실시되었다.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베를린 상원의회에서 ‘아동・청소년 중심의 도시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1997년 베를린 하원의회 중간보고서에 ‘공해감소, 가정과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과 지원, 기존자원의 보호, 공공장소에서의 삶의 질 고양 및 공중보건시설의 확충’ 등을 우선과제로 채택하였다. 국제적 연결망을 가진 ‘내일의 도시(Cities of Tomorrow)’는 도시행정을 어린이 중심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 Essen주는 아동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아동중심 도시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아동 및 가족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를 시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가족중심의 기업체(Family orientated business enterprises)라는 제목 하에 청소년가족부가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1993~1996년에 2회 개최) 전국적으로 300여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아동 및 가족중심’ 기업의 평가 척도는 근무시간의 다양화, 아동보육 지원, 여가시설 지원, 아버지의 아동보육 지원, 아동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운동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구, 도서실 등 시설의 설치,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지원이었다.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권리에 있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아동참여에는 아동이 같은 시민으로서 대우 받으며, 아동이익이 간과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고, 도시계획, 주택건설, 교육계획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적 요청과 실천에 있어 사회법전 제8편(SGB VIII)에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기본조항으로서 사회법 제8편 제8절 발달수준에 따른 공적 청소년복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과 동법 제11절 아동에 관련된 결정에 영향력이 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의 형태로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대표적 유형에는 지방청소년회의, 청소년마을의회, 청소년자문회의, 청소년지구회의 등이 있다(local youth advisory councils, district youth council, children′s and youth parliaments).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 유형으로는 어른 집단에 아동들을 대표하여 도시지역 연구 집단, 시민연대 등과 같은 기존의 성인 집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형과 시의회, 정치인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한 불편신고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참여의 유형이 있다.

아동 참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청소년가족부가 독일청소년연구소에 지역사회활동, 학교, 기관단체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조사 연구, 유형화, 평가 등을 의뢰하였으며 1,003개 대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400개 지방자치단체의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98년 여름 38%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참여에 관련된 조치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실시하였다.

② 20,000~100,000명의 인구를 가진 중간규모의 행정단위 79%와 1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행정단위의 93%가 아동참여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③ 반면에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4%만 참여조치를 실시하였다.

④ 서부에 비해 동부가 보다 적게 참여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주된 요인은 동부에 위치한 주가 주로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⑤ 운동장 건설 계획 등과 같은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유형에 70%의 지방자치단체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청소년포럼과 같은 청소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참여기구 제안에 35%, 아동·청소년 의회 제안에 20%의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하였다.

⑥ 조사대상은 아동의 경우 81%가 10~13세이었고, 청소년의 경우 86%가 14~18세이었으며, 6~9세 어린이들의 참여는 50%이었고 참여모델에 있어 성별은 여아와 남아 공히 41%로 동일하였다.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

아동 자신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동중심의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동들에 의해 제시된 주요 토픽들은 다음과 같다.

① 운동영역에 있어 새로운 운동장 건설계획, 기존의 운동장에 대한 안전 조사, 스케이트보드 링크 설치

② 교통영역에서는 도로, 오솔길, 속도제한, 교통신호판, 교통안전지대 설치

③ 여가분야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설치와 보다 많은 여가 이벤트 개최

④ 학교영역에서는 학교 및 운동장 시설 개선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학교 부속시설의 개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⑤ 공동결정 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 의회 설립, 아동과 정치인들의 토론의 광장 개최

⑥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완동물의 배설물 제거, 환경보존

⑦ 약물관련 사항으로는 약물 상담시설의 설치

⑧ 폭력관련 사항으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 모색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는 어린이 중심사회를 위한 카라반과 1998년 12월에 시작된 유니세프 프로젝트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What do you think)”를 전국적인 두개의 시범참여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유니세프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프로젝트는 아동권리협약 실천 보고서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의 관점을 평가하여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12개국 가운데 하나로 독일이 포함되었다.

1998년 이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참여과정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훈련의 주요 내용에는 적절한 기술, 발표훈련, 미래중심의 워크숍, 아동중심, 생활속의 민주주의 등이 포함되었다.

North Rhine Westphalia주에서는 35개 지역에 아동복지 공무원이 채용되었으며 노동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노동 체험의 날(Work experience day)에는 9~14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수공업 공장, 시·군청, 회사, 병원, 의료시설, 빵 공장, 금속작업장, 소방소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1999년 주청소년가족부는 아동참여 방안으로 아동을 위한 안내지도(child-orientation map)를 발간하였다. “민주주의는 아동을 - 아동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democracy needs children - children need democracy).”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아동 및 외국 아동들에게 참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안내서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Herten주의 프로키즈 사무소(Prokids Office)에는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들의 할 말이 있다.” 라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참여경험을 가진 아동들의 관점으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환경에 이르기까지의 아동 참여의 주요 관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른들과 동일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며, 이사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휴가에 관한 결정 등에 참여하며, 교육과 직업 훈련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며, 가정 내에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 부모들은 그들 결정의 이유를 설명해줄 것,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제시되었다.

환경 분야에 관한 아동・청소년들의 관심사항은 도시 공간의 변화 결정이나 학급여행 등의 결정에 아동의 의견 포함,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들과의 접촉 기회 확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자신들이 참여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나친 존경, 자아신뢰의 부족 또는 결여, 아동 자신들 사이의 대화부족, 아동권리 특히 참여에 대한 지식의 결여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 정부가 많은 논란을 거쳐 6개 주에서 1996~1999년 사이에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었으며 이는 아동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및 신분유지

2000년 1월을 기해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국적변경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독일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출생신고에는 성명, 출생 장소, 일시, 성, 부모에 관한 내용 등의 기록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2) 표현의 자유

독일에서는 학교 교지 출간이 보편화되어 있다. Rhineland-Palatinate주에서는 600개교에서 교지가 발간되고 있다. Hamburg주에서는 학교 교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정보센터에서도 아동들은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3) 정보접근권

청소년조사(Youth Survey)에 의하면 미디어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 의해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6~17세의 2/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정치적 정보를 TV를 통해 얻으며 1/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라디오와 인쇄 매체를 통해 얻으며 아주 소수의 아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가족부의 후원으로 독일청소년문학상(German Youth Literature Prize)이 1957년부터 제정되었으며 동화, 그림책, 청소년체험수기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1997년 정보 및 통신 서비스법에 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출판물의 보급 금지규정이 보완되었다. 출판물에는 아동 춘화 소지금지 등이 그리고 보급에는 상업적 또는 조직적 연결망을 통한 보급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유해출판물 보급금지에 관한 법'에 의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 보급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위원(Youth Protection Officer)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4세 이상이 되면 종교적으로 성인(religious majority)이 되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들의 종교를 선택해 줄 권리를 갖는다.

(5)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1998년 아동・청소년 계획에 연방정부는 1억8천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비록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아동・청소년 계획에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1억9천2백만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6) 사생활 보호 및 고문,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독일 형법(sections 233 ff)에 공무집행 상에 있어서의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고문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나 건강에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인종, 종교, 민족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998년 9월에 발효된 부모자녀법의 제정에 의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강화되었다. 1994년 '통일독일의 가족과 가족정책' 제5차 보고서는 독일 동부지역 주들의 가족 상황에 보다 주안점이 주어졌으며 이에 반해 제6차 보고서에서는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들의 상황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다.

199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모의 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과 발달에 대해 부모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연방정부가 협약 18조의 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아동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미혼부모가 아동양육의 공동책임을 갖도록 미혼부에게 보호선언이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보호선언이 제출되지 않고 모가 결혼도 하지 않은 경우 모는 아동보호권을 갖는다. 그러나 만일 미혼모가 아동양육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경우 미혼부가 아동의 보호책임을 진다.

2000년 11월 아동양육에 있어 폭력금지법이 부모자녀법에 포함되었다. 아동수당과 부모휴가를 위한 개정 연방법이 2001년 1월 발효되었다. 부모 공동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의무적으로 주당 19시간 이상 아동양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던 것이 법개정으로 30시간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부모 휴가기간에는 주당 30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고용 제3년차부터는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휴가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 출생 후 1년간은 매월 900마르크를 그리고 다음 1년간은 매월 600마르크를 받는다. 부모 실직수당은 아동 당 10일씩 산정하여 받게 되며 편부모의 경우는 아동 당 20일씩 받게 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그러나 부모실직수당은 아동수가 많아도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편부모의 경우에도 일년에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의 1999년도 가족수당(아동수당) 예산은 56.4조 마르크였고 첫째와 둘째 자녀는 월 250마르크, 셋째 자녀는 300마르크, 넷째 자녀부터는 350마르크를 받는다. 연방정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조세감면정책을 채택하고, 무주택자의 주택소유를 위해 8년간 주택소유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 지원금 외에 한 아동 당 1,500마르크를 보조금 지원기간동안 매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1996년 대비 1998년 단독가구주택 소유 가정이 27%나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부모책임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저소득가정을 위한 휴가수당, 가정교육, 가정센터, 주간보호센터, 가정상담소, 아동수당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동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행동수정치료를 위한 비디오훈련프로그램 지원, 위탁가정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히 위탁아동이 정신지체아인 경우 위탁가정부 또는 위탁가정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심리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Lower Saxony주에서는 자녀가 많은 가정, 편부모나 질병, 이혼, 실직 등으로 고통 받는 빈곤가정의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가정보호재단(Familie in Not)을 설립하였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

독일민법은 아동이 양친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양친부모는 아동과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양친부모라 함은 그들이 이혼상태에 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친부모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다만 부모와의 접촉이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외에는 모든 형태의 아동의 친부모와의 접촉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동은 청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년복지국(Youth Welfare Department)의 지원 또는 안내를 받는다. 부모의 보호 및 부모면접에 관련한 사항이 법정사례의 경우 14세 이상의 아동은 항상 판사에 의한 개인적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족의 재결합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해 입국하는 법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는 16세까지 보호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그들 부모와 결합하기 위해 독일의 입국이 가능하다. 단 아동이 독일어를 할 수 있거나 외모가 독일생활에 통합할 수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독일에 사는 부모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친척관계가 아닌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을 해외로 송치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독일은 1990년 12월 국제아동유괴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며 1991년 2월 아동보호와 아동보호복귀에 관한 유럽협약에 서명하였다.

(5) 아동학대와 방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과 가정 내의 방임으로부터의 아동보호는 1997년 12월 개정되고, 1998년 4월에 발효된 독일 형법 제6조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양육에 있어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육되어야할 권리와 양육에 있어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2000년 11월 통과시켰다.

주정부 차원의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사업으로는 성적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자료 개발,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서비스(상담센터, 아동 hot-line, 자조집단),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있다. 대표적인 주정부활동으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 North Rhine-Westphalia주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아동들의 쉼터인 200여 쉼터와 유사한 안전보호가정(Safe Houses)센터가 공공 또는 민간 청소년복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생존 및 발달

1994년 11월에 발효된 헌법개정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가 기본법에 포함되었으며 장애아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아동들의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1997년 외국인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심신장애아 등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6세 이상의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장애아동

신 연방정부는 1998년 가을, 가족복지 대상의 하나로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상태를 증진시키는데 합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아를 가진 가정과 부모들을 위한 전망'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족 워크숍(Family Workshop)을 통해 관심 있는 부모, 친척, 장애인 프로그램 전문가, 가족지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최신 지식이 제공되며, 지방정부 당국과 민간단체들을 위한 행동과정들이 개발되고 있다. 장애아 가정을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인 가족상담 안내서(Familienratgeber)가 개발되었고,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제로 3개년 시범사업이 16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아 가정정책, 장애아를 위한 사회복지법의 입법화, 교육기회 등에 관한 독일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장애아 지원책은 특수보육학교(special day nursery)나 특수학교 지원에 국한되어 왔었다. 1970년대 말 이후 보호와 지원의 통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합형태로 지원이 증가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배치함으로서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Hessen주에서는 통합보육 정책에 의해 기존의 특수보육학교(special day nursery)는 모두 폐쇄되었고 모든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통합교육을 받게 되었다. 주정부의 특수학교 제도의 개발과 조직은 1972년 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채택되었다. 최근의 특수교육지원 형태는 예방조치를 통한 특수교육지원, 통합교육을 통한 지원, 특수학교를 통한 지원, 특수교육센터를 통한 지원, 직업훈련과 일반학교에서 작업장으로의 배치를 통한 지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애아 통합교육은 1980년대 초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만 실시되었으나 1990년대 이래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독일아동들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아동들은 외국인아동 전체의 6.2%에 이르는 반면 독일아동의 경우는 독일 전체아동의 3.8%만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이다.

(3) 보건서비스

독일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건서비스 성과로는 영아사망률의 감소와 미숙아 출생률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영아사망률은 1980년 1,000명당 12.4명에서 1997년 4.9명으로 향상되었다.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이 1~1.5kg인 경우로 출생률이 1,000명당 1980년 37.4명에서 1995년 6.9명으로 감소되었다.

(4) 사회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

1996년부터 발효된 아동수당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각각 200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마르크, 셋째 자녀가 300마르크, 넷째 자녀부터 350마르크로 증가되었다. 1997년 다시 첫째와 둘째를 220마르크로, 1999년 첫째와 둘째를 250마르크로, 2000년에는 첫째와 둘째를 270마르크로 증액하였고, 16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이 보육수당(care allowance)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18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되며 실직 청소년의 경우는 21세까지 수당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27세까지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의 재정부담은 연방정부로부터 74% 그리고 주정부 예산에서 26%가 충당된다.

4)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 대리보호로서의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용은 주정부, 지방정부, 시설운영자, 부모들이 분담한다. 부모부담에는 차이가 있으나 월 600마르크 정도이며 저소득 가정의 비용부담은 청소년복지사무소(Youth Welfare Office)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3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탁아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1998년 3세 미만 아동의 7.0%만이 탁아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6~10세 학령기 아동의 12.6%만이 주간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1997년 연방정부와 Hessen주는 아동보호를 위한 기업체 후원(company funding of child care)이라는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한 기업체 후원 프로젝트는 기업체 지원 탁아사업의 목적인 기업체와 사회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였다. 1996년 상해보험분류법(Accident Insurance Classification Act of 1996)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들을 위한 상해로부터의 보호가 모든 주간보호시설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1월을 기해 발효되었다. 가정탁아가 사회법 제8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규정되었으며 주간탁아는 아동의 친가 또는 보모가정(childminders)에서 실시되며 탁아대상 아동의 1/2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3세 미만이다.

학교제도에 있어 독일 내의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주 정부의 다양한 조치로는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독일어 예비학교 운영,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모국어와 독일어 이중 언어 교육실시, 제2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집중교육과정 제공, 고급독일어 교육을 위한 추가적 교정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아동들의 모국어와 고유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5시간 이상의 모국어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교육제도는 대체로 1~4학년으로 되어 있으나 베를린과 Brandenburg주에서는 1~6년제로 되어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과거에 독일에서는 청소년복지와 학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으나 1999년 4월에 개최된 회의에 의해 청소년가족부의 제안에 따라 주최고청소년당국 실무부서(Working party of the Supreme State Youth Authorities)가 청소년복지와 학교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1998~1999년 Hamburg주 4개 지역에 청소년복지와 학교사이의 협력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관심사는 각기 다른 문화 간의 접근, 여자 아동 중심, 경험중심 및 폭력예방조치였다.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전체 학령기 청소년의 2/3는 직업훈련과 직업학교의 결합이라는 이중제도에 의해 도제기간을 마친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직업과 훈련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정부의 노동연구소(Institute of Labour)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1994~1999년 연방정부의 직업교육정책은 적절한 훈련장소를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었다. 1995년 7월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특히 새로 생긴 주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업체를 지원하는 도제 개발자(Apprenticeship Developer)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998년 말 연방정부는 청년들의 직업훈련, 자격부여 및 고용이라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긴급사업을 채택하였다. 1999년 12월 약 197,000명의 청소년들이 특별사업에 참가하였고 유럽 사회기금 8백만 마르크를 포함 19억 마르크가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1998년 말 또 하나의 시도로 연방정부는 직업연맹, 훈련 및 경쟁(job alliance, training and competitiveness)에 관하여 기업협의체와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모든 청년들을 위한 고도의 질적 훈련 보장, 실직청년들의 노동시장 통합, 무자격 청년들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 직업교육과 훈련의 현대화라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이끌어냈다.

주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청소년 (Youth in Work)" 프로젝트가 노동시장 영역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장기실직청년들이 회사에 고용됨으로써 새로운 경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졌다. 기업체와 더불어 노동자, 정부, 사회과 당국과 상담직원, 그리고 청년들이 개인적 개발계획 하에 회사에서 직업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받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취업이 필요했던 11,000명 중 8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1년 이내 이 계획에 참여하였고, 또한 4,000명의 청년들이 개발계획에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3,000명이 이미 회사에 취업되었다.

여자아동들과 직업훈련에 있어 1999년 6월 연방정부와 주정부 교육계획 및 연구증진으로 "21C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직업"이라는 행동프로젝트에 따라 연방정부는 여자아동들과 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내에 여성의 인터넷 참여율을 50%로 증가시키고, IT 직업훈련 여성 참여를 40% 이상 증가시키고, 대학 IT 과정 여성참여율이 25%를 차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세웠다.

연방정부는 1999년 "여성과 직업(Women and Jobs)" 프로그램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시작하여 여성과 여자아동들의 직업기술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Telekom AG와 연방정부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기술과 IT분야에 있어서의 여자아동들과 여성들의 기술을 증대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촉진한다(Women give New Impetus to Technology).”는 슬로건 하에 여성과 여자아동들의 직업기술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 및 여자아동 숙련기술 습득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들의 직업교육의 경우 이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어 왔다. 중등학교 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의 31.8%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졸업하고 있으며 14.5%는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일반중등학교 외국인 졸업생 30%가 아무런 자격증 없이 졸업한데 비해 1998년에는 자격증 없이 졸업한 외국인 학생은 전체의 17.0%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래 대학입학률에 있어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으로는 1998년 중반 86개 개발도상국의 교육협력 프로젝트가 있고, 10개 프로젝트는 계획단계에 있으며 분야별 각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류하면, 모국어와 이중국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향상을 위한 33개 프로젝트, 약물 및 폭력을 사용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 및 근로아동들을 위한 비공식 교육에 관한 16개 프로젝트, 교사훈련 및 교육 분야의 정책과 관리에 관한 29개 프로젝트이다.

고용촉진과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젝트는 정규직업교육을 이수한 비교적 연령이 높은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회사 내에서의 성인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142개 프로젝트의 2/3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기술연구소 등에서 전문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젝트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교육목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교육으로 최근 수년간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들을 개발, 배포해 왔다. 자연 속에서의 자연과 삶의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삼림보육학교(woodland nursery school)는 덴마크의 모델을 따라 아동들이 숲 속에서 며칠, 몇 주,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보내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단체들은 다양한 환경교육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 단체들은 연방정부 환경부, 자연보호(Nature Conservation), 그리고 핵 안보(Nuclear Safety)단체 등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환경연맹재단(Federal Environmental Foundation)에 의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자체 청소년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BUND, Naturfreunde, Greenpeace 또는 NABU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청소년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 조직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그런 단체를 조직하며 기술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연을 위한 아동정상회담'(Children's Nature Summit)이 있다. 1995년 개최된 이 아동정상회담은 월간지 '자연' 출판사에 의해 개최되었고 독일 전국의 아동들로부터 자연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제의되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We are One World)'이라는 자연보호 슬로건 아래 "연료와 에너지를 절약하자.", "옥외에서 더 많이 운동을 하자.", "자가용보다는 공공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자.", "동물학대를 금지하자."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청소년가족부에서는 아동들의 자연보호에 관한 아이디어와 건의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여가・오락 및 문화활동

독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한 “어린이의 놀 권리(Child's Right to Play)”협회가 있다. 학교와 보육학교에서도 놀이는 중요한 교과과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세계 어린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가족부가 어린이집 과정 속에 포함시켰다. 법과 규정들을 강화하여 가능한 많은 옥외놀이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 시설로서의 옥외 스케이트장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음악은 매우 보편적인 문화교육이며 독일 내에 음악학교는 대체로 1,000개 이상이며 약 1백만 아동들이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대표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 재단(Reading Foundation)’에 의한 ‘큰소리로 읽기 경연대회’의 개최, 어린이들에게 양서를 보급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시상’(Youth Book Prize) 제도, 시각예술을 위한 다양한 미술관의 설치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연방정부에 의해 아동・청소년 미술관 설치가 강화되고 있다. 1994년과 1998년 연방 청소년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해 7천5백만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이 만드는 음악, 학생 작가들의 모임, 독일 청소년 사진 상, 청소년과 비디오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문화 및 여가 시설 이용료가 감면되고 있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책으로서의 국제문화 협력과 증진사업은 연방정부 아동・청소년계획(Federal Government's Child and Youth Plan)이 주도하고 있다. 26개 국가와의 아동・청소년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폴란드 청소년 교류활동이 대표적이고, 남동부 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활발하다. 독・불 및 독・폴란드 청소년교류사업을 위해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에서는 6천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매년 300,000명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특별보호조치

(1) 비상사태의 아동

난민아동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18세 미만의 외국 미성년자의 단신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16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를 적절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보호소 배치에 있어 특별히 훈련받은 직원에 의해 그들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16세 미만 외국인 아동들의 일시보호는 대체로 가정위탁보호 또는 그룹홈 형태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복지사무소에 의해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지정된다.

무력분쟁 하의 아동들에 관하여 1949년 제네바협약 선택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1949) 제77조와 국제무력분쟁 희생자보호협약, 비국제적 무력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부가의정서 제4조에 의해 독일 아동들의 무력분쟁 하의 보호가 보장되고 있으며 1990년 연방정부는 이들 협약에 비준함으로서 관련 국내법에 이를 포함시켰다.

(2) 법률과 관련한 갈등

독일에는 아동·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법규정과 전문가 집단기구가 있다. 1990년 개정된 사회법 제8편과 같은 해에 개정된 청소년법원법(Youth Court Act)은 처벌 대신에 견제를, 개입 대신 예방을, 억압 대신 사회교육과 도움으로의 대치에 치중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형법과 억압 수단이 효과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체벌에 앞선 교육'이라는 원칙을 1980년대부터 개발해 왔다. 1997년 6월 전국 주청소년장관회의는 "아동·청소년 비행 그것은 청소년 정책의 하나의 도전이다." 라는 슬로건 하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였다.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증가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배경 및 대처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해왔다. 연방 청소년가족부에서 최근 비행 및 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포함시킨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아동들의 갈등행동에 관한 프로젝트

②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

③ 이민 청소년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사회사업 형태의 통합프로그램

④ '스포츠와 안전'에 관한 전국 캠페인

⑤ 경찰서의 청소년위원제도 지원

⑥ 형사책임 면제 대상 연령인 아동들의 비행의 원인과 가족배경에 관한 조사 및 범죄에 관련된 폭력을 사용하는 여자아동들의 증가원인에 관한 조사 실시 등

한편,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에서는 독일청소년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에 아동·청소년 범죄 및 폭력예방센터를 설립하였다.

협약 40조 2항에 대한 연방정부의 협약 비준 시의 유보사항에 대해 독일청소년법원법은 변호에 있어서의 법적 또는 기타의 지원을 받을 권리에 있어 독일청소년법원법 제2조에 의거 피고인은 누구나 변호사 또는 독일 대학의 법학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69조에 의거 법원장(the chairman of the court)은 만일 공식적인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청소년 피의자를 위해서 법정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원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만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피의자가 스스로 법적 도움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변호인이 선정된다.

① 피고인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주요 심의가 지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법원에서 개최될 때

② 범죄의 심각성이나 상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변호인의 선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피고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

④ 피고인이 재수감될 때

(3)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노동력(경제력)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와 성학대, 기타 형태의 착취, 매매, 거래부정 및 유괴

청소년보건 및 산업안전법(Youth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of 1976)이 1997년 개정되었으며, 1998년 6월 아동노동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3세 미만 아동의 고용은 보호조치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부모의 허락 하에 문화 및 미디어 분야에만 제한되었다. 그러나 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연습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2시간 미만 그리고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연극 활동은 하루 4시간 미만, 음악공연의 경우 하루 3시간 미만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업무 내용이 위험하거나 위해하거나 아동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공식적 허락 없이 보호자의 허락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이내이어야 하고, 주당 5일 이내, 연간 4주 이내이어야 하며, 학기 중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5~14세에 해당하는 아동 약 2억5천만명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독일연방정부 경제협력 및 개발부는 20개국의 근로아동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베를린에서 '근로아동·청소년을 위한 세계운동 제2차 회의(the 2nd Meeting of the World Movement of Working Children and Adolescents)'가 개최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23개국에서 참가한 아동·청소년 대표들은 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두 닦기, 노점행상, 쓰레기 줍기, 공장 직공, 가사노동자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운동의 대표적 이슈는 아프리카의 아동·청소년들의 유괴금지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었다.

약물남용에 관하여 2000년 3월에 개정된 마약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마약을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넘긴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약금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으로는 아동·청소년 계획(Child and Youth Plan)의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개신교 연합과 천주교 까리따스 등의 예방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으로는 알코올 및 약물상담소 운영 및 각종 예방 교육, 안내책자 보급 등이 있다.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관하여 1994년 6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에 대한 제재법이 개정되었다. 1998년 1월에 발효된 '성범죄와 기타 위험한 범죄에 관한 법(Law to combat sexual offences and other dangerous offences)'은 성적학대의 확인에 대한 간소화, 가해자에 대한 사회치료시설 입소 등을 포함한 성적학대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보다 강화시켰다. 제6차 개정 형법에는 아동유괴 특히 외국인아동유괴에 대한 형사적 규정을 도입시켰다. 1993년에 개정된 제27차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동 춘화 소지를 1997년 8월 개정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에는 범법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적학대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입법화된 '피해자와 증인 보호 증진을 위한 형사절차상 의심이 있을 경우의 증인보호법(Law on Protecting Witnesses when Questioning in Criminal Proceedings to Improve Victims Protection, the Witnesses Protection Law)'이 1998년 12월 발효되었다.

독일인들의 해외에서의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가 법적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 규정되었고, 1998년 연방범죄조사국(Federal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47명의 담당자들이 32개국 35개 지역에 파견되어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아동의 성적 이용이나 학대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 외무부와 법무부에서는 특히 스리랑카, 필리핀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의 독일인들의 섹스관광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동 춘화에 대한 확인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인 PERKEO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아동과 동물의 춘화를 확연히 구분하는 프로그램이다. PERKEO는 현재 27개국에서 115개 버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9년 연방정부에 보고된 아동 춘화 소지에 관한 신고건수는 465 케이스였다.

주정부 차원에서 Brandenburg주 의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와 성폭력 금지 조치'를 결의하고 청소년분야, 학교, 학원, 경찰서, 지방법원, 보건소 등의 연결망 구축을 통한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Hamburg주에서는 성적학대나 성적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한 교사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Lower Saxony주에서는 2개의 성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소와 25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매매와 아동유괴에 관하여는 독일형법 236조에 의해 아동유괴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①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을 방임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금전 또는 이익을 취한 부모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아동을 인계받아 불법 양육한자도 처벌된다.

② 18세 미만의 아동을 불법으로 입양한 자는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한다.

③ 입양수속 중인 아동을 독일 내외로 불법 이송시킨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④ 아동의 인신매매 기타 아동의 심신발달에 심각한 위해를 준 가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중벌에 처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소수민족 보호에 있어 독일 내 소수민족은 Danish, Sorbian, Friesians, German Sinti 등 4개 집단이 대표이며, 독일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차별 없이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3. 시사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1) 1995년 11월 6일, 7일 제243차 및 제245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1차 독일국가보고서가 심의되었으며, 권고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긍정적 요소로서 독일정부의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소년병 징병의 반대 선언과 대인지뢰의 제작 무역 금지에 대한 국제적 요청 지지, 독일인들의 외국인 혐오와 민족주의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방 결의, 가정 내 폭력과 성적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사와 부가적 조치의 실시 및 이에 대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국가간 입양의 협력과 아동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전 유고를 비롯한 독일 내로 유입된 상당수의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 수용, 아동의 성적 및 상업적 이용 금지에 대한 독일 형법의 개정과 독일인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섹스관광 금지 및 예방활동, 1996년부터 독일 내의 모든 아동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② 부정적 요소로서는 협약에 관련한 독일정부 선언(German declarations)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감표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체계 설치의 불충분성, 협약에 대한 아동들과 성인들의 인식 부족, 청소년재판과 관련하여 '독일정부 선언'이 법적 지원과 변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접근권 및 공정한 청문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지적되었다.

③ 제안 및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영구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정기구 설치

-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경제 사회적으로 격차를 갖는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것과 모든 분야에 걸친 평가와 감시체제의 개발

- 정부의 아동 권리의 감시와 실천에 관련된 NGO와 아동집단들 사이의 협력 증진과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관심

-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극대화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 재원의 균형 있는 분배

-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유엔 설정 목표인 GNP 0.7% 수준의 해외협력 지원 촉구, 교사, 판사, 변호사, 사회사업가, 보건의료인, 경찰, 이민관련공무원 등을 포함한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들을 위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적 자료개발과 이를 학교 교과과정 및 훈련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

- 아동빈곤 발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조사의 필요성과 주택사항,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족지지, 학교 중퇴와 같은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의 실시

- 긴급보호소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과 난민아동들을 위해 협약에 명시된 16~18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일정부의 제3국으로의 아동추방, 가족재결합과 공항규정(Airport regulations)과 같은 법규정에 대한 독일법의 개정 및 보완

- 아동피해와 증거채택에 있어 서비스의 강화와 청소년에 대한 불확정선고 등 아동에게 친근한 소송절차를 포함한 청소년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독일정부의 의도가 언급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독일정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선언의 철폐가 권고되었다.

(2) 독일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04년 1월 16일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926차 및 제927차 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권고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 요소

- 1997년 7월에 보완된 외국인아동의 통합에 지장을 가져온 국적 및 시민권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ity and Citizenship) 제정

- 구금 및 방문권리에 관련된 혼외정사에 의해 출생한 아동(사생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1997년 12월 개정되고 1998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가족법 개정(Reform Zum Kindschaftsrecht)

- 2001년 독일 정부의 '1993년 국제간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 2002년 독일 정부의 '열악한 상태의 아동노동을 퇴치하기 위한 아동노동금지와 즉각적 행동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등

② 부정적 요소로서는 독일의 통일과 통일의 결과에 관련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협약의 실천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③ 제안 및 권고사항

- 아동권리에 관한 독립적인 감시기구의 설치 등 제1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독일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

-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협약의 유보사항과 독일정부 선언 철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청소년가족부가 아동권리실천의 조정역할을 책임지고 있으나 협약실천은 정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협약실천을 위한 중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비록 다양한 인권기구가 아동권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차원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의 아동위원, 연방의회(German Bundestag)의 아동위원, 아동·청소년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책임지는 독립위원회가 있지만 주와 연방정부와의 총괄적 감시를 위한 중앙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협약에 규정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협약에 대한 배포, 인식의 제고, 훈련이 체계적이고 목표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보호시설을 찾는 아동들, 난민아동들, 소수민족아동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아동, 부모, 시민사회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약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판사, 변호사, 사법관리, 공무원, 시설종사자, 교사, 보건의료인 등과 같은 아동에 관련된 전문집단을 위해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체계적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할당액이 GNP 대비 0.7%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0.27%이고 2006년에 가서도 원조 할당액의 반에도 못 미치는 0.33%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종적 증오와 외국인 혐오에 대해 위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일부 주정부가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권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서와 같이 위해한 인쇄물이나 미디어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독일정부의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법적 기구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책임의 불명료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에 있어서 위원회는 2001년 1월을 기해 발효된 아동의 이익에 관한 연방정부법의 개정을 위한 제3법(the third law)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이 법은 아동양육을 위한 양친부모의 휴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와 이혼 등의 상황에서도 아동보호에 대한 양친부모의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불비하다.

- 국가간 입양에 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독일 정부가 1993년에 채택된 '국가간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2001년 서명하고 실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입양케이스에 대한 불규칙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 불법이송과 해외아동의 미귀환에 관하여 독일정부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시민적 관점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당사국이 된 것에 만족하였으나 부모양측에 의한 아동유괴가 점증되고 있는 데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 폭력, 학대, 방임, 부적절한 양육에 있어서는 가정 내 체벌금지 및 가정폭력 금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기구들을 포함한 아동양육에 관해 독일 정부가 2000년에 폭력금지법을 입법화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위원회는 성적학대와 점증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 협약 제19조에 대한 위원회의 건의로서 성적학대와 학교폭력에 관한 포괄적 연구 실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항하기 위한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훈련 등이 제안되었다.

- 기초건강과 복지에 관하여는 약물중독, 알코올 및 흡연, 태아알코올 증후군(foetal alcohol syndrome)을 가진 신생아 출생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부모 한쪽이 약물중독인 경우의 아동들이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독일정부가 강력한 교육캠페인과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아동들의 약물 및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가 건의하였다.

- 청소년 건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정신질환 아동이 성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신병원에서 치료되고 있는 것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 위해한 전통적 관습에 관하여 위원회는 독일에서 여자아동들에 대한 할례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독일 내에 거주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 가정의 여자아동들에 대한 할례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련 NGO들과의 연계를 통한 금지 캠페인 전개 및 관련 국가들에 대한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였다.

-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독일 동서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위한 아동빈곤의 감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부모 가정, 이민 가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등이 건의 되었다.

- 특별보호조치로서 16~18세 난민아동들이 청소년복지법(Youth Welfare Act)에 규정된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들이 그들 부모들이 탈출한 국가로 강제 추방될 수 있고, 소년병 징병이 수용보호 절차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동박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난민가족의 통합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독일 내에서 출생한 난민아동 및 수용보호소에서 출생한 아동들에 대한 출생증명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지적되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독일 통일 이후의 아동·청소년 권리와 정책적 주안점

(1) 아동·청소년 권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 가족정책의 기본 틀과 변화

통일독일 정부의 동서간의 지역적 격차를 근접시키는 것은 독일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연방정부 청소년가족부의 지원으로 독일청소년연구소가 청소년권리와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 청소년 문제는 구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제적 빈곤, 실직 등의 문제와 구서독 청소년들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독일 내의 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 등의 반사회적 신나치주의로 표출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결혼이 가족 구성의 핵심이 되어 온 전통적 기준은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미혼모와 그 아동은 독일 연방법 제6조 1항에서 가족의 하나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분산가족이 복지정책과 가족정책 내에서 가족공동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가족권리법의 개정으로 미혼모가족 아동이 18세에 이르기까지의 아동양육비를 아동의 생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968년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지원 등을 위한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미결혼가족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Gesetz uber die rechtliche stellung der nichtehelichen kinder)'의 제정으로 미혼모 아동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이를 통해 생부의 아동부양책임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미혼모가족 아동이 생부의 유산에 관해 생부의 혼인 후 낳은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혼모가족이 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아동은 자연스럽게 미혼모의 성을 유지할 수 있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되었다. 1986년 연방유아수당법의 도입으로 아동이 부모 중 한쪽이 일정한 육아기간 동안 육아수당 수급권을 가지며 양친부모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쪽이 육아수당 지급기간 내에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연방정부가 실시한 여성과 직업(Frau und Beruf)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완전통합을 위한 직업훈련과 여성고용의 제도적 지원 및 아동 탁아시설의 전국적 확대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2001년에는 이전의 육아수당과 육아휴가제도를 대체하는 '부모의 시간'(Elternzei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부모 한쪽만이 육아휴가의 권리를 가졌던 이전 제도와 달리, 양친부모가 동시에 최대 3년의 아동양육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법과 제도적 변화와 주요 대상 아동·청소년

독일 통일 이후의 여건의 변화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최근 독일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입법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활성화되어 왔다. 사회법전 제8편(SGBVIII)은 아동·청소년 복지와 권리 보장에 근간이 되며 1998년 9월의 부모자녀법의 발효로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강화되었고, 2000년 11월 가정 내 아동양육에 있어서의 체벌을 포함한 폭력금지 규정이 부모자녀법에 포함됨으로써 가정폭력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강화되었다.

독일은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와 협약 실천에 있어 독일 내에서는 주로 장애 아동·청소년, 외국인 아동, 여자아동 그리고 동부독일을 중심으로 한 빈곤아동들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거리의 아동, 근로아동, AIDS 고아, 약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물중독, 소년병 출신아동, 여아매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무차별의 원칙에 의한 장애아동의 권리 신장과 옹호를 위해 1998년 가족법의 개정 내용에 장애아가정 지원을 포함시켰으며 장애아 가족워크숍, 인터넷정보시스템 개발 및 제공, 장애아가정 정책 개발, 특수아동들에 대한 통합교육 강화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오고 있다.

독일 내의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관계법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2001년 1월 이후 독일 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들의 국적취득, 보호자 없이 입국한 16세 미만 아동의 보호,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독일어 예비교육, 모국어 사용 및 고유문화의 존중,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 빈곤 외국인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여자아동(girl child)들과 구 동독지역 빈곤 아동·청소년들 및 실직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책적 배려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여자아동들을 위한 IT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정부와 기업체 연결에 의한 산업현장을 통한 실직 청소년 취업기회의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시사점

(1) 통합적 정부조정기구와 유보사항 철폐

독일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주요사항은 아동권리에 관한 통합적 정부 조정기구 설치와 협약 비준시의 유보사항 철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이상의 관련 부서에 중복되어 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어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으나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제도화 됨으로서 아동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아동·청소년 업무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협약 비준 시 국내법과 갈등관계에 있는 아동의 이혼한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 비상사태 하의 군사법원의 단심제 그리고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의사표시 등 3개 유보사항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2) 아동출산율의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미혼모가족 지원 대책

독일의 출산율은 2000년 현재 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구동독 지역 여성 출산율이 1989~1994년 사이에 무려 60%나 급격히 감소함으로서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지원정책으로 1998년 이래 해마다 아동수당을 증액 지급해 왔으며 부모실직수당, 주택수당 지급 및 출산 후 24개월까지 매월 307유로의 양육지원비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정책의 핵심을 직장과 가정의 화합추구에 두고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차별 없이 인정하는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독일보다도 더 낮은 1.19명으로 세계적으로 사상 유래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있어 정부나 시민사회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지원, 아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양육을 위한 부모 휴가제도의 확대, 주간 대리보호시설 및 제도의 확대 등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독일에서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차별없는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문화 관습적으로 서구사회와는 많은 차이는 있으나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혼외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근절이 권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모자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5개월 미만의 혼외출생 아동들이고 미혼부모에 의한 아동출생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비록 혼외출생 아동이 법적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여도 호주제에 기인해 온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법적, 관습적 차별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아동의 출산율이 저조하여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미 태어난 아동들 가운데 그들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니라 하여 차별을 받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외로 입양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혼모가족에 대해 3년 이내의 미혼모센터 입소, 직업훈련비와 양육비 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3) 아동권리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적 중앙조정기구의 설치

독일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상황 보고에 대한 중앙기구의 설치, 아동권리협약의 배포, 권리 교육 및 법조인, 교사 등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집단을 위한 훈련 및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자살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구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백서는 발간되고 있으나 아동백서 또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은 한국아동권리학회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개입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요청된다. 아동권리 교육 또한 Save the Children, UNICEF,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이 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이주노동자 자녀와 탈북자가족 아동 지원

독일정부가 독일 내의 난민 아동 및 외국인아동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실직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정부가 탈북자가족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가족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현안문제인 실직 청소년들을 위해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청소년(Youth in Work)' 프로젝트를 통한 실직청소년의 현장직업 훈련과 취업기회 확대는 도입해 볼만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5)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와 방안

① 일반적으로 아동이 형사고발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우선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가능한 아동의 언어사용 및 기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을 포함하여 아동성장발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법정대리인(부모)간의 소송행위에 있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으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직접 소송대상자가 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아동의 의사표시권의 경우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따른 조정재판에서 친권자의 지정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 결정되는 경우 자녀들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만 15세 미만의 아동의 법적 의사표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아동의 입양결정에 있어서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절차와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결정 시 아동의 의견진술권과 시설의 처우내용에 대한 시설아동들의 의사표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상응하는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④ NGO의 일반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방안으로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가정 및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옴부즈맨 제도의 실시와 감시 및 보호
- 협약의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 촉구
- 아동권리 옹호와 증진을 위한 캠페인
-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위반 사례 신고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호와 권리 옹호
- 아동 학대의 신고, 예방 및 시민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 상담전화, 부모교육, 아동권리 정보센터 운영
- '어린이 국회', '어린이 시·도 의회', '어린이와 시장과의 만남의 행사' 등 어린이 의사표시 기회의 확대를 위한 활동
- 미디어, 방송매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아동권리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
- 각종 인쇄매체에 나타난 아동권리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
- 아동보육시설, 아동이용시설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활동
- 청소년 인권센터의 가상공간을 통한 운영, 아동·청소년 권리 뉴스, 아동·청소년 권리 학교 등의 운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Ⅵ. 일본의 청소년 인권정책

Ⅵ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Ⅵ. 일본의 청소년 인권정책 21)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유보조항

정부는 1994년 4월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제37조(c)에 관해 유보하고, 제9조 1 및 제10조 1에 관해서 해석선언을 하였다. 2차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1997년 6월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초과정에 있어 협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확보, 아동의 의사표현권 등 협약의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충분히 고려했다. 또한, 1999년 5월 18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상업적・성적 착취 및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권리보호,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의 효과적인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게다가 2001년 2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등의 상업적・성적 착취의 예방과 이러한 행위의 단속과 피해아동의 심신회복을 위해 아동의 상업적・성적 착취에 대한 국내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협약의 국내외의 효과적인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2001년 12월 요

21) 이 장은 김형욱 연구원(일본 아동권리조약종합연구소)이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꼬하마에서 '제2회 아동의 상업적·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각국 정부, 관련 국제기관 및 NGO등 1,3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포르노, 아동의 성적 착취로부터 예방·보호 및 심신회복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3) 협약의 국내법 체계내의 지위

지금까지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판례는 없지만, 정부로서는 당해 규정의 목적, 내용 및 표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협약의 원칙 및 규정의 사법결정의 적용 사례

법령 등에 대해서 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 당사자로부터 주장된 재판사례는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에 위반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판례는 지금까지 없다.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판례 사례

- 성적 표현을 한 컴퓨터소프트를 포함한 디스켓에 대하여 현지사가 일정의 도서 등을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유해 도서류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취지로 한 조례가 헌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례

- 판결내용 : 판결은 동협약이 미성숙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유해한 도서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소년에게 모든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것을 친권자에게 맡겨 어떠한 사태에 도달하여도 협약국이 규제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게다가 동협약 13조 2항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포함되므로 본건 조례는 동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1995년, 후꾸오까 고등법원 미야자끼지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협약에서 정한 아동권의 침해상황과 구제조치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정상 조치의 하나로서 '아동인권전문위원'을 설치한다. 아동인권전문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은 아동의 인권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정리,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조사·처리 및 인권상담,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계발활동의 기획·입안에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아동인권상담소' 나 '아동인권110' 을 통해 아동의 인권상담에 응하고, 또한 아동회의 등과 연계하여 좌담회를 실시하고, 아동의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법무국·지방법무국과 연계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현재 아동인권전문위원은 전국에 688명이 배치되어 있다.

아동인권전문위원은 인권옹호위원 중에서 인권옹호국장이 지명하지만, 인권옹호위원은 다음과 같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무대신에게 인권옹호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물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법무대신은 후보자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및 인권옹호위원연합회의 의견을 구한 후 위촉한다.

위원의 활동 실적으로서는 '아동인권상담소', '아동인권110' 에 있어서 인권상담의 실시 및 집단따돌림 방지 카드 등을 작성·배포하여 아동의 인권침해의 감시활동,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조사·구제활동의 실시, 기관지 발행, 매스컴을 통한 인권계발활동, 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권계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옹호위원은 일반인으로부터 선출된 자원봉사자가 법무대신으로부터 위촉받고 법무국, 지방법무국의 인권상담실과 자택 등에서 인권상담에 응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게다가,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법무성 인권옹호국, 법무국 인권옹호부, 지방법무국 인권옹호과 및 인권옹호위원)은 학교와 그 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가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을 한층 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양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6) 아동권리협약 등을 위한 국내기구

아동에 관한 시책은 복지, 교육 등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정부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국장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책 추진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시책을 종합·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에 관한 각종 시책의 전개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당해 시책을 조종하는 제도를 새롭게 정부 부처 내에 창설할 예정은 없지만 계속해서 현행 제도 속에서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아동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비행방지 등에 있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의 최종견해를 유의하면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과의 정보교환과 청소년 시책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과의 종합적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협약의 홍보 및 복지시책 등을 펼치고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의회를 전개하는 등 아동의 인권존중을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 지역간 실시 정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부서에 조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등 지방과의 연락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지역간 격차가 없도록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청소년 상담기관으로는 인권상담(법무성), 아동상담소(후생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성), 가정아동상담실(후생성), 교육연구소・교육센터(문부성), 가정교육전화상담(문부성), 소년보도센터(총무청) 등이 있다.

정부는 협약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호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협약의 실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협약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약의 실시에 관해서 정부는 NGO와의 꾸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정부보고서의 작성에도 아동권리협약에 관심이 있는 NGO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외무성 주최의 NGO와의 의견교환회를 두차례 개최하였다.

아동인권전문위원이 아동의 인권에 관한 정보수집과 정리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발활동을 기획・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학교・아동상담소 등 지역, PTA(교사, 학부모회), 민생위원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가 있고, 관계기관, 민간학대방지단체와 연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조기대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 보건, 경찰, 교육, 사법 등의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등 20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옴부즈맨의 창설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협약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관계부처의 각종시책의 전개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시책임 및 평가는 각 관계부처가 지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NGO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이용 가능한 수단의 최대한의 범위에서의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정부는 현재의 핵가족화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신엔젠플랜'을 수립했다. '신엔젠플랜'은 보육서비스 등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과, 직장과 양육을 위해 고용환경을 정비하는 등 핵가족화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충실, 방과 후 아동반의 추진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신엔젠플랜'에 근거하여 보육원의 저연령 아동입소의 확대와 연장보육, 휴일 보육의 추진, 방과후 아동반의 추진 등 보육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에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인 양육지원책의 질과 양적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양육에 관한 사회급부로서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있어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00년 최근의 출생률 저하 등 아동과 가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대상연령을 의무교육 취학 전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혼에 의한 모자세대 등 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이 양육되는 가정생활의 안정과 자립의 촉진을 기여하기 위해 당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생활보호법이 있고,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는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는 의식 및 주택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전 및 필요한 경우 현물을 급부하고 있다.

(9) 협약의 홍보

일본어 및 영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작성하고 있고, 각국의 언어로 협약의 전문을 재일 외국인의 희망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협약의 홍보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홍보활동의 반향 및 협약의 인지정도를 감안하여 이후에도 협약의 취지, 내용, 정확한 이해 등의 보급에 노력할 예정이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페이지를 개설하고 아동권리협약전문, 정부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의 질문 및 답변, 최종견해, 심포지엄 등 각종 관련 문서를 게재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와 역할, 기본적 인권의 존중, 아동의 성장 및 인간형성에 대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의 학습지도 요령에도 아동권리협약에 유의하고 학교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인권을 배려한 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있어서도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강좌를 포함하여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원연수에 있어서는 초임자 연수를 시작으로 경험년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연수의 기회에 인권 및 생활지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연수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 생활지도, 교육상담이론 및 실천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학교에 새로 채용된 경찰관, 승진 경찰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대해 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경찰활동에 종사하는 경찰관이나 소년보도직원 등에 대해 아동의 권리옹호에 유의한 적정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 있어서 교양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옹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직원에 대해서는 교정연수소 및 지소의 연수 프로그램에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피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옹호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수로서 법무성에서는 전국의 법무국 및 지방법무 직원에 대해 인권에 관한 전문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아동의 인권에 관한 과목을 설치해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연수생이 강의자가 되어 아동의 인권을 테마로 모의 강연 등을 열고 있다. 또한 전국의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에 있어서도 인권옹호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에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강의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법무성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인권계발담당국의 직원에 대해 인권계발 지도자양성 연수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의 인권 및 협약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출입국관리소 직원, 보호관찰관, 재판관, 검찰관, 아동복지직원, 경찰대학교 등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은 각 대학의 이념, 목적에 의해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다. 대학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수업과목은 1999년도 현재 110개 대학 174과목(국립대 34대학 61과목, 공립대학 8대학 9과목, 사립대학 68대학 104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인권」, 「소년문제와 인권」, 「아동문제론」, 「아동복지론」, 「아동의 권리옹호・직업윤리」, 「아동상담사례연구」등이 수업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옹호, 아동이 인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가진 주체로서 사회참여가 실현되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학습 등을 필수과목으로 한 대학도 있다.

NGO에서는 지역주민, 아동, 교직원 등이 참여해서 협약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0) 홍보의 공개와 조치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내각부, 경찰청, 방위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무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참여했다. 보고서 작성에 NGO등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와의 의견교환회를 두차례 열었으며 이 회합에는 국회의원 10명, 정부관계자 40명, NGO관계자 약 70명이 출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 의견을 적고 있다.

> 정부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고 아동권리보장의 실태, 문제점, 향후대책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 및 과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실시하고 시민 NGO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
> 정부보고서에서는 인권조약이 원용된 예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협약이 재판에서 원용·적용된 예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인권조약의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 정부는 아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의 실시에 관한 공적기관 및 NGO/시민사회조직이 참여하는 정책조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 정부의 '인권위원회' 구상은 아동권리의 효과적인 감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분한 독립성과 권한 및 자원이 확보되고 특히 아동의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 또는 특별부국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의 설치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옴부즈퍼슨 등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부는 협약의 홍보를 위한 새로운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학교교육과정도 권리보다는 도덕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일반에서도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고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아동의 정의

(1) 아동의 정의에 관한 협약과 국내법과의 차이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인격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의 확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체제 아래에서 실제적인 아동의 보호 및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반 시책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2) 국내법에서의 최저법정연령

친권자의 동의 없이 법률, 의료상담이 가능한 연령은 민법에서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20세 미만의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의료상담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 당해계약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민법에서 만20세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은 6세가 된 날부터 최초 학년부터 15세가 된 학년까지 되어있다. 학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위험을 동반한 일, 파트타임, 풀타임의 일에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은 노동기준법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의 자에 한에서는 노동시간, 휴일노동의 제한, 심야작업 금지, 위험・유해업무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의 규정은 파트타임의 고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혼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며, 20세 미만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혼인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도 단독으로 법률행사의 당사자가 된다. 이러한 혼인연령의 남녀차이는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혼인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인 가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혼인에 필요한 성숙 연령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연령은 남녀의 육체적·정신적 측면의 차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에 비추어 협약 제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성범죄는 1999년 11월에 시행된 아동매춘·아동포르노 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매춘·아동포르노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징병제도는 없으며 18세 이상인 자의 지원에 의해 채용된다. 그리고 유사시 직접 전투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령도 14세이다. 수사단계에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연령도 14세이며,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특성을 배려하여 성인과 다른 취급을 한다.

소년법 제51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 대신에 무기형에 처한다. 또한 무기형을 내려야할 때에도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2001년 11월에 성립된 개정소년법에서는 무기형이나 유기형은 재판소의 선택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되었다.

정부 및 국회는 적어도 의무교육 수료연령(15세)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형사책임 연령 및 형사수속 적용연령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최저 혼인연령의 남녀차이는 신속히 시정하고 가사재판에서 아동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되는 연령을 낮추며 성적 동의연령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일반원칙

(1) 차별금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은 동등한 생활을 보장받고 보호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아동부양수당법 및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적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춘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는다.

2002년 12월 12일에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학교·지역·가정·직장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국민이 인권존중의 이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제공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본 법률의 공포·시행에 의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장에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본 법률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적절히 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자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장애자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되며, 적절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법무성의 인권옹호 기관에서는 아동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존중의 의식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강연회·간담회의 개최, TV·라디오 방송, 팜플렛 배포 등의 적극적인 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을 최종일로 1주일간을 인권주간으로 하여 대규모 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 인권침해의 염려가 인지된 경우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등 인권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담을 통해 관계자에게 인권존중의 사상을 계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법무성에 설치된 인권옹호추진심의회는 2001년 5월에 인권구제제도의 방안에 관해 답신했다. 정부는 독립성을 지닌 (가칭)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권구제제도를 창설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적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구제방법을 정비한 적극적 구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부는 심의회의 답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언된 새로운 인권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려 한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997년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 행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한층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아동상담소가 시설 입소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본인의 의향을 청취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아동을 아동양호시설 등에 입소시킬 수 있고 아동상담소 소장은 가정재판소에 대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 1조에는 본 법률이 아동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의 배려, 아동관련 기사 등의 게재금지, 심신에 악영향을 입은 아동의 보호 규정 등이 들어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의 감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아동상담소 등에 통고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의 입소조치가 부모의 의사를 반할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건수가 급증하는 등 아동학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관한 문제가 심각화 되어, 아동학대방지 등의 관한 법률이 2001년 11월에 시행되었다. 본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조기대응 및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되고 있다.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 등에서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아동의 자살방지 및 감독을 위해서 경찰은 당해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소년상담전문직원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의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해 비행문제, 학교문제, 가정문제 등 자살에 관한 소년상담을 항시 접수 받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살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지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전문상담원의 배치를 확충하고 '마음의 교실상담원'의 배치 등 상담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위한 24시간 전화상담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센터 등에 아동대상의 상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의 상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증가하는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999년 12월 '여성·아동보호시책실시요강' 을 제정하고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 있어서 성감염증 방지대책으로는 1998년에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에서 중학교의 보건체육과에 에이즈 및 성감염증을 취급하는 등 예방을 위한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용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교직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2001년도에는 새로운 교사용 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를 행할 시에는 아동의 사정과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는 등 아동 개인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고, 조치가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갖도록 배려한다. 한편, 다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석정지는 아동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당해 아동·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서교부에 의해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도해 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제도에 대해서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출석정지 기간 중 아동의 학습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년감별소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은 소년원처우규칙 제4조, 감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서는 일상생활의 처우내용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동의 시설입소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등에 의거하여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설입소 결정에 아동·보호자의 의향이 시설입소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할 때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일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을 개정하고 2000년 9월부터 시설입소아동 등으로부터의 고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충접수를 위한 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아동상담소가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경우 또한 해제할 경우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을 아동복지법 제27조 8항에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사법상의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인사소송, 신분관계에서 발생되는 가사심판 및 가사조정 절차에 있어서 사리변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상의 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민사조정절차에 있어서 미성년자(20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상의 행위를 해야 한다.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드는 등 아동도 국민의 일부로서 이러한 의사표현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분야에 있어서 아동은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일부이고 이러한 정책입안에 아동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정책입안에 관련된 공무원사이에 침투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급활동·학생회활동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아동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아동의 의사표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견해는 보다 비판적이다.

정부는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여성차별의 철폐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① 가정과의 남녀공학, 남녀혼합명부의 실시상황 등을 파악해 교육관계자의 의식계발을 도모하고 ② 교육행정담당자·학교관리직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③ 성별역할분업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비적출자를 차별하는 모든 법규정 및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적 차별·편견을 없애기 위해 의식계발 캠페인을 시작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장애자기본법은 장애아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장애아를 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리행사의 주체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자기본법과는 달리 따로 장애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은 재일외국인 아동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지원을 목적으로 모국어·모국문화의 교육을 포함한 2개국 언어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한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어떠한 법률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의 목적으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내걸고 있는 것은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 뿐이다. 따라서 정부 및 국회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1항)을 아동에 관한 법령, 규칙, 그 외의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절차의 도입, 아동옴부즈퍼슨의 설치 등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고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조치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을 제외하고 아동의 의사표현권을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법규정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복지법·사회교육법 등의 주요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의견존중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령·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의사표현·아동참여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은 징계처분·출석정지 명령에 관한 사전통지 및 진술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칙의 제정·개정 및 교육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시민권과 자유권

(1) 이름과 국적

출생등록은 호적법에 의해 출생 후 14일내에 해야 한다. 제1차적으로는 부모가, 2차적으로는 동거자, 의사 등의 순으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직원에의 적절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모자수첩 등).

출생등록에 포함된 아동의 신분상의 구성요소를 보면 적출자의 경우는 성명, 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관계, 출생지, 출생등록인 등이 있지만, 비적출자의 경우에는 이외의 부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 비적출자도 법률상 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의 권리 및 의무, 제1상속권 등 민법이 정한 친자관계에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민법상 적출자와 비적출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규정되어 있다.

- 적출자는 부의 성을 따르지만 비적출자는 모의 성을 따른다.
- 상속에서 비적출자의 상속분은 적출자의 1/2로 한다.
- 호적에서 적출자는 장남・장녀 등으로 표시되지만 비적출자는 남・여로 기재된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 및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 호적 등・초본의 교부청구는 연령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아동의 국적취득의 권리에 대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출생시 부와 모가 일본국민일 때에는 일본국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2조 1호). 또한, 무국적 아동의 방지를 위해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국민으로 한다(국적법 제2조 3호). 그리고 망명신청자 및 난민 아동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일본국적 취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출생하고 출생 후 국적이 없는 아동이 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8조 제4호의 귀화허가조건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등 일본국적 취득이 용이하다.

(2) 신분유지

호적등・초본의 교부청구는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며, 부당한 목적에 의한 교부청구는 거부될 수 있다. 호적법 시행규칙은 제3자가 불법으로 아동의 신분관계사항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학교의 교칙에 대해서는 학생의 실태와 보호자의 생각 등을 고려하여 끊임없는 검토를 실시하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것이 되도록 문부과학성은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지도를 해오고 있다.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적절히 지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등의 국가와 국민생활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의 의의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흥미, 관심 등에 따라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9조 1항에서는 종교에 관한 관용적 태도 및 종교의 사회생활로서의 지위는 교육상 존중되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2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아동의 종교자유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확보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는 종교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5)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15조 2항의 원칙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6) 사생활 보호

헌법과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단체로부터 함부로 사생활은 공개될 수 없으며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명예 및 신용의 보호를 위해 형법은 명예훼손, 모욕 및 신용훼손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민법도 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당한 자의 구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경찰의 수사·조사활동에 대한 소년의 호출이 당해 소년의 신용,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소년경찰활동요강에 의해 학교, 직장으로부터 직접호출을 피하고 호출시간과 방법 등에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피의자를 임의로 동행할 시에는 경찰시설에 직접 호출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 면접시간도 가능한 한 소년의 수업 중 또는 일하고 있는 시간, 야간 늦은 시각을 피하고 면접시간은 길지 않도록 한다.

(7) 적절한 정보의 이용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사서교사의 양성·배치,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추진 등 학교도서관의 충실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문화 분과회'가 설치되어 아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문화재의 추천업무가 행해지고 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지역주민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업계의 자주적인 조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개별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방송 분야의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4월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방송사업자에 의한 감독이 행해지고 있다. 총무성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방송 분야의 청소년과 미디어해석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개최하고 미디어해석의 향상에 대한 시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해석 교재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위법・위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무성의 인가 법인인 통신・방송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정보통신의 부적정이용대책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미디어상의 성・폭력표현 등 청소년의 유해정보대책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자주규제의 철저를 요청함과 동시에 PTA(교사・학부모회)가 실시하는 TV 방송 채널의 모니터링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NPO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TV 방송 채널에 관한 해외NPO의 선진사례를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유해도서, 비디오, 영화, 광고물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조례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8)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 취급 및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이 고문,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으로 품위를 손상당하는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은 중대한 권리 침해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1998년 2월에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을 개정하고 시설의 장이 징계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기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입소아동에 대해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개선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개선권고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를 행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교교육법 제11조에 의해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연수, 회의 등 모든 이용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관계자에게 취지를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수를 일원적·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 교원연수센터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수에 교육관계법규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그 안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체벌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회의에 있어서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생활지도담당자 회의에서 생활지도 교원을 대상으로 취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징계가 가능토록 되어있지만, 학교에서 아동의 징계는 당사자 아동의 사정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제재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등의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편, 이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여전히 불충분한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제공, 소지품 검사・몰수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에 지도・조언을 실시해야 한다. 후생노동성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아동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실시해야 한다.

아동이 미디어사회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아동의 미디어사용이해능력을 한층 촉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NPO・시민주체의 활동에 대해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미디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해서 아동,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아동양호시설에서의 폭력의 감시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청취는 물론 아동 스스로가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상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

아동의 발달에 관한 상담은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가정아동상담실), 아동가정지원센터, 양육지원센터 등에서 각 기관의 직원이 아동복지의 전문가로서 발달에 관한 적절한 조언을 행하고 있다.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는 국민 일반에 대해 협약의 취지, 내용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계발책자를 작성하고 전국의 법무국・지방법무국을 통해 학교・교육위원회・지방공공단체 등의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부모의 책임

1999년에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6조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가 상호협력하고 사회적인 지원 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기타 가정생활의 활동에 대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부모는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다.

친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교과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초·중학교 아동에게도 무상으로 급여한다. 또한 학교교육법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조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취학곤란아동의 취학장려에 관한 국가의 원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취학곤란 아동에 대해서 학용품을 급여하는 등 의무교육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이러한 무상조치는 외국국적의 아동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특별한 원조, 양호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가정환경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수양부모제도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유익한 제도로서 보급에 힘쓰고 있다. 후생노동성도 수양부모 위탁의 촉진과 개척을 위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전국수양부모회가 주최하는 위탁하지 않은 수양부모와 아동의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1999년도부터는 아동양호시설 등의 수양부모에의 원조·조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에 대해서도 2000년도 근린 주민과의 적절한 관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양호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일이라 여기고 지역 소규모 아동 양호 시설(정원 6명)을 창설하고 가정적 환경에서 양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권리협약 제9조 1항의 규정을 따라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관계 당사자의 절차상의 참여 등이 확보되어 있다. 가정재판소는 친권자의 지정·변경 및 자녀의 감호자 지정 등의 심판 경우 자녀가 만 15세 이상일 때에는 가사재판규칙 제54조 및 제70조에 근거하여 자녀의 진술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 아동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재판소의 직권으로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인적관계 등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재판소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규정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년감별소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면회 및 통신은 규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고 있다. 소년원에서의 면회나 통신도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의 수용시설에서 보호와 간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와 동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실이 아닐 경우에도 가능한 한 부모와의 면접기회를 확보하려고 배려하고 있다.

(4) 가족 재결합

헌법 제22조 제2항은 외국이주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출국자유는 보장되어 있다.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마땅히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일본인의 출국·귀국에 대해서 확인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아동 및 부모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의 출국권리는 보장받고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본국에 재류하는 가족의 방문목적으로 상륙허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신청이 있을 시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하고 협약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5)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아동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송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 제8조 2항에서는 아동의 약취·유괴·매매 등을 행한 자의 처벌을 하고 있다.

(6) 아동 양육비의 회수

아동의 양육비는 ① 혼인 중에 있어서 혼인비용의 분담 ② 이혼시의 자녀감호 비용의 분담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재판법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사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확보의 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가사재판소는 조정 및 심판에서 규정된 의무에 대해 이행권고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동은 재판소의 부양료의 지불에 관한 판결 및 결정이 내려진 후 본국에 부모의 재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 및 결정에 근거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양의무에 관해서 1977년 7월 22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준거법에 관한 조약을 1986년 6월 5일에는 부양의무 준거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7) 가정환경 상실 아동

학대를 받은 아동 등 특별한 원조, 양호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가정환경을 대신할 수단의 제공으로서 수양부모 제도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양호시설에 대해서도 2000년도부터 가정적 환경 제공과 아동의 사회적 자립 촉진을 위해 지역 소규모 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동 양호시설(정원 6명)을 창설하였다.

(8) 입양

양자입양의 영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장은 양자입양 희망자에게 적어도 6개월 이상 수양부모로서 양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인이 외국인을 양자입양하는 일 및 외국인이 일본인을 양자 입양하는 일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입양의 경우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아동복지법 제34조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양자입양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을 할 경우 단체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9) 수용에 대한 정기적 심사

소년원 및 소년형무소에 수용된 아동의 정기적인 개선제도로서 징역 및 금고수형자로 소년형무소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 가출옥제도가 있으며 소년원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퇴원제도가 있다. 이는 수용된 아동의 개선·갱생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2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1년에 1회 이상 현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0) 아동학대와 방임

2000년 5월, 아동학대에 관한 시책의 촉진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동년 11월 20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보호태만, 심리적 학대로 정의하고 어느 누구도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의 아동학대, 감호태만 등으로 아동의 복지를 해하는 경우에는 수양부모, 보호 취학자,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의 입소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법은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재판소가 친권상실선고를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 후견인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경우는 본인의 신청 외에 이웃, 복지·교육·보건·의료관계자 등의 연락에 의해 아동상담소가 구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학대 피해를 입고 아동양호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요법 담당직원에 의한 심리요법을 실시하는 등 아동의 심신 상황을 살펴 대처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일정의 경우 보호자의 아동복지사로부터의 지도를 받을 의무규정이 있으며 건전한 부모관계의 회복, 가족의 재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5조 및 아동학대방지법 제6조에서는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한 자의 아동상담소 등에의 통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방지법 제5조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부 등 아동의 복지에 직무상 관계있는 자의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노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건수의 증가로 아동상담소 및 아동양호시설의 직원, 보건부에 대해 직원의 경험 및 직무내용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에 배치된 아동복지사의 증원 및 아동양호시설에의 심리담당직원의 배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는 학대가 중대한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의 해소를 위한 계발활동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인권전문위원'을 인권옹호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아동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의 구제를 도모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것을 인권침범사건으로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보고서에 따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조치와 가족재통합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은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동법에서도 부모에 의한 체벌은 금지되지 못하고 가정교육(예절교육)에의 적절한 사용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입안·실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필요한 법개정,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제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대에 대응하는 직원·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입소대기아동이 수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연장·야간·학동(學童)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는 공적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고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충분한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원조 및 감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 아동

아동의 인간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장애아 및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는 집단지도 및 가정방문 등의 개별지도에 의한 보건지도를 하고 있다. 신체기능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기능장애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복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지장이 있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구의 급부 및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심각한 심신장애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하여 적절한 가사 등을 행하고 있다. 도우미 파견사업은 1998년 1533명, 1999년 2058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심신장애아 통원사업은 가정으로부터 통학시켜 일상생활의 기본적 동작지도, 집단생활에의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8년도 452개소, 1999년도에는 502개소가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아동부양수당 및 장애아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로 통학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는 양호학교 등의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2000년도부터는 고등부까지도 본격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 취학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학을 장려하기 위해 취학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구입(고등부), 학교급식비, 통학교통비, 기숙사거주비용, 수학여행비, 학용품구입비 등을 보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교육취학장려비로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아동을 포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자를 대상으로 직업지도, 소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건강 및 보건 서비스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취학 시 건강진단 및 학교에서의 건강진단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도에는 새롭게 지역교육위원회가 각급학교에 전문의를 파견·지원하는 등 건강상담 활동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교의 성교육·에이즈 교육은 199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에서 초등학교는 3, 4학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터, 중학교에서는 에이즈 및 성감염증에 대해 명기하고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새롭게 교사용 성감염증 대책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생활습관병 증대의 우려 등 음식에 기인하는 새로운 건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지도요령에서의 지도활동과 2001년도에는 아동용 교재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유아사망률 저하를 위한 조치로서 질병이나 이상의 조기발견의 기회로서 1세 6개월 아동 및 3세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자보건수첩에는 주요 공비부담의료제도를 소개하고 있고 모자보건에 관한 각종 상담이나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모자보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등이 한층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육아불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에 정확히 대응하고 또한 건강진단의 사후지도 등을 강화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상담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교육・연수제도를 개선・운영하고 있다.

(3)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법의 방과 후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서 보호자의 노동 등에 의해 주간가정에서 아동보호가 불가능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후생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 추진에 도모하고 있다. 2000년 5월 현재, 11378개소가 있으며 '방과 후 아동건전 육성사업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모두의 노동 등으로 또는 동거친족 및 그 외 사람이 당해 아동의 보호가 불가능할 시에는 보육소에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생활수준

정부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생활부조 및 주택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의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활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보수 및 주택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전 또는 현물로 급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간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장애아동에게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 성적행동 및 유해물질의 남용 등 사춘기아동의 문제는 건강문제보다는 비행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결정 능력을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응력의 육성은 여전히 중시되지 못하고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일방적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사춘기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응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종합적 서비스 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서비스 체제의 충실을 위해 경찰보다는 오히려 아동복지기관 및 NGO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4)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따돌림 대책을 펼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어도 가해아동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특징으로 경찰도 피해소년의 보호는 물론 가해소년의 보도 관점에서 아동상담 충실, 지역주민의 협력 요청 등의 집단따돌림의 조기발견과 발견된 집단따돌림의 진상 해명에 철저를 기하며 가해소년의 적절한 조치, 피해소년의 심신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상담전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직원, 소년보도직원 등에 의한 계속적인 상담활동과 보호자와 연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의 교육에 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원조하기 위해 일본육영회는 일본육영회법에 근거하여 학비를 대여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7차 공립의무교육제학교교직원정수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아동의 학력향상과 세분화된 지도를 위해, 예를 들면 이해습득정도의 차이가 쉽게 나는 교과에 20명 정도의 소인수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정수를 증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아동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아동과 동등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 출신국의 언어 및 습관 등을 고려해 학교에 적응하도록, 예를 들어 복수의 교원이 협력하여 팀티칭지도를 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어지도교재, 외국인 담당교원의 연수, 외국인 아동의 모국어가 가능한 자를 학교에 협력자로 파견하는 사업, 이들 학교에 교원을 충원하는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제도화된 중·고 통합교육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범위의 지역 가까운 곳에 학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으로 500교 정도로 정비할 목표로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의무교육에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과 배경에 의해 아동이 등교하지 않고, 등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 이른바 '부등교'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① 알기 쉬운 수업,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학교 실현 ② 상담교사의 배치 확충 등 교육상담체제의 충실 ③ 중학교 졸업 정도인정시험 및 대학자격검정의 수험자격 확대와 고등학교 입학시험의 배려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도퇴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및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의 개선, 단위제고교, 중·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통합학교 및 종합학과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학교를 설치하고 고교중퇴자의 재입학이나 대학입학 자격검정 등에 의한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존엄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있어서 아동의 징계는 당해 아동으로부터 사정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는 등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 조치가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도하고 있다.

(2) 교육의 목적

아동의 스트레스 및 등교거부의 예방조치로서 정부는 '부등교' 및 입학자선발 개선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정부와 각지자체는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내용에는 인권존중교육, 환경교육, 국제이해,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도를 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이 없이 공평·공정하게 지도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 기본적 인권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학습지도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기문명과 다른 문명 등에 대한 존중을 위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자국문화와 전통의 중요함과 창조에 공헌하고 외국의 사람과 문화를 소중히 여김으로 국제친선, 세계평화와 행복에 공헌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자유·권리와 책임·의무의 관계를 학습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의 의의를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여가・오락 및 문화활동

경찰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의 도장 등을 사용하여 유도・검도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스포츠대회의 개최, 환경미화 활동, 시설방문 등의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예술 감상의 기회보장을 위해 학교나 문화시설 등에 우수한 문화단체를 파견하고 국립극장에서의 전통문화 공연에 특히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을 실시하고 저렴한 요금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술문화진흥기금에 의해 문화단체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활동의 장려를 위해 매년 전국고등학교종합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아동의 스포츠활동의 진흥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개소 이상의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민스포츠의 보급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전국스포츠・레크레이션 축제, 해양스포츠축제, 아웃도어스포츠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바깥에서의 아동의 풍요로운 생활경험, 활동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교육 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간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교육개혁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NGO 및 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의 배분 등의 정부의 교육조건정비는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학급규모의 표준을 30명으로 하고, 교원정수를 개선하고, 교원의 초과근무 상태를 조사・개선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교육조건의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부적응, 중도탈락자의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져 온 등교강제나 유도 등의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학교 바깥의 장소나 방법으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학교교육법 등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가정교육 등의 대안적인 교육방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행정, 학교관리자, 아동·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하에 민주적인 학교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에의 아동·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하게 취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실천사례의 수집과 보급, 민간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5) 특별보호조치

(1) 비상사태의 아동

난민의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위해 사회생활에 관하여 아동수당법, 아동부양수당법 및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적요건을 철폐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자국민과 일반외국인에게 동등한 자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체결한 인권 및 인도에 관한 관련국제문서에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이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소년사법의 운영제도와 아동

소년사법의 운영에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년에 대한 조사는 시간・장소・언동 등에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소년법상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14세 미만의 자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자립지원시설이나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가 이루어진다.

(3) 착취당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아동의 경제적 착취 금지를 위해 노동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폭행, 협박, 감금 그 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노동자의 의사에 반한 노동 강제를 금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의 자에게 위험한 업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안전・위생 및 복지에 위해한 장소에서의 업무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노동을 금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4조는 만15세 미만의 아동에게 도로 그 외의 장소에서 가요, 예능의 업무를 시키는 행위, 접대업무를 금하고 있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을 설치하여, 중학교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지식을 갖춘 노동자 양성을 위해 장기간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에는 만15세 아동에 대해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착취 문제에 대해서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은 인권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하여 '아동인권상담소', '아동인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10' 등을 통한 상담체제의 충실에 노력하고 있다.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집단의 아동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아이누민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존엄성 존중의 중요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수민족 및 원주민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사건(비방, 폭력,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민간단체 견해는 다음과 같다.

비정규체재자의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시설의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전건 수용주의'를 폐지하고, 수용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및 그 가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일차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퇴거강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독립된 입장으로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퇴거강제 결정의 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3자기관의 설치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9년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의 제정 등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피해아동의 심신회복 보다는 가해자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이 두어졌다. 또한 성적학대에 관한 종합적인 법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불처벌원칙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심신회복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소년사법의 절차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법의 개정 및 독립된 감시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권리존중과 사회참여의 취지를 주축으로 하는 정책의 전환의 시책으로서 대용감옥의 즉시폐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무적부첨인제도의 창설, 취조에 있어서 부첨인의 입회 원칙화, 기소전의 보석제도의 창설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시사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2004년 1월 30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정부의 2차보고서를 검토하고 총괄소견을 채택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의 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및 아동학대방지법(2000년)의 제정 ② 아동의 상업적·성적 착취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의 책정(2001년) ③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책정(2003년)등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2000년에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ILO 제138호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최악의 형태에서 아동노동금지 및 박멸을 위한 즉시적 행동에 관한 조약을 2001년에 비준한 것을 환영하였다.

(1) 일반적 조치

① 위원회의 권고

차별금지, 학교제도의 경쟁적 성격 및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폭력에 관한 권고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유의하고 이번 총괄소견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② 선언 및 유보

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관한 협약국의 선언 및 제37조(C)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③ 입법

위원회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국내법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협약이 재판소에서 직접 적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되지 않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입법의 포괄적인 개선과 협약의 원칙 및 규정, 권리보장이 전면적으로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④ 조정 및 국가행동계획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내각부에 설치되고 청소년시책대강이 입안된 점을 평가하지만 이것이 포괄적인 행동계획이 아니고 대강의 입안·실시과정에서 아동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이 권리 보장의 발판이 되고, 2002년 유엔아동특별회의의 성과문서 '아동에게 적합한 세계'의 요지가 고려되도록 시민사회 및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대강을 강화시킬 것을 권고한다.

⑤ 독립된 감시 기관

위원회는 협약의 실시를 감시하는 독립된 시스템이 전국규모로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3개의 지자체가 지방옴부즈맨을 설치하고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설치법안을 재제출할 계획에 있음을 환영하면서 독립된 기관이 될 것을 바란다.

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독립되고 효과적인 기구가 되도록 인권옹호법안을 개정할 것과 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실시를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아동의 고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옴부즈맨설치를 촉진하고 인권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지방옴부즈맨이 동위원회와 협력·연계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나 지방옴부즈맨에 아동이 쉽게 접근 할 것을 권고한다.

⑥ 데이터 수집

위원회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의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하고, 협약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가 수정되도록 정부의 현행 데이터수집기구를 강화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수집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⑦ 시민사회와의 협력

위원회는 아동권리 분야에 관한 정부와 NGO 사이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하고, 위원회의 총괄소견을 실시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제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⑧ 홍보 및 연수

위원회는 재판관, 교직원, 경찰관, 교정시설직원, 보호관찰관 및 출입국관리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활동을 환영하지만 아동 및 대중일반,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가가 협약의 취지가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아동이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의식계발 캠페인을 강화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양의 종사들을 대상으로 협약의 원칙 및 규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캠페인, 교육연수 등이 인식변화와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 아동의 정의

위원회는 최저혼인연령이 남자(18세), 여자(16세)로 차이가 있고 성적동의에 관한 최저연령이 13세로 낮게 되어 있음을 염려하여 여자의 최저혼인연령을 18세로 올리고 성적동의에 관한 최저연령도 올릴 것을 권고한다.

(3) 일반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

위원회는 법률에서 혼외아동 및 여자, 장애아동, 재일외국인아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소수민족아동, 이주노동자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뿌리 깊음을 우려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교육·의식계발캠페인 등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②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위원회는 사회의 전통적 태도로 가정, 학교, 시설 및 기타 사회일반에서 아동의 의견이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정, 재판소 및 행정기관, 시설, 학교에서의 정책입안에 있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며,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의사표현권 및 참여권에 대한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직원, 사법관계자 및 사회일반에 대해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고 영향을 주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아동의 교육·여가, 그 외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책결정시에 아동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4) 시민적 권리 및 자유

①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학교내외에서 아동이 행사는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려하여 협약 13, 14, 15조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규제법령 및 단체가입에 관한 부모 동의 필요요건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② 이름 및 국적

위원회는 일본인 부와 외국인 모가 출생 전에 부의 인지를 받지 않고서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격 외 체재이주자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국적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③ 사생활에 대한 권리

위원회는 아동의 소지품 검사로 인한 사생활 참해와 시설직원이 아동의 개인적 통신에 개입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과 관련된 아동권리의 전면적 보장과 협약 16조의 이행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④ 체벌

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학교, 시설, 및 가정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여 시설 및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교육캠페인을 실시하며 벌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규율 및 교육을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설 및 학교에서의 아동대상의 고충상담제도를 강화하고 아동을 배려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

(5) 가정환경 및 대리양육

① 아동학대

위원회는 아동학대의 통보 및 조사를 개선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환영하지만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전략이 없고 소추된 사건의 수가 적으며 피해자의 심신회복 및 상담서비스가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민사회, 사회 활동가, 부모 및 아동과 연계하면서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국가전략을 세우고 학대아동의 보호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상담소에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심신회복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받은 전문가를 증원하고 아동을 배려한 방법으로 상담・조사・소추가 이루어지도록 연수를 확대・실시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② 양자입양

위원회는 국내·국제입양을 감시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국제양자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제33호 헤이그조약(1993)을 비준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③ 아동유괴

위원회는 아동을 유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함을 우려하고, 정부가 국제적 아동유괴의 민사측면(civil aspects)에 관한 제28호 헤이그조약(1980)을 비준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기초보건 복지

① 장애아동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향유에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교육제도 및 레크레이션활동, 문화활동에 전면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아동의 필요를 고려하고 협약 및 유엔기준 규칙에 따라 장애아동 및 비정부조직과 연계하여 입안해야 한다. 또한 교육 및 레크레이션활동, 문화활동에 장애아동을 통합시키고 장애아동을 위하야 특별교육 및 서비스 배분에 인적·재정적 지원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다.

② 사춘기 아동의 건강

위원회는 사춘기아동의 정신장애 및 정서장애(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등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 전략이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들 사이에 성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춘기아동의 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실시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상의 상담 및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사춘기아동의 정신장애 및 정서장애의 예방을 위한 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그램을 책정·실시하고 교직원, 사회 활동가 및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③ 청소년의 자살

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고 상승하고 있으며 원인에 대한 질적·양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주요기관으로서 경찰이 지정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실시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적 행동계획의 책정 및 실시를 권고한다.

(7)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위원회는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협약의 정신에 일치하기 위한 조치 등의 노력을 평가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① 교육제도의 과도한 경쟁적 성질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② 고등교육진학을 위한 과도경쟁이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③ 학교의 아동문제 및 분쟁에 있어서 부모와 교직원과의 대화 및 협력이 한정되어 있고 ④ 외국인학교 학생의 대학진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⑤ 중도퇴학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동경도의 정시제고교가 폐쇄될 예정이며 ⑥ 소수민족아동이 민족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⑦ 일부 역사교과서가 불완전함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 누구나가 고등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 부모 및 비정부조직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학교에서의 아동문제 및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시제고교의 폐교를 재검토하고, 대안교육을 확대·실시하며 소수민족 아동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균형 있는 관점 확보를 위해 교과서의 심사수속을 강화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8) 특별한 보호조치

① 성적착취 및 인신매매

위원회는 1999년에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실시됨을 환영하지만 ① 강간이 형법에서 남성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② 성적 착취 피해자 전원이 적절한 심신회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③ 피해 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당한 보고가 있으며 ④ 원조교제 ⑤ 성적동의에 관한 최저연령이 낮아 원조교제를 조장하고 성적학대의 소추를 방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남녀가 평등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상담소에 심리상담자 및 회복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받은 전문가를 증원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을 배려한 방법으로 고충을 처리·감시·조사·소추하는 방법을 법집행관, 사회 활동가, 아동상담소 직원 및 검찰관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적동의에 관한 최저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② 소년사법

위원회는 정부의 소년법 개혁에 유의하면서도 동 개혁이 협약 및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 원칙 및 규정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특히 형사책임에 관한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졌으며, 심판 전 신병구속이 4주에서 8주로 늘려졌으며,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구금형을 언도받은 청소년이 증기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종신형이 구형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종신형을 폐지시키며,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신병구속의 대체수단의 이용을 강화하고, 현재의 가정재판소가 16세 이상의 아동사건을 성인형사재판소에 이송 가능한 것에 대해 폐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9)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무력분쟁에 아동의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문서의 보급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및 답변내용을 일반대중이 입수할 수 있고 관련의사요록 및 위원회가 선택한 총괄소견 및 보고서를 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정부, 의회 및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협약의 실시와 감시에 관한 의논 및 인식전환을 위해 널리 배포해야 한다.

2) 시사점

본 보고서는 일본의 청소년인권정책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부고서를 중심으로 정책과 현황을 요약·정리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로 민간단체의 의견을 포함시켜 보고서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으며 향후 한국의 청소년인권정책에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의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정부의 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한국의 상황과 상당부분 흡사한 면이 있고, 전통적인 동양사상으로 인한 권리보장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책임론, 미성숙론 등)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항목별로 제시된 민간단체의 권고 내용은 아동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차 정부보고서의 심사 후 협약의 실시에 관해서는 특히 아동의 보호권 확보(예, 상업적 착취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과 소년사법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 분야에서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원회의 권고에도 반하는 퇴행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규모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충실히 따르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아동의 가능성 발휘와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환경정비보다는 엄벌주의·도덕주의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는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정책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며 법률적 기술이나 자기변명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분석, 솔직한 자세, 자기비판이 결여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권고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보고서 전체로 볼 때 10개소에 미치지 못한 점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민간단체의 활동,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책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고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민간단체의 권고 내용 참조).

첫째, 아동권리협약의 실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예,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아동옴부즈맨 조례 등)이 추진되었고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과 제도적 정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성인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은 많은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사화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 등의 제정으로 종합적인 아동시책이 추진되고, 아동의 권리구제제도의 창설이 가능해지며, 아동의 의사표현·참여가 정책적으로 보장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홍보가 지역사회의 인식변환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양부모제도의 확충과 소규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양호시설을 창설한 일 등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는 편중된 조치를 넘어서 보다 가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양부모에 대해 양육비·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소규모아동양호시설에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학교에서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에서는 학교평의원제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보호자나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유연성을 지닌 제도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은 학교평의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각 학교에 이와 비슷한 유사제도의 폐지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름의 유사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학교평의원의 기본 사항만을 유지한 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가와사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된 학교 전체가 학교운영의 아동의 참여권·의사표현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학칙 등으로 보장하고 있다.

넷째, 법무성의 '아동인권전문위원'의 창설은 주목할 만 하다.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문적 기관은 아직 창설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 예정이고, 법무성이 설치한 아동인권전문위원제도는 인권옹호위원의 겸임직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지역·학교·가정에 있어서의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구제·권고 등의 활동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섯째,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는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체벌이 일본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기본법이 요청하는 교육의 비폭력성에도 반한다하여 금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교육법 11조에서 체벌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 교직원은 어떠한 이유나 장소를 불문하고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근절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체벌 방지를 위한 법률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계획 수립과 감시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내(아동시설 등) 인권 구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벌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후생성의 '주임아동위원'제도는 가정에 있어서 아동학대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있어서 특히, 복지시설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 없이 방치되어 왔지만 아동권리협약 19조등의 체벌 규제의 흐름 속에서 '징계에 있어서 권한 남용금지'가 발표되어 체벌을 규제해 가는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Ⅶ.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정책

Ⅶ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Ⅶ.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정책 22)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일반적 배경

(1) 스웨덴에 대한 기초적 이해

스웨덴은 유럽에서 지리적으로는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890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인종적으로는 20세기 전반부까지 주로 북유럽의 백인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의 확대와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주로 노동 이민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핀랜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뿐 아니라 유고스라비아, 그리스, 서동독, 터키, 영국, 폴랜드와 이태리에서도 오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해외 노동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이민이 제한되었고, 이후 이민자의 대다수는 정치적 난민과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까지는 망명을 요청하는 난민과 가족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2001년 말 현재 스웨덴에는 476,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즉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20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100,000명)이고, 다음이 이라크인(36,000명), 노르웨이인(33,000명), 덴마크인(26,000명), 유고슬라비안인(21,000명), 보스니안인(20,000명), 독일인(17,000명) 그리고 폴란드인(15,000명)이다.

---

22) 이 장은 노혜련교수(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스웨덴의 인구는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3%에 지나지 않은 면적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10명 중 8명은 스웨덴 남쪽의 집합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곳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그리고 고텐버그와 말모이다. 스웨덴에는 고대부터 북유럽에 거주하면서 순록을 치는 유목민족인 사미(Sami)라는 원주민이 언어・문화・인구학적으로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사미 인구는 약 15,000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2) 아동 현황 : 통계

스웨덴의 18세 미만의 아동 수는 2001년 말 현재 193만8,266명으로 전체 인구의 890만9,128명 중 22%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인구는 2005년에는 190만1,000명, 2010년에는 179만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현재 스웨덴 아동 중 4분의 1 (24%)이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에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러한 아동은 대도시에서 훨씬 많이 발견되는데, 주요 도시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중 43%의 부모가 외국 배경을 갖고 있는 한편 지방에서는 12%만이 그러하다.

2000년 말 현재 스웨덴에 거주 하고 있는 아동 중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전체 아동 197만7,712명 중 10만7,261명(5.5%)였는데, 그 중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이 1만8,355명(17.1%)이었다. 해외 입양아동은 전체 아동 인구의 0.9%를 차지하는데 그 중 한국에서 입양 간 아동이 5,026명(27.4%)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는 스웨덴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혼자 오는 난민아동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스웨덴으로 혼자 넘어 온 난민아동도 1,327명이나 되었는데 대다수는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 왔고, 대부분은 13~17세이고, 대다수가 남자였다. 1999년 스웨덴에도 298명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 난민아동 중 남자가 207명(69.5%)으로 여전히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아동 중 반 이상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가 미혼모의 아동이라는 것보다는 동거(cohabitation)가 일반적인 사회적 제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결혼과 동거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주요한 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스웨덴에서는 이혼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대다수 18세미만 아동(78%)은 여전히 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아동의 약 14%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7%는 후견권을 가진 부나 모가 새 파트너와 함께 사는 "혼합 가족"에 살고 있다. 1999년에는 아동 중 22%가 아버지와 헤어져 살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중 80%이상이 취업하고 있는데 그 중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스웨덴은 여성 취업률, 동거율이 유별나게 높고 이혼·별거율도 비교적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1990~1992년 사이 스웨덴의 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 이유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공공보육서비스, 부모보험제도와 아동수당과 같은 포괄적인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성역할의 변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3년부터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유럽에서는 평균 수준이었지만 스웨덴에서는 역사상 가장 낮은 1.5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출산율의 감소는 1990년대 초반부터 경험하게 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실업율의 증가, 사회복지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특히 자녀를 둔 가족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여 빚어진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스웨덴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을 1990년도에 아무런 유보사항 없이 비준하였고,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1992년에, 두 번째 보고서는 1997년도, 세 번째 보고서는 2002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제출하였다.

(1)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스웨덴의 국회는 1999년 3월 정부가 제안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 전략은 스웨덴의 법과 관행이 어느 정도 협약의 의도와 조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국회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1997년 종합한 보고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Putt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irst)에서 제시한 제안들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 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데도 큰 가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작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안된 전략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 협약의 정신과 의도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협약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는 스웨덴에서의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측면은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일이다. 협약은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자의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 협약은 강력하고 효력 있는 도구로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②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게 위임된 권한(committee terms of reference)은 아동의 권리·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③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직집단의 훈련 프로그램에는 협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정부직원에게는 그들의 협약이행을 위한 능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직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도와 시·군·구의회에게는 유사한 현직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⑥ 도와 시·군·구의회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목표를 둔 지방정부활동의 이행에 대한 추수 지도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⑦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아동영향사정(child impact assess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지역사회와 교통계획에 아동·청소년의 영향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⑨ 아동옴부즈맨 사무소의 운영과 조직이 스웨덴에서의 협약이행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⑩ 아동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약 68억8천만원(SEK 45.0m)이 스웨덴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노력을 위해 배정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협약이행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국제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노력의 조정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이행과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의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안에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정부서 (coordinating body)가 설치되었다. 이 부서는 정부 기관 내 협약관련 활동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정부기관간의 공동사업을 준비할 때 참여하고, 정부기관에서 비롯되는 의안, 지시문, 위원회 위임사항이나 기타 문서를 포함한 정부의 결정이 협약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거나 어느 부처도 뚜렷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발전에 주목하고, 조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이 부서는 또한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스웨덴 대표로 해외에 나가는 책임도 맡게 된다. 또 다른 과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스웨덴 국회에 아동정책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에 2개의 포괄적인 아동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 “아동의 현 시점(Children Here and Now, 1999/2000)”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스웨덴의 아동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스웨덴 내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동의 상황을 광범위하게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보고서 “아동정책: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향하여(Child Policy: Towards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2)”는 협약이행을 위한 전략과 관련된 정부 노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2년마다 아동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지식의 축적

스웨덴의 통계청(Statistics Sweden)은 1998년부터 정부의 지시를 받고 아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2002년 11월 현재까지 "아동과 그 가족(Children and their Families)"이라는 제목으로 1998부터 2000까지 매해 3권의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마지막 보고서 "아동과 그 가족 2000"는 가족구조, 부모의 별거, 거주지, 수입, 취학 전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직업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동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목적 중 하나는 스웨덴 아동의 상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균형 잡힌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다른 기관에서 산출한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아동보건, 아동과 법적 체계 그리고 아동과 사회서비스는 계속해서 작업해야 할 영역이다.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도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년 동안 종합해 왔다. "18살까지(Up to the age of 18)"라는 출판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02년 2월 옴부즈맨 사무소에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때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자료를 종합하는 책임을 법령에 근거한 영구적인 기관 업무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도 청소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연구결과, 통계와 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수집·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행은 옴부즈맨의 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아동 옴부즈맨: 아동인권옹호자의 위치

스웨덴에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아동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모니터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아동옴부즈맨법(Children's Ombusman Act)을 통해 아동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man)를 설치하였다. 2002년 봄 국회는 아동옴부즈맨 사무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다 강력한 아동 옴부즈맨(A Stronger Children's Ombudsman)"이라는 제목의 정부안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 하에서도 아동옴부즈맨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 하에 있게 되지만 훨씬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도 년간 약 12억2천만원(SEK 8m)에서 2002년부터는 약 22억9천만원(SEK 15m)으로 증액되었다.

개정된 법은 협약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사무소의 역할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개발·촉진과 관련하여 아동옴부즈맨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예전에는 3년 기간으로 제한되었다면 개정된 법에서는 영구적인 책임으로 명시되었다. 정부는 매년 이 일을 위해 약 7억6,500만원 (SEK 5m)의 특별 재원을 제공할 것이고, 다른 추가적 재원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아동 옴부즈맨은 또한 다른 관계 당국 그리고 도·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이 실시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 옴부즈맨은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면 이슈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소환할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 옴부즈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정보의 보급, 이행과 적용

② 괴롭힘(bullying)이나 성 학대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아동

③ 학교와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영향력

④ 아동·청소년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활동의 조정과 개발

아동 옴부즈맨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공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경청되고 존중받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옴부즈맨은 당면한 이슈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다양한 설문지와 연구, 편지나 전화 그리고 인터넷 상의 "아동채널(Children's Channel: http://www.bo.se)"을 통해 수집한다. 아동채널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들의 권리와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

아동·청소년은 또한 특별한 정보전화(special telephone information line: BO direct)를 이용해 그들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원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동 옴부즈맨이 아동·청소년과 의사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년 동안 전국에 지정한 "연락학급(contact classes)"과 "연락교사(contact teachers)"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아동들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이다". 2002년 11월 현재 총 117개의 연락학급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또한 14명의 아동·청소년위원회를 설립해 아동·청소년과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접촉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방문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아동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규정된 아동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리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출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과 함께 출판되는데 2002년 가을에 최초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보급되었다.

아동 옴부즈맨의 자료는 스웨덴의 모든 아동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스웨덴어에 능숙치 않은 이민 온 아동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세 개의 연령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세 가지의 다른 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아동 옴부즈맨은 전략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서 전체 스웨덴 아동들에게 협약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한다. 예를 들어, 아동 옴부즈맨은 협약과 스웨덴의 법을 보다 일치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권고한다. 또한 도와 시·군·구의회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협약을 기초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다른 주요 활동은 공공 토론회에 참여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인, 의사결정자와 일반대중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동 옴부즈맨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신문기사나 위원회에 대한 로비활동,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수행한다. 아동옴부즈맨은 또한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관계하는 관계 당국과 기관 그리고 민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아동 옴부즈맨은 스웨덴의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실태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직접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실시 또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선택하고 종합하여 “18세 까지”를 출판한다. 정부는 출판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도록 위임받은 통계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 옴부즈맨은 처음 설립되었을 때부터 정부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2년 7월부터는 연간보고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적절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한 영역과 스웨덴이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법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질문들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스웨덴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나타내 준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옴부즈맨은 협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국제적 진전 상황도 모니터하여야 한다.

아동 옴부즈맨은 설립 당시부터 정부의 시책들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선택한 영역과 이슈에 대한 여론 조성에 주력하였고, 다른 기관들과 아무런 지장 없이 협조할 수 있었다. 사무소의 독립성은 개정된 법에 의해 보다 명료해지고 강화되었다.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전반적 상황

스웨덴의 아동 상황은 지난 50년간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학교와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아동과 가족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영아를 가진 부모 중 대다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은 동일한 상태이고, 직장과 가정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아동이 가정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한편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관한 자각과 이해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한 전문직의 도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자각과 이해는 거의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스웨덴 시·군·구에서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아동에 관한 계획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hild planning)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아동의 욕구가 감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에 협약을 비준한 이후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협약을 알게끔 한 작업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욕구와 관심에 새로운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원조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은 가능하면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활동계획은 국가의 전체 목표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반 법령이나 국가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를 통해서 목표와 방향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는 활동의 구체적인 설계와 재원배분에 대해서 결정한다. 활동의 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활동의 질에 대한 추후 지도와 평가를 책임진다.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조항들은 스웨덴의 법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지방분권화 노력(예: 학교와 보육서비스)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대한 보다 많은 책임을 지방정부에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협약이행이 협약의 여러 조항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협약의 이행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옴부즈맨과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는 “The search continues”란 제목으로 1995년과 1997년에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그 결과 1995년에는 7%의 시·군·구에서만 이루어지던 협약에 대한 논의가 1997년에는 30%의 시·군·구에서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15%의 시·군·구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협약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응답하였으나 1997년에는 30%가 전달했다고 응답하였다. 1995년에는 시·군·구의 71%가 예산배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 반면 1997년에는 76%가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1995년에는 시·군·구의 39%만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나 1997년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 8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1995년에는 시·군·구의 35%만이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결정하였으나 1997년에는 55%가 그렇게 하였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점차 시·군·구의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어 가고 있는데 1997년에는 시·군·구의 1/3이상이 협약에 기초해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였고, 대분분은 적어도 협약의 정신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고 응답하였다.

국제적·역사적으로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스웨덴의 아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경험한 경제적 위기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학교와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아동과 가족의 안정감과 복지에 위협을 초래 했다. 2000년에 들어 공공재원이 상당히 증액되고 실업율이 감소하면서 아동과 가족의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책임지는 시도의회는 또 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최근 경제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보조금과 세수의 증가는 시·군·구로 하여금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주로 보편적인 성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띠고 있다.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부모보험, 아동보건서비스,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학교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아동에게 안정감과 유리한 조건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특별한 욕구나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스웨덴 정부는 현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아동정신건강서비스가 확대되고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다음의 몇 가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① 아동·청소년 사이에 알레르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② 최근 장기 병가 중인 사람 수가 급증하여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소진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복지수준도 높아질 수 있지만 보다 높은 스트레스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작업양의 증가는 직장 밖에서의 시간과 에너지의 감소라는 비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③ 특히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공해와 같은 환경적 문제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동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들은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정도를 사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④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사회는 아동이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포르노와 인종차별적인 극단적 생각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퇴치되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⑤ 오늘날의 청소년들 사이에 IT 기술과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고르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⑥ 기술개발의 빠른 진전은 노동시장에서 특수한 기술, 훈련, 교육과 관련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제도는 이러한 기술과 자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융통성 있는 인간들을 배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들은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⑦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소외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교육은 스웨덴어와 해당되는 경우 아동의 모국어로 실시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⑧ 학교는 아동의 사회적 교육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교육과정은 아동에게 규칙, 가치와 태도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괴롭힘 에 대항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명확한 규칙들이 교육법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 학교가 '괴롭힘'에 대한 예방적·치료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⑨ 최근에 아동이 자유시간을 흥미롭고도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오락은 많은 경우 이미 포장되고, 완성된 상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아동의 생각이나 상상력에 창의력과 자발성이 결핍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아동에게는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 아동은 아동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만 한다.

⑩ 최근 몇 십년간 스웨덴 인구의 구성이 이민으로 인해 점차 변화되어 현재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4분의 1이 적어도 한명이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격리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다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수준에서 여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이민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대도시를 개발하는 정부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⑪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다수의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일반아동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욕구들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만이 갖고 있는 기능적 손상을 보완하기 위한 특수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⑫ 국제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작업의 목표 중 하나가 아동의 관점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 고려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산출과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 정기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⑬ 2001년 가을, 아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은 여러 지역에서 온 35명의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을 설치하여, 제3차 보고서 작성 전까지 이 집단과 2번의 회의를 가졌다. 또한 2002년 봄, 정부는 스웨덴의 여러 지역에서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시도의회, 민간단체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간과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작은 마을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도시에서는 인종간의 격리 현상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고, 약물과 음주남용의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등에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계획과 결정에 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었다.

시·도의회의 대표들은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의도는 훌륭하나 경제적 여건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재정적 자원의 부족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영향력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저해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5) 일반적 조치

(1) 아동정책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이행과정은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협약의 비준 후 12년 동안 매우 고무적이고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최근까지 가족이나 사회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던 아동과 그 5권리에 관한 이슈가 하나의 고유한 정책영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동정책은 모든 정부 정책결정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동을 포함하지만 아동에 국한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아동의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정책 영역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스웨덴의 아동정책은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그들에게 안정감, 발전의 여지, 참여의 기회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는 가족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료보험, 주택수당,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동양육을 위한 유급휴가제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에는 아동수당, 부모보험, 부양대출, 아동연금, 장애아보호수당 등이 있다.

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약 100만 가정의 160만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아동연금은 부 또는 모 혹은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원으로 아동이 재학중이거나 기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학생에게도 연장 지급된다. 한편 주택수당은 신혼가정, 청소년 및 재학생 등에게 지급되며 주택비와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된다.

건강보험에는 각종 통원치료, 입원치료, 치과진료비 등이 포함되는데 재원은 조세수입과 정부의 사회보험예산에서 충당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임신기간의 무상건강검진, 유아학교 아동들에 대한 무료검진, 19세까지 모든 건강검진과 치과검진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고, 16세 이하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부모나 친척이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과교통비도 지급된다. 출산 또는 아동의 입양으로 부모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며 부모보험은 출산 후 480일간 부모가 아동양육를 위해 가정에 머무는 기간의 수입손실을 보상해 준다. 첫 390일간은 부모 월급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 90일간에는 매일 일정액의 일급이 지급된다. 부모보험은 부모가 교대로 가정에 머무를 경우에도 해당되며 정해진 기간을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동의 질병이나 치과진료 등에 따른 보호를 위해 가정에 머무르게 될 경우 부모는 연간 120일간의 부모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와 관련해서는 사회봉사법에 따라 시당국은 장애아와 가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19세 이하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장애아 대부분은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가정 내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위탁가정(family home)이나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집단주거형태인 호스텔 등에 배치하고 있다. 1994년에는 특정기능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법(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이 입법화되었는데 이는 시·군·구의회와 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책임, 특별장려금의 지원, 장애아 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서비스는 1995년부터 모든 시 당국이 1~6세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나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6~12세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 외에도 낮 동안 돌보아 줄 부모나 보육교사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개방유아학교(open preschool)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72년 처음 시작되어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708개가 있어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관해서도 예방적 접근을 취하는데 주거지역의 유아학교를 개방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스웨덴에는 가정 내에서 어떠한 체벌이나 정서적 벌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법이 있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시사회복지위원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매우 제한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아동복지서비스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제공받고 있는 아동 수는 거의 50배가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도 GDP의 2.4%에 달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경제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아동수당 액수를 다소 줄이기도 했으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1998년 중반부터는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경기침체 중에서도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을 보존하였다. 심지어 아동양육을 위한 휴가제도는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다. 이는 1980년부터 18개월간 직장복귀가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하였는데 특별히 부가 사용할 수 있는 1개월의 휴가가 최근 추가되어 자격 있는 부 중 50%가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12세미만의 아동이 아플 때 취업부모뿐 아니라 취업조부모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1996년에 약 9만8,000원(SEK 640)이었던 아동수당을 1999년에는 약 14만5,000원(SEK 950)으로 인상하였고, 남녀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동과 가족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2)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 관점의 적용

스웨덴의 아동관은 아동을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민주적 가치와 아동의 타고난 기술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 내 내외적 활동에 아동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아동,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모든 공립학교 제도뿐 아니라 취학전 활동과 학생들의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행정당국인 국립교육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뿐 아니라 경찰국(National Police Board),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General), 사법행정국(National Judiciary Administration), 난민아동과 망명희망 아동을 담당하는 이민국(Swedish Migration Board) 등은 각 기관의 아동과 관련된 활동에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점을 통합시키고자 기관 규정을 개선하고, 아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아동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대화하고 질문하는 방법과 기술 그리고 아동사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 정부는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협약을 아동관련 의사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협약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약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협약에 관한 정보의 보급은 옴부즈맨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비정부기관들도 자료 발간과 여론 조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매년 50개 비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th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곳에서 정부와 여러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을 기초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

아울러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작성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과의 접촉, 청소년 준거집단과의 구성과 만남, 민간기관와의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보고서를 널리 배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 3차 보고서는 총 5,700부(스웨덴어: 5,000부, 영어: 700)가 출판되고, 스웨덴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보고서는 모든 시도의회 그리고 모든 도서관, 공공기관과 인권기관에 발송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50개 기관과 아동·청소년 준거집단의 구성원들에게도 발송된다. 이 보고서는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정부 웹사이트(www.regeringen.se)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 아동의 정의와 결혼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현재 스웨덴 국적을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은 특별한 허락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아동은 15세 미만일 경우에만 “결혼과 후견권에 관한 특정 국제 법적관계법”에 의해 도행정국으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보고서의 심의 후 스웨덴 정부는 관할 내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조혼의 해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이미 다른 국가의 주민 또는 시민인 아동의 결혼 가능한 최저 연령을 스웨덴의 아동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법률을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법무부는 2002년 “스웨덴과 외국에서의 결혼(Marriage in Sweden and Abroad)”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스웨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의 최저연령은 특별한 예외상황이 아닌 이상 18세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관계가 있으나 외국의 법에 따라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결혼이 스웨덴 관계당국에 의해 맺어지지 못할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스웨덴 시민이거나 스웨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스웨덴 법 하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안서는 더 나아가 강제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과 강제 결혼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혼에 관한 법적 장애에 관한 조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일반원칙

(1) 비차별 원칙

① 현행법의 검토

스웨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스웨덴 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결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01년에는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금지: 불법적 차별과 인종과 성적 지향의 개념에 관하여(Banning Discrimination Effectively: On unlawful discrimination and the concepts of race and sexual orient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불법적 차별에 대한 처벌조항을 재검토하고, 2002년에는 “차별으로부터의 보다 광범위한 보호(Wider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민법 세 개가 200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차별에 대한 관습법을 연구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2004년 1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인종집단을 공격하는 선동 등(Agitation against National or Ethnic Groups)”의 의원안을 통해 법개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의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②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주의

모든 학교 교과과정은 남녀아동간의 평등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유아학교(pre-school) 교과과정에는 학교가 전통적인 성역할과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남녀 아동으로 하여금 전통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과 관련된다고 인식되는 능력과 관심을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총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의 전국의무교육 교과과정 역시 모든 학교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제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적인 수준에서도 지속되어 아동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방법을 개발하고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보다 폭 넓은 관점(Broader Perspect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직원들을 위해 전통적 성역할과 행동유형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한편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예를 들어 남아들로 하여금 대화하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고, 여아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체험하고, 게임과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유아학교에서의 소년과 소녀"(Boys and Girls in Pre-school)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들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앞으로 당면할 학교와 직장생활에서의 대안과 기회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에는 "평등한 기회 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는 학교에서 양성평등주의를 도모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스웨덴 전국에 있는 학교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해 실시되었고, 성(gender)과 관련된 희롱과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내서가 출판되었다.

2001년에 정부는 의무교육제도 안에 여권주의 집단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전국에 있는 60개 학교의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로 하여금 양성평등주의와 관련된 작업을 가속화하고, 목표지향적인 양성평등주의적 활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성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재정적 교부금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성에 기초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둔 설득과 논쟁기술, 언어의 사용, 아동·청소년 사이에서의 성희롱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각 시·군·구에 2004년까지 양성평등주의와 양성관련연구에 관한 훈련을 받은 교사나 교육전문가를 적어도 한명은 배치하여 추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자 아동·청소년들을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젝트와 노력을 위해 약 7억 6,500만원(SEK 5m)을 할당하였다. 아울러 국립교육국에 학교와 시·군·구가 양성평등주의와 사회·인종적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실례를 수집·보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가부장적인 전통과 신념이 강한 가족이 딸을 학교에서 중퇴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거나, 극단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형태로 딸이나 여자 형제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억압적 행동은 특수한 관심과 대응책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법적, 사회적, 교육적 정책과 청소년 정책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방사업과 개인을 보다 잘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민 온 여성과 여아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일정액을 책정해 놓고 있다. 실례로 1998년과 2001년 사이에만 이민 온 여성들과 여아들을 위해 20개의 언어로 운영되는 전국 규모의 핫라인을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약 3억 5,000만원(SEK 2.3m)을 지원하였다.

③ 괴롭힘과 사회적 취약성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괴롭힘(bullying)은 스웨덴 학교 내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심지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학교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러한 현상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아동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제도를 설립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그 정의에 따라 3%에서 10%까지 이르고 있고, 어린 아이일수록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고, 대부분의 연구는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보다 더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 또한 국립교육국의 태도조사에 의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들이 스웨덴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보다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이는 1998년 아동 옴부즈맨과 스웨덴 통계청에서 10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1998년에는 교육법(Education Act)과 스웨덴의 의무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직원은 괴롭힘과 인종차별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대 또는 모욕적인 행동에 대항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교장들에게는 학생들과 학교직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고, 추수 지도하고, 평가하는 특별한 책임을 위임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립교육국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였다.

① 연구와 평가작업을 통해 괴롭힘을 타파하는데 효과적이고, 학교 내 양호한 학습과 작업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방법의 모범 사례를 밝혀 알린다.

② 괴롭힘을 타파할 수 있는 학교의 노력을 자세히 조사·평가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학교를 지원한다.

③ 괴롭힘을 타파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 차원의 대책 개발을 촉진시키고, 행동계획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학교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수집·종합하여 보급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④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항할 수 있는 작업과 행동계획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한다.

스웨덴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노력들을 조정하는 목표 하에 "우리 함께(Together)"라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에는 비정부기관, 권리옹호집단, 지역협의회, 연합체, 연구자, 작가 그리고 학교들이 참여하였다.

④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혐오증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보고서 심의 결과 스웨덴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사건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적인 차별"과 "특정 인종집단에 반대하는 선동"에 대한 기존의 법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공유하였다. 또한 스웨덴 정부로 하여금 법률을 재검토하고자 한 공약을 이행할 것과,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을 타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인종차별적 행동과 외국인혐오증에 대항하는 법적인 힘을 확대시키는 몇 개의 대책들을 채택하였다. 인쇄된 자료, 사진 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 중 그 내용상 아동의 민족적 양육과정에 잔인한 영향이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한 사람은 미성년자를 위해한 죄로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의 감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1998년 5월 1일부터는 "전자게시판의 책임법(Act on Liability for Electronic Bulletin Boards)"이 발효되었다. 전자게시판은 전자파를 통해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 법은 전자게시판 제공자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용자들을 위해 특정 정보를 공급하고, 어떤 국가나 민족 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단에 반대하는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메시지는 제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메시지를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최고 2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을 나타내는 행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여 2003년 1월부터 이행할 예정에 있고, 1999년 12월에는 검찰청장이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검찰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인종차별또는 외국인혐오증이 동기가 되어 발생한 범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제안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에 정부는 스웨덴 사법제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범죄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집단의 현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을 계획하도록 지시하였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스웨덴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되는 정책, 규칙과 규정들을 고안하는 작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 부모의 후견권, 사회서비스와 보험 등과 관련하여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한 예심에서 아동이 심문의 대상이 될 때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횟수에 있어서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그가 출석하는 것이 조사를 위해 특별히 중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공판에 3시간 이상 참여할 의무가 없다. 3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 편견을 갖게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법적 후견인이 함께 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범죄자는 스웨덴의 법체계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전제는 아동·청소년의 구금은 훗날 법을 준수하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책임은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특별한 원조와 지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처벌로 벌금형을 가장 많이 부과하며 다음으로는 사회 서비스 내에서의 보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③ 1998년 부모의 후견권에 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관한 부모법(Parental Code)에 이러한 일들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서론 부분과 이행부분에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아동은 자신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러한 아동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립보건복지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으로 하여금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가족간의 토의 세션인 “협력를 위한 대화”(cooperation talks)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개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1998년 1월 1일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은 아동의 삶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채택할 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진술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아동을 시설에 배치시킬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동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들에 해당한다.

⑤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립보건복지국이 실시한 사회서비스법의 개정에 따른 추수지도의 결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 관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립보건복지국은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집행부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아동과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10학점짜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였다.

⑥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한 사례들과의 작업 속에서 아동관점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국립보건복지국은 도행정당국의 협조 하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관점을 유지하고,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보장혜택에 장기간 의존해 있는 가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과제로는 이 집단에 대한 통계적 기술,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험에 관한 기존 자료와 정보의 수집, 기존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작업 속에서 아동관점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최선의 실천에 대한 실례의 수집, 그리고 보다 명확한 아동관점의 정의가 포함될 것이다. 보고서 작성 후 스웨덴 전역에 걸친 일련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와 토의를 진행할 것이다.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스웨덴에서 학교 보건서비스는 점차 예전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법안 “건강, 학습과 보장(Health, Learning and Security, 2001)”을 통해 추가적 자원도 배당되었다. 좋은 학습 환경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든 학교직원은 신체적・심리사회적 건강문제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가진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하여 아동안전위원회(Child Safety Commission)를 임명하였다.

스웨덴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200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다. 1980년대에 약 1,000 명 중 6명이 만 1세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2002년에는 그 수치가 1,000명 중 3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염병이나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 상황에서 자살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구 전체를 볼 때 젊은 성인을 제외하면 아동·청소년이 가장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집단이다.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자살예방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행정당국 수준에서 "심리사회적 요인과 건강을 위한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sychosocial Factors and Health)내 자살과 자살시도의 예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립자살연구센터(National Centre for Suicide Research)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전국의 지역별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서로 맺어주는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직원, 정신과 직원, 학교직원, 경찰과 성직자들과 같이 자살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일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훈련하고 있다.

학교에는 국립보건복지국, 국립공중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와 심리사회적 요인과 건강을 위한 국립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동·청소년에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을 알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와 보건, 의료서비스 영역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직원들은 아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청소년의 환경 중 위험 요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파괴적인 가족 상황에 대한 징후에 민감해져야만 한다.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견권과 접근권

1996년에는 후견권과 접근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에 대한 세칙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8년의 후견권에 대한 개정을 통해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custody, residence and access)에 대한 부모간의 협의된 내용에 대한 사회서비스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과 관계당국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희망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학교활동

국립교육국이 2000년에 실시한 태도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작업해야 하고, 다양한 과목, 숙제와 시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하였다. 1997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이러한 영역에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학생 5명 중 1명은 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교육법위원회(Educational Law Commission)는 학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법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③ 사회적 서비스

1998년 1월 1일 개정된 사회서비스법에는 아동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아동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연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은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아동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동이 관여된 사례의 경우 아동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아동과 그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망명과 이민

1997년 외국인법(Aliens Act)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 법과 관련된 허가사항(permit matters)을 사정할 때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견해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럼 (Influence forums)

스웨덴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에서 전국의 청소년들과 의사결정자가 지방정부업무에 청소년의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는 "영향력 포럼(influence forum)"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289개의 시·군·구 중 136개에 "영향력 포럼"이 추진되었다. 총 참여자 중 44%가 13~15세, 43%가 16~18세의 청소년이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⑥ 교사훈련의 교육목표

정부 법안인 교사훈련의 새로운 모델(New Model for Teacher Training, 1999/2000)에서는 새롭게 재구조화된 교사교육체제 안에서 국제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일반 교육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훈련은 협약의 내용 그리고 이행과 일치를 이루는 교육의 공통되는 기본적 가치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한다.

⑦ 지역사회 계획

스웨덴의 “기획과 건축법(Planning and Building Act)”에서는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의 물리적 기획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획과 건축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계획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8~2000년 동안 국립건축, 기획 및 주택국(National Board of Building, Planning and Housing)은 국립도로행정국(National Road Administration), 아동옴부즈맨, 청소년국 그리고 지방관계당국 협의회와 함께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교통계획에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정치권과 시민

(1) 이름과 국적

200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스웨덴시민권법(Swedish Citizenship Act)이 발효되어, 모가 스웨덴 시민인 경우, 아동은 출생과 함께 스웨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만약 부만이 스웨덴 시민인 경우, 부모가 결혼한 상태이면 아동이 자동적으로 스웨덴 시민권을 갖게 된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스웨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스웨덴 시민이 된다. 아동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부가 신청하고 아동의 후견인이 동의하면 스웨덴 시민이 된다. 또한 아동이 12세 이상이고,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가 요구된다.

국적이 없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적이 없이 스웨덴에서 출생한 아동은 아동에게 영주권이 있고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후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요청(신고)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② 스웨덴에 입국한 아동 중 국적이 없는 경우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과거 3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였다면 신고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이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과거 5년 동안 스웨덴에서 거주한 경우 후견인의 요청(신고)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동의가 요구된다. ④ 스웨덴 시민에 의해 입양된 아동의 경우 모든 입양관련 결정이 스웨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이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아동이 12세미만이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스웨덴 헌법은 스웨덴의 모든 아동들에게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시위에 가담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국은 특별히 매년 정부 지원금을 청소년 단체에 활동의 유지와 개발을 위해 배분함으로써 청소년이 조직화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개 토론회에서 청소년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에 청소년국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64개 중앙 조직에 약 96억 3천만원(SEK 63m)을 기본 지원금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약 22억 9천만원(SEK 15m)을 새로운 조직과 개발활동의 발전을 위해 배정해 놓았다. 아울러 AB Svenska Spel 복권 수익금 중 약 76억 4천만원이 청소년 단체의 지역활동을 위해 배분되었다. 지원금을 받은 64개 청소년단체에는 7~25세의 회원이 55만 3천명 등록되어 있다.

(3) 정보접근권 : 미디어

스웨덴에서는 2002~2005년 기간 적용되는 새로운 방송 인가증을 스웨덴의 공공방송기관들에게 발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뉴스와 정보는 물론 문화·예술적 경험도 전달해야 한다.

② 기관들은 국가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청중에게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제와 표현방법 그리고 방송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스웨덴 텔레비전국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타 프로그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중 폭력의 묘사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웨덴에서 아날로그 네트워크 상 방송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인 TV4는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인 9월에서 5월 사이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웨덴이 유럽연합의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던 2001년 전반부에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관련 상황이 중요한 이슈였다. 2001년 2월 12~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발전, 미디어 산출물의 증가 그리고 미디어의 국제화에 따른 TV,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의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과제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특별히 아동을 표적으로 하는 광고에 관한 이슈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는데, 스웨덴은 이미 12세 미만의 아동을 표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헌법은 사전심의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상영되는 모든 영화나 비디오만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의 의무 중 하나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의 연령제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령집단은 7세 미만, 7세~11세 미만, 11세~15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다. 영화나 비디오가 해당 연령집단의 아동들에게 심리적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개정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법(Radio and Television Act, 1996)은 실제 폭력의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아동이 볼 위험이 있는 방법과 시간에 포르노 사진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더불어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경고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996년부터 시행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법(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은 폭력에 대한 불법적 묘사와 “기술적 기록(technical recording)”의 보급 금지에 관한 규정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컴퓨터와 TV 게임을 포함시키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미디어 폭력위원회(Council on Media Violence)를 설립하여 영상물 안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1998년 12월 정부는 또한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 시청각·정보 서비스가 미성년자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스웨덴의 시청각 산업에 알리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였다. 미디어 폭력위원회는 스웨덴의 미디어 산업과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자체적인 규제에 대해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모니터하고 매년 새로운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미디어 폭력위원회는 또한 유럽연합으로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및 아일랜드와의 협조 하에 18개월 동안의 정보와 훈련 프로젝트(information and training project)를 실시하도록 자금지원을 받았다. 트윈즈의 안전과 인식(Safety and Awareness for Tweens)이란 제목을 가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부모, 아동·청소년, 교사와 미디어 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위험과 장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아동·청소년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의 목표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양호한 조건하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주요 책임은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안전한 가족과 현대 사회의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대책들은 가정에서의 보호와 양육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가족정책은 부모에게 아동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있어서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보다 큰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설립과 이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부모들은 이제 아동들을 위한 학교도 시·군·구 학교제도 내에서는 물론 다른 시·군·구와 사립학교 중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스웨덴에서 부모 훈련은 지역사회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부모 훈련의 목적은 부모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다른 부모들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지원망을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산모와 아동보건서비스의 구조를 통해 대부분의 부모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부모교육을 받는다. 부모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산출하고, 사회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여년 전에 시작된 부모 교육에는 심리학자를 주축으로 하여 치과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동의 보호와 양육 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과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측면도 다루고 있다.

부모는 아동보육센터를 방문하여 아동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다. 아동보육서비스는 부모들이 서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특정 정도의 부모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 중 대부분의 부모는 집단활동을 통해 임신과정과 출산, 그리고 새로운 가족상황과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어린 아동들의 부모는 아동보건서비스센터에서 부모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 아동들의 발달과 욕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사회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스웨덴에는 같은 맥락에서 “개방 유아학교(open pre-school)”가 운영된다. 이는 시·군·구 아동보육서비스 내에서 학교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 집에 있거나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형태의 유아 교육이다. 이 유아 학교에는 성인이 동반한 아동들만 참여할 수 있다. 개방 유아학교는 시·군·구 보육서비스 내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활동들은 집에서 일하는 부모나 시·군·구에서 고용하고 있는 아동보육교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회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들은 또한 다른 아동들과 놀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른 유형의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아동보육서비스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를 위한 활동의 주요 목표는 부모를 가르치는 데 있기 보다는 아동보육서비기관 그리고 학교와 아동의 가족간의 협조체계를 이룩하는데 있다. 부모는 보육기관과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 공동후견권(Joint custody)

2000년에는 전체 0~17세의 아동 중 3% 이상이 부모의 별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주민등록자료상에는 부모가 별거한 아동의 84%가 별거 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아동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번갈아 가며 살고 있는데 이는 약 65%로 추정되고 있다.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대한 법은 부모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시·군·구는 부모가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하에 면접(협력을 위한 대화)을 보장해야 한다.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관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아동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익을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나 다른 기구에게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마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998년에는 아동후견권 등을 다루고 있는 부모법(Parental Code)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는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그 조항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결정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법은 아동이 접근권 즉 자신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나 모를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고, 부모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개정은 부모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로 하여금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 다른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후견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에 반해 공동후견권을 지시하는 대안은 최대한 신중하고 민감하게 적용되어야 하다는 것과,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폭력이나 괴롭힘 또는 다른 유형의 학대를 행사할 때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개정 결과, 아동의 거주지와 관련된 사례와 사회서비스위원회가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대한 부모의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아동의사표현의 권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2년 여름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1998 법개정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과제 중의 하나는 후견권, 거주지와 접근권에 관한 합의의 촉진, 공동후견권의 장려 그리고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의 도모와 같은 개정의 목표들을 달성했는지 보는 것이다. 또한 공동후견권에 관한 새로운 규칙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자 하는데,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어떻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2) 상담과 지도

스웨덴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가족상담이라는 명칭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가족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의 지도도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별거할 예정에 있거나 별거 중인 부모에게 소위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제공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무료로 이루어진다.

1999~2001년에 정부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동학대위원회(Committee against Child Abuse)는 스웨덴 부모들을 위한 책 "부모의 책(The Parents Book)"을 출판하였다. 이제까지 2002년까지 총 55만 부의 책이 인쇄되어 약국, 출산전 클리닉과 아동복지 클리닉,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보급되었다. 이 책은 또한 학교,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부모훈련과 같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여러 이민자들의 언어로 그리고 보다 읽기 쉬운 형태로도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1990년대의 예산삭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 간에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보다 크게 부각시키게 되어, 새로운 협동체계(collaborative forms)가 대두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예가 가족센터이다. 가족센터는 출산전 클리틱, 아동복지클리닉, 유아개방학교,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상담과 기타 중요한 가족관련 활동들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센터의 주요 목표는 직원들로 하여금 개별 가족들과 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집단의 직원들이 서로의 접근방법과 욕구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적절한 원조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가족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한 장소가 방문하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되었고, 이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특히 중요한 결과였다.

국립공중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현재 정부의 지시 하에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중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훌륭한 실천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보급해야 한다. 특별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 두 사람 모두와 친밀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동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변화의지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내는 작업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전통적인 성역할을 극복하고 삶에 있어서 소년소녀에게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무보수의 일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양육휴가(parental leave)를 받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전 클리닉에서 정보보급을 위한 캠페인과 아버지를 위한 교육과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할당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행정이 보다 높은 비율의 남성들로 하여금 부모양육혜택을 활용하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월 1일부터 아버지만을 위한 한 달 동안의 부모양육혜택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3) 부모의 책임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이가 계속해서 가정에 머물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책임에서 가끔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 특히 중요하다. 보호·양육책임으로부터의 휴식(Care relief)은 특정 기능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법(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Act, 1993)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휴식은 집을 떠나 단기간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아동에게 환경의 변화와 여가를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단히 광범위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부모의 노력과 아동 보육서비스, 학교교육, 휴식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에겐 개인적 원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4) 부모로부터의 분리

스웨덴에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반면 사회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과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조항들은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에 담겨 있다.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조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징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관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책은 먼저 부모나 후견인 그리고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근 몇 년 동안 시·군·구는 아동에게 바로 인접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치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를 개발하였다.

1995년부터 스웨덴에서는 보건사회부의 재정 지원하에 가족회담(family conference)이라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족회담은 가족과 그들의 사회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가족 내 아동들을 위한 대안들을 의논하고 제안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족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아동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할 지에 대해 효과적이고도 가능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계획은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평가는 국립보건복지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이나 가족에게 개인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족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은 가정 밖에서 양육될 수 있다. 매년 약 4,500명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배치되고 있다.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보호명령(care order)하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아동 보호법 [특별조항](Care of Young Persons Act [Special Provisions]) 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에 대한 후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명령은 폭행, 부당한 착취, 가족상황 때문에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가 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서비스의 최후 결과로서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을 위탁가정(family home: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대리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개인적인 가정) 또는 보호와 거주를 위한 가정(home for care or residence: 사회서비스 관할 하에 있는 시설 또는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으로서 개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 치료, 간호 또는 지도감독을 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다른 곳에서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은 필요한 기간보다 보호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과의 재결합이 가능하려면 아동과 부모간의 긴밀하고도 정기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법 [특별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부모에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아동과 부모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법은 가정 밖에서의 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가까운 친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과 스웨덴에 친척 없이 온 난민아동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최근 아동보호법과 관련하여 아동의 관점과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제안 중 하나는 이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3년 동안 대리보호 서비스를 받은 경우, 관련 사회서비스위원회는 아동의 미래보호계획을 위한 특별 사정을 하여야 하고 후견권의 이전을 신청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2002년 가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모 중 한 명이나 둘 다 수감 중에 있을 때는 이들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와 보호관찰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에 교도소와 기타 교정서비스시설의 방문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이제는 모든 여성을 위한 교정서비스시설과 남성을 위한 최대 규모의 시설에 방문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스웨덴에서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과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대부분의 교정서비스시설에서는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특별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수감자들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5) 양육비 회수

아동이 해당 부나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국은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수당(maintenance support)을 지불한다. 이러한 양육지원제도의 혜택은 현재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전체 아동의 52%에게 제공되고 있다. 약 33%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약 14%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였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하였기 때문에 또는 아동이 부모 중 어느 누구와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스웨덴에서는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의 동의 없이 부모나 아동의 후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이 아닌 다른 개인가정에서 미성년자의 대리보호와 양육을 책임질 수 없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아동들을 받아 대리보호 또는 주거를 위한 가정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협회는 도행정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가정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위원회는 아동의 부모, 아동이 배치된 가정 그리고 아동 자신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행정국은 학대가 있는 가정의 활동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부적절한 가정환경, 자신의 행동 또는 장애의 이유로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또 다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 4분의 3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어 있다.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대리보호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법 또는 아동보호법 [특별조항]에 의해 배치된다. 한편 장애가 그 이유인 경우에는 특정 기능적 손상을 가진 개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법(Support and Services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Act)에 의해 배치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립보건복지국은 위탁가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보건복지국은 7개의 시·군·구 의회가 함께 “아동의 욕구에 초점 맞추기(Focusing on Children’s Needs)”라는 제목 하에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사, 사정과 추수지도를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협약과 사회 서비스법에 맞춰 아동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998년 1월에는 아동에게 대리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국은 먼저 아동이 친척이나 친지의 가정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정부로부터 이 조항의 이행을 모니터하도록 지시받은 국립보건복지국은 1999년과 2001년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서비스법의 개정이후에도 친척이나 친지의 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여전히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중 약 15%에 머물렀다. 4개의 시·군·구에 관한 집중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사회복지담당자들 중 이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사례의 진행절차에 아동의 사회지원망을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 중에는 사회문제는 세대간에 전수된다는 이론에 기초해 친척의 가정에 아동을 배치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보건복지국은 아동의 친척과 위탁가정 배치 그리고 그것이 아동의 학교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개발노력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축적된 지식을 요약한 후 전국의 모든 사회서비스국에 보급하여 관련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친척이나 친지의 가정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의 보고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진행 중에 있다.

(7) 입양

입양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입양결정은 항소가능하다. 법원은 입양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부모와 후견권 법 (Code of Parenthood and Guardianship)의 특별조항에 의하면 입양은 아동에게 이로울 경우 그리고 입양신청자가 아동을 양육했거나 양육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와 아동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해 입양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입양될 수 없고, 12세 이상의 아동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양 될 수 없다. 입양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법원은 아동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추어 아동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스웨덴 법은 해외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외국아동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아동이 모국을 떠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동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잘 보호·양육할 능력이 있고, 아동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정한다.

스웨덴은 1993년 헤이그에서 채택된 해외입양과 관련된 협조와 아동의 보호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에서 입양하는 부모들은 입양과 관련하여 약 367만원(Skr 24,000)의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부모의 경우 매월 약 18만원(Skr 1,173)의 지원금을 받는다.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과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이 누리는 혜택들 간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입양은 원칙적으로 입양인과 그의 친척이 생 자녀와 갖는 똑같은 관계를 입양자녀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법에서 입양은 파기될 수 없다.

스웨덴 국회는 2002년 봄에 주민등록된 모든 파트너로 하여금 입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이 개정안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두 명의 파트너가 함께 입양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아동을 입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파트너들로 하여금 함께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아동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입양 부모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 가족구조를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 성인과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입양과정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특별조사원을 임명하였다. 조사원은 또한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 내 최고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조사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지도체계가 입양가정의 욕구에 상응하는 지 고찰하고, 입양가정을 승인하는 절차와 입양비용의 문제를 분석하여 2003년 5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8) 아동학대와 방임(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통합 포함)

부모와 후견법(Code of Parenthood and Guardianship)은 아동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거나, 아동의 자손심을 훼손시키는 모든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좋은 부모가 되기 쉽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개방학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아개방학교"의 확대는 점점 더 많은 주택지역에 아주 어린 아동들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자격을 가진 직원의 지도 하에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아동과 학대: 20세기 말 스웨덴에서의 신체적 체벌과 다른 학대에 관한 보고서(Children and Abuse: A report on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abuse in Swede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는 아동학대위원회(Committee on Child Abuse)에 의해 의뢰된 세 개의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연구들과 축적된 지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양육의 한 방법으로서의 신체적 체벌의 사용 자체와 사용횟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1994~1995년도에는 7~9학년 아동들의 65.5%만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25%가 가끔 경험하였다고 한 반면 2000년도에는 4~6학년 아동들의 86%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7.5%가 가끔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경찰에 신고된 신체적 아동학대 사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의 분석결과, 아동학대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밝혀졌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법(Penal Code)에는 특별히 아동·청소년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보호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 1월 1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아동과 이루어진 성관계 중 보다 심각한 성범죄(강간이나 성적 강요)로 간주되지 않았던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관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로 간주되게 되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착취로 간주되기 위해 아동이 가해자와 혈연 또는 의존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스웨덴에는 여러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국, 아동·청소년 정신과, 학교, 경찰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찰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자문단이 있어 성학대가 의심되는 개별 사례와 관련하여 협력한다. 또한 스웨덴의 곳곳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루는 "도자문단(county groups)"이 있어 개별 사례와 관련된 당국의 담당자들에게 정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한다. 이러한 자문단은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성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설계한다. 한편 비정부기관들도 정부로부터 정부유산재단(State Inheritance Fund)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아 아동폭력과 성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보전달과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지역경찰당국에 가정폭력 전담 부서가 설립되고 있다.

2002년 1월 1일에는 아동을 위한 특별대행인에 관한 법(Act concerning Special Representatives for Children)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특별히 아동의 법적 후견인 또는 후견인과 가까운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사를 촉진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아동에게 특별한 대행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행인은 아동의 법적 후견인을 대신하여 아동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예심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보호하게 되는데, 이 과제를 수행할 특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특별 대행인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상과 지원당국(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은 잠재적인 특별 대행인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 아동

① 장애인 정책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2000년 5월 스웨덴 국회는 국가장애인정책을 위한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national disability policy)을 채택하였는데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둘째,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층의 개인들이 전체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일구어 나간다. 셋째, 장애를 가진 소년 소녀, 여성과 남성을 위한 평등한 생활조건을 보장한다.

장애인정책은 그 노력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완전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발견과 제거, 둘째,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차별의 예방과 타파, 셋째,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독립심과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제공

모든 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은 장애를 가진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앙정부당국은 모범을 보이고 정기적인 활동에 장애에 관한 관점을 통합하여야 한다. 행동계획은 일반적인 유엔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2001년 7월 1일에는 사회서비스법과 특정 기능적 손상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법에 보충적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도행정당국은 시·군·구 의회로 하여금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특정 종류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개인 시민들에게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② 특수교육

학습 장애로 인해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아동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직업고등학교 수준까지 있는 특수학교는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에게 각 학생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일반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가능한 한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2001~2002학년도에는 의무교육 과정에 등록된 아동·청소년들이 1만 4,200명을 약간 넘었다. 이 중 약 15%는 일반학교교육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통합되었다. 같은 기간에 직업고등학교 수준의 특수학교에 5,500명 보다 약간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다. 의무교육과정의 특수학교에서는 학생 100명 당 25명의 교사가 배정되어 있다.

(2) 보건과 의료 서비스

스웨덴 아동의 건강 수준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아동보건센터는 아동들에게 인생에서 건강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보다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건강문제는 알레르기, 천식과 과민성 장애 그리고 정신질환이다.

소아과는 0~18세 아동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공중위생관점(public health perspective)과 예방적 접근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아동이 질환과는 상관없이 소아병동에서 치료받는 것을 “통합적 치료(unified care)”라고 한다. 이는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직 전체 아동의 4명 중 1명이 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에서 치료받고 있다. 선구적인 대학병원에서는 통합적 치료를 위해 특수한 소아과적 치료에 요구되는 모든 자원을 한 군데로 결집시키는 “아동센터(child centers)”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보건과 의료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도의회가 치료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소수만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예방 영역에서의 제 1차 진료서비스(예방접종, 알레르기 예방, 담배, 술과 음식에 관한 정보, 성교육, 낙태예방, 사고예방)가 소아과, 산과, 학교보건서비스는 물론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망명신청 아동은 의료와 치과서비스에 관해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다른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의회에 망명신청자 한명 당 일정 액수를 지불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와 도의회연합회(Federation of County Councils)는 2000년 3월 협약을 통해 추방이나 이송명령을 피하기 위해 숨어 사는 아동들에게도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 관련하여 망명신청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예전처럼 스웨덴의 비정부기관들은 이러한 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였다. 스웨덴은 아동・청소년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엽합회와 지방관계당국협의회(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와 특히 정신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대책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정부는 도의회와 시・군・구에 2002~2004년에 걸쳐 추가 자원을 배정하고, 도의회는 정신질환의 증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책임을 수행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야 한다. 더 나아가 도의회는 소아 정신과와 성인 정신과 영역간의 통합된 대책을 통해 16~25세 청소년들의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도의회는 또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약물을 남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서비스내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과정(compulsory school)에서부터 상급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청소년지도클리닉에서의 정보 보급을 통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성, 인종적, 문화적 및 종교적 기원,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에 따른 여러 다른 아동들의 다양한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성과 대인관계에 관한 학교교육은 또한 성성(sexuality)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하고, 개인들의 성적 선호도에 대해 개방적인 관점을 전달하고, 이성애, 동성애 및 양성애 청소년의 질문들과 생각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스웨덴의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는 1,000명 당 25명이다. 낙태율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결핍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낙태 수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6월 국가공공보건기관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정부기관이 검토하고 있다.

(3) 사회 보장과 보육서비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즉 가족정책은 보편주의와 개인의 권리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아동과 가족급부금(child and family benefits), 부모보험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수입원이 둘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부모도 직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 수준보다 취업을 장려하고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혜택들이 보다 중요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아동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기여금 그리고 세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가족수당제도의 이행과 급부금의 배분은 국가사회보장국(National Board of Social Security)이 관할하고 있다.

① 아동과 가족 급부금

•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기본 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약 14만 5,000원(SEK 950)이 지급되며, 확대 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이상의 아동에게 매달 약 14만 5,000원(SEK 950)이 지급된다. 추가 아동수당(Additional child allowance)은 3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세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약 3만 9,000원(SEK 254), 네 번째 아동의 경우에는 약 11만 6,000원(SEK 760), 그리고 다섯번째 아동과 그 이후의 아동의 경우에는 각각 약 14만 5,000원(SEK 950)이 매달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학생 보조금(Student grants)의 경우,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1년 중 9개월 동안 매달 약 14만 5,000원(SEK 950)이 지급된다.

•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주택수당은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되는데 2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첫째는 주택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정의 아동 수와 관련된 것이다(아동 1명: 약 9만 2,000원[SEK 600], 아동 2명: 약 13만 8,000원[SEK 900], 아동 3명 이상: 약 18만 3,500원[SEK 1200]). 아동이 있는 스웨덴 가정 중 거의 30%가 주택수당을 받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 양육비 지원수당(Maintenance support)

지방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Office)은 매달 약 17만 9,000원(SEK 1,173)의 양육비 지원금을 부모가 이혼/별거한 아동의 후견권을 가진 부나 모에게 지불한다. 양육비를 지원의무를 갖고 있는 부나 모는 정부에 반제해야 한다. 반제해야 하는 액수는 양육비 지원의무를 갖고 있는 부나 모의 수입과 총 아동 수에 따라 계산된다. 이 경우 아동의 후견권을 갖고 있는 부나 모의 수입은 고려에서 제외된다.

•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의 부모는 아동에 대한 양육·보호를 가능케 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수당은 아동의 욕구에 따라 조정되는데 1/4, 1/2, 3/4 또는 최고 수준에서 지불될 수 있다. 최고액의 수당은 기초액의 2.5배까지 될 수 있다.

② 부모 보험

부모 보험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현금 급부로 구성된다.

• 임신 수당(Pregnancy benefit)

임신 수당은 출산을 앞둔 여성 중 신체적으로 힘든 직업의 특성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된다. 최고 50일 동안 해당 여성의 수입 중 80%가 지불된다.

•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된 부모 현금급부(Parental cash benefit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or adoption)

부모 급부금은 480일 동안 다음과 같이 지불된다. 390일 동안 부모의 수입 중 80%가 지불되며, 90일 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금액 약 9,000원(SEK 60)이 매일 지불된다.

질병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 급부금은 일당으로 계산된다. 급부금의 수준은 부나 모의 수입의 80%이다. 수입이 낮거나 없는 부모의 경우 하루 약 2만 3,000원(SEK 150)의 최저보장 급부금이 제공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80일의 현금 급부일은 부와 모에게 각각 240일로 균등하게 분배된다. 부나 모는 다른 부나 모에게 180일까지를 이전시킬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이 혜택을 활용한다. 390일의 높은 수준의 급부일 중 약 95% 그리고 일률적인 급부일의 약 80%가 활용되었다. 한편 부모의 현금 급부일을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은 1974년에 이 대안이 처음 소개된 1974의 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8%에 이르게 되었다.

국립사회보장국은 부모 급부금을 부모가 둘 다 청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른 시기부터 아버지와 아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가 모든 아버지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출산 전에 부모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에 모든 부모를 초대하고 있다.

- 일시적 부모 급부금(Temporary parental benefit)

일시적 부모 급부금은 12세, 특별한 경우에는 16세까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부모에게 지불된다. 일년에 120일간의 현금 급부일이 해당 부나 모 수입의 80%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다. 아동 당 매해 평균 7일이 사용되고 있다.

이 현급 급부금은 부모 둘 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01년에 사용된 모든 급부일 중 41%가 아버지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 부와 모 모두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아버지의 날”을 통해, 신생아의 아버지는 아동의 출산과 함께 10일 동안 일시적 부모 급부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기간은 새 아이를 환영하고 보살피거나, 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들을 보살피도록 마련되었다. 거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 기간을 활용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③ 보육서비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두개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역할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하고, 둘째는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사회·가족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보건서비스, 사회보호, 양육과 교육을 함께 아우르고자 한다. 아동이 지식을 흡수하고 인생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안녕을 보장하는 일은 교육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적인 작업은 아동 개개인의 개별적 능력에 기초하고, 아이가 이미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놀이 또한 늘 스웨덴 아동 보육서비스의 중심이 되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에도 놀이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은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집단은 보육서비스에서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적 프로그램의 초점은 개별 아동과 집단 모두에게 맞추어진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집단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보육서비스가 교육정책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1996년부터는 교육부의 책임으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목표는 보육서비스와 학교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의 구성요소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공동의 교육적 접근이 개발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찰된다. 유아 학교는 교육체계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교육법(Education Act)에 의하면 시·군·구는 1~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나,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 취학 전 활동과 재학아동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1~5세까지의 아동 중 실업 중인 부모에게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휴직 중인 부모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부모가 실업이나 휴직 중인 아동의 경우, 일주일에 최저 15시간을 유아학교(pre-school)나 보육가정(family day care)에서 보낼 수 있다. 이 법은 아동의 후견권자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통지하면 "부당한 지체 없이(without unreasonable delay)" 즉 일반적으로 3~5개월 이내에 보육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장소는 아동의 가정에서 가능한 한 근접해 있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4세와 5세 아동이 유아학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학교는 모든 아동이 4세가 되는 해 가을에 유아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학교는 한 주에 최저 15시간(일년에 525 시간)동안 제공된다. 시·군·구는 또한 발달상 특수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유아학교와 여가시간센터(leisure-time centre)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사립 유아학교와 재학아동 보육서비스가 법이 제시한 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경우 시·군·구에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그림 Ⅶ-1]과 같이 구분된다.[23)]

23) 등록아동 수는 2002년 10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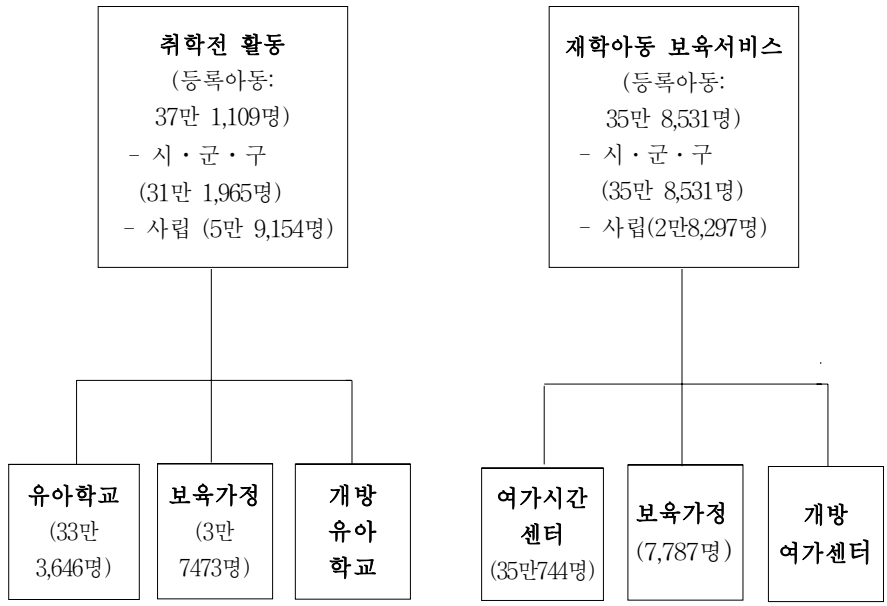

[그림 Ⅶ-1] 스웨덴의 보육서비스[24]

- 취학전 활동(Pre-school activities)

취학전 활동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서 유아학교, 보육가정 그리고 개방 유아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유아학교(Pre-school):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부모가 일 혹은 학업에 종사하거나 휴직 중인 아동 또는 이러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보육가정(Family day-care home): 일반적으로 부모가 일 혹은 학업에 종사하거나 휴직 중인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이다. 보육시간은 돌보는 가족의 욕구에 따라 조정되고 아동들은 등록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다) 개방유아학교(Open pre-school): 아동과 함께 집에 머무는 부

24)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hild Care in Sweden, 2002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모들을 위한 보육서비스이다. 부모는 직원과 함께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집단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아동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많은 곳에서는 보육가정들도 개방유아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

- 재학아동 보육서비스(School-age childcare)

재학아동 보육서비스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로서 여가시간센터, 보육가정 그리고 개방여가시간센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여가시간센터(Leisure-time centre): 12세까지의 재학아동을 위한 교육적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아동이 학교에 있지 않은 시간에 이용된다. 교육적 집단활동은 완전히 독립된 활동으로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종종 학교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나) 보육가정(Family day-care home): 취학전 아동뿐 아니라 재학아동도 같은 형태로 돌보는 곳이다.

다) 개방 여가시간 활동(Open leisure-time activity): 주로 10~12세 아동을 위해 여가시간센터와 보육가정의 대안으로서 제공되는 활동이다. 이는 또한 보육가정에 등록된 재학아동을 위한 보충적인 서비스의 역할을 한다. 아동들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들에 참여한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2002년에는 총 72만 9,650명의 아동이 취학전 또는 재학아동 보육서비스에 등록된 상태였다. 그중 35만744명(48%)이 여가시간센터에, 33만3,646명(45.7%)이 유아학교에, 그리고 4만5,260명(6.2%)이 보육가정에 등록되어 있었다.

2002년도에는 총 36만8,600명의 1~5세 아동이 유아학교와 보육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취학전 활동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전체 1~5세 아동의 8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001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이다. 취학전 활동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유아 학교로서 2002년에는 전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5세 아동 중 72%가 유아학교에 등록된 상태였는데 이는 2001년보다 4%가 증가한 것이다.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은 주로 실업상태와 휴직 중인 부모의 아동에게도 유아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기관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 중 한명이 휴직 중인 1~5세 아동 중 47%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26%만이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부모가 휴직 중인 1~5세 아동 약 1만5,000명이 추가적으로 유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중 대다수가 아마도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실업중인 아동 중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도 1999년의 58%에서 2002년의 76%로 증가하였다.

2002년도 여가시간센터와 보육가정에 등록된 6~12세 아동 수는 35만 8,600명이었다. 이는 2001년의 34만 6,300명에 비해 증가한 것인데, 특히 등록된 6~9세 아동의 비율이 2001년의 68%에서 74%로 증가하였다. 10~12세 아동의 등록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 유아학교가 시작된 후부터는 보다 많은 6세 아동들이 유아학교 대신 여가시간센터에 다니고 있다. 1998년에는 6세 아동의 53%가 여가시간센터에 다녔는데, 2001년에는 73%, 그리고 2002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여가시간 센터는 일반의무교육학교와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의무교육학교와 동일한 행정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여가시간 센터에 등록된 모든 아동 중 97%가 일반의무교육학교와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의무교육학교의 교장에 의해 운영되는 여가시간 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사립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8만 7,300명(12%)에 지나지 않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것이다. 사립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거의 40%는 부모협동조합(parental cooperative)에 다니고 있었고 약 30%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002년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출된 총 비용은 약 6조 7천억원(SEK 43.9 billion)이었고 이는 2001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이다. 유아학교가 지출의 68%, 여가시간센터가 23% 그리고 보육가정이 8%를 차지하였다. 개방유아학교와 개방 여가시간센터는 함께 총 지출의 1%만을 차지하였다.

시·군·구는 유아학교 활동과 재학아동 보육서비스를 자체 재원과 부모의 보육비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마다 아동 당 지출하는 비용에 편차가 있으나 2002년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유아학교에서는 한 아동 당 연간 약 1,391만원(SEK 91,000)이, 보육가정에서는 약 1,082만원(SEK 70,700)이, 그리고 여가시간센터에서는 약 456만원(SEK 29,800)이 지출되었다. 시·군·구는 지출된 비용의 약 85.5%를 감당하였다. 2002년 직원 당 아동 수는 유아학교의 경우 5.3명, 보육가정의 경우도 5.3명, 그리고 여가시간센터의 경우에는 18.4명이다.

시·군·구는 부모에게 일정 정도의 보육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시·군·구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 높아서도 안 된다. 2002년부터는 시·군·구는 보육료의 상한선(maximum fee)을 적용시킬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군·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재학아동 보육서비스의 경우, 가족이 첫째, 둘째, 그리고 세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가구의 세전 수입의 최고 2% 또는 1%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육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약 13만원(SEK 840), 그리고 둘째와 셋째 자녀의 경우 각각 약 6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만5천원(SEK 4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03년에는 사실상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보육료의 상한선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부모가 낸 보육료는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 비용의 약 9%, 보육가정의 경우 약 11% 그리고 여가시간센터의 경우 약 15%를 감당하고 있다.

(4) 생활수준: 장애아동 보호 수당

국회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아동 수당을 16세에서 아동이 1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1)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그림 Ⅶ-2]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25]

25) 학생 수는 2002년 10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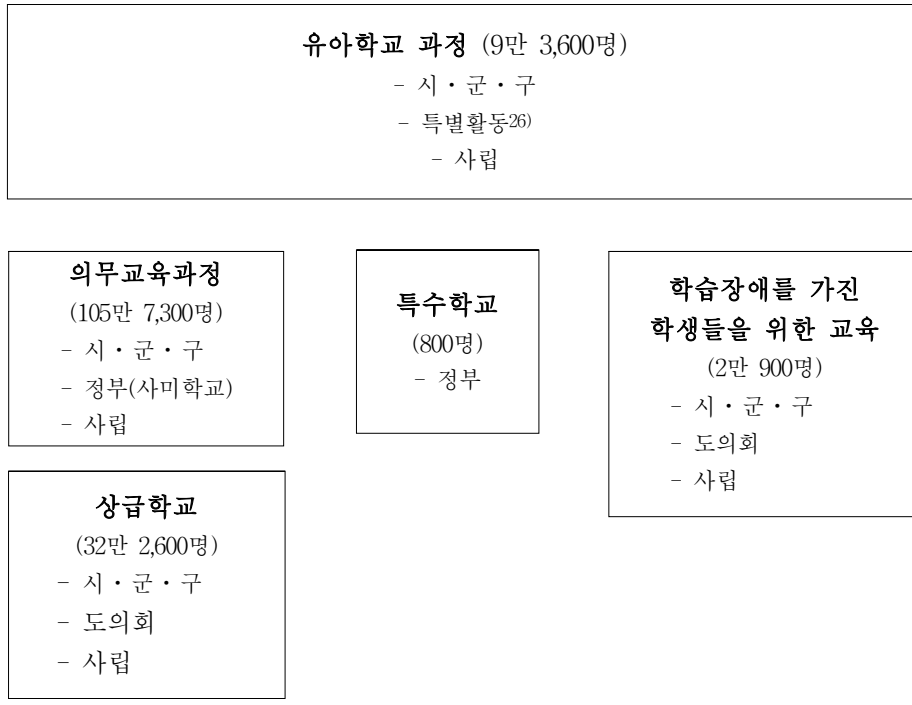

[그림 Ⅶ-2] 스웨덴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27)

① 유아학교 과정(Pre-school classes)

1998년 1월 1일부터는 6세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 시・군・구는 모든 6세 아동에게 일년에 적어도 525시간의 유아학교 과정을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참여는 의무적이지 않다. 유아학교 교육은 전체 교과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고, 유아학교, 의무교육과정과 여가시간 센터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교육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상승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수업은 주로 의무교육과정과 특수학교를 관할하는 행정체계 그리고 종종 같은 건물

26) 특수학교나 Sami (소수민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7)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hild Care in Sweden, 2002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안에서 이루어진다.

2002~2003학년도에는 스웨덴의 285개의 시·군·구 중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아학교 과정을 제공하였고, 총 9만 3,613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이는 6세 아동의 94%에 달하는 숫자이다. 유아학교 과정의 전임 직원 수는 아동 100명 당 8명이었다. 이는 전해에 비해 0.2명 감소한 숫자이다. 2002년도 유아학교 과정을 위해 지출한 총액은 약 5,628억(SEK 39,200)으로 시·군·구가 그 중 94%를 감당하였다. 학생 일인당 평균 연간 지출액은 596만원(SEK 39,000)이었다.

② 의무교육 과정(Compulsory school)

교육법에 의하면 스웨덴의 모든 7~16세 아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교육을 평생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자 노력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든 교육적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공통적인 접근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학교 활동과 재학아동 보육서비스와 같은 보육서비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무교육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회는 1998년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항을 사회서비스법에서 교육법으로 이전하였다. 동시에 6세 아동을 위한 학교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유아학교 과정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립교육국은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립보건복지국으로부터 이양받았다.

2002~2003학년도 의무교육 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105만 7천명이었다. 2009~2010 학년도에는 87만 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시·군·구 의무교육 과정, 정부가 운영하는 Sami(소수민족)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와 국립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가을에는 총 5,109개의 의무교육 과정이 있었다. 2002~2003학년도 학생 중 거의 95%가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의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교육 학교에 출석하였다. 하지만 사립학교, 국제학교와 국립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6만 명으로 예전과 비교할 때 최고로 많은 숫자이다. 2002년도 교사 수는 아동 100명 당 7.9명이었다. 같은 해 의무교육 수준에 있는 모든 학교의 총 지출액은 약 9조 7천5백70억(SEK 63.8 billion)에 달한다. 그 중 95%가 시·군·구에 의해 운영되는 의무학교 과정에서 지출되었다. 학생 일인 당 평균 년간 지출액은 약 938만원(SEK 64,300)이었다.

의무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국립교육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실시한 "학교 이미지 2000에 관한 조사(Survey of school image 2000)"에 의하면 7~9학년까지의 학생의 반수 이상이 학급환경과 학교 운동장이 좋거나 아주 좋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같은 수의 학생은 학급수업이 보통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조용한 작업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10명 중 7명의 학생은 학교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활기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29%의 학생들은 종종 또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997년의 20%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7~9학년 학생과 상급학교 학생 중 약 4%가 다른 학생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997년의 2%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이다. 약 6%는 교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학생들 중 7~9학년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1997/1998년에 주로 유럽에 있는 25개 국가 학생들의 건강습관에 대한 국제 조사에서는 스웨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0년에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습관에 관한 조사에서는 11세 학생 중 75%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5세 학생 중에서는 54%만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1997년 교육성과평가를 위한 국제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는 전세계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관한 학생의 지식을 알아보는 조사를 하였는데 약 40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서 스웨덴의 13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스웨덴 학생들은 싱가폴과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③ 특수학교(Special school)

특수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 과정에 다니지 못하는 청각장애 또는 손상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제공된다. 교육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과 가능한 한 일치하는데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춰 진행된다.

언어와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일반 의무교육 과정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다. 2002년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심각한 언어와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총 757명으로서 스웨덴 교육제도 내에서 매우 작은 집단을 구성한다. 특수학교도 의무교육으로서 10학년(10년)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1개의 국립 학교와 총 5개의 지역학교가 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는 2개의 언어(스웨덴어와 수화)를 사용하고, 이들 학생들의 강점을 개발·활용하는 교육을 한다. 특수학교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외에도 오락활동, 교통수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거지와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총 학생 중 556명(73%)은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195명(26%)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을 위한 기숙시설이나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다. 2002년도 특수학교에는 학생 100명 당 40.6명의 전임 교사가 재직하고 있었다. 같은 해 특수학교의 총 지출액은 약 679억원(SEK 444 million)에 달하였다. 학생 일인당 지출액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약 8,859만원(SEK 579,300) 이었다.

④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개별적 상황과 능력에 맞게 조정된 그러나 가능한 한 의무교육과정과 상급학교에서 제공되는 것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과 훈련학교(training school)를 포함한다. 이는 7~16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9년 동안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으로 9년 동안의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10년째의 교육도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학습장애의 정도가 약한 학생들은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에 다닌다. 이들은 일반 의무교육 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과목을 학습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가 개별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훈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의무교육 과정과 훈련학교 중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 위원회(school board)가 결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을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에 등록시킬 수 없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4년 동안의 상급학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 는 전국의 일반 상급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립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특별 설계 프로그램(specially designed programme) 이나 개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me)과 같은 방식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2002년도 가을에는 2만 941명이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 중 1만 4,761명이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의무교육 과정에, 그리고 6,180명이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에 참여하였다. 1992/93~2002/03의 10년 기간동안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79%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일반 의무교육 과정에 출석하는 학생 수가 19%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큰 것이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학생 수가 69% 증가하였는데 일반 상급학교에서는 증가율이 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원인을 조사한 국립교육국의 1998년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예전보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 수용적인 경향이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보급은 학교가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게 하여 학생과 부모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2000년의 "얼마나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인가"(How Special is Special)라는 보고서에서는 의무교육 과정 내 지식과 자원의 결핍이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검사하고 진단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등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학생 100명 당 교사 수는 25.2명이었다. 한편 상급학교에서는 24.2명이었다. 2002년 학생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총 지출액은 약 6천882억원(SEK 4.5 billion)이었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 일인당 연 평균 지출액은 약 3,658만원(SEK 239,200)이었고, 상급학교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약 3,409만원(SEK 222,900)이었다.

⑤ 상급학교(Upper secondary school)

2002년 봄에 의무교육 과정에서 9학년을 졸업한 학생 중 97.8%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2002년 가을 12만 9,700명의 학생들이 상급학교에서 1학년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 81%가 의무교육 과정에서 바로 진학한 학생들이었다. 2002년에는 총 32만 2,587명이 상급학교에 재학중이다. 약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약 7.9%가 사립학교에, 그리고 1.5%가 시의회에서 마련한 과정 (보건서비스와 자연자원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2년 가을, 전체 학생의 92%가 17개의 국립 프로그램 또는 특별 설계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였다. 17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아동과 여가 프로그램(Child and recreation programme)
- 건축 프로그램(Construction programme)
- 전자공학 프로그램(Electrical Engineering programme)
- 에너지 프로그램(Energy programme)
- 예술 프로그램(Arts programme)
- 수송 수단 프로그램(Vehicle programme)
- 경영과 행정 프로그램(Business and Administration programme)
- 수공예 프로그램(Handicraft programme
- 호텔과 식당 프로그램(Hotel and Restaurant programme)
- 산업 프로그램(Industry programme)
- 음식 프로그램(Food programme)
- 미디어 프로그램(Media programme)
- 자연자원 활용 프로그램(Natural Resource Use programme)
- 자연과학 프로그램(Natural Science programme)
- 건강서비스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me)
- 사회과학 프로그램(Social Science programme)
- 기술 프로그램(Technology programme)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나머지 7%는 개별 프로그램에, 그리고 1%는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상급학교에 참여하였다. 특별설계 프로그램은 국립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교육적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위원회(education board)는 각 특별설계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을 설정하는데, 학생 집단을 위한 것이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모든 핵심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군·구는 국립 또는 특별설계 프로그램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교육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중단한 학생들에게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이 책임은 학생이 20세가 되는 첫 학기까지 지속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간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 학생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개별 프로그램의 특징을 결정한다. 주요 목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학생이 국립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한 이민 입문과정도 제공한다.

2002년 7월 1일까지 응시자의 78.7%가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과정에 합격할 수 있었다. 국립 프로그램 중에는 기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사람들 (89%)이 일차적으로 선호하는 과정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 서비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각각 85%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이었다. 1998년 상급학교에 처음 등록한 모든 학생들 중 72.5%가 4년 만에 졸업하였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프로그램에서 졸업율이 각각 87.3%와 81.5%로 가장 높았다. 1999년 봄에 상급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42.6%가 3년 이내에 대학교육을 시작하였다.

2002년 가을 상급학교의 교사 수는 학생 100명 당 8.2명 이었다. 같은 해 연간 총 지출액은 약 3조 8,996억원(SEK 25.5 billion)에 달하였다. 일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182만원(SEK 77,300)이었다.

2000년 설립된 국회의 상급학교 교육위원회(Upper Secondary Education Committee)는 고용분야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급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외국에서 이민 온 학생들이나 외국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2002년 전체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된 총 비용은 약 16조 8천억원(SEK 110 billion)이었다. 그 중 약 10조 4500억원(SEK 68.3 billion)이 9학년까지의 의무교육 과정에서 지출되었다. 학생 일인당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약 983만 3천원(SEK 643,000)에 달한다.

시·군·구의 총지출 중 학교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45%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아동 당 직원 수를 증가시키는 등 학교와 여가시간센터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 총 약 2,700억원(SEK 17,500)의 예산을 시·군·구에 배정하였다.

(2) 여가·오락 및 문화활동

문화와 관련된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참여자는 아동·청소년이다. 도서관 프로그램과 시·군·구 음악과 문화학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문화적 활동에 투자된 공공재원의 총액은 약 5,658억(SEK 3,700m)에 이른다.

문화적 습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아동의 독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문헌의 구입과 독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5%에서 6%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책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널리 보급될 수 있게 되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특별보호조치

(1)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아동

① 법체계와 아동・청소년

2002년 7월 1일 스웨덴에서는 범죄와 관련한 조정(mediation)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준비된 조정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활동의 구조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란 범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참가한 공평한 조정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자발적인 회합이다. 이러한 조정은 쌍방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하고, 범죄의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여야 한다. 어린 가해자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년 약 27억5천만원(SEK 18m)의 지원금을 주로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조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국립범죄예방위원회(Nait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해당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프로그램과 관련된 훈련, 방법개발과 질적 관리와 같은 사항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②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구류, 투옥, 강제보호 등 포함)

- 아동・청소년 가해자를 위한 관리 보호

1999년 1월 1일, 새로운 처벌 즉 아동・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관리 보호가 15~17세 집단을 위한 스웨덴의 형법에 포함되었다. 감옥은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해당 연령 집단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에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구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특정기간 동안 관리보호형을 내려야 한다. 이 형이 집행될 때는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활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법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제정된 이후, 소수의 아동・청소년 가해자만이 구금형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7조가 스웨덴 법으로 통합되었다. 이 법은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18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시설에 구금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세 이하의 어린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교정시설과 교도소에서 특별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아동 보호 체계(The juvenile care system)

아동・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관리보호에 관한 법은 아동・청소년 가해자가 그 시설에서 가능한 만큼 자주 방문객을 받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는 오로지 제한된 상황에서, 그리고 안전과 치료의 이유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결정도 법정에서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형 집행이 시작되면 사회서비스기관과의 협조 하에 청소년이 머무는 가정이 있는 지역에서 치료계획이 만들어진다. 그 계획은 청소년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인가된 가정 밖에서의 삶을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회서비스기관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 교육적 기회, 활동, 오락, 신체적 훈련과 바깥에서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가된 가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와 치료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공공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와 다른 가족원과의 접촉은 치료와 관련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장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거주하는 시설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과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장은 청소년의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접촉하여야 한다. 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회서비스위원회만이 청소년과 법적 후견인간의 접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착취 상태에 있는 아동(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 포함)

① 약물남용

1998년에 정부가 임명한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s Drugs)는 스웨덴의 마약정책에서 여러 가지의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약물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존 구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특히 약물예방분야와 약물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치료에서 발견되었다.

최근 10년동안 스웨덴 청소년의 약물과 음주남용은 물론 불법 약물을 시도하는 수도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16세 청소년 중 6%가 어느 시점에서 약물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2001년에는 10%가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원회의 결론에 의거해 정부는 약물남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대책을 담은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2년 국회에서 채택되어 이행을 위한 특별약물정책조정자(special drugs policy coordination)가 임명되었다. 행동계획은 공공대책의 주요 표적으로 청소년 지역사회를 확인하고 있고, 약물타개를 위한 노력은 학교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계당국과 기관의 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새로운 지시에 따라 국립공중보건연구소는 전국적인 규모의 약물관련 통계의 조정과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마약, 술과 담배에 초점을 맞춘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9년 국립교육국에 의해 실시된 질적 연구결과, 이 분야에서 여러 약점들 특히 목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 설정, 노력의 진척정도에 대한 추후지도, 직원의 전문성 개발, 학생의 참여 그리고 학교와 부모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의 약점들이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보다 많은 토의와 정보교환을 위한 시간을 원하였다. 국립교육국은 학교들에게 위험사례에 대한 경고보다는 건강을 도모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 성적 착취와 학대

2002년 3월 성적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새로운 형법 조항이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인신매매 전반과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매매에 대한 형법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와 성인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형법 조항 모두와 관련하여 이중책임 조건(dual liability requirement)을 제거하였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범한 죄와 관련해서도 스웨덴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해당 국가에서는 기소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미성년자로부터의 성적 서비스 구매에 대한 금지와 성적 포즈를 취함으로써 착취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특정 성범죄의 제한기간이 아동이 18세가 된 후에야 시작되도록 하는 것 등이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1999년 1월 1일 아동 포르노 범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이 크게 개정되어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범죄화 함으로써 책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 벌금형이 없어지고, 무거운 범죄를 위해 특별 등급의 처벌이 삽입되었다. 태만 행위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다른 상황에서 포르노를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급했을 때는 태만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기소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아동을 음란한 형태로 묘사한 것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수출입하는 것도 기소당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를 비롯하여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사례에 관한 경찰업무는 국립범죄조사국(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산하의 특수대상부대(Special Objects Unit)에서 책임지고 있다.

디지털 신원조회 도서관(digital reference library)은 아동포르노 범죄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고도로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수색과 조사를 위해 다른 국가들을 원조하고 있다. 현재 특수대상부대의 직원 중 한 명은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경찰(Interpol)을 위해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수대상부대는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민간기관 “Save the Children, Sweden”은 특별히 아동 성학대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여 입수되는 자료를 특수대상부대로 전송하고 있다.

③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스웨덴 외교정치 상의 노력

스웨덴은 인신매매를 전세계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유엔과 지역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중앙과 동부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타파 노력을 IOM, UNICEF, ESCAP와 같은 국제기구와 여성대 여성재단(Woman to Woman Foundation), 여성포럼(Women′s Forum), 그리고 Save the Children과 같은 비정부기관을 통해서 원조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시사점

스웨덴의 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협약이행과 관련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평가와 대책을 요구하는 측면: 1990년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예산삭감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시·군·구가 협약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 옴부즈맨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조치들을 권고하는 측면: 외국인 또는 소수민족 아동, 불법이민 아동, 망명신청아동과 같은 취학아동의 차별을 타파하고, 특별히 불법이민 아동과 망명신청아동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직 또는 휴직 중인 부모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모든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다 강력한 보호를 권고하는 측면: 학대와 성적 착취 그리고 포르노로부터 아동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약물남용과 괴롭힘의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회에 그 내용과 스웨덴 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에 있는 시책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제 3차 보고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바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이미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옴부즈맨의 보고서에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시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협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는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상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따른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은 제일 먼저 제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됨으로써 한국정부가 협약이행과 관련해서 얼마나 미온적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총 19개 이상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만을 제시한다면 1) 국내법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 3)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 활용에 우선순위를 둘 것, 4)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 5)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 6)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 8)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9)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다. 단적인 예로 한 나라의 아동 건강의 지표로 볼 수 있는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1000명 당 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아동 빈곤율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들을 스웨덴에서는 이미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보다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다. 스웨덴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중 거의 50%를 아동의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2004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6%, 교육예산이 14%를 차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보육을 포함한 아동복지 예산이 약 4~5%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만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아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의 반응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2000년 스웨덴 국립교육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에 해당하는 7~9학년 학생들의 대다수가 학교환경에 만족하고 있고, 10명 7명이 학교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활기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꼴로 중퇴를 고려하고 있고 (조아미, 2002), 10명 중 거의 6명이 학교에서 사생활 보장에 대한 침해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광주 YMCA 청소년 인권센터, 2002). 최근 발간된 '2004 OECD 교육지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총 49개 국가를 상대로 각종 교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 학생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질문의 예: 친구를 쉽게 사귀는지, 학교에 있으면 외로운지 등)이 527점으로 1위로 나타났고, 한국 학생은 461점 (OECD 국가 평균 500점)으로 폴란드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부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이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을 보다 수월하고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원조하는 아동·가족정책과 교육정책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는 사실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외국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본받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스웨덴 정부는 1999년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전략은 협약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성인들의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행과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 내에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정부서를 설치하여 정부 기관 내 협약관련 활동의 개발을 지원하고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아동 옴부즈맨의 권한과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 협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내에서 협약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서 작성 과정 내에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통해 협약에 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 권리에 기초한 관점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간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끌어 가고 있다. 한 예로 중앙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양성평등주의 관점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모든 학교 교과과정에 남녀아동간의 평등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남아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하고, 여아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체험하고, 게임과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과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사교육, 시·군·구 내 양성평등주의에 관한 훈련을 받은 교사나 교육전문가의 배치, 의무교육제도 내 여권주의 집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양성평등주의의 관점을 전체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떠한 관점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대단히 심도 깊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정부나 국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어도 2년 동안 조사·사정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이를 기초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안이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시킨다. 통과가 되면 새로운 법안이나 개정안에 따라 제안된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충분한 재원을 배정한다. 계획들을 이행시키고 난 후 또 다시 목표달성 여부와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면 계속하고,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방법이나 법 개정을 위한 제안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아동과 관련된 기존의 법들을 협약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먼저 법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특성과 복지를 고려한 제도가 만들어 지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아동후견권 등을 다루고 있는 부모법에서는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이 접근권 즉 자신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나 모를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고, 부모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동의 후견권, 거주지와 부모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된 가족간의 토의세션 즉 “협력을 위한 대화”도 개발되어 이러한 노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아직도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9조 제3항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보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금형을 피하고, 형이 집행될 때에도 재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4)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아동의 의사를 묻고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모든 활동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8년 개정된 부모법에서는 아동의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표현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너무 어려 직접 의사표현을 못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법에서도 가족으로부터의 아동의 분리나 배치와 관련해서도 아동・청소년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담당 직원은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견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웨덴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청소년들과 의사결정자가 지방정부업무에 청소년의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는 "영향력 포럼"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기획과정과 건축에 아동·청소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고 조사·연구하게 하고 있다. 입양의 경우에도 12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양될 수 없고, 입양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법원은 아동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추어 아동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최근 한 조사에서 학생 5명 중 1명이 교사들이 과목, 숙제와 시험과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결과를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법으로 만들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의사존중의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정책이 보편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 먼저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아동수당, 부모보험 등의 가족정책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방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아동학대위원회는 스웨덴 부모들을 위해 "부모의 책" 총 55만 부의 책을 인쇄하여 약국,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출산전 클리닉과 아동복지 클리닉,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보급하였고, 학교,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부모훈련에서 활용하게 하였다. 아울러 이 책은 여러 이민자들의 언어로 그리고 보다 읽기 쉬운 형태로도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또한 유아개방학교와 아동보건서비스센터를 통해 어린 아동들의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사회지원망을 형성하고, 자격을 가진 직원의 지도하에 부모교육도 받으며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소아과도 0~18세 아동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분야로서 공중위생 관점과 예방적 접근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성교육도 학교, 청소년지도클리닉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실시함으로써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담당 특수대상부대에서 직접 학교와 직장에 찾아가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도 한다.

(6) 장애아동과 불법이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심지어는 추방위기에 있는 "숨어사는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게도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아동 한명 당 일정액을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아동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역할은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데 해당 부나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국이 양육지원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손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직이나 휴직 중에 있는 부모의 아동에게도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가능한 한 부모와 함께 생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책임으로부터 휴식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똑같이 여가생활을 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통수단과 개인원조 서비스를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시·군·구 의회는 장애와 관련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행정당국이 제재 또는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도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교육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특수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그 경우 학생 100명 당 전임 직원 수가 40.6명이고, 학생 일인당 약 8,859만원을 지출할 정도로 큰 투자를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과 생활은 일반 아동들과 가능한 한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7) 가족중심적 관점과 실천이 중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안전한 가족과 아동의 양육과 보호로 삼고, 부모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대책들은 가정에서의 보호와 양육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부모에게 아동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아동보육서비스를 설립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립공중보건연구소는 또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중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훌륭한 실천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보급한다. 더 나아가 부모 두 사람 모두와 친밀하고도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동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 하에 최근 수년 동안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과 아동들을 돌보는 일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도록 장려하고자 계획된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 높은 비율의 남성들로 하여금 부모양육혜택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2002년 1월부터는 아버지만을 위한 한달 동안의 부모양육혜택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스웨덴에서는 보건사회부의 재정 지원 하에 "가족회담" 이라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과 그들의 사회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가족 내 아동들을 위한 대안들을 의논하고 제안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족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아동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할 지에 대해 효과적이고도 가능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국은 가족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다른 곳에서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은 필요한 기간보다 보호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아동과 부모간의 긴밀하고도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가족과의 재결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은 가정 밖에서의 아동의 보호는 아동의 가까운 친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과 스웨덴에 친척 없이 온 난민아동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1998년 1월에는 아동에게 대리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국은 먼저 아동이 친척이나 친지의 가정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한편 가족중심적 접근은 부모 중 한 명이나 둘 다 수감 중에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모든 여성을 위한 교정서비스시설과 남성을 위한 최대 규모의 시설에 방문가족이 생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활할 수 있는 주거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과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정서비스시설에서는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특별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수감자들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노력과 관련하여 스웨덴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존권,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교육권 등 모든 권리의 주체로 보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서 활용하고 국가의 모든 법, 정책과 제도를 협약에 일치 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 정책, 제도와 서비스는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는 주로 사후처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대책을 예방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아동은 물론 탈북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권리 보장도 책임지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Ⅷ. 노르웨이의 청소년 인권정책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Ⅷ. 노르웨이의 청소년 인권정책 28)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

(1) 청소년 인권을 위한 프로젝트- Life Before 18 project

UN아동권리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의 아동옴브즈맨(Ombudsperson for Children)은 아동권리협약 포럼, 청소년의회(the National Youth Council), 아동・가정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와 함께 '18세 이전의 삶(Life before 18)'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노르웨이 아동들의 인식을 높이고 능동적 이해를 격려한다.

② 노르웨이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노르웨이 국가보고서에 언급한 다양한 아동 청소년집단들을 포함한다.

③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 유엔아동특별총회의 후속 조처에 공헌한다.

⑤ 다른 나라의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었던 것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개발하고 검토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2002년에 실시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아동・청소년들

28) 이 장은 이재연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집필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 학교와 여가시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즉 아동·청소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중요한 경험들과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일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참가하였는데, 25개 학교의 학생의회는 옴브즈맨의 아동 인터넷의회(Children's Internet Parliament)를 통해 의견을 모았으며, 옴브즈맨 기구인 인터넷 의회에서도 약 6,400명 학생들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또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 임시 보호소 센터, 정신적 장애 아동의 경우는 경험있는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10회의 면담을 통하여 결과를 수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00여명의 10~19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이 1일 또는 그이상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0~3,0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의 웹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은 대다수의 일반적 학생들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삶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 모두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아동·청소년들의 관점은 중요하며, 노르웨이정부는 그 관점들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은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권리협약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2) 국내법과의 조화

노르웨이는 1990년 2월 아동권리협약에 초기에 서명한 국가 중 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나이다. 이후 노르웨이 국회(Storting)는 1990년 11월 8일 이를 비준하여 1991년 2월 7일 효력이 발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그 이듬해, 뉴욕에서 열린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The 1990 World Summit for Children'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향후 10년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증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들은 이 회의 1년 이내에 향후 10년간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이행계획서(National Plan of Action)'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노르웨이는 1999년 5월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통해서 노르웨이의 법안에서 인권에 관련된 세 개의 법(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을 통합하였다.

이후 2003년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노르웨이의 인권법 목록에 통합시켰다. 이는 노르웨이 법과 아동권리협약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아동권리협약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Civil Procedure Act, the Public Administration Act, Adoption Act 등 노르웨이 국내법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동법을 개정하고 Independent School Act를 제정하였다.

그 후 노르웨이 정부는 1999년 12월 인간존엄에 촛점을 맞춘 국가보고서(Report No. 21)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3년의 인권에 대한 UN 국제회의의 제안에 따른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이었다.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의 상황에 대해 노르웨이의 정부가 어떻게 가능한 한 최상으로 인권보호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Human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Rights, 2000~2005)은 노르웨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행동계획(Plan of Action)은 아동들에게 촛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은 아동의 참여권, 아동들이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범죄와의 투쟁, 성적개방으로부터의 보호, Sami(라플란드라 불리우는 노르웨이 원주민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아동노동, 아동과 미디어, 무력분쟁이 아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치 및 국제적 협력관계 촉진에 촛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수민족 아동정책(Report to the Storting No.17)(2000~2001)

소수 민족 집단의 아동들에 대한 조치는 최근 정책수립에서 중요하다. 소수민족집단 아동들 대부분은 학교와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으나, 언어와 교육, 고용과 관련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노르웨이의 아동들보다 조직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교육체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난민, 이민 아동청소년 정책은 다음의 행동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1996년 이민집단의 청소년들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이민집단의 아동·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998년 아동·가정부는 Three year trial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슬로의 구시가인 Gabmle Oslo 주민들의 5세 아동들에게 무료보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2002년 8월 24일, 소수 민족자들과 공동체와의 대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의제중의 하나는 소수민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었으며,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청소년 단체가 토론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참여하였다.

2003년 노르웨이 정부는 피난 아동·청소년 중 동행없이 홀로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총 376,000 NOK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아동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총 96,400 NOK를 지원할 예정이다.

② 청소년 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행동계획

1999년 12월 청소년 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행동계획(Report No.17 to the Storting 1999~2000)을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청소년 갱과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계획등 약 40개의 계획들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③ 여성의 할례 금지를 위한 행동계획

2000년 가을, 노르웨이의 방송과 미디어들은 어린 여아들의 할례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1995년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 의제로 채택하여 여성의 할례에 대해서 강도 높게 금지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여성의 할례 전통에 대한 성인의 인식 변화로 할례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의 몸(상태)에 대한 보호와 지식'이란 프로젝트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교육, 홍보와 정보 교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의 중점 대상은 오슬로에 있는 Somali민족이다. 이들에게 일반적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여성 할례금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의 할례가 여성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학교,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사, 전문적인 의료인, 종교지도자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여성의 할례 금지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의제화하여 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아동・청소년정책

노르웨이에서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동・가정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에서 관할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무부 또는 사회부(Justice or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는 결혼법(Marriage Act), 아동법(Children's Act), 아동복지법(Children Welfare Act)등 아동관련 법령 및 정책은 아동・가정부 장관에게 이관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아동과 가정을 위한 조치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과 관련된 조치들을 넓은 시각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동복지를 위한 3개년 국가발전 프로그램(A three-year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for Child Welfare)이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노르웨이 국회는 1991년 300만 NOK, 1992년 507만 NOK, 1993년 490만 NOK를 배당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프로그램의 목표들을 정하였고, 1993년 이 목표들은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었다. 아동복지법에 포함된 목적들을 보면 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조사든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하며, 종결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특별한 상황의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어떤 아동・청소년도 조사 종결 결정이 된 후 시나 주의 조치에 6주 이상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③ 아동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④ 모든 단계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⑤ 1993년 12월 31일 이래로 모든 주는 많은 아동과 부모들이 가능한 한 함께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안전한 예방 조치에 초점을 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들은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위험에 놓인 아동들의 경우 그들에게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650개의 새로운 대안적 쉼터의 장소가 마련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행정적 조치들이 마련하였다.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안 조직과 주의 새로운 아동복지 서비스 조직 프로그램은 자치시와 주의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결과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공공부문과 정치적 위원회에 있다는 인식과 관련되어있다.

1992년 아동·가정부는 사회부, 법무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성학대에 반대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의 일차적 목적은 아동의 성학대를 예방하고 성학대 당한 아동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지원과 치료에 있다.

(4) 소수민족 아동·청소년정책

노르웨이사회에는 소수민족과 고유한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 'Sami'라 불리우는 토착민족뿐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이 있다. "이민아동·청소년"은 이민자, 난민자, 망명자의 아동과 혼자 망명한 아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민족 구성의 특징은 다른 문화에서 노르웨이사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통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1991년 0~19세 전체 아동 중 37,490명이 이민 집단의 아동이다. 이들은 전체 이 연령대 아동의 3.4%, 20세 이하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이들 중 50%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왔다. 1994년에는 파키스탄(5,012명), 베트남(2,899명), 터키(2,237명), 칠레(1,994명)에서 아동들이 이민왔다.

이민이나 피난 온 많은 외국인들은 수도인 오슬로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외국 국적자의 32%가 오슬로에 살고 있으며, 초등·중등학생의 외국 국적자 41%가 오슬로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약 75개의 서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주들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책은 아동·가정부가 담당하지만, 이민자들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동·가정부와 지방자치·노동부(Local Government and Labour)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992년 5월 지방자치·노동부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계획하고 윤리적·인종적 차별에 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들은 ①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희생자를 위한 지원 ②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③ 사회적 문제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의 단계적 부각 ④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초점을 둔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아울러 1993년 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처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민 아동들에 초점을 맞춘 많은 지원도 제공되었다.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 영양,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노르웨이어의 교육을 제공하며, 각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좀 더 쉽게 노르웨이어에 적응하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부모 없는 난민아동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난민센터를 마련하고 그들의 심리적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노르웨이 이민자들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정부는 1991/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민자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5) 아동위원회(Commissioner for Children)

노르웨이에서 아동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노르웨이 중앙정부의 옴브즈맨청(부)에서는 단위책임자를 보통은 옴부즈맨이라 부른다. 옴부즈맨은 행정처분, 차별대우, 소비자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제 및 아동문제와 관련하여 설치되어 있다. 옴부즈맨은 의회가 설치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옴부즈맨의 책임영역은 각 옴부즈맨을 관장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의회도 옴부즈맨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옴부즈맨은 따라서 행정부에서 고도로 독립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나 행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아동위원회(옴부즈맨)는 다른 분야의 옴부즈맨과는 상당히 다르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아동옴브즈맨(ombudsman) 또는 아동옴브즈(ombud)라 불리운다. 아동위원회, 즉 옴브즈맨은 노르웨이 법 영역의 책임에서 제외된다. 아동위원회의 지위는 다른 옴브즈맨과는 달리 법의 구체적 영역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변인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에 관한 문제의 대변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아동위원회는 1981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1980년 말 Harlem Brundtland 정부에서 아동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옴브즈맨을 위한 법령(No. 5)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동위원회와 관련된 법과 규약의 주요 초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노르웨이에서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이다. ② 위원회는 0~17세 아동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③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부의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아동 기구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법체제에서 아동위원회는 아동·가정부 장관 산하에 있다. 위원회는 법, 사회, 교육, 아동복지, 의학, 문화와 정보분야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아동을 위한 어떠한 기금조성도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동의 상황을 개선시키며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서의 결정을 폐지시킬 권한도 없다. 따라서 아동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아동을 위한 대변인의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통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다.

아동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아동으로부터 질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들로부터 한해에 2,000~3,000건의 질문이 들어오며, 이들은 주로 10~14세 아동이며, 특히 남자보다 여자집단의 질문이 많았다.

1994년 아동가족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1981년에 설립된 아동국의 업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동옴부즈맨의 기능, 역할, 업무능력을 검토하고 아동옴부즈가 취한 조치가 아동들에 미친 결과도 검토하였다. 1995년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이 보고서는 아동위원회에 관련된 법의 수정을 가져왔다. 보고서는 아동위원회는 아동관련 법집행과 행정관행을 모니터하고, 이러한 법 집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의무에 맞는지를 감독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6)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결 라인(Contact line)

아동・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노르웨이 적십자사(Red cross)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Fund)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결 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전화는 아동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주에 관계없이 쉽게 공공지원기구와 연결을 할 수 있다. 1984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되어 1993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4시간 운영하고, 무료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가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992년에는 약 11,000건의 전화가 있었으며, 이중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의 전화가 3%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은 성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많은 아동들은 성 또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협약의 홍보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며, 정부와 자원봉사간의 협조도 얻는다. 아동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협약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아동 권리 인식의 보급을 위해 자원봉사 조직과 학교에서 사용할 교육적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아울러 노르웨이 방송과 지역, 국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청소년 잡지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1991년 아동·가정부는 이를 위해 비영리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약 1.500만(US $ 256,000)NOK가 다양한 아동권리협약 안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협약의 홍보는 1992년에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협약을 노르웨이어와 사미어(노르웨이 토착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8) 아동연구와 국제협력기구(Childwatch International)

노르웨이는 아동연구소이자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인 “Childwatch International”을 1993년에 오슬로에 설립하였다. 협약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의 하나는 정치가나 정책입안자들이 사실에 기초하여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이나 방법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협약의 이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소는 아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효율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 중의 중요한 하나는 개발도상국에서 연구역량을 키우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서 아동연구에 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은 아동가정부가 맡는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개발협력단(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일반원칙

(1) 아동의 정의

1927년 3월의 노르웨이 보호법(Norwegian Guardianship Act)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2) 무차별의 원칙

노르웨이에서 이민자 아동을 포함하여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은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에 명시되어 있다. 노르웨이정부는 모든 사람이 피부색과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사회적 지위, 부, 출생과 다른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와 소수민족, 사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 아동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확대 및 보호를 위해 18세 이전 삶의 프로젝트 실시와, 행동 원칙의 수립과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 인종차별금지법(Act against discrimination)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인종차별근절센터(The center for Combating Ethnic Discrimination)를 설립하여 인종차별에 대항하여 법적인 부분의 검토와 행동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센터는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2~2006년에는 인종주의와 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학교와 교육에서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장려하고 있다.

2001년 청소년의회(National Youth Council)를 통해 선발된 대표자가 2001년 남아연방에서 열린 UN World conference against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 참가후에 노르웨이는 국제위원회의 최종문서에 근거하여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행동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에 대해서 노르웨이의 법적 근거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노르웨이는 이 권고안에 따라 법적 테두리안에서 건강과 교육서비스에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교육법(the education Act), 건강법(the Municipal Health Act), 아동복지법(the Child Welfare Act)을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모든 아동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의 차이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1999~2000년 학기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약 40,000명(전체 학생의 7%)의 학생들이, 중등학교 고학년에서는 7,000명(전체 학생의 4%)의 학생들이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2003년에는 예산을 통해 16~18세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으며, 노르웨이에 3개월이상 거주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아동옴브즈맨(the Ombudsperson for children)과 교육부는 공동으로 반사회적 환경 및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했다. 2003년에는 모든 자치주가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항하는 Dan Olweus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했다. 2002년 9월 국무총리 Kjell Magne Bondevic은 “따돌림에 대항하는 선언서(Manifesto against Bullying)”를 교사연합(the Tercher′s Union), 학부모 연합(the Parent′s Committee), 아동옴브즈맨(the Ombudsperson for children)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복지법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은 적절한 시기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아동법(the Child Act), 아동복지법(the Child welfare Act), 입양법(the Adoption Act) 등에 적용되고 있다.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는 노르웨이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였다. 즉 난민의 국외추방 결정은 아동을 그들의 부모들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난민으로 노르웨이에 혼자 왔거나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동들 역시 부모와의 분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아동과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모가 감옥에 있는 경우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이 부모를 면회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을 조절하고 특히 전화의 사용을 허락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잠시 아동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다.

난민으로 노르웨이에 들어온 아동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원칙적으로 아동이 있고 심각한 범죄자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2003년 1월 현재 약 16,400명이 넘는 난민자들이 이들을 위한 센터에서 살고 있고, 이 중 1/4이 16세 이하의 아동이다. 이 센터에는 많은 여가활동들이 제공되며, 어린 아동에게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999년 아동·가정부는 심리적 위기에 있는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전문상담인이 배치되어 아동들의 위기상담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혼자 노르웨이로 온 아동들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2002년에는 혼자 노르웨이로 온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으로 마련된 센터는 15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상 아동을 수용하는 센터와 15세 이하 아동을 수용하는 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수용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과 학술적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4) 생명·생존 및 발달권

노르웨이는 최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 1990년 영아 사망율 7%에서 2000년 3.8%로 낮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사망률, 사고 사망률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살의 위험이나 자살, 거식증, 정신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를 의미한다.

(5)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가정과 사회에 전달되고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과 지역 발전에도 중요하게 공헌하고 있다.

2002년 아동을 위한 옴브즈맨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61.7%, 15~24세 응답자의 73.1%는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7%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18세 이전의 삶 프로젝트에 의해 이 계획들은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1989년의 Planning and Building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 국회(2001~2002)의 No. 23 보고서는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정부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 지침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의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시들은 아동·청소년 의회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2002년에는 434개의 시중 약 340개 시에서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마련하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고, 청소년 의회는 19개 카운티 중 9개에서 마련되었다. 2개의 주에서는 학생 카운티 의회를 설립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시와 카운티 의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시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 시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이 관심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여가서비스와 같은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만 초청된 청소년들만이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 시도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영향을 보면, 아동·청소년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치적 진행과정에 거의 참여할 수 없지만, 정치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 아동·가정부는 아동, 청소년조직, 청소년 집단과의 연례적 모임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얻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2년 아동·가정부는 http//www.medvirking.no 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98년 12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영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소년 포럼(the Youth Forum for Democracy)을 만들었다. 청소년 포럼은 노르웨이 전체에서 15~26세 사이의 남, 녀 각각 8명씩 총 16명으로 조직되었다. 이 구성원들은 다양한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조직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대표한다. 이 포럼은 교육적 사안, 선거에의 참여,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에 대한 정보 등 약 70개가 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노르웨이 청소년 의회(Norwegian Youth Council)와 인간가치위원회(the Nowegian Government Commission on Human Values)의 주관으로 여름 캠프를 열었다. 이 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의회와 정부의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아동·가정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두 개의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하나는 '가정밖에 배치된 아동들의 위험과 발달'(Chldren who are placed outside the Home-risks and development)로서 노르웨이 사회조사연구소(Norwegian Social Research)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아동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하자(Seeing, listening, to and talking with children)'로 아동복지발전센터(Child Welfare Development Center)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들은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노르웨이의 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고 한명의 대표를 뽑는 학생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초등, 중등(5~7학년), 고등(8~10학년)학교는 각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조직하는 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학생장학사'를 통해서 그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약 85%의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다.

또한 난민아동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권리 역시 고려되고 있다. 이민법에 의하면 아동들이 인터뷰 동안에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인터뷰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한다. 이민국의 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아동전문가가 인터뷰 과정에서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다.

2002년 노르웨이 정부는 이민의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초점을 보면, ① 아동·청소년의 언어와 사회적 기술의 증진 ② 피난처를 찾아 홀로 노르웨이에 온 아동들 감독의 증진 ③ 이민청소년의 문화와 스포츠 참여의 증진 ④ 이민 집단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증진 ⑤ 건강의 증진 등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및 신분유지

2003년 1월 Personal Names Act 가 개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두 성씨 사이에 하이픈(-)을 이용하여 두개의 성을 묶어 하나로 사용하는 등 아동과 부모들에게 이름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1999년 개정된 국적법(Nationality Act)에 의하면 만약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이 출생했을 경우 부가 노르웨이인이면 그 아동은 노르웨이의 국적을 갖게 된다. 입양아동중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일 경우 아동은 자동적으로 노르웨이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2002년 3월 아동·가정부는 아동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아버지(paternity)를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생물공학법(the Biotechnology Act)은 인공수정의 경우 익명으로 정자기증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은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의하여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아야 한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2) 표현의 자유

아동들의 표현의 자유는 아동법에 보장되어 있다. 다만, 술과 담배의 광고, 과장된 상품의 선전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누드사진의 표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모든 비디오필름과 비디오테이프들은 출시되기 전에 영화검열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film cens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UN아동권리위원회는 노르웨이의 기독교, 종교와 윤리교육 커리큘럼이 다른 종교교육에 비해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다민족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이를 통한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르웨이는 1997년 가을에 종교 및 윤리교육 과목(Chiristan Knowledge and Religious and Ethical Education : CKREE)을 모든 초・중등학교에 의무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두개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들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에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교과목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결정에 대해 노르웨이 인권단체(the Norwegian humanist assoiation)와 노르웨이 이슬람회(the Islamic Council Norway)는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법에서는 CKREE를 유지하되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안내를 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 안내서는 노르웨이어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 발송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은 면제 동의서에 부모가 사인하면 면제된다.

(4) 사생활 보호 및 고문,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노르웨이의 정신건강보호법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아동이 강제적으로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정신건강보호소에 보내졌을 경우 정신건강보호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화 사용, 서신교환을 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다. 즉, 정신건강보호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외부와의 접촉, 통신의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위해정보접근으로부터의 보호

2001년 가을 아동·가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Internet)을 세웠다. 이 행동계획은 가정에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목적이 있다. 행동계획 조치들을 보면, 부모들이 인터넷사용 가이드를 교육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와 사용자사이의 협조를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광고에 대해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검찰청(The National bureau of Crime Investigation)은 hotline을 설치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 불법적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2)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최근 노르웨이 사회는 젊은층의 혼전동거, 양성평등, 이혼의 급증 등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노르웨이에서 부모의 책임은 아동법에 근거한다. 아동법 30조에는,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책임아래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고 있고,” 31조에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사람이 부모의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44조는 “아동은 그들 부모들이 분리되어 사는 경우도 양친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50조에서는 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도 동거하지 않는 다른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0년 노르웨이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 중 50%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42%는 동거하는 커플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8%는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다. 그런데 아동의 대부분인 약 78%는 부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와 같이 살고 있고, 모자세대 가정은 16%, 부자세대 가정은 2%에 불과하다. 또한 42%를 차지하는 동거커플에서 출생한 아동 중 오직 14%만이 동거하는 부모와 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동거부부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21,400명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였는데, 이중에서 아동의 2/3는 부모의 이혼으로, 1/3은 동거자인 부모가 헤어지면서 발생하였다. 부모의 이혼이후에 89%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11%의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이 중 약 20%는 부모가 재혼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 부모관리훈련(parent management training : PMT) 프로그램의 실시 등 가정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2002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4,600만 NOK, 2003년에는 5,600만 NOK 예산이 배정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5~12세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도 부모관리훈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과 부모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PMT를 통해서 부모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 아동사이의 관계 개입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사회적 행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이 프로그램을 학교, 응급 구호처, 위탁가정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부모역할강화훈련 프로그램과 다체계치료 (Multisystem Therapy : MST)도 실시되고 있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과 필요한 보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81년 4월의 아동법에 의하면 부모는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동이 12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가 되었을 때 아동은 본인이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가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아동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의 결정은 아동의 소망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법은 7세 이상의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가족의 재결합

이민법(the immigration Act)과 이민규정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가정의 가족 재결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피난과 망명자 정책을 통해서 혼자 망명 온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입양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800~900명의 아동들이 입양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해외아동 한 명당 22,500 NOK을 지원한다. 1986년 2월의 입양법을 보면, 12세 이전 아동의 입양은 아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입양된 아동은 18세가 되면 그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12세 이상 아동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생존 및 발달

건강서비스 법(Municipal Health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장애아동

노르웨이는 전염병관리법(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Act) 3~8조에 의해 0~6세 아동들에게 예방접종프로그램을 학교와 공공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모든 예방접종은 SYSVAK에서 통제하고 있다.

1992년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는 장애자를 위한 정부 행동계획(Government's plan of action for disabled)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장애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장애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 기금 마련을 하였고 이에 3,300만 NOK가 배정되어 선천적 신체 장애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문화부의 스포츠국은 장애자들의 신체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주는 가능한 장애의 아동들이 일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3세 이상 장애아동의 유치원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2000년 한해동안 약 1,900명(전체아동의 2%)의 아동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중 0~17세 아동 280명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는 보행자길과 자동차길을 구별하여 설치하고, 특히 자전거 길의 설치를 권유하며, 아동들에게 헬맷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3) 보건서비스

노르웨이에서의 건강서비스는 보건소를 통한 보건서비스(Municipal Primary health services)와 병원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보건소의 진료와 약의 처방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아동들은 개인적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도 가능하다. 모든 유치원아동들은 주의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사들은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12~16세 아동이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의사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4) 사회보장, 아동서비스 및 시설

1992년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들을 위한 예산으로 13,128 NOK를 지출하였다.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예방을 위한 행동계획(the Plan of action to prevent unwanted pregnancies and abortions)의 해로 정하였다. 이는 자궁과 임신,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낙태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에 낙태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12만 NOK를 배정하였다. 이러한 예방교육의 결과로 계속 증가하던 낙태건수가 주춤하였다. 2000년 전체 낙태건수는 14,655건이었는데 이중 10대의 낙태건수는 2,599건으로 18%에 해당하였으며, 2001년에는 2,448건으로 1.3%가 감소하였다.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노르웨이의 아동들은 교육 개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특히 16~19세 청소년의 경우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주들은 청소년이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종류의 학교도 다니지 않거나 학교과정을 그만두는 학생들을 위한 후속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근로환경법에 의하면 14세 이하의 아동들은 의무교육기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15세 이상의 아동들은 일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적으로 전일제 노동을 할 수 있다.

(2) 교육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들의 의무교육기간은 10년이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mes)의 개발과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3년 노르웨이 국회는 논란이 되어 왔던 6세 아동의 조기 입학을 결정하였다.

5) 특별보호조치 아동

(1) 망명 아동

노르웨이에 오는 망명객이나 피난처를 찾는 많은 아동은 보호자를 동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3,688명의 미성년자가 그들의 보호자와 같이 피난처를 찾아서 노르웨이에 왔다.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피난처를 찾기 위해 노르웨이로 온 경우는 2002년에는 894명, 2003년 3월까지는 130명이었다.

피난민들의 피난처 신청을 위해 걸리는 시간은 2001년 이래 단축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충실한 보호자를 찾고 나이나 여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서도 독립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200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3개월 안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학교에 다니게 된다. 여러 부처간의 협의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그램 개발을 위해 행정 자치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에 Salangen 지방 당국이 이를 위해 250,000 NOK를 지원받아 수행했다. 또한 각 지역사회는 보호자 없는 아동의 정착을 위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망명가족의 지역사회 유입은 지역사회입장에서 볼 때 이들을 위한 기금도 같이 오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렇게 가족이 있는 아동은 쉽게 정착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더구나 지방 정부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호자 없는 아동을 정착시키면서 그 아동이 21세 되기까지 매년 노르웨이 96,400 NOK를 지급하는 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SOS 아동 마을에 기금을 주어서 아동 수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되고 있다.

(2) 교육

16~20세의 보호자 없는 아동의 초·중등 교육은 1998년 이후 주목을 받아왔다. 노르웨이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해 초. 중등교육에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시험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113개의 지방 정부는 16~20세 사이의 아동에게 주당 30시간의 특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약 1900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중 40%는 여아이다. 모든 사람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보호자 없는 망명 아동에게도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16~18세 망명처를 찾는 아동과 그 이하 연령의 아동에게서도 가능하도록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주정부는 새로 도착한 망명자 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동안에 접수 센터에 등록한 이후에 아동의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난민 망명아동의 심리학적, 정신과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들은 보건 당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국의 사회 심리 팀에 의해서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Bergan의 심리위기치료센터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을 위한 집단 치료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전문적 치료가 도입되고 있다. 2000~2001년 사이에 발표된 노르웨이의 피난 및 난민 정책의 보고서 17항은 이러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고, 2002년에 발표된 피난민을 위한 보건 정책에서도 위의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3) 무력분쟁하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에 대한 토론

최근에 노르웨이 병역법은 UN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 18세 이전에 아동이 무력분쟁에 개입되는 금지하였고 이는 2002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조항은 18세 이전 아동의 경우 지원자도 징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4) 청소년 관련법의 집행

노르웨이에서 보고되는 법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 비율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발생범죄의 1.5%는 법적 책임이 없는 15세 미만에 의해서, 2~3%는 15~20세 사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이들의 일부가 폭력, 마약 등과 관계가 되고 대부분은 반문화적인 범죄이다.

1999년 노르웨이정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의 근본은 법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가 기본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 법집행 기관, 아동, 청소년, 부모, 자원봉사자 그룹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계획의 하나로 7개 지역사회에서 예비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15~17세 사이의 법을 어긴 청소년에게 기존의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달리 계약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하게 하였다. 이 계약은 청소년, 보호자, 사법 당국과 지역사회 사이에 계약을 맺어 법을 어긴 청소년 자체가 벌 대신에 계약에 명기된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범법을 한 청소년의 행동 양식이 변하기를 기대하였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통하여 정부는 2002년 봄에 법률개정을 위한 여러 제안을 하였다. 제안의 결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23, 29, 54조의 수정이 가해졌다. 수정안은 아동을 좀더 관찰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아동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12~15세 아동·청소년의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의 경중에 따르지만 수사의 책임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 수사는 어린 나이의 범죄자에 사회가 그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이 범죄에 관계되면 경중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응 방안을 아동복지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물론 아동 복지국은 수사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협력하게 된다.

3. 시사점

1) 권고사항의 이행

노르웨이의 아동 청소년 인권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변화, 난민아동과 이민아동에 배려 및 정책, 아동을 대변하는 아동 옴브즈맨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노르웨이 아동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보급의 부진함,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을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 국내법과의 부조화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노르웨이의 인권법 목록에 통합시켰다. 이는 노르웨이의 법과 아동권리협약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아동권리협약이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Civil Procedure Act, the Public Administration Act, Adoption Act 등 노르웨이 국내법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동법을 개정하고 Independent School Act를 제정하였다.

(2) 아동권리협약 홍보를 위한 노력 부족

노르웨이는 아동권리협약 홍보부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아동 옴브즈맨(Ombudsperson for Children)은 청소년의회, 아동·가정부와 함께 '18세 이전의 삶(Life before 18)'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결국 이 프로젝트 수행과정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권리협약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방송과 지역, 국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청소년 잡지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1년 약 1.500만(US $ 256,000)NOK가 다양한 아동권리협약 안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3)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부족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에 대해서 노르웨이의 법적 근거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노르웨이는 이 권고안에 따라 법적 범주안에서 건강과 교육서비스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법과 건강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법의 개정과 조치들을 통해서 난민, 망명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기독교 교과목에 대한 교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노르웨이의 기독교 교육의 강제성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감안하여 노르웨이의 교육법에서는 CKREE를 유지하되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안내를 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 안내서는 노르웨이어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 발송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의 학생은 면제 동의서에 사인을 통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시사점

노르웨이 아동청소년 정책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는 아동복지 정책을 아동·가정부에서 중심이 되어 행하고 있다. 아동·가정부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프로젝트의 진행, 법의 개정을 위한 제반 여건의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행동계획 및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확대하고자 노르웨이 정부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등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있다. 또한 최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시도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하고도 시급함을 인식하여 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책 수립과 실시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의 조사이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욕구와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프로젝트(Life before 18 Project)를 실시하였다. 즉, 정책의 수립 전에 그들의 욕구와 아동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시되어야 진정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국적 단위로 아동·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 정책이 성인사고 중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르웨이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대변하는 아동 옴브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 옴브즈맨은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아동의 의사대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아동 옴브즈맨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여론 형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아동 옴브즈맨 뿐 아니라 청소년의회와 청소년 포럼을 통해서 아동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노르웨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없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르웨이와 같은 아동옴브즈맨, 청소년 의회, 청소년 포럼등의 제도적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넷째, 노르웨이 사회에서 난민아동과 소수민족 아동은 사회문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정부는 소수민족과 난민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의 개정과 아울러 임시피난처 마련등 기구 마련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주안점은 난민, 망명 아동들이 노르웨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난민, 망명아동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체 노르웨이 사회를 대상으로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 뿐 아니라 탈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탈북아동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한 후 남한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도적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유해환경의 노출에 대한 정부와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범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여러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Ⅸ. 캐나다의 청소년 인권정책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3. 시사점

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Ⅸ. 캐나다의 청소년 인권정책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요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캐나다는 1991년 12월 13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협약 21조와 37조(c)를 유보하였다. 1994년에 1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차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국제조약을 승인하고, 법무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조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권리 및 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청소년법 개정 뿐만 아니라 아동매춘, 아동성관광사업, 성희롱, 여성생식기훼손대책마련 등에서 입법화 노력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전・중반기에는 높은 국채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가족을 지지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98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 중 프로그램 지원에 81억달러를 사용하였다.

국가아동아젠다(National Children's Agenda : NCA)는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아동복지 강화정책을 펼쳐 왔으며, 이중 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 : NCB)은 경제위험이나 빈곤으로 생계위험에 있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저임금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원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난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부모의 사회참여 및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캐나다아동세금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 : CTB)을 통해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저·중소득층 가족을 위해 매월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최고 48퍼센트의 저소득층가족이 지원을 받았다. 캐나다 연방과 주지역 정부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에 연방아동지지 가이드라인(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을 발표하여,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아동수당 지급과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동초기의 건강과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역공동체활동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 for Children : CACP), 원주민헤드스타트 프로그램(Aboriginal Head Start Program : AHS), 태아영양교육 프로그램(Canadian Prenatal Nutrition Program : CPNP)은 다른 부처와의 협력, 비정부조직과 공동체(community)와 함께 아동초기발달, 부모참여와 교육,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법 법안(Bill C-27)은 아동 성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까지도 기소하도록 하였다.

지역공동체 안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on Community Safety and Crime Prevention)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한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자원지원을 포함하여 범죄나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만들어나갈 것을 지지한다.

1995년에는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제점과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리더쉽, 문제해결을 위해 연방중심의 아동·청소년부(Childhood and Youth Division)를 만들었으며, 아동국(Children's Bureau)의 부서가 바뀌면서 정책을 지원하고, 향후경향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서는 또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책개발 및 조정을 지원한다. 1997년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무장관을 선출하였다.

1993년에서 1997년에는 원주민아동을 포함하여 원주민의 안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식하여 생득권정책(1995)을 펼치고, 원주민행동계획(Aboriginal Action Plan)으로 원주민들의 자치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구(Institutions)간의 새로운 진전된 관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인들과 경제지원에 힘쓴다.

역량키우기(Gathering Strength)는 학교기숙사내에서의 신체적·성적 학대로부터 치유하는 공동체, 원주민언어프로그램, 원주민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주택수 증대, 상수도나 하수구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확보 등의 대책들을 포함한다.

1994년에 시작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연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 NLSCY)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통계조사를 위한 장기간의 프로그램이다. 이는 긍정적인 아동발달에 공헌하고, 정부가 광범위하게 유용한 정책을 개발·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요소들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보다 더 넓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1993년에 연방정부는 캐나다스쿨넷(Canada's School Net)을 설립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모든 캐나다 공립학교와 공립도서관에 인터넷 접속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아동의 안녕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였다.

(2) 아동관련 정책 규정과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기관

아동권리는 캐나다 외교정책 내의 우선사항이다. 캐나다는 세계전역에 아동권리를 촉진하고,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캐나다는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타국간의 건설적인 관계형성 및 유지에 효과적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개발처(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CIDA)는 권리를 촉진시키고, 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타국가의 아동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아동참여증진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건강 및 영양과 교육분야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지원한다.

1996년에서 1997년까지 CIDA는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56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식품원조 등의 많은 지원은 아동에게 도움이 되며,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다국간의 기구에 제공하고, 많은 추가적인 프로젝트 또한 지원한다.

국제개발처의 협력지부(Partnership Branch)는 아동권리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조직내의 많은 협력자들을 후원한다.

1995년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여성을 위한 세계회의”에서 선도역할을 하는데, 이 회의는 여성을 위해 많은 주요한 업적을 남겼던 중요한 회의이다. 또한, 캐나다는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 : PFA)채택에도 앞장섰는데, 이는 “유년시절의 차별과 방임이 일생에서, 주류로부터 박탈되고 제외되는 악순환을 시작하게 된다.”는 인식하에서, 여아들이 PFA에서의 관심분야의 하나가 되었다.

1996년에 외교담당부는 아동권리협약특별고문을 임명하였으며, 아동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NGO단체, 학술공동체, 공·사적단체와 함께 일하였다. 특별고문은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적·국제적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1994년 이래로, 캐나다는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여아들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CIDA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UNICEF 지부와 캐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비정부기관은 여아의 기초교육증진을 위해 1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 감수성(gender sensitivity)훈련을 강조하고, 교과과정을 개발하며, 여아의 교육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와 가족 및 국가가 함께 노력하였는데,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각에 인원을 늘렸다.

1997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동노동도전기금(Child Labour Challenge Fund)을 만들어 아동노동착취철폐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공헌하였으며, 1998년에는 "청소년성적착취 국제정상회의"를 열었다.

CIDA는 아동·청소년을 발달지원프로젝트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책입안포럼과 옹호자들이 소년소녀들의 의견(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정책을 펼쳐왔다.

1996년에는 "캐나다의 아동-캐나다의 미래" 라는 주제의 국가정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대표단에 의해 작성된 최종보고서에는 경제정책, 임금지원, 사회적인 지지, 건강, 교육, 아동양육, 청소년사법과 원주민 아동에 대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로부터 펀드를 받아, 유니세프캐나다는 연방국을 위한 협약의 훈련과정 및 "아동권리협약: 캐나다법정에 사용되어질 실질적인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사회개발협의회(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 CCSD)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동과 그 가족과 관련된 건강·사회경제적 필요의 범주를 나타내는 "캐나다아동의 발달" 이라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캐나다아동권리연합(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 CCRC)은 50개 이상의 NGO가 연합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통합하는 대책 또한 개발되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보고기간 동안, 캐나다정부는 캐나다의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에 관한 자발적인 부문과 협력하여 일했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50개 이상의 NGO를 대표하는 기구인 CCRC에 대해 협약이행의 모니터링에 대해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지침방안에 있어서 협약의 원칙들을 통합하는 대책 또한 개발되었다.

아동자금파트너(Partners for Children Fund)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21개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캐나다와 국제비정부기관간의 혁신적인 제휴를 조장하였다. 기금조성의 주요한 목적은 청소년의 참여, 공동체참여, 공공인식 및 교육, 아동권리옹호와 파트너쉽과의 연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3) 협약공표

캐나다문화유산부의 인권프로그램(Human Rights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은 인권에 관한 인지도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NGOs를 지지하고, 많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다. 한 예로, 인권통신망(Human Rights Internet)은 캐나다 내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디렉토리를 생산하였으며, 아동권리를 위한 캐나다연합청소년참여위원회(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of the Canadian Coalotion for Rights of Children)에 의해『Say It Right!(권리라고 말해)』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1993년에 캐나다정부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아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20일을 아동의날(National Child Day)로 제정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보급

캐나다문화유산부의 인권프로그램(Human Rights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에 의해 복사본이 연방 및 주당국과 인권위원회, 연방아동지지자, 시민연합단체, 아동문제를 다루는 각지의 비정부조직, 공립도서관과 교육기관 및 다른 정부출판사에 배포되며, 일반대중에게도 이용가능하도록 정부출판물의 카달로그도 함께 무료로 배포된다.

2) 아동의 정의

의회에서는 결혼가능연령을 16세에서 성년의 나이로 바꾸기 위해 이혼법(Divorce Act)을 개정하였다. 성년의 나이는 주(provinces)마다 다르며, 앨버타, 마니토바, 에드워드섬, 퀘백과 사스카추완에는 18세, 온타리오, 크리티쉬 컬럼비아,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서북지방, 누나부트와 유콘강 지역은 19세이다.

연방 담배법(Tobacco Act)에 따르면, 아동 연령을 이전의 16세에서 18세로 변경하여 아동에게 판매를 금하고 있으며, 국방법(National Defence Act)에서도 18세 이하는 어떤 교전에도 참전하지 않도록 하며, 총기법(Firearms Act)에는 18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정의한다.

3)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캐나다권리헌장과 자유권 15조에는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 특히 인종, 소수민, 피부색, 종교, 성, 나이, 정신적 혹은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인종차별철폐(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를 위한 국제적인 날(International Day)을 "3월 21일 캠페인" 날로 정하여,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답에 참여하도록 하고, 팜플렛과 가이드북, 탄원서와 인종차별금지(Stop Racism)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국제연합헌장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한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의료보건서비스법(현재는 의료보호법으로 개정됨)과 병원보험법이 농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여 수화통역을 하지 않아 국제연합헌장 1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록 아동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문화유산부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우선, 민족, 인종, 종교, 문화공동체내에 충분히 활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전략개발을 원조하고, 민족, 인종, 종교, 문화분쟁과 분쟁동기를 유발하는 활동들을 반대하는 공동체들의 움직임을 촉진하게 하며, 문화다원주의에 대해 공공인식, 이해와 공적인 토론 등을 강화한다.

열린의회(Open House Canada)는 비영리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교류프로그램과 국가포럼 관리를 하도록 한다.

스쿨넷(SchoolNet)은 국제적·문화적 인식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리학, 역사, 인류, 문화 및 타국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한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연방비행청소년법(federal Young Offenders Act)은 다른 청소년사법센터의 안전을 포함하여 비행청소년의 배치장소를 결정하는데 있어 아동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세금수당은 1993년에 아동을 지지하는 연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저·중소득층가정에 세금수당을 지급한다.

(3) 생명·생존 및 발달권

총기법(Firearms Act)은 총기류에 의한 아동(과 어른)의 죽음이나 상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1995년 12월에 통과되었다. 국방법(National Defence Act)은 1998년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1차보고서 제출 이후 원주민(First Nations)과 에스키모족(Inuit)과 혼혈인(Metis)공동체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1995년에 원주민자살예방워크샵(Aboriginal Suicide Prevention Workshop)이 개최되었으며, 1997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와 Nishnawbe-Aski 국가의 정부사이에서 자살률 감소와 다른 관련문제를 검토하고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7년 2월에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의 주최하에 청소년과 연장자회의(Youth and Elders Conference)가 개최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500명 이상이 참가하여, 원주민태생의 청소년들의 자살과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캐나다는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앨버타 아동서비스국은 아동에게 계속적인 토론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앨버타의 아동·청소년의 시도(Children and Youth Initiative)와 아동지지프로그램(Children's Advocate Programme)과 같은 프로젝트는 아동의 참여를 증진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증대되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두어 아동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년을 위한 '캐나다정부의 웹포털사이트'의 개발 및 발달에 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을 위한 'Centre of Excellence for Children's Well-Being' 의 설립을 위해 33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03년 4월에 개정한 청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은 청소년 사법 분야 정책발전 및 실행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청소년 법원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데,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하며, 일부 청소년단체는 23세까지 가능하다.

개정법에 의해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은 성인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아동권리협약 37조 3항의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 주요 청소년 인권현황과 정책

1) 시민권과 자유권

(1) 이름과 국적

캐나다에서 출생등록은 각 지방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캐나다시민권과 이민관련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해외입양된 아동의 시민권 획득에 대해 입법정부에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캐나다시민법(Citizenship of Canada Act)은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신분유지

생득권정책(Government of Canada's Inherent Right Policy)은 원주민의 자치정부 배치를 결정할 때, 이혼법에 따른 시민권 절차에 의해 사법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표현의 자유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캐나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ritage)는 “CREDO”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기본권 목록을 만들고, 포스터, 시, 그림, 웹페이지, 랩송, 퀼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웹사이트는 또한, 자신들과 다른 청소년들을 접함으로써 다른 관점들을 수용하고 더 좋은 생각이나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캐나다인의 효과적인 정보기술 사용증진을 위해 산업부(Industry Canada)가 선보인 스쿨넷(Schoolnet)을 통해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5세에서 18세)의 아동들에 의해 제작되는 월간 인터넷신문으로 스쿨넷뉴스네트워크(SchoolNet News Network)가 있다.

‘Hooked on School’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위험에 처해있거나, 이미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로, 청소년이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공유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의 결과에 대해 익명으로 글을 올려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도록 한다. 이 포럼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격려하며, 그 결과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Book Nook’은 아동・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책을 검토하고 추천한다.

‘가족보물(Family Treasures)’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로, 역사시간에 배웠던 문서나 유물들을 가정에서 찾게 하여 흥미를 촉진하고, 역사적인 아이템을 온라인상에서 “보고 말하는” 코너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이 사이트는 박물관에 링크가 되어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 정보접근권

① 매스 미디어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는 방송법(Broadcasting Act)에 제시된 정책에 따라 모든 통신을 관리·감독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자금제공 및 성역할 정형화나 폭력에 관한 지침을 지키도록 하였다.

② 도서보급

도서출판산업개발 프로그램(Book Publishing Industy Development Program)은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각 학급에서 교과지침서 시리즈인 “Read About It”을 읽을 수 있도록 캐나다아동도서센터(Canadian Children's Book Centre)에 자금을 제공한다.

(5)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 신념, 출판이나 다른 의사소통수단에 따른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 및 양심, 종교의 자유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장전(Canada Charter)의 2(c)와 2(d)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상황에 있을 때에 (예 :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의 한 판결에서는 종교적 믿음 때문에 아동의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해 종교의 자유보다 아동의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수혈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상이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보다는 생명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캐나다장전(Canada Charter)의 2(c)와 2(d)에 명시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앨버타(Alberta)에서는 체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모자문위원회(Parental advisory committees)가 학교에서의 대안적인 체벌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1) 분리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의 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 가족중재(Family Mediation Canada)는 “변화하는 가족: 분리와 이혼속의 아동” 이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록들을 수집하였는데, 이 목록에는 부모,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그 외의 관계자들을 위한 비디오, 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province)의 1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부(Status of Women)는 공동체와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동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단체)들에 대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 정부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법의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아동중심가족정의를 착수하였으며,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자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Focal Point on Separated Children in the Americans’ 에서는 분리된 아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문서화하였다.

(2) 가정의 재결합

의회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권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Justice and Human Rights)는 더 이상 캐나다법에서 결혼의 정의가 일부일처(one man-one woman)로써 정의되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실제적으로 동성결혼을 하여 이미 아동을 키우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러한 가정의 아동 또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조치들을 강구한다.

(3)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캐나다범죄규정(Criminal Code)에는 폭력을 동반하여 아동을 유괴한 자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section 279(1)에 제시된 범죄에 미귀환을 포함시키고 있다.

(4) 양육비 회수

연방예산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데, 연방 아동지원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아동지원 세금 처리변경,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세금수당 개정, 지원책 시행을 위한 개선법안 등이다. 여기에서의 연방 아동지원 지침은 1997년에 법제화되어 부모의 갈등감소, 법정소송비 감소, 소득(income)정도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을 비롯한 아동지원정책 펴고 있다. 아동지원 지침은 아동지원금 방식을 이혼법에 따르기로 변경하였으며, 이혼법 개정안들은 아동지원지침의 틀을 만들고, 소득세법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개정안들로 가족명령동의이행원조법(Family Orders and Agreements Enforcement Assistance Act : FOAEA)이 제정되었으며, 양육비가 3개월이상 연체된 자나 3,000달러의 연체가 있는 자에 한해 자격증(여권, 비행, 해상) 발급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법무부(Justice Canada)는 무료전화상담이나 인터넷사이트, 연방양육비지침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간행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지원지침과 이행이니셔티브의 사회적인 배경에 관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표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재판관, 중재전문가와 부모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아동지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단체, 공적인 법률교육과 정보기관 및 가족중재(Family Mediation Canada)와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관리변화·발달·테스트·모니터링과 평가, 공동체·공적인 법률교육과 정보프로그램, 전문가적인 개발훈련활동 등을 지원한다. 민간단체에서도 개발 및 전문적인 훈련과 공적인 법률교육과 정보매체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효과적인 양육비지원을 위해 연방·주정부·지방정부 추진단이 결성되어 이행, 모니터링, 입법변경 안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한 아동지원지침 이니셔티브(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Initiative)의 자금제공프로그램(Funding Program)은 4개의 프로그램인 실행(implementation), 법률시행(enforcement), 공적인 법률교육 및 정보와 중재훈련, 전문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가정환경 상실 아동

대리양육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연방정부는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대해 각각 1,270달러씩 지급하고 있으며, CIDA의 인도주의적 지원활동(humanitarian assistance work)은 가족통합과 대리양육을 포함한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지원되었던, 북르완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아동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르완다 가족에게 입양될 것을 권고하고, 외상을 입은 아동을 치료하며, 특별한 사회복지사(전문요원)들을 조직하여 훈련시킨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 입양

국가입양담당부처(Natoional Adoption Desk)는 퀘백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가들과 함께 노력한다. 1996년 12월에 해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에 관한 헤이그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이 조약은 전 지역에 적절한 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당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7) 아동학대와 방임

형법규정 43항(Section 43 of the Criminal Code)은 부모, 교사, 부모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초보건 및 복지

(1) 생존 및 발달

정부는 캐나다원조계획(Canada Assistance Plan : CAP)과 진행프로그램재정(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 : EPF)을 캐나다보건사회환원(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 : CHST)으로 변경하였다. CHST가 금융원조를 하며, 고등교육, 건강, 사회복지와 사회지원하는 연방자금을 지방 및 주지역 차원에서 원조하도록 하였다.

Newfoundland와 Labrador반도의 행정구는 소득(income)지원에 대해 아동과 가족에게 지불되는 기초수당(basic benefit)을 줄이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동수당 정책에 찬성하여,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1999년에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하였으며, 뉴펀들랜드와 Labrador의 아동수당에 재투자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장애 아동

장애인고용 사회복귀법(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시 정부가 50퍼센트를 지원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장애인 부양가족에게는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세금대책에 아동과 관련된 장애비용(disability cost)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세금 공제에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로 물품이 제공되기도 한다.

많은 연방지원 주택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비영리주택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주택을 특별히 디자인하였으며,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둔 가족들에게도 적용된다.

1981년 이후, 신체장애인을 위한 주거프로그램(Rehabilitation Residential Assistance Program : RRAP)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주택변경이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융자나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2003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는 4개의 세액공제 즉,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의료비용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반환 가능한 의료비용세액공제(refundable medical expense tax credit), 육아경비공제(child care expense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3) 보건서비스

영양조정프로젝트(Deficiency Control Project) 는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 실시하였다.

아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행동계획(Community Action Plan for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hildren : CAPC)은 지역공동체가 출생에서부터 6세까지의 아동의 건강과 발달의 요구를 다루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CAPC는 저소득층 가족, 십대부모 가정, 발달지연 경험아동, 사회적·정서적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나 학대 및 방임아동 등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50개 이상의 CAPC 프로젝트는 매주 56,000명 이상의 아동과 부모를 담당하며,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통해 연방 및 지방과 지역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된다.

캐나다임산부영양프로그램(Canada Prenatal Nutrition Program : CPNP)은 빈약한 건강과 영양부족으로 위험한 임산부를 위해 지역을 기초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CPNP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알코올 남용이나 스트레스, 가족폭력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음식제공과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999년에는 280개의 프로젝트가 400개의 원주민(First Nations)과 에스키모족 지역사회(Inuit communities)에 실행되었다.

CPNP의 일부분으로서 정부는 지방 및 지역(First Nations와 Inuit communities 및 다른 NGO와 지역공동체조직)과 협력하여 태아기알코올증후군(FAS : Fetal Alcohol Syndrome)과 태아기 알코올영향(FAE : Fetal Alcohol Effects)을 위해 예방 및 공교육실시 노력을 강화한다.

(4)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 서비스와 시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연방정부는 아동양육창시기금(Child Care Initiatives Fund : CCIF)을 통해 육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으며, 1998년에 소개된 국가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 : NCB)은 사회정책내에서 연방과 지방 협력의 가장 최근의 예시중의 하나이다.

NCB의 목표는 가난 예방 및 감소, 저임금 가정을 위한 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복지의 장벽(welfare wall)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부는 매월 가족의 수입과 가족크기를 고려하여 모든 저임금 가정에게 세금을 면제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빈곤이 감소하였는데, 1996년의 16%에서 2000년에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원주민아동(First Nations Children)은 다른 아동들처럼 아동세금수당(Child Tax Benefit)과 매월소득수당을 받는다. 2003년 현재 한 해에 5,000달러 이상 지급받고 있으며, 2007년까지는 6,200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5) 생활수준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은 새로운 주택건축, 기존주택의 수리 및 현대화를 증진한다. 1차 보고서에서 이미 저소득층의 주택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주택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캐나다주택융자조합(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 CMHC)은 휴식처강화시도(Shelter Enhancement Initiative : SEI)를 착수하여,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의 기존의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였다.

1999년에 정부는 7억 5300만달러를 “National Homelessness initiative”를 실행하기 위해 배당하였다. 지역공동체의 협력시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공동체가 홈리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분리된 자금제공은 청소년, 원주민과 다른 취약그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당되었다. 2003년 3월에, 정부는 홈리스를 위한 3개년 계획하에 추가로 4억 500만을 투자하였다.

1996년에 정부가 원주민 지역공동체(First Nations community)를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주택의 17퍼센트가 증가하였다. 5년 후에 정부는 추가로 2억을 투자하였다. 또한, 캐나다주택융자조합(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 CMHC)은 보류하였던 원주민의 주택수리비용을 대출해주었다. 1996년 3월과 2002년 3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월 사이에 14,800명의 새로운 주거자가 생겨났으며, 2004년 현재, 거의 90,000의 주택이 예비되어 있다.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국제개발처(CIDA)는 기초교육의 질과 문해율을 높이고, 수적사고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교육을 통합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건강과 영양관련 기술을 도입하였다. 교과교육을 통해 인권과 평화교육을 증진하였다.

(1)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지식, 기술, 직업경험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캐나다 청소년 3분의 1(약 100만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1996년에서 1997년에는 시간제 등록(학점이수)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43만 명이나 된다.

(2) 교육의 목표

산업부 프로그램인 스쿨넷(SchoolNet)을 통해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의 모든 공립학교 및 공립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1999년 3월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학교와 도서관이 접속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스쿨넷을 통해 지방 및 지역공동체, NGO단체들과 정보기술회사 및 다른 민간단체들과, 2001년 3월까지 학교에서 교실까지 모든 접속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웹사이트(http://www.schoolnet.ca)를 이용하여 1,000개 이상의 서비스와 자원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수집프로그램(Digital Collections Program)은 모든 내용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켜 청소년들이 정보기술과 사무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 수상(Program Award)은 스쿨넷상에 전시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주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15세에서 30세까지의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고용하는데, 회사나 단체, 학회, 박물관, 도서관, 공문서보관소, 교육기관 및 그 외의 단체들에게 주어진다. 1998년에 이 프로그램으로 230개의 모든 주나 지방에서 1,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고용되었다. 대서양 캐나다 기회국(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 ACOA)은 청소년중에 기업가의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업가정신 발달전략을 지원하는데, 1998년에는 유치원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60,000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등록되었다. 더욱이, 대략 500명의 학생들은 대서양 캐나다 기회국이 자금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내에서 매해 일을 시작한다. 기초프로그램과 같은 교원양성(교사훈련) 및 청소년벤처활동 또한 전략의 한 형태이다.

과학증진을 위한 Michael Smith상은 개인이나 단체 및 학교체제 외에서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을 위해 공헌하였던 회사에게 수여한다.

원주민을 위한 교육비용을 증가시켰는데, 1992년에서 1993년에 7억 300만달러에서 2003년 현재, 10억으로 교육비용을 증가하였으며, 원주민(First Nations)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수는 2003년 현재, 10년전의 96,000명에서 12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원주민(First Nations) 아동에게 도움이 될 특수교육프로그램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5) 특별보호조치

(1) 비상사태의 아동

① 난민아동

캐나다는 UN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NGO와 연합하여 이주과정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위험에 처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Woman at Risk Program : AWR) 과 공동원조후원프로그램(Joint Assistane Sponsorship Program : JAS)이 있다.

AWR은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재정주할 가능성이 없는 여성망명자와 그의 아동들이 배우지 못하였거나, 언어기술 부족이나 고용의 어려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JAS는 정부가 이들을 위해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임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이주 신청자는 동반여부에 의해 구별되며, 동반자가 없는 아동은 CRDD(Convention Refugee Determination Division)가 담당하는데, 패널이 아동을 위한 대표자를 증언하는 예비회담(사전협의) 과정에서 진행된다.

이민과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따라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유지에 힘쓴다. 만일 부모가 추방되어야 할 경우 아동 또한 함께 떠날 수 있게 하였다.

망명재정주부(Refugee Resettlement Division)는 아동이슈를 제출하기 위해 각 부서내의 그룹을 설치하였다. 이 부서는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수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내각위원회의 일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재통합을 위해 각 가족구성원 당 500달러의 거주비용을 포함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출입국관리이슈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② 신체·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무력분쟁갈등 아동

CIDA(국제개발처)는 여러 국제사무처를 통해 가족재결합을 지원한다. 이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CECI(캐나다국제협력센터)와 같은 비정부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무력분쟁 내의 아동을 다루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협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신병모집에 있어 연령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쟁내의 아동을 위한 대표자이자 지지자로서 아동과 무력분쟁 UN특별대표자(Special Representative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 SRSG)를 강하게 지지하고자 한다.

연방정부는 국립과 지방당국이 콩고공화국 내의 9세에서 16세까지의 1,500명 아동군인을 가족과 사회로 환원 및 재통합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의 초등교육과 기술훈련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는 분쟁에서 정신적인 외상(trama)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을 위해 지역적양육과 사회사업전문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알제리내의 캐나다-노르웨이 이니셔티브(Canada-Norway initiative in Algeria)에 공헌하였다.

국제개발처(CIDA)는 Medecins Sans Frontieres, Red Cross and World Vision과 같은 캐나다 국제 NGOs 뿐만 아니라 UNHCR과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연합 사무국과 함께 일하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기초적인 요구사항들,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포함하여 분쟁에 의해 파괴된 건물재건축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가족재통합, 전쟁중의 신체 및 성적학대를 받았던 아동을 위한 서비스, 아동군인 해제와 청소년, 건강, 스포츠 및 교육부(Ministries of Youth, Health, Sport and Education)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법률과 관련한 갈등

1984년에 비행청소년법(Young Offenders Act)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방 및 주지역과 협정을 맺어 보호감독 서비스와 사후프로그램에 제한되었던 연방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석금 감시프로그램, 재심지연, 예비서류 준비와 다른 전문적인 평가준비를 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3)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재통합을 포함한 노동력 착취

① 노동력(경제력) 착취

1997년 4월에는 아동노동도전기금(Child Labour Challenge Fund)이 창설되어, 아동노동 착취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동년 10월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에는 부당한 아동노동 착취를 줄이기 위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회서비스 보장과 육아 등 아동에게 적절한 법적 보호가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외교정책개발을 위한 캐나다센터(Canadian Centre for Foreign Policy Development : CCFPD)를 통해 아동노동 착취에 대항하는 여러 공적인 활동을 지지해왔다. 회의를 비롯하여,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 출판물과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CIDA는 또한, 빈곤경감과 기초교육(초등교육)에의 투자를 통해 아동노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및 보호권을 보장하도록 아동노동의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도록 앞장서며, 모든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한다.

1996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철폐를 위한 국제프로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램(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 IPEC)에 70만달러를 기부하였으며, 1997년에는 암스테르담과 오슬로아동노동회의에 참석하여 1999년에 있을 아동노동에 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구협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② 약물남용

1997년에 규제마약과 약물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을 재정하여, 기존의 약물과 마약류법률을 현대화 및 통합하여, 수출, 수입, 생산, 배포, 소유와 국제적으로 통제되었던 물질사용을 의학적·과학적·산업용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개인 및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술, 그 외의 약물과 관련된 해로움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약물전략(Canada's Drug Strategy)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에이즈전략과 제휴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술과 HIV감염에 대해 강연을 위해 음악과 희극을 이용한 교육여행을 추진하였다. 알코올과 약물치료프로그램(Alcohol and Drug Treatment Program : ADTP)은 지방 및 지역에서 알코올과 다른 약물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치료와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998년에는 UN국제마약규제프로그램(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 : UNDSP)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마약에 관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다.

1988년 의회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으로 캐나다약물남용센터(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CCSA)를 설립하였다. 이는,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건강정보의 분석 및 보급을 위해 정보센터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과 물질남용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연령과 필요정도에 맞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7세에서 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만을 위해(just for me)" 라는 프로그램은 학교나 공동체내에서 물질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 및 신체적 등 총체적인 접근을 한다. 이 프로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램은 15분짜리 비디오와 교사가이드, 헬퍼안내책자 및 부모를 위한 워크숍비디오도 포함하고 있다.

③ 매매보호

1996년 12월에 해외입양에 관한 아동협력보호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비준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과 주지역에서 아동 유괴, 매매 및 거래를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보호

헌법 35항에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가 인정됨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범위는 인디언, 에스키모족과 캐나다 혼혈아가 포함된다. 1차 보고서 이후 정부는 원주민의 문제에 관해 주요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원주민을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Aboriginal Peoples : RCAP)에 의한 보고서에 대응하여 1998년에는 역량키우기(Gathering Strength)라는 원주민행동계획(Canada's Aboriginal Action Plan)을 선보였다. 원주민과 조직 및 정부간의 협력갱신, 원주민자치 강화, 새로운 회계개발, 지역공동체와 경제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생득권정책(Inherent Right Policy)과 캐나다원주민행동계획(Canada's Aboriginal Action Plan)은 원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원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1997년과 1998년에는 대략 13개 부문에서 60억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총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지출 중 5.7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ritage)는 교육달성, 노동력강화활동, 건강활동, 자살예방에 있어 원주민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청소년중심의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CIDA는 원주민을 포함하여 소수민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 소수민족을 위해 'Yunnan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와 조산원을 훈련하여 캐나다 내의 빈곤한 소수민의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 및 복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초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해율과 수사고력을 향상시키며,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건강과 영양관련 기술 증진을 비롯하여 교과과정을 통해 인권과 평화증진에 기여한다.

3. 시사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1)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캐나다의 1차 보고서를 1995년 5월 24일과 26일에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아동권리협약과 1990년의 아동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Child) 초안작성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및 청소년법원에서 보다 나은 협약이행을 위한 NCCP(범죄예방을 위한 상담)설립, 아동국(Children's Bureau)설립, 불경기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증진과 보호차원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지원강화기금(FSEF)설립, 유니세프나 다른 정부 및 국제 NGO단체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프로젝트 참여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인 협약 21조와 37(c)조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국가의 전 영역에서 충분한 협약이행을 위한 영구적인 감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적인 조항과 원칙 특히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사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법과 정책수립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온 것에 유감을 표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빈곤문제와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문제, 체벌 및 학대에 대한 대책마련, 폭력성 있는 TV프로그램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들의 자살발생률 증가, 원주민아동과 관련된 주택 및 교육문제들을 염려하고 있다.

이외에 몇가지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보조항에 대한 재검토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증대 및 정보에 대한 홍보정책 확충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조항에 근거한 인권교육 UN 10개년 계획시행에 따른 전국적인 교육캠페인 착수 및 학교교육과정에 아동권리 통합 고려
- 감시기구 강화 및 자료에 대한 통계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 법적기구 설립 및 행정기관간의 협력 강화 및 불균형이나 차별적인 이행 제거
- 사법권내에서의 아동고려 권고
- 아동최선의 이익원칙과 관련하여 제4조의 충분한 이행권고
- 협약의 원칙 및 조항에 근거한 국제개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효과적인 협약이행 권고 및 국내법에 나타난 2조, 3조, 12조항의 무차별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사존중원칙 강조
- 12조항(아동 의사존중 원칙)과 관련하여 아동의 재판과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
- 아동이 있는 학교나 시설 및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를 허용하는 형법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 검토 제안
- 협약 19조, 28조, 37조에 근거한 가정폭력예방, 사회변화 및 법적금지촉진을 위한 교육캠페인 착수 뿐만 아니라 개정법률과 사후조치에 대해 권고
- 토착지역 공동체내의 유아사망율과 자살율 증가문제와 관련된 조사 강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캐나다의 2차 보고서를 2003년 9월 17일과 10월 3일에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1차 보고서에서의 권고사항 중 다음과 같은 조항에 대한 불충분한 이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8항 유보철회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20항 통계수집과 관련, 23항 국내법에 나와 있는 일반이행조치 확고, 24항 22조 이행관련, 25항 체벌허용 법률에 대한 비평제안 등이 그것인데,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이행노력을 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 및 프로그램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아동협의회, 국가아동이익,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 장관 임명, 사회정책개선 연방과 주 군사 회의, 사회연방체계협정, 법안 Bill C-27 형사법 개정, 캐나다 학교 통신망, 역량강화 : 캐나다 원주민 행동계획, 2010년까지 국제개발처(CIDA)에 의한 국가조력강화로 아동권리와 선언이행에 건설적인 역할 담당 등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협약의 유보철회에 대한 노력에 주목하고 있으나,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협약21조에 대해서는 유보철회 의사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며, 21조와 37(c)조에 대해 계속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협약21조의 유보철회에 대해 원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권고하고 있다.

협약이행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지역에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확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균형있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1997년 다방면으로 시작된 '국가아동협의회' 와 아동·청소년 국무장관을 둔 것에 만족하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동·청소년 국무장관이 협약이행을 조정 및 감시역할을 위임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998년 1월에 '역량강화 : 캐나다 원주민 행동계획' 도입이 주목되었으며, CRC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가계획의 준비와 '유엔아동특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회의 및 아동특별총회결과문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협약이행에 부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아동, 원주민을 포함하여 취약그룹과 이주자 및 난민아동을 포함하여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권리에 기초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확고히 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연방과 주지역에서 협약에 부합하는 의무사항, 명확한 우선사항과 계획표 및 필수적인 재원할당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에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조직적인 모니터링 장치를 지정하도록 권장하였다.

위원회는 캐나다 10개의 주(province)중에서 8개주에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이 있지만,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임무수행에 있어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으며, 연방정부에는 이러한 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연방수준에서 아동권리 옴부즈맨 사무국을 설립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취약아동의 비율이 높은 3개의 지역 뿐만 아니라 비율이 높지 않은 주에도 이러한 부서가 설립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많은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프로그램이 재원할당을 통해 아동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고, 특히 국가아동이익 시스템이 빈곤아동감소와 보호에 따른 위험에 처한 캐나다아동의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어 정부가 공헌한 것에 환영한다.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행을 특히, '가용자원내에서 최대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동에 대해 예산할당을 우선시하여 당사국이 협약4조의 충분한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매년 아동권리와 관련사항을 우선시하고, 아동에 대한 지출과 영향평가에 있어서, 특히 연방과 주지역에서의 소외계층아동에 대해 지출한 것을 만족해하고 있으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다문화법을 포함하여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보호조치 및 차별에 대한 특별입법조치 특히, 캐나다의 인디언과 이뉴잇족의 자녀를 위한 기숙학교시스템, 고용형평법, 인종차별을 소개하고 있는 형법제정(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2002보고서(A/57/18, paras. 315~343)에 대한 긍정적인 발달을 주목한다.

1980년 '국제아동유괴에 대한 시민적 측면에서 헤이그조약'에 비준하였던 국가인 점에 만족하며, 아동유괴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당사국의 문제에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아동체벌을 대신할 것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고, 학대발생에 대한 연구, 건강한 부모역할 증진, 아동학대와 학대결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있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캐나다인을 위해 보건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보건프로그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강화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원주민을 위한 증가된 가족원조, 세금 차감, 아동의 이익과 특별프로그램 제공을 환영한다.

아동양육준비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 동등한 접근과 모든 아동에게 질적인 아동양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수준이나 거주지를 고려하여 연방과 주지역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에 만족한다.

위원회는 전형적인 문해율과 높은 수준의 기본교육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질높은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환영한다. 특별히, 원주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만족해한다. 이는 한층 더 저임금 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과정 이후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UN난민고등판무관실과 NGO와 연합하여 이주 및 난민보호법(2002)에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을 도입함과 이주과정에서 아동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관련된 사항을 받아들일 노력을 하는 것에 환영한다.

캐나다는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으로 성적 착취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성적착취 감소에 공헌하였으며, 1997년 형법에 채택된 개정안(Bill C-27)과, 2002년의 개정안(Bill C-15A)을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범법자의 체포와 기소(고발)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 성착취의 피해(희생)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인의 기소 역시 모든 캐나다 법령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2003년 4월의 새로운 법률 제정을 만족한다. 또, 범죄 예방의 주도와 재판 소송(절차)의 대리를 환영한다.

무력분쟁에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과 아동매매, 아동매춘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2001. 9)를 서명한 것 또한 환영할 일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래에 경제적 변화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협약의 홍보를 담당하는 비정부조직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위한 조치가 지속될 것을 권고한다.

이외에 몇가지 권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약 전분야에 관한 통계 산출

- 취약그룹(토착아동, 장애아동, 학대 및 방임아동, 부랑아, 사법권내의 아동,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의 자녀)에 대한 18세 미만의 전체아동 통계치 산출 및 분류분석을 위한 메카니즘 수집 강화

- 무차별원리(협약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조치 시행

- 아동최선의 이익원리의 적절한 정의규명 및 소수아동(원주민아동, 감금이나 국외추방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우선권 원리 고려, 이 원리이행을 위한 연구나 교육프로그램 강화

- 캐나다 시민에 의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위한 '새로운 캐나다시민법' 채택과 원주민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First Nations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hild and Family Service'의 균형있는 제공 권장

- 확실한 출생등록 및 국가없는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마련

- 입양아동의 생일과 출생지 등의 정보를 위한 입법개정 권고

-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조약'에 대해 전 지역이 비준하고 충분히 이행할 것을 권고

-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법률 제정 및 처벌을 허용하고 있는 형법 43항(section 43) 삭제 권고

-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건상태가 모든 캐나다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 중에 불균형적으로 높은 유아돌연사증후군과 태아알코올증후군 장애에 대한 대책과 원주민들 사이에 높은 사망률과 높은 자살률, 물질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 청소년자살 원인과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 지지·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도입 제안

- 확산되고 있는 홈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특히, 아동간의 유대관계, 홈리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성,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매매 등에 대한 연구수행 및 사건발생감소와 보호방안 마련, 홈리스아동을 위한 서비스강화

- 위원회는 당사국이 증가하는 빈곤아동의 원인요소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가족에게 적절한 자원과 시설들을 제공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이나 다른 취약그룹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 교육비지출 감소, 증가하고 있는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교육위원회의 감소, 원주민아동의 중퇴율 증가와 두 가지 공식 언어로 교육받은 사람만이 장래가 보장되는 현실에 대한 변화 권고

- 협약 29조 1항의 목적달성과 당사국내의 교육 질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모든 아동에게 초등무상교육혜택 적용 및 접근의 용이성,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과정통합 및 교사교육, 1960년 교육차별에 대항한 국제교육 과학 문화 기구협약 비준, 학교에서의 체벌허용금지를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마련과 규율대책에 관한 아이들의 토론참여 조장)

- 1차보고서에 보고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특히, 가족재결합, 자유의 추방 및 박탈, 우선권에 대해 미흡한 점 지적(동반자가 없는 망명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자의 임명을 위한 표준(기준)과정, 분리된 아동에 대한 정의와 망명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한 신뢰성있는 통계자료 부족, 취약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담당국에 의한 적절한 훈련과 일관된 접근)

- 고용허가 최저연령에 관한(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국제노동기구협회 No. 38(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38)비준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고용착취 예방을 이해 아동의 근로환경을 검토하기 위한 전국조사 실시에 대해 권고

- 부랑아의 취약함과 캐나다로 팔려온 외국아동과 여성의 증가에 대해 염려

- 성적착취와 성거래의 희생자 보호와 지원 강화(NGO와 본 국가와 연합하여 강화하며, 문화적·종합적 보호정책, 사회재통합, 보건혜택, 상담지원 등을 포함)

- 부랑아에 관한 정보부족(홈리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원주민아동과 빈곤·학대 및 방임가족), 홈리스 현상의 범위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및 요구 이행을 위한 전략 확립, 취약그룹의 참여권장

- 14세 아동에 대한 성인수준의 처벌허용 고려사항

- 수감된 청소년의 수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며, 비행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를 함께 수용하고, 대중이 청소년 비행의 기록을 입수하도록 용인되어 있는 점은 어린 범죄자들의 정체성이 대중에 의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음

- 입법, 정책, 실행이 통합된 비행 청소년 처벌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 권고

- 18세 이하의 어떤 아동도 성인으로 다루지 말 것과 범죄의 환경이나 죄의 경중을 고려하며, 기소된 아동의 사생활보호 및 감금시에 성인과 분리조치하기

- 일반아동과 생활격차가 있는 원주민어린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경제사회문화권에 관한 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존중과 공평한 재원분배와 관련한 권고사항 강조

- 아동권리협약 44조 6항에 따라, 2차 정부보고서 및 서면질의답변서를 일반국민, 특히 아동에게 널리 알리고, 보고서 및 심의기록,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출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정부, 의회,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한 일반대중들 사이에 토론활성화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제고 및 협약이행과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배포

2) 시사점

캐나다정부의 청소년인권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정부는 1990년대 전·중반기에 높은 국채률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국가아동의제(National Children's Agenda : NCA)실행, 국가아동수당(National Child Benefit : NCB) 및 캐나다아동세금수당(Canada Child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Tax Benefit : CTB)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빈곤예방 및 빈곤율감소에 힘썼으며, 18세이하의 아동을 둔 저소득층부모의 사회참여 도모 및 세금면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7월 1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빈곤대물림 차단 '희망투자 전략(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We Start 운동본부'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희망적이긴 하나, 여전히 예산 몇 푼을 배정하는 형태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앨버타 아동서비스국은 아동에게 계속적인 토론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앨버타 아동청소년 이니셔티브(Alberta Children and Youth Initiative)와 아동옹호프로그램(Children's Advocate Programme)과 같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캐나다정부의 웹포털사이트' 개발 및 발달사업에도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것을 정부가 권장·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개정된 청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ritage)가 만든 "CREDO" 라는 웹사이트에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Industry Canada)에서는 스쿨넷(Schoolnet)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5세에서 18세의 아동들이 직접 제작하고 발간하는 월간 인터넷신문인 스쿨넷뉴스네트워크(SchoolNet News Network)은 아동·청소년의 대표적인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셋째, 체벌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앨버타(Alberta)에서는 체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모자문위원회(Parental advisory committees)가 학교에서의 대안적인 체벌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체벌은 '사랑의 매' 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캠페인 및 사업이 진행중이며, 온라인 상에서도 카페나 싸이트가 개설되어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체벌근절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제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정부는 1981년 이후, 신체장애인을 위한 주거프로그램(Rehabilitation Residential Assistance Program : RRAP)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주택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자금지원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둔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4개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의료세금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아동을 위한 건강 및 복지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는 NGO단체 및 기타 다른 공동체와 함께 아동초기의 건강 및 발달, 부모참여와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을 위해 아동공동체활동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 for Children : CACP), 원주민헤드스타트프로그램(Aboriginal Head Start Program : AHS), 캐나다임산부영양프로그램(Canada Prenatal Nutrition Program : CPNP)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아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행동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획(Community Action Plan for Children : CAPC)을 실시하여 저소득층가족, 십대부모가정, 발달지연경험아동, 사회적·정서적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 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한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

1997년에 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를 창설하고, 아동·청소년장관을 임명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아동·청소년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산재되어 있고, 여성이나 가족정책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X.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X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X.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의 현단계를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를 중심으로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의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를 발굴·소개하여 정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기준(CRC/C/58)',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CRC/GC/2003/5)').

연구 추진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출장(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관) 등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가능성 고려, 자료 분석 기준 통일, 효과적인 시사점 분석틀 구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분석 대상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자료는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나 옴부즈맨 의견서 등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분석을 위한 주요자료인 각국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보고서는 제한된 지면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전반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개괄적 현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책별 세부사항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대한 구체적 현황과 내용, 그리고 각 사례별 배경과 정책효과와 장단점 파악 등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이들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담고 있는 만큼 이에 기반한 연구결과는 향후 세부 인권영역별 심층연구를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각국의 주요 인권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아동관련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아동법을 근거로 구성된 아동위원회가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부처와 의회에 법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정책의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관련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낸다. 둘째, 영국 각 지역은 '아동부'와 '아동장관'을 임명하여 '아동'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아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셋째,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과의 조화이다.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 가능하므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국가가 가족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역할을 강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등이 그 예이다.

넷째,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당제도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수당제도, 가족관련 각종 세금공제제도, 아동급여, 아동양육지원급여, 가족수당, 아동보호 세금 공제 제도 등을 시행한다.

다섯째, 영국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보호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16세까지는 각종 의약품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여섯째, 영국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내 체벌금지 조항을 아동법에 추가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가정내 체벌 근절운동을 벌여왔고 이러한 결과 2004년 부모의 자녀 체벌권리제한법을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실천하였다. 일곱째,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난민 가족 아동의 교육과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덟째, 빈곤아동·청소년의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안정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친다. 빈곤아동·청소년들이 생의 초기에 긍정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아홉째, 법적 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6세 이하 성학대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 아동들의 비디오 녹화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열번 째, 각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열한번 째, 위탁아동과 시설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21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각종 훈련비, 주거비용 등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는다. 열두번 째, 청년실업문제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으로서 지역별 교육지역(Education Action Zone)을 선정하여 지역사회가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한다.

프랑스 청소년 인권정책의 긍정적인 면으로 참고할만한 사항은 국내법규와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 가족과 관련된 아동보호 조치, 법적 절차에 있는 아동 보호, 망명아동 보호조치 등이다. 첫째, 프랑스는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아동매매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최악의 노동조건 금지와 제거를 위한 즉각 조치에 관한 ILO 협약 비준,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등 다양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다양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아동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조사위원회, 아동권리 의회대표 등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였다. 셋째, 가족과 관련한 아동권리 보호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가 많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한을 평등하게 하여 아동을 보호하였고, 부모를 알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부모 이혼시 아동 양육비 회수 조치를 강화하였다.

넷째, 아동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적·법적 감독 및 성범죄 엄벌, 아동 희생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성매매로부터의 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약물남용, 특히 청소년의 흡연 감소 노력을 하였는데, 특히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청소년 흡연 감소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여섯째, 체계적인 모자보건 및 학교보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세 이상 아동의 건강은 학교건강증진 서비스가 담당하는데, 아동·청소년의 건강보고서 작성, 의료검진, 학교환경 전반적인 보건여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일곱째, 법적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디오 녹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후견제도 실시, 특별행정가를 임명하여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 등은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여덟째, 증가하는 망명아동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로 이들을 보호하고 행정가를 임명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에 대한 통합적 정부 조정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사항 철폐이다. 이는 독일정부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다. 둘째,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미혼모 가족지원 대책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지원정책으로 아동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당 지급,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 휴가제도 확대, 주간 대리보호시설 및 제도 확대, 부모 실직수당과 주택수당 지급 등을 실시하며 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없이 인정하는 가족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의 홍보와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배포, 인권교육, 법조인과 교사 등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집단을 위한 훈련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권고 받고 있으나, 한국에 비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넷째,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독일 내의 난민아동과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청소년의 현장직업 훈련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이 외에 독일 현황 검토를 통해 제안할 만한 청소년 인권증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사법 및 행정절차상 15세 미만 아동의 법적 의견표명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 입양결정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절차와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상응하는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옴부즈맨제도 실시, 협약의 지속적 홍보와 이행 촉구,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캠페인, 특별상황에 처한 아동권리 보호, 이주노동자 자녀 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제고, '어린이 국회', '어린이 시·도의회', '어린이와 시장과의 만남' 등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참여권 확대, 미디어와 방송매체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 신장 노력이 주목받는다. 첫째, 중앙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자세와 대조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나 '아동옴부즈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별로 종합적인 아동인권시책을 추진하는 등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둘째, 가정을 잃은 아동이 보호시설보다는 가정과 가까운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수양부모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아동양호시설을 설립하였다.

셋째, 2000년 1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학교참여를 위한 학교평의원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학칙을 통해 학교운영에의 아동 참여권과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법무성의 '아동인권전문위원' 제도는 지역·학교·가정에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권고 등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는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체벌은 일본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기본법이 표방하는 교육의 비폭력성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벌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 이의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체제와 교내 인권 구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여섯째,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후생성의 '주임아동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스웨덴** 정부는 제3차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옴부즈맨 보고서에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문제가 시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편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들이 스웨덴에서는 이미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보다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스웨덴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 중 거의 50%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스웨덴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99년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전략은 협약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성인들의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 권리에 기초한 관점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간다. 중앙정부가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을 볼 때, 2년간의 상황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법안 상정 및 제정, 시행을 위한 재원 배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연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셋째, 아동과 관련된 기존 법률들을 협약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특히 법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아동의 의사를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모든 활동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개정된 부모법에서는 아동의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표현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과 교육,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아동수당, 부모보험 등의 가족정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책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여섯째, 장애아동과 불법이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심지어 추방위기에 있어 '숨어사는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게도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일곱째, 가족중심적 관점과 실천이 중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안전한 가족과 아동의 양육과 보호로 삼고, 부모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청소년 인권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는 아동·가정부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총괄 담당한다.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프로젝트 진행, 법 개정을 위한 제반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행동계획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둘째,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실시에 있어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Life before 18 Project)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정책이 그들의 욕구와 아동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대변하는 아동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 옴부즈맨은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아동의 의사 대변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여론 형성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포럼' 등의 제도적 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노르웨이 정부는 소수민족과 난민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제정과 임시구호소 마련 등 보호기구 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들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범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청소년인권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아동수당 및 캐나다아동세금수당 등의 제도마련과 국가아동의제실행을 통하여 빈곤대책 및 저소득층 부모의 사회참여 도모에 힘쓰고 있다. 둘째, 캐나다는 아동의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웹사이트상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체벌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자문위원회(Parental advisory committees)가 학교에서의 대안적인 체벌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을 위한 주거프로그램(RRAP)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원주택프로그램 및 자금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4개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의료세금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아동을 위한 건강 및 복지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는 NGO단체와 기타 단체들과 함께 아동초기의 건강 및 발달, 부모참여와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개발한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 1997년에 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를 창설하고, 아동·청소년장관을 임명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이 모든 인권 영역에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국보다는 긍정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했으나, 이들 또한 여전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아동·청소년인권 분야의 선진 국가일수록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 활용하고 모든 법과 정책·제도를 협약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2. 제언

현단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시사점에 터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실상부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있어왔으나,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인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총괄·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3년 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위원회가 적절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효과적인 협약 이행 감독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시 유보조항(부모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제9조 3항),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a호), 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동재판에 관한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b, v호))에 대해 적극적인 비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9월 비준과정을 거쳐 발효된(2004. 10. 24일부터 발효) 아동권리협약의 2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매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의 국제적 준거 수준으로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국내 법, 정책과 제도를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이 중요하다. 한 예로 일본의 지역 아동권리조례 제정·운영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부천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

여섯째, 소수집단과 소외계층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장애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빈곤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아동과 탈북청소년 인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차 권고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90)' 비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아동권리협약 관련 캠페인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청소년지도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홉째, 건강과 보건·의료, 가정환경과 양육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보호권 신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천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열 번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NGO 등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사업, 인권 모니터링활동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참 고 문 헌

강순원・임현묵・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6. 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김영지・김경준・이혜연・김세진(2004).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 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이용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전성민(2002).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대한민국 정부(1999. 1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류은숙(199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 최초보고서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경내(1998).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변용찬・서문희・배화옥(1998).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조애저・박세경・안현애(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국가인권위원회(2003).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모색 - 국가인권교육계획 관련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스기하라 야스오 저・석인선 역(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우정자・김문섭・최종혁(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오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 서울: 사람생각.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2002.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 유엔 전문교육훈련자료 제10호. 뉴욕・제네바: 유엔.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제2호, pp. 5-20.

이재연(2003).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pp. 95-148).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정기원・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정웅(1999).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발전노력과 주요국 정책 동향. 최윤진 외,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pp.79-114)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 연구, 제7권 제2호, pp. 277-300.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2002). 부천, 가와사키시 아동권리 조례 간담회 자료집(2002. 12. 23). pp.28-50.

한국아동권리학회(1999. 11).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4).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황옥경(200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 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제1호, pp. 1-24.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 a European perspectiv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Access to social rights in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Proceedings -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ynthia, P. C. (1996).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 Non-party state: The United States.*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475-490.

Fache, W. (1996). *How to Develop a anticipatory, Comprehensive and Coherent Youth Policy?*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263-279.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le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Hodgkin, Rachel · Newell, Peter(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ully revised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edition. New York: UNICEF.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h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lker, Nancy E.·Brooks, Catherine M. and Wrightsman, Lawrence S.(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California·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c.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New York: Radcliffe Medical Press.

【영국】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RC/C/15/Add.34., 1995. 2.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RC/C/15/Add.188., 2002. 10.

CRC, List of Issues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RC/C/Q/UK/2., 2002. 6.

Centre for the Child and Society(2001). Educationa and the Rights of the Child, University of Glasgow: GLA.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2004). Working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Together: Gi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a Say. CRAE: London.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3/Add.11, 1994. 3.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due in 2002: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83/Add.3, 2002. 2.

HMSO(2003). Every Child Matters, Edinburgh.

Marshall, K. & Tisdall, K. & Cleland (2002). 'Voice of the Child' under the Children(Scotland) Act 1995: Giving due Regard to Children's Views in All Matters that Affect Them, vol. 1- Mapping Paper, HMSO: Edinburgh.

Save the Children(2000). Children's Rights : Equal Rights?, The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Charity : London.

Save the Children(2000). Children's Rights : Reality or Rhetoric?, The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Charity : London.

Tisdall, K (1997).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HMSO: Edimburgh.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프랑스】

CRC, Committee on Rights of Child concludes thirty-sixth session, Adopts Conclusions on Reports of El Salvador, Panama,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iberia, Myanmar, Dominic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rance, press document, 2004. 6.

CRC, Committee on Rights of child reviews second periodic report of France 36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 7.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France., CRC/C/15/Add.20., 1994. 4.

French ombudsperson for children, Remarks concerning the second periodical report submitted to the Committee by the French government, reported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5.

Government of the France,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2: Franc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3/Add.15, 1993. 6.

Government of the France,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due in 1997: Franc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65/Add.26, 2003. 10.

【독일】

김현용 · 이배근 외(2002). 현대사회와 아동. 서울: 소화.

이배근(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한국의 아동학대 방지법. 이배근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서울: 소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배근(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한국아동복지학회.

이배근(1997).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정기원・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RC,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rmany, 1995.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 2004.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9, Germany, 2003.

Government of the Germany,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4: Germany, 1994.

【일본】

日本政府第二回報告(2001.11).外務省 http://www.mofa.go.jp

日本政府第二回報告に關する國連子どもの權利委員會の總括所見(2004年1月)

子どもの權利條約に基づく第二回日本政府報告に關する日本弁護士連絡會の報告書(2003年5月). 日本弁護士連絡會.

子どもの權利條約の實施に關する第2回政府報告書についてのNGOレポート(2003年10月). 子どもの權利條約NGOレポート連絡會議.

子どもの權利條約總合研究所(2002).『川崎發子どもの權利條例』エイデル研究所.

子どもの權利條約ネットワーク·喜多明人 外編(1999).『季刊、子どもの權利條約 第6号』エイデル研究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子どもの權利條約ネットワーク編(2001).『學習、子どもの權利條約』日本評論社

喜多明人　外編(2001).『子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日本評論社.

荒牧重人(2002).「自治体子ども施策と子どもの權利研究の課題」子どもの權利條約總合研究所『子どもの權利研究(創刊号) 』日本評論社.

【스웨덴】

광주 YMCA 청소년인권센터(2002).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 2001년 활동 보고. 광주 YMCA.

김현용・윤현숙・노혜련・김연옥・이배근(2001).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서울: 소화.

조아미(2000).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 요인,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청소년학회.

Children's Ombudsman. The Children's Ombudsman's Opinion Concerning the Children's Ombudsman. "Childcare and schools," Up to the age of 18, 2001.

Children's Ombudsman. "Children's families," Up to the age of 18, 2001.

Children's Ombudsman. "Children in the population," Up to the age of 18, 2001.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weden. CRC/C/15/Add.101, 1999. 5.

Government of Sweden,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7: Swed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65/Add.3, 1998. 2.

Government of Sweden, Thir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Due in 2002: Swede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125/Add.1, 2004. 7.

Kamerman, S. & Kahn, A. (2000), "Child and Family Policies in an Era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and Restructuring," In K. Vleminckx & T. Smeeding (Ed.),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The Policy Press, pp. 501-526.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Background Report Prepared for the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1999. 12.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act Sheet: Swedish family policy, 2003.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Report No. 236. Descriptive Data on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2003.

Statistics Sweden. 2002.

Swedish Institute. Fact Sheets on Sweden: The Swedish Population, 2003.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hild Care in Sweden, 2000.

The Official Gateway to Sweden, Society and Welfare (www.sweden.se).

UNICEF(2003).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4.

【노르웨이】

Government of Norway,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2.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Norway. 12/10/93. CRC/C/Add.7.

Government of Norway, Norway's second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8.

Government of Norway, Norway's third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Summary record of the 150th meeting: Norway. 21/04/94. CRC/C/SR.

http://www.barneombudet.no

http://www.ombudsnet.org/Ombudsmen

【캐나다】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anada, CRC/C/15/Add.37., 1995. 6.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anada, CRC/C/15/Add.255., 2003. 10.

CRC, List of Issues : Canada, CRC/C/Q/CAN/2., 2003. 7.

CRC, Press Document,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s Second Periodic Report of Canada : 2003. 9.

CRC, Summary record of the 895th meeting: Canada. 25/09/2003. CRC/C/SR.895.

Government of the Canada,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4: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11/Add.3, 1994. 7.

Government of the Canada,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due in 200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RC/C/83/Add.6, 2003.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 록

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기준
2.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일반논평 제5번)
3.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1차 권고의견
4.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2차 권고의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 96. 11. 20 CRC/C/58. (기본적인 참고서류)

협약 제44조 1항b에 의거해 당사국이 제출해야할 정기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

1996년 10월 11일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됨

서문

1. 아동권리협약 44조에 의해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UN 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a)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b) 그 이후로는 매 5년마다
   보고서는, 협약에서 공표된 권리에 효력을 주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권리들의 향유 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또한 협약 아래 의무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과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자신의 역할과 또한 45조에 명시된 국제 협력을 장려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는 또한, 관련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2. 위원회는 협약 44조 4항에 비추어 협약 이행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협약과 법/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처로서 만들어진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협약에 공표된 권리 향유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모니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4. 보고과정은,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행에 있어서 당사국들에게 지속적인 재긍정을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당사국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5.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아동 권리 분야에 있어서 쌍방 다방면 협정에의 도달을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채택한 조치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들, 연방과 지방 차원에서 적절한 변화들, 예를 들면 협약이행 노력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감시하고 협력하게 하는 기구와 조직들; 협약 이행을 위해 개발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정책/프로그램/서비스; 아동 권리 향유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 사항;

(2) 협약에 공표된 권리의 완전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장애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3) 아동 권리 실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상된 계획들

6. 정기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적인 의견에 대해 고찰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1) 제안과 권고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난관들과 아울러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관심 영역들;

(2) 이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제출한 제안과 권고들의 후속조치로 채택된 조치들. 이행 조치들은 각각의 제안과 권고와 관련하여 확인되어야만 하며, 모든 관련 활동들은 입법/정책/기구/조직/자원배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만 한다.

(3) 그와 같은 제안과 권고들의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장애들

(4)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이전 보고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조치들

7.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통계 정보와 관련 연구 지표들 뿐만 아니라, 주요 법안과 판례들의 사본이 첨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첨부 자료는 위원회 일원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통계 자료는 그 나라의 다양한 분야 사이에 차이점을 적시해야만 한다. 그 분야 내에서 그리고 아동 그룹들 간에. 이러한 점을 포함해서:

(1) 아동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들;

(2) 연령별, 성별, 지역별, 도시/농촌간, 사회적 그룹별, 인종별 간 차이점;

(3) 아동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의 변화들;

(4) 아동 복지 분야에 있어서 예산 분배와 지출에 대한 변화들;

(5)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받은 국제 협력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은 일반적인 배포를 위해 번역되거나 재생산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문이 보고서 자체에 인용되거나 부가될 수 없을 때 보고서는 그러한 원문 언급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8. 협약 44조 3항에 의해 당사국이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세부적인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후속보고서에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변화들을 적시해야 하고 이전에 제출된 정보를 참조문으로 인용해야 한다.

9. 당사국들의 보고서 준비를 돕기 위해 현 기준에서 협약 규정들이 집단으로 분류되어졌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의 전체론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 권리들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권리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시각.

10. 위원회가 확인한 다양한 부문들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들은, 내용에 관하여 현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Ⅰ.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조치들 (협약 제4조, 42조, 44조)

위 8번을 보시오

11. 그것을 철회하기 위한 어떠한 유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당사국들이 고려하도록 장려한 세계 인권 회의의 정신으로, 정부가 유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적시해 주기 바란다.
12. 당사국들은 협약 4조에 준한 정보와, 국가 입법과 행정을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목들과 함께:
    (1) 협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입법의 포괄적인 재검토
    (2) 협약 이행 보장을 위해 국내 입법에 도입된 개정사항과 아울러, 채택된 새로운 법률과 규칙들
13. 국내법에서의 협약의 지위를 적시해 주시오.
    (1) 협약에서 공표된 권리들의 국가적 입법에 관하여 또는 헌법에서의 승인에 관하여;
    (2) 국가 당국에 의해 적용되거나 법정에서 호소될 수 있도록 협약의 조항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관하여;
    (3) 국가 입법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14. 협약 제41조에 의해, 아동 권리 실현에 보다 더 기여하는 국가 입법 규정들을 적시해 주시오.
15.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을 적용하는 판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오.
16. 협약에서 승인된 권리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구제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오.
17. 아동 권리에 관한 국가 활동 계획과 같은, 협약의 틀에서 아동들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상 취해진 또는 구상된 조치들을 적시해 주시오.
18.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연방적 지방적 차원에서, 협약 이행을 보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들에 협력하고 성취된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현존하거나 계획된 기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오.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서:
    (1) 협약이 포괄하는 영역의 소관 정부 부처,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효과적인 활동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2) 연방과 지방 당국간에, 중앙정부와 지방 간 활동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3)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고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 만든 정부 기관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그리고 그들이 비정부 조직들과 연관된 방식;

(4) 옴부즈맨(인권옹호자)이나 Commissioner(위원, 행정관)과 같은, 아동권리를 향상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집단;

(5) 연방 지방 차원,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현존 경향을 평가하]고 아동주요 권리에 대한 통계의 조직적인 수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 그리고 아동 권리 분야에서 정책 수립의 기초로서 다른 관련 정보와 조사/지표/통계 등의 확인과 수집을 위한 기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

(6)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연방 지방적 차원에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의 준비 등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

19. 시민사회 (예를 들어 교수 집단, NGO)와 협력하기 위해 취해진 제안과 과정 평가를 위해 개발된 구조를 적시해 주시오.

20. 지표나 숫자를 사용하여, 국가적 지역적 차원 그리고 연방 지방적 차원에서,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로 경제/사회/문화적 아동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방책들을 적시해 주시오. 다음을 포함하여:

(1) 경제 사회 정책간 협력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

(2) 중앙정부와 지역적 차원과 연방 지방적 차원에서, 건강/복지/교육 등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출에 소용되는 예산의 할당분;

(3) 보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동안의 예산 동향;

(4) 아동에게 쓰여지는 액수와 비율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분석의 조정;

(5) 소관 국가적 지역적 당국이 예산 결정시 최대한 아동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6) 서로 다른 지역과 아동 집단 간 불균형이 사회 복지 규정에 의해 해소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7) 아동들, 특히 가장 하층 집단 아동들을, 사회 부문에서 예산 분배 감소 등과 같은 경제 정책 상 역효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21.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과 관련된 국제 협력이 마련된 정도를 적시해 주시오. 지역적 국제적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과, 아동 권리의 장려 그리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분된 다방면/쌍방 차원 국제적 원조의 할당분을 적시해 주시오.

건강/교육/사회/기타 분야에 각각 배분된 협력 비율과 아울러,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고 기간동안 주어진 국제 협력의 비율을 적시해 주시오.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Development 의 후속조치로서 채택된 관련 조치들을 적시해 주시오.

22. 협약 제42조에 따라, 성인과 아동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협약 원칙과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해진 또는 예견되는 방책들을 기술해 주시오. 이점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적시해야 한다:
    (1) 협약이 국가/지방/소수자/토착 언어로 번역된 정도. 이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동안 협약이 번역된 언어의 수치와 그러한 소수 언어로 번역된 사본의 수치를 언급해야 한다.
    (2) 협약이 그 나라의 난민과 이민자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3) 협약을 선전하고 그 원칙과 규정들의 광범위한 인식을 불러오기 위해 채택한 방책들. 이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동안 (의회나 정부 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과 같은) 회의들이 열린 횟수, 라디오나 TV 방송 프로그램의 횟수, 협약을 설명하기 위한 출판물들의 횟수 등이 언급되어야만 한다.
    (4) 아동들에게 협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해진 특별한 조치들과 그것들이학교 커리큘럼과 부모 교육 캠페인 등에 반영된 정도. 보고 기간동안 교육부문과 대중들에게 배포된 협약 사본의 수치를 적시해야 한다.
    (5) 아동들과 함께/아동들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교사, 경찰, 이민국관리,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훈련시키는 것과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협약을 교육시키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
    (6)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이 전문적 훈련 커리큘럼과 행동 규칙 등에 편입된 정도;
    (7) 매스미디어와 정보 출판 매체를 이용하여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8) 협약지지 캠페인과 그 후원 등에서 NGO의 연관성. 이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동안 그러한 행사에 참여한 NGO의 수치를 적시해야 한다.
    (9) 이러한 활동들에 있어서 아동들의 참가 실태.

23. 협약 제44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취해졌거나 예상되는 방책들을 기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시해야 한다:
    (1) 현 보고서 준비 과정, 특히 중앙정부와 지역적 차원/연방 지방적 차원의 정부 부처와 NGO들이 연관된 정도. 또한 보고서 준비에 참여한 NGO의 수치를 적시해야 한다;
    (2) 보고서를 선전하고, 그것을 국가/지방/소수자/토착 언어 등으로 번역하 배포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보고 기간동안 (의회와 정부의 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의) 회의가 열린 횟수, 라디오나 TV 방송 프로그램 의 횟수,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한 출판물의 횟수, 이러한 행사에 참여 한 NGO의 횟수 등이 적시되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의회 공청회 등과 같이, 당사국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의견과 요약 기록의 광범위한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이전 보고서의 요약 기록과 권고의견을 선전하기 위해 수행한 행사들을 적시하시오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하여. 보고 기간동안 (의회나 정부의 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과 같은) 회의가 열린 횟수, 라디오나 TV 방송 프로그램의 횟수, 권고의견과 요약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한 출판물들의 횟수,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 NGO들의 숫자 등.

Ⅱ. 아동에 대한 정의 (제1조)

위 8번을 보시오

24. 당사국은 협약 제1조에 관하여 관련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1) 아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국내법과 협약 간의 차이점;

(2)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최저 연령: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의학적 상담을 받는 것;
부모 동의 없이 의학적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
의무교육의 종결;
위험한 작업, 파트타임, 전일제 등을 포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연령;
결혼;
성적인(sexual) 관계에 동의 가능한 연령;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것;
군대에 징병되는 것;
전쟁행위에 참가하는 것;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
체포, 구금, 사법부 영역, 보건복지기관에 아동을 배치하고 보호시설을 찾아주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
사형과 종신형;
민사/형사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부모 동의 없이 법정이나 다른 관련 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부와 사법부 절차에 참여하는 것;
성명 변경, 가족관계 수정, 입양, 후견인 등을 포함한 신원 변경에 동의하는 것;
원가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상속과 재산상 계약행위를 하는 법률상 행위능력;
협회를 창립하거나 가입하는 것;
종교를 선택하거나 학교 종교 교육에 참석하는 것;
술과 다른 금지 물질들을 소비하는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3) 고용 최저 연령이 의무교육 완료 연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것이 교육에 관한 아동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 국제 기구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4) 결혼과 성적인 동의관계를 포함하여 소녀와 소년 사이에 법률상 차이가 있는 경우, 협약 제2조가 고려되고 있는 정도;
(5) 혼인적령기 개념이 형법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 규정이 소녀와 소년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정도와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고려되고 있는지의 여부;

Ⅲ. 일반 원칙

위 8번을 보시오

A. 무차별 원칙 (제2조)

25. 무차별 원칙이 헌법이나 특히 아동 관련 국내법에서 구속력 있는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협약 2조에 명시된 차별 가능한 영역에 그와 같은 법적인 규정들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이 보고서에 적시되어야 한다. 망명자나 난민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국가의 재판권 아래에서 모든 아동에게 협약에서 공표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적시해야 한다.
26. 법률과 소송에서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차별이 방지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인종, 빈부, 장애인, 입양아, 부모나 후견인 등에 있어서의 차별.
27. 도시와 시골 사이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지리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장 불이익을 받는 아동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특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 소수 원주민, 장애 아동, 혼외 자녀, 무국적 아동, 이민자, 난민, 부랑자 등.
28. 4차 세계 여성대회(World Conference on Women)의 후속조치로서 채택된 방책들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특별한 조치들에 대해 기술해 주시오.
29. 위에 언급된 다양한 아동 집단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30. 사회/민족적 긴장,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등에 기여하는 아동에 대한 태도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31.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등의 지위/활동/견해/신념 등에 기초하여 가해지는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 제2조에 근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32. 제2조 규정 이행에 있어서 부딪치는 주요 문제들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획을 적시하시오. 또한 부정적인 전통적 풍습에서 비롯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도 적시하시오.

B.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33.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대이익 원칙과 아동 배려가 첫 번째 고려할 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적시되어야 한다.
34. 공공/사립 사회 복지 기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이 원칙이 고려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35.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아동 최대이익 원칙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다음의 영역
    (1)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 연방과 주정부 차원, 정부 부처 간 등에서 예산의 배분;
    (2) 주택/교통/환경 정책 등을 포함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
    (3) 입양 ; 이민, 난민 수용소와 망명자 절차 ; 소년 사법 행정 ; 기관들에 아동 배치와 보호 ; 사회 보장.
36. 제3조에 의거하여 입법과 행정 상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37. 아동 보호와 원조를 책임지는 공공/사립 기관들, 서비스, 편의시설 등의 적절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그리고 충분한 감독과 아울러 특히 그 직원들의 안전, 건강, 숫자, 적합성 등에서 그와 같은 표준에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38. 아동 최대이익 고려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행정적 조치들에 관해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적시하시오.
39. 아동 권리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훈련 부분에서 아동 최대이익 원칙이 어떤 방법으로 관철되고 있는지를 적시하시오.

C. 생명권,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 (제6조)

40.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들,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심리적/사회적 발전을 포함하여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데에 공헌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들이 개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41. 아동 사망의 등록, 사망 원인, 사망에 대한 연구와 보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아동 자살 방지와 그 빈도 조사 그리고 모든 연령 아동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방책들, 각 집단이 특별히 노출되는 위험 (예를 들어 성관계로 전염되는 병, 거리 폭력)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등을 기술하시오.

D. 아동 견해 존중 원칙 (제12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42.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와 그러한 견해가 비중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편입된 방식을 적시하시오.
43.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적/다른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다음을 포함한:
    (1) 가족생활
    (2) 학교생활
    (3) 소년사법행정
    (4) 기관과 다른 형태의 보호에 있어서 배치와 생활
    (5) 보호시설 이용절차
44. 아동이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상황과 아울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시하시오.
45. 학교나 지역 평의회 같은 데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동이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적시하시오.
46.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훈련받을 필요성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들을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아동들의 견해가 비중있게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등을 적시하시오.
    아래의 사람들에게 아동발달코스에 관한 교육이 몇시간 제공되는지 적시하시오.
    일반 판사/가정법원 판사/소년법원 판사/보호관찰 관리/경찰/교도관/교사/보건소 관리/기타 다른 전문가들
    아래의 커리큘럼에 협약에 관한 교육이 몇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적시하시오:
    로스쿨/사범대학/의과대학/간호학교/사회복지학교/심리학과/사회학과
47. 항소에 대한 여론, 자문, 평가 등을 통해 얻어진 아동의 견해가 법규정, 정책, 판결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적시하시오.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 (제7, 8, 13-17, 37a)

위 8번을 보시오

48. 협약에서, 특히 7,8,13-17,37a에서 공표된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이 아동 관련법에 의해 승인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행정 사법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A.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제7조)

49.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보호시설, 난민 아동 및 방랑집단, 추방자들과 관련하여 시골, 오지에서 사회 문화적 장애물에 의해 아동들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50. 아동 출생 등록에 대한 여론의 경각심을 높이고 등록 업무자를 적절하게 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련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51. 출생 등록시 포함되는 아동 신분요소들을 기술하고,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낙인이나 차별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52. 아동의 부모가 아동 권리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53. 협약 제7조에 의거, 아동이 무국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적취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혼외자로, 보호시설이나 난민촌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이 권리를 갖는지 언급되어야 한다. 국적 취득시 적용되는 기준을 적시하고 아동이 부모 양쪽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적시하시오.

B. 신분 보존권 (제8조)

54. 아동의 신분을 보존하고 어떠한 위법적인 간섭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아동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아동에 대한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고 그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C. 표현의 자유 (제13조)

55.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하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협약 제13조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적시하시오.

D.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4조)

56. 아동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과, 아동의 능력 발달이 고려되는 정도를 기술하시오.
57. 소수자나 원주민 집단과 관련하여 아동의 종교나 신념을 드러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협약 제14조에 합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자유권의 제한과 아울러, 공립학교나 기관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E.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15조)

58. 아동이 결사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제정한 법률 그리고 아동의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협약 제 15조에 합치하는, 이 권리 행사 시 주어지는 제한들을 모두 적시하시오. 현존 아동 결사들과 아동 권리 향상에 있어서 그것들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시오.

F.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6조)

59. 아동이 자신의 명예나 신망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을 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지하는 법률과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회복책 등을 기술하시오. 사법 또는 행정 절차 및 치료/보호 기관에 위탁된 아동들을 위해 채택한 특별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G.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권 (제17조)

60. 국내외 자료에서부터 아동의 사회적/영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에까지 아동이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다음 사항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1) 아동 도서의 출판과 배포, 소수자집단이나 원주민 소속 아동들의 언어적 곤란과 같은 아동의 사회 문화적 이익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
   (2) 교육에 목표를 둔 협약 제 29조에 합치하여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체결된 국제 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 문화적 이익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교환/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 협력;
   (3) 협약 제13조와 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해로운 대중매체에의 노출과 아동 복지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

H.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제 37조 a)

61. 아동에 대한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있고 아동들이 구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적시하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시오:
   (1) 아동에 대한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된 캠페인;
   (2) 잘못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서, 기구/서비스/편의시설 등에서 아동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육 훈련 활동;
   (3)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례들;
   (4) 그러한 사례들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
   (5) 고문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6) 독립 감시 기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V. 가족 환경과 대체적 보호 (제5, 18, 9-11, 19-21, 25, 27, 39조)

위 8번을 보시오

A. 부모의 지도 (제 5조)

62. 사회 내 가족 구조를 기술하시오. 또한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63. 가족 생활 내 아동 권리에 대해 부모와 아동 대상 캠페인과 아울러, 가족 상담 서비스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 관련 전문가집단 대상 훈련 활동 등을 적시하고, 그러한 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적시하시오. 아동 개발과 아동의 능력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모나 다른 아동 책임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또한 적시하시오.
64. 협약의 기본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들을 적시하고, 제5조의 이행 과정과 장애물들 그리고 사용된 지표 등을 기술하시오.

B. 부모의 책임 (제18조 1, 2항)

65.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부모 쌍방이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인식과 아동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법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시오. 또한 무차별원칙과 아동 견해 존중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아동개발 원칙들이, 협약에 규정된 것처럼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적시하시오.
66. 아동 보호기관들/시설들/서비스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와 법정 후견인들이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한부모가정아동, 극빈가정과 같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67. (중앙 지방적 차원,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배분된 자원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아동들에 대한 분산된 정보 (예를 들어, 성별/연령/종교/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적)를 제시하시오. 또한 미래에 대한 목표와 아울러 협약 제18조의 이행상 진전사항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딪친 장애들을 기술하시오.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68. 아동의 학대나 유기의 경우 또는 부모의 별거로 인해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와 같이 그러한 분리가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이러한 결정,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 그리고 사법적 심사의 역할에 있어서 조정역할을 하는 관계당국을 확인해 주시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9.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 9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조치를 기술하시오.
70. 아동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상 채택된 조치를 적시하시오. 또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를 적시해 주시오.
71.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의 아동의 분리가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제9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조치를 적시하시오. 또한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72. 제9조의 이행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에 대한 평가와 과정상 장애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등과 함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분산된 관련 정보 (예를 들어, 연령/성별/국적/인종적/사회적)를 제시해야 한다.

D.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73.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이,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이러한 점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를 기술하시오.
74. 그와 같은 신청이 협약에 의거하여 특히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적시하시오.성별, 연령, 국적, 인종별로 정보를 제공하시오.
75.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또한 예외가 있는 경우 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합치하는지를 적시하시오.
76.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출국할 수 있는 권리에 부여된 제한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적시하고 아울러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의 기본원칙과 함께 협약에서 승인된 권리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적시하시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7. 제 10조의 이행에 있어서 달성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E.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 (제11조)

78. 아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그러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들과 입법/행정/사법적 방책들;
   (2) 당사국이 체결한, 이 주제에 대한 양자 또는 다자협정, 그리고 당사국이 가입했을 수도 있었을 협정과 거부된 상황;
   (3)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성별/연령/국적/거주지/가족상태/불법 해외이송 범죄자들과의 관계 등 관련아동에 대한 통계.

F. 아동양육비의 회수 (제27조 4항)

79. 부모의 별거나 이혼의 경우와 아울러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나 프로그램 그리고 채택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적시하시오. 또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1)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 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 -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3) 아동양육비의 회수 또는 부양의무에 관한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장애들;
   (4)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동의한 관련 국제조약들, 또는 기타 다른 협정들;
   (5) 관련 분산 통계- 성별, 연령, 국적, 아동과 그 부모의 거주지, 아동에게 재정적 책임있는 자의 거주지.

G.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제20조)

80. 아래와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2) 이러한 아동에 대한 대체적 보호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
   (3) 이러한 아동을 적절한 기관에 두는 것은 오직 진실로 필요할 때만 허용된다는 점;
   (4) 대체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실태를 감독하는 것;
   (5)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 에 대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존중.

81. 이러한 해결책이 고려될 때, 아동 양육에 있어서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한 정당한 고려와,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지는 정도를 적시하시오. 성별/연령/국적/사회적 인종적/언어/종교 등에 따른 방책과 대체적 보호의 특성에 따른 방책으로써 관련 아동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2. 제20조의 이행으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등을 기술하시오.

H. 입양 (제21조)

83.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채택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아동 입양 허가 권한을 가진 관계당국;
    (2) 입양이 결정되는 기초로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 그리고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3) 입양이 허용되기 위해 필요한 부모, 친척 및 법정후견인에 관한 아동의 신분;
    (4) 관계자들의 연관, 입양의 대체수단과 입양의 결과에 대한 고려를 허용 하기 위해 그들의 동의가 요구되고 필요한 상담이 주어지는 상황, 아동의 참여가 허용되고 그들의 견해가 비중을 갖는 정도;
    (5) 감시 기구 등과 같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들;
    (6) 아동 신원과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 등과 같이 아동의 권리 특히 아동의 시민적 권리에 미치는 입양의 영향.
84. 국제입양의 경우에 다음의 점들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1)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을 때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을 때, 오직 그때만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2)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은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한다;
    (3)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
    (4) 국제입양의 양육지정과 같은 아동의 실태를 감시하고 아동최선의 이익 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85. 다음과 같은 점을 적시하시오.
    (1) 제21조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 이나 협정들 (예를 들어, 국제입양 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Hague 협약 1993년 5월);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이러한 범위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
(3) 연령, 성별, 아동의 지위, 출신국과 입양국의 아동 가족 상황, 출신국 입양국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 관련아동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
(4) 제21조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 부딪친 장애, 앞으로의 목표.

I. 양육지정의 정기적인 심사 (제25조)

86.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양육지정과 관계된 모든 상황들과 아울러 공공/사립 기관들과 서비스, 편의시설 등에서 아동에게 주어진 처우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승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적시하시오.
87. 특히 이러한 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관계당국-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하여;
(2) 아동의 관리, 보호, 치료를 위한 양육지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상황들;
(3) 양육지정과 처우에 대한 심사의 빈도수;
(4) 무차별원칙, 아동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등과 같은 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대한 존중;
(5) 관련아동들에 대한 통계- 유기/장애/보호시설과 난민수용소 등의 아동을, 연령/성별/국적/사회적 인종적/거주지/가족상황/양육지정의 지속기간/심사의 빈도 등에 따라 각각의 통계;
(6) 제25조 이행으로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J. 유기와 학대 (제19조)·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88.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시해야 한다:
(1) 소년원과 같은 공공/사립기관, 양육/보호시설, 가정 내에서 신체적 체벌/고의적인 모욕/상해/학대/유기/착취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제19조에 의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보장장치들;
(3) 배상과 같은 구제책과 아울러, 아동이 고소절차를 미리 알고 직접 또는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제19조에 의거, 아동이 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당국의 개입을 가능케하는 절차들;
(5) 아동에 대한 훈육, 보호, 대우를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된 교육적 조치들과 기타 다른 조치들;
(6) 폭력, 학대, 유기 등을 방지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식개혁운동;

(7) 가정, 복지, 교육, 교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상해나 학대/유기/혹사나 착취의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 여기에 기여하고 채택된 조치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다른 요소들;

이와 관련하여 연령/성별/가족상황/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로 관련아동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

89. 제19조 2항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사회복귀 기구들과 같이,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된 효과적인 절차들;

(2) 모든 형태의 방지책들;

(3)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사법적 개입을 위해 채택한 효과적인 조치들;

(4) 아동과 일하는 전문가 집단을 위한 필수적인 보고 시스템의 존재;

(5) 폭력/학대/유기 등의 희생자가 된 아동을 위한 조언이나 상담, 신뢰할 수 있는 구제방법의 존재;

(6)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90. 제 39조에 의거, 여하한 형태의 유기/착취/학대 등의 희생자가 된 아동이, 건강하고 자기존중감과 존엄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에서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또한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적시하시오.

Ⅵ. 기초적인 건강과 복지(제 6, 18c, 23, 24, 26, 27a-c조)

위 8번을 보시오

A. 장애 아동 (제23조)

92.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실태와 다음에 대한 보장조치들:

(1) 존엄성과 자립이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장애아동이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

(2)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장애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방지와 제거;

(3)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촉진;

(4)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

(5) 학교를 포함하여 기관/서비스/편의시설 등에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려;

(6) 장애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활용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아동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원조가,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되고 확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7) 그러한 원조는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8) 장애아동 실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취해진 조치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장애아동의 확인과 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적절한 감시 기구의 설립, 진전사항 평가와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9)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 등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특별훈련을 포함하여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10)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 재활/교육/직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당사국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하에 취해진 조치들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들에 대한 고려;

(11) 장애유형별 관련아동, 제공된 원조 범위, 교육/훈련/보호/사회복귀 등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고용과 오락, 재정과 분배된 다른 자원들, 성별/연령/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기타 관련 정보.

B. 건강과 의료지원 (제24조)

93. 제6조와 24조에 의거하여 다음을 위해 채택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2)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3)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과 같은 협약의 일반원칙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94.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당사국의 이전 보고서 제출 이래로 발생한 변화들을 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그것이 아동 생활에 미친 영향, 이러한 권리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들, 발생하는 문제들, 어린이 사망률과 발병률/서비스 범위/통계 수집/정책과 입법/예산 분배/NGO와의 협력과 국제원조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목표.

95. 특히 다음을 위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 -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로 각각의 통계를 제공하고 평균적인 비율을 적시할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시골과 도시 지역에서의 기초건강관리 보급, 예방 건강관리와 치료 건강관리 사이의 균형;
   b. 성별/연령/사회적 인종 간 존재하는 차이 등을 포함하여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는 아동에 대한 정보, 현존하는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c. 세계적인 면역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3)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식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들;
존속하는 불균형과 장애들,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들, 앞으로의 활동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 등을 적시하시오. 또한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을 포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a. 저체중 출생아동의 비율;
   b.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병의 특성과 상황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c.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상태 등을 포함하여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의 비율, 그리고 깨끗한 식수의 부족;
   d. 충분한 영양식의 제공;
   e.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험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

(4)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것, 주어진 적절한 정보/보장범위/사망률과 그 주요원인(특히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로 구분하여) 등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적시하는 것, 산모가 출산 전후 건강관리/훈련된 사람들/병원 관리와 분만 등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는 비율;

(5)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이점에 관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a. 일반인들에게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 개발한, 캠페인/프로그램/서비스/전략/기타 다른 관련기구들;
   b.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잇점,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문에서 이용되는 방법들;
   c. 안전한 위생의 이용도;
   d. 가정 음식 안전을 보장하는 음식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들;
   e. 보건담당자들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
   f.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등을 포함한 각각의 통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개발된 정책과 프로그램들;

b. 연령/성별/사회적 인종적/시골과 도시 별 인구수;

c. 적절한 정보와 상담 등과 같이 조기임신을 방지하고 사춘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d. 이와 관련하여 학교 커리큘럼과 같이 교육 기관이 맡은 역할;

e. 연령/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임신의 빈도수에 관한 각각의 통계.

96. 일반인과 고위험 집단과 아동집단 사이에서 HIV/AIDS 의 유행실태를 적시하고, HIV/AIDS에 관한 교육과 건강정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적시하시오:

(1) HIV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과 전략들;

(2) 일반인과 아동 사이에서 HIV 전염과 AIDS의 발병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들, 특히 연령/성별/시골과 도시별 빈도수;

(3) 아동과 부모 간 HIV 전염과 AIDS의 경우에 제공되는 치료와 관리, 시골과 도시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장된 범위;

(4) AIDS의 결과로 고아가 된 아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5)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HIV나 AIDS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자신이 감염된 경우, 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전략, 기타 다른 관련 조치들.

97. 아동 특히 여자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또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반하는 전통관습을 (예를 들어, 생식기절단과 강제결혼)폐지하기 위해 제 24조 3항에 의거하여 채택한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또한 아동의 권리를 해치는 전통관습에 대한 평가를 적시하시오.

98. 제24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하시오. 또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부여되는 특별한 고려를 적시하시오.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의 틀에서 개발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명시하시오. 쌍방간/지역적 차원, 언급된 지역, 확인된 목표집단, 제공된 재정적 지원, 고려된 우선권,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에 대한 평가 등.

적절한 경우, UN기구와 전문기관 및 NGO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편의 및 시설(제26조, 18조 3항)

99.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
   (2)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필요한 조치들;
   (3) 이러한 혜택이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여되는 방식

100. 이러한 권리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규정들,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회보장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들, 혜택을 주기 위해 고려되는 기준들 등을 적시하시오. 기준들에는 그러한 조치의 범위와 재정적 관계, 연령/성별/가구당 자녀수/부모의 지위/한부모 상황 등에 따른 빈도수, 사회보장과 실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각각의 정보가 포함된다.

101.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이 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의 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권리를 승인하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정보, 지역과 시골/도시 지역에서 편의 및 시설에 관한 범위에 대한 정보, 연령/성별/국적/사회적 인종별과 같이 그러한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 재정적 관계에 대한 정보 등.

102. 이러한 권리의 이행에서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등을 기술하시오.

D. 생활의 수준 (제 27조 1-3항)

103. 다음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있음을 승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2) 적절한 생활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관련지표들,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가족상황 등을 포함한 아동인구 중 범위;
   (3)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보할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4)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다음을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원조의 특성, 그의 예산과의 관계, 생활비용과의 관계, 주민에 대한 영향; 지역/시골과 도시별/연령/성별/사회적 인종별로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시오.
   (5) 필요한 경우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획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또한 그러한 원조와 계획의 특성, 성별/연령/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과 같이 관련 인구수, 분배된 예산 분배, 보장된 범위, 우선권, 목표 등을 적시하시오;

(6)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가 채택한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의 후속조치로서 채택한 관련조치들.

104. 이러한 권리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Ⅶ.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제28, 29, 31조)

위 8번을 보시오

A. 직업교육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 (제28조)

105.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승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행정/예산상 특성을 포함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06. 이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사항을 적시하시오:

(1) 협약의 일반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불균형 감소를 위한 무차별원칙 등-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2) (중앙/지방별,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의 비율과 다양한 차원의 교육에 분배되는 예산의 비율;

(3) 가정에서 아동 교육 비용에 대한 고려사항과 제공되는 적절한 지원;

(4) 아동이 지방/원주민 또는 소수자 언어로 교육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5) 여자아동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질좋은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기구들;

(6) 학교 내에 충분한 교사수를 보장하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7) 모든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적절한 교육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

(8) 18세 이하와 이상에서의 문맹률,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문자수업 등록률;

(9) 모든 비정규 교육체계;

(10) 어린 아동들 특히 소외계층 어린 아동들에게 조기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정책들;

(11) 입법/정책/편의시설/예산분배/교육의 질/등록/탈락/읽고 쓰기능력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교육체계 내에서 발생한 변화들;

(12) 개발된 감시구조.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3)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로, 교육성과 등 을 포함하여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

107. 다음을 위해 채택한 특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초등교육에 입학하는 최저연령과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연령 그리고 초등교육을 마친 아동들의 비율을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지원범위/예산분배 등을 포함한 각각의 정보와 함께 적시함과 아울러 초등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에게 의무적이고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조치들;
(2)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 다음을 위해 채택한 조치들:
a.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범위/예산분배 등을 포함한 각각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들에 대해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b.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예산분배 등을 포함하여 관련아동들을 적시하면서,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
(3)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연령/성별/국적/사회적 인종별 고등교육 비율과 함께 적시하시오;
(4)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이러한 정보와 지도의 형태들,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 그 목적을 위해 배분된 예산 등을 연령/성별/지역/시골/도시/사회적 인종별 관련정보들과 함께 적시하시오;
(5)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 그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들, 학교 입학과 출석/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들, 퇴학당한 학생들을 위한 대체수단들을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인종별로 적시하시오.

108.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아동집단에 대한 정보와,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탈락한 아동들이 처한 상황(예를 들어, 장애, 수감, 임신, HIV/AIDS 감염 등),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로 각각의 통계를 제공하시오.

109. 제 28조 2항에 의거,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다음을 포함하여:
(1) 공립 및 사립학교와 다른 교육기관들에 적용되면서 신체적 체벌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 아울러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및 제19조,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9조, 37조(a)를 포함한 협약의 규정과 무차별원칙, 아동 최상이익 원칙과 아동견해 존중원칙 등에 합치하지 않는 여타 규율들을 금지하는 법률;
(2) 보고와 고소의 구조, 학교 규율 운영의 감시 체계;
(3)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
(4) 학교 선택과 퇴학에 관계된 절차 및 교육에 관계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법 절차에 아동이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

110. 제28조 3항에 의거,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특히 다음을 위하여:
(1)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2)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베풀기 위하여.

111. 쌍방간 및 지역적 차원에서 개발된 활동과 프로그램들, 연령/성별/국적/사회적 인종별 목표집단들, 제공된 재정적 원조와 우선권, 협약 제29조에 의해 확인된 교육 목적에 대한 고려, 성취된 진전사항의 평가와 부딪친 장애. 적절한 경우, 관련 UN 기구와 전문기관 및 NGO에 대해 언급하시오.

B. 교육의 목표 (제29조)

112. 당사국이 정한 교육 목표가 이 규정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정/교육/기타 다른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1)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일반적인 인권 특히 아동 권리에 관한 주제가 학교 커리큘럼에 편입되어 있고 학교생활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적시하시오;
(3)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113. 다음사항을 적시하시오:
(1) 교사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훈련;
(2) 교육의 다양한 차원에서 협약 제29조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학교 정책과 학교 교과과정을 개정;
(3) 관련 프로그램과 이용된 자료;
(4) 동료(또래) 교육과 동료(또래) 상담;
(5) 학교 조직을 협약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학교 내 구조들.

114. 제 29조 2항에 의거, 개인 및 단체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15. 다음을 위하여 개발된 적절한 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이러한 기관이 협약에서 나타난 교육의 목표를 존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등-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3) 안전/건강/직원의 숫자 및 적합성/관할 감독 등의 면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관할 당국이 정한 기준에 합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116. 이 조항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C. 여가, 오락, 그리고 문화 활동 (제31조)

117.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2)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118. 이점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적시하시오:
   (1) (중앙/지역/지방별,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위해 분배된 예산비율;
   (2)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 차원,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개발 제공되는 문화적/예술적/오락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3) 교육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에서 승인한 다른 권리들과 관련하여 제 31조에서 승인한 권리의 향유;
   (4)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을 존중하기 위한 보장;
   (5)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 관련아동들에 대한 관련 통계;
   (6) 제31조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Ⅷ. 특별보호조치(제22, 38, 39, 40, 37b-d, 32-36조)

위 8번을 보시오

A. 위급상황에 있는 아동들

1. 난민 아동 (제22조)

119.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20. 또한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난민으로 간주되거나 피난처를 구하는 아동에게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

(2) 다방면/지역적/쌍방 차원에서 당사국이 회원국인, 관련 국제 인권과 인도주의 기관들;

(3) 난민 지위 결정,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난민 아동 보호, 아동이 이용가능한 보호시설과 구제책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과 절차들;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포함하여 협약에서 공표한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는 과정 및 관련 국제 기관들 내에서 제공된, 보호와 인도주의적 원조;

(5) 혼자된 아동 또는 부모나 다른 사람과 동행한 아동의 권리, 일시적/장기적 해결책과 가족구성원 추적 및 가족재결합 등과 관련하여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6)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7) 난민이거나 피난처를 찾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소관 관리들을 훈련시키고 적절한 정보 보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8) 연령/성별/출신국/국적/동행여부 별로 난민아동의 수;

(9) 이러한 아동의 취학률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율;

(10) 보고 기간 동안, 협약을 이해하는 훈련 과정에 참석한 난민아동을 다루는 직원들의 인원을 직업별로 분류하여;

121. UN 및 UN과 협력하는 다른 소관 정부간 조직이나 NGO에 의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들을 위한 협동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아동을 보호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2)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난민아동 가족 구성원이나 부모를 추적하기 위하여.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없는 경우, 그 아동이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22. 이 조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조치들의 이행과정에서 성취된 진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평가 기구와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우선사항 등을 적시하시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아동 (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39조)

123.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제 38조에 의거하여 채택한, 입법/행정/교육상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이점에 관하여,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협약/문서/여타 다른 인도주의적 법률들과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 그것들의 효과적인 보급과 관련 전문가들의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24. 15세 미만인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38조에 의거한 입법/행정/기타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이점에 관하여, 적대행위 동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이러한 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에 대해 기술하시오. 적대행위에 참여한 아동의 규모를 연령/성별/사회적 인종별로 적시하시오.

125. 15세 미만인 자의 징병 금지를 보장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38조 3항에 의거한 입법/행정적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이점에 관하여, 이러한 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적시하고, 징병되었거나 자원입대한 아동의 규모를 연령/성별/사회적 인종별로 적시하시오.

126.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한, 제38조 4항에 의거한 입법/행정/예산상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27. 이점에 관하여,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 인도주의법, 채택된 조치들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민간인 내에서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평화와 평정의 나날과 같은 특별한 합의의 중재를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원조와 구제 프로그램 장려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연령/성별/국적/사회적 인종별로 관련아동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 등을 적시하시오. 무력분쟁으로 인한 아동 사상자수와 추방자수를 적시하시오.

128. 제38조 규정의 이행에 관해 기술할 때,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사존중, 생명권, 최대한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 - 을 보장하기 위한 존중을 적시하시오.

129. 제3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 무력분쟁의 희생자가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
(2) 이러한 회복과 사회복귀가 아동의 건강, 자아존중, 존엄성 등을 육성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130. 이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1) 아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효과를 알리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발한 정책과 프로그램들;
(2) 아동 병사들의 해산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조치들;
(3)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맡은 역할;
(4) 실시된 조사와 연구;
(5) 그들을 위해 분배된 예산 (국가/지역/지방별,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6) 무력분쟁의 결과로서 신체적 심리적 처우를 받은 아동의 수.

131. 제38,39조의 이행에서 성취된 진전사항, 부딪친 장애, 앞으로의 목표를 기술하시오.

B. 소년사법 집행체계에 관련된 아동

1. 소년사법의 집행 (제40조)

132. 소년사법 집행체계에 관련된 모든 아동이 다음과 같이 처우받을 권리를 승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입법/다른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
(2)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3)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4) 협약의 일반원칙 -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 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면서.

133. 제40조 2항과 관련하여, 소년사법 집행영역에 적용가능한 다방면/지역/쌍방간 차원에서의 관련 국제문서를 적시하고, 아울러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입법/여타 적절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2)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아동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보장사항과 아울러,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받는다;
a.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b. 피의사실을 신속하게(법률에 규정된 시간적 한계를 적시할 것) 직접적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적시하시오;

c.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법률에 규정된 시간적 한계를 적시할 것)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 최상이익원칙에 부합하는 한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4)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5) 사용되는 언어를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6)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134. 제40조 3항에 의거,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국가적으로 기능, 숫자, 보급 등과 아울러 입법과 절차 등과 함께 적시하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 중심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2)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들.

135. 제40조 4항에 의거,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이용가능한 처분을 적시하시오.

136. 협약 규정과 베이징규칙(Beijing Rules), 리야드지침(Riyadh Guidelines), 자유박탈 아동보호를 위한 UN Rules 와 같은 소년사법관련 국제기구들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사/검사/변호사/법집행관/이민국관리/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체계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을 위해 개발된 훈련 활동들을 적시하시오.

137. 제40조 이행에서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등을 기술하고,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범죄와 이용가능한 처분 별로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적시하시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 체포, 억류 또는 구금 등에 의한 아동의 자유 박탈 (제37조 b-d)

138.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제37조b항에 의거하여 채택한 법적/여타 다른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자유박탈 아동보호를 위한 UN Rules에 따르면, 자유의 박탈이란 사법적/행정적 또는 다른 공권력에 의해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공/사적 보호소에 구금하거나 체포 또는 억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rule 11b).
   (2)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3) 협약의 일반원칙들-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 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이 존중되어야 한다.
139. 자유박탈의 대체수단들과 그것들의 이용 빈도수, 그리고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관련아동에 대해 적시하시오.
140. 다음 사항을 위해 설립한 기구들과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1) 특히 난민과 관련하여, 체포/억류/구금과 같은 아동의 자유박탈을 금지하기 위하여;
   (2) 불확정형(부정기형) 선고를 금지하기 위하여(법적인 금지를 포함하여);
   (3) 독립기구와 같이 관련아동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4) 진전사항을 감시하고 장애들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목표 수립을 위하여;
141. 이점에 관하여, 위법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리고 법률 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수, 자유박탈의 기간 등을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 각각의 통계로, 그리고 자유박탈의 이유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142. 제37조 c항에 의거, 자유박탈아동이 다음과 같이 처우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여타 다른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2) 아동의 연령상 필요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143.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상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박탈아동은 성인과 격리되어야 한다;
   (2) 보고서에 상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이러한 접촉 횟수를 적시할 것);
   (3) 아동이 수용되는 기관의 조건을 독립기구 등이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
   (4) 아동이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의 수용과 관련된 상황과 아동의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다;

(6)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7)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이 존중되어야 한다.

144. 제37조 d항에 의거, 모든 자유박탈아동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 이러한 구조에 접근할 법적인 시간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여타 적절한 구제방법 등을 적시하면서;

(2)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3)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 그러한 결정에 대해 법적인 시간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적시하면서.

145. 법률적 및 기타 구조가 제공된 사건의 비율, 자유박탈의 합법성이 확인된 비율 등 모든 상황을,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로 각각의 통계를 기술하시오.

146. 제37조 b항과 d항의 이행에서 성취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등을 기술하시오.

3. 사형과 종신형의 금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함께 아동에 대한 판결의 선고 (제37조 a항)

147.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여타 다른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48. 제37조 a항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를 적시하시오.

4.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149. 소년사법 집행체계에 연관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회복과 사회복귀는 아동의 건강과 자아존중, 존엄성을 육성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39조와 제40조 1항에 의거한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50.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과 활동들, 설립한 기구들,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종별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적시하시오. 제39조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등을 적시하시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C.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착취받는 아동

1. 아동 노동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151. 다음 사항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정/사회적/교육적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 경제적 착취;
   (2)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

152. 이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법률이, 위험하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하고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는 활동들 그리고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에 대한 정의와 금지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가내 종업원, 농업, 가내 수공업 등과 같이 공식/비공식 아동노동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취해진, 교육 특히 의무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정보와 인식 캠페인 등과 같은 예방과 구제책;
   (3)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153. 다음을 위해 제공되는, 다른 국제 기구들의 관련 규정들과 제32조에 의거한 입법/행정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1)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2)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3)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소송절차의 구조.

154. 이점에 관하여, ILO와 같이 당사국이 회원인 국제협약과 여타 관련 기구들을 기술하고, 아울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아동 노동과 경제적 착취 상황을 금지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적 정책과 각 전문분야 협력적 전략;
   (2) 그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정 감시체계;
   (3) 확인되고 사용된 관련 지표들;
   (4) 기술적인 협력과 국제적 원조에 관해 개발된 프로그램;
   (5) 본 조의 이행에서 성취된 진전사항과 설치된 기준, 부딪친 장애들;
   (6) 성별/연령/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와 아울러 감독자가 관찰한 위반사항과 적용한 제재에 관한 각각의 통계;

2. 약물 남용 (제33조)

155. 다음을 위한 입법/행정/사회적/교육적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6. 또한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당사국이 가입한 지역적 쌍방간 차원의 관련 국제협약들;
일반 국민과 아동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제도와 체계들- 학교 구조와 커리큘럼 등을 포함해서;

(2) 상담/조언/구조 (적절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면서) 등과 같이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조치들, 관련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

(3) 아동의 약물 남용 및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관련된 발생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들,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4)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각각의 관련통계.

157. 술과 담배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위해가 되고, 성인에게는 제한되지 않지만, 여타 다른 물질들을 아동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다른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아동의 이러한 물질 사용에 관한 각각의 통계에 대해서도 기술하시오.

3.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제34조)

158.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교육적/사회적 조치들을 적시하시오. 특히 다음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시오:

(a)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59. 특히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인식/교육 캠페인 - 미디어와 협력하여 취해진 캠페인을 포함하여;

(2)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내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적/각 전문분야협력적 전략;

(3) 그 목적을 위해 설립한 조정/감시 체계;
확인되고 사용된 관련 지표들;

(4) 법적/다른 적절한 원조와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희생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개발한 입법사항;

(5)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아동매매와 아동포르노, 아동포르노의 소지, 다른 위법한 성적 활동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 등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6) 치외법권원칙이, 당사국의 국민과 거주자가 타국에서 행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안에 편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역주- 당사국 국민이 타국에서 성적착취를 했을 때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

(7)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학대받은 아동을 다루기 위해 특수 법집행관과 경찰 연락관이 임명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8)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 희생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그리고 사법적 협력과 법집행관 사이의 협력을 위해, 당사국이 체결하거나 동의한, 관련 쌍방간/지역적/다각적 협정;

(9) INTERPOL, NGO와 같은 관련 국제 조직들과 UN단체와 함께 개발한, 기술적 협력과 국제적 지원에 관한 관련 프로그램들;

(10) 협약 제39조에 의거, 성적 착취와 학대의 희생자인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각 전문분야협력적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11)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12) 제34조의 이행과 관련된 아동에 대한,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 각각의 통계. 통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고기간 동안 아동이 마약 거래에 이용된 사건의 발생률; 마약 거래에 이용된 아동에 대한 법적인 최저 형벌;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에 대한 각종 사건의 수치 (상업적인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아동매매, 아동의 유괴, 아동에 대한 폭력);

(13) 제34조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 부딪친 장애들, 수립된 목표.

4. 매매, 거래, 약취유인 (제35조)

160.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 약취유인,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차원의 입법/행정/교육/예산상 모든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61. 이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약취유인/매매/거래 등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입법과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2) 이러한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과 정보에 대한 캠페인 - 미디어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캠페인을 포함하여;

(3)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분배;

(4)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적 전략;

(5) 위 목적을 위해 설립한 조정 감시 체계;

(6) 확인되고 사용된 관련 지표들;

(7) 이러한 행위를 다루는 법집행관 사이에 특수집단이 만들어졌는지의 여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8) 소관 당국에게 제공되는 관련 훈련 활동들;
(9) 제39조에 의거, 관련아동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기구와 프로그램들;
(10) 제35조 이행에 있어서 협약의 여타 규정들과 시민적 권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아동의 정체성 보장 및 아동노동과 성적 착취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착취도 금지한다는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11) 협약의 일반원칙 -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사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162. 아동 매매/약취유인/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법당국과 법집행관 사이에 국제적 협력을 위해 특히 이러한 범죄자와 아동 희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교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양국간/다국간 관련 협정들을 적시하시오.
제35조 이행에 있어서,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사회적 인종별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기술하고 또한 본 조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를 기술하시오.

5. 착취의 다른 형태들 (제36조)

163.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행정/교육/예산/사회적 모든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64. 특히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아동복지에 해가 되면서 널리 행하여지는 착취의 모든 형태들;
(2) 인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아동/가족/대중 대상 캠페인 및 미디어와의 연관성;
(3) 아동 상대 전문가 집단을 위해 개발한 훈련 활동들;
(4)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적 전략 및 앞으로의 목표;
(5) 아동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본 조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6) 사용된 관련지표들;
(7)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착취의 희생자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8) 협약의 일반원칙들 -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아동견해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9) 본 조의 이행 과정에서 협약의 다른 관련 규정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10) 본 조의 이행과 관련된 아동에 대한 연령/성별/지역/시골과 도시/국적/사회적 인종별 각각의 통계.

D. 소수자 또는 원주민에 속하는 아동 (제30조)

165.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에 속하는 아동이,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행정/교육/예산/사회적 차원의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1) 자신의 고유문화를 향유할 권리;
(2) 자신의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할 권리;
(3) 자신의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166. 이점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적시하시오:
(1)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 또는 원주민 집단들;
(2) 아동이 속한 소수자 또는 원주민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
(3) 소수자 또는 원주민 집단에 속한 아동이, 협약에서 공표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4) 이러한 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여하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 그들이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5) 협약의 일반원칙들- 무차별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견해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 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6) 제30조의 이행에서 협약의 다른 규정들과 시민적 권리들이, 특히 아동의 정체성 보존/가정환경/대체적 보호/교육/소년사법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7) 연령/성별/언어/종교/사회적 인종별 관련아동에 대한 각각의 통계;
(8) 본 조의 이행에서 성취한 진전사항과 부딪친 장애들, 앞으로의 목표.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일반논평 제5번)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들 (제4, 42, 44조6항)

서문

아동권리위원회는 소위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개괄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논평을 입안하였다. 다양한 개념요소들이 복잡해서 위원회는 적절한 과정에서 개별요소들에 대해 세부적인 일반논평을 밝히고 이러한 개요를 상술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의 제목이 붙은 일반논평 제2번(2002)은 이미 이 개념에 대해 상술하였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Ⅰ. 도입

1.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당사국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행이란 당사국 관할권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해 협약 실현을 보장하는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는 당사국이 협약에 담긴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이지만, 이행 - 아동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 - 의 임무는 아동 자신들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분야가 맡아야만 한다. 모든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하게 합치하도록 그리고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직접 적용되고 적절히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위원회는, 정부·의회·사법부 내 모든 차원에서 특수기구의 개발·감시·훈련·여타 활동들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조치들을 밝혀왔다.
2.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보고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위원회는 소위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보고서 심의 후 제기한 권고의견에서 위원회는 일반조치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활동들을 기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의 보고지침은 협약 조항들을 그룹으로 정돈한다. 즉 첫 번째 그룹은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들"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 그룹은 제4조와 42조(협약의 내용을 아동과 성인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 아래 66번을 보시오), 그리고 44조 6항(당사국 내에 보고서가 널리 이용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될 수 있도록 만들 의무; 아래 71번을 보시오).

3. 이러한 조항들에 덧붙여서 여타 일반 이행의무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4. 또한 제3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국제인권법에 협약 제4조와 같이 전반적인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유사한 조항들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2조”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등이 그것이다. “인권위원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현재 일반논평에 보충적이면서 아래에 언급되는 이러한 조항들과 관련한 일반논평을 제시하였다.
6. 제4조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이행의무를 반영하는 한편,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이의 구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구분하거나, 또는 협약상 권리들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는, 간단하고 권위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보고지침은 제7, 8, 13~17, 37(a)조를 “시민적 권리와 자유”라는 표제 아래 묶고 있지만 협약 내에 유일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문맥에서 적시하고 있다. 협약 제2, 3, 6, 12조를 포함하여 여타 많은 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유와 불가분적으로 얽혀있다. 아래 25번에 언급되듯이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제4조의 두 번째 문장은, 몇몇 국가에서 재정적 및 여타 자원의 부족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수용을 반영한다; 그것은 이러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자신들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행을 했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구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이 협약을 비준하면 그들은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이행을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이행에도 기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8. 그 문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유사하며,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가용자원이 명백하게 불충분한 경우조차도 당사국은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관련 권리의 가능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한 최대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당사국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가장 취약집단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9. 위원회가 밝히고 현재 일반논평에서 기술한,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는, 입법·정부차원 및 독립적인 조정 감시기구의 설립·광범위한 통계수집·적절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및 인식제고와 훈련 등을 통해서 아동이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채택과 보편적인 비준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 중의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다양하게 다음과 같이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친화적인 집단·기구·활동들을 개발한 점이다 - 정부 핵심부에 아동권리그룹, 아동담당장관, 아동담당 정부부처간 위원회, 의회내 위원회, 아동 영향 분석, 아동 예산, 아동권리실태보고서, 아동권리에 대한 NGO연합, 아동 감시자, 아동권리 감독관 등.
10. 이러한 개발 중 일부가 장식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출현은 사회 내에서 아동 지위 인식에 대해 변화가 있음을, 아동에게 기꺼이 더 높은 정치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아동 및 그들 권리의 관리에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11. 위원회는, 협약 규정상 당사국이 각각의 모든 아동에게 법적 의무를 완수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 인권의 이행은 아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적인 과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12. 정부·의회·사법부 등이 아동권리를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특히 위원회가 일반원칙으로 밝힌 다음 조항들에 비추어 필요한 일이다.

    제2조 :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각 아동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무차별의 무는, 당사국이 개별아동과 아동집단에게 그 권리 승인 및 실현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차별 또는 잠재적 차별 확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항목별 통계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별을 밝히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교육적 조치 뿐만 아니라 입법·행정·자원분배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권리의 동등한 접근에 관한 무차별원칙의 적용이,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차별을 야기하는 조건을 감소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조 1항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정부·의회·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법부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모든 입법적·행정적·사법적 기관은, 아동권리와 이익이 그들의 결정과 활동에 의해 - 예를 들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현존하는 법률·정책·행정적 활동·판결 등에 의해 - 얼마나 영향받는가를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최상이익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받는다.

제6조 :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 및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위원회는 당사국이 "발달"의 개념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기대한다. 이행조치들은 아동을 위한 최적의 발달을 성취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12조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

아동 권리를 촉진·보호·감시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원칙은,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모든 조치들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결정과정을 아동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원회가 보기에 당사국이 점점 더 많이 대응하게 되는 실재하는 난제이다. 투표권을 18세 이하 아동에까지 부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 내에서 투표권 없는 아동 견해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하다. 그러나 아동견해를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동견해에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아동견해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당사국이 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아동권리 이행에 아동을 민감하게 만드는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아동의회'와 같은 일회적 또는 정기적 행사들이 일반인식을 촉진하고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과의 협력 및 협의가 명목상에 그치게 되고 대표자 견해를 확인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 등을 피해야만 한다. 제12조 1항에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강조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특별한 아동집단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률개정안 제안에 있어서 소년사법의 경험을 가진 아동들이나, 입양법률과 정책에 있어서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정의 아동들.

정부가 단순히 NGO나 인권기구들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다. 협약의 초기에는 아동과 참여적 접근을 개척하는 데에 NGO들이 주목할만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부와 아동 양측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Ⅱ. 유보사항의 검토

13.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할 때 위원회는 먼저 당사국이 유보했거나 유보할 사항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심의했는지의 여부를 적시하도록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협약 비준이나 가입 당시에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목표는, 오직 당사국이 유보조항을 철회할 때만이 성취될 수 있다.
보고서를 조사하는 동안 유보조항이 검토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당사국이 검토 후에 유보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는 차후의 정기보고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인권회의'가 제기한 유보철회 장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유보"를 "당사국이 조약을 비준·승인·수용·가입 등을 할 때 진술되기는 했으나 당사국 적용과정에서 조약 특정조항의 법적 효력을 수정 또는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편면적인 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조약의 비준이나 가입 당시에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불일치하지"(제19조) 않는 범위에서 유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고 있다.
15. 아동권리협약 제51조 2항은 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이나 법률, 종교법 등에 의해 협약존중이 제한됨을 시사하면서 제51조 2항을 위반하는 유보를 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국내법 조항을 근거로 조약 수행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다".
16. 위원회는 일부의 경우 당사국들이 다른 당사국이 광범위한 유보를 한 것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한 점을 밝힌다. 모든 당사국들이 가능한 완전하게 협약존중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어떠한 활동도 추천하는 바이다.

Ⅲ. 여타 핵심 국제인권규약의 비준

17.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관한 심의의 부분으로서 그리고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협약의 두가지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 아동의 매매· 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와 여섯 개의 주요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당사국과의 회담 동안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타 관련 국제규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종종 장려한다. 계속 생성되는 이러한 규약들은 현재 일반논평에 추록으로 실려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시로 갱신할 것이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Ⅳ. 입법적 조치들

18. 위원회는, 협약과의 완전한 합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내법과 관련 행정지침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협약에 따라 첫 번째 보고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정기보고서를 점검하는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재검토과정이 시작되었지만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재검토는 협약을 조항 하나 하나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권의 상호관련성과 불가분성을 인식하면서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는 현 법률과 아울러 제안된 것도 검토해야 하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검토과정이 모든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 내에 수립되어야 하는 한편, 의회 위원회・공청회・국가인권기구・NGOs・대학교수・영향받는 아동과 젊은이들 등에 의해 독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당사국은 협약의 조항이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보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많은 당사국에서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자가실행”의 원칙이 적용되고 협약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국내법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에서 협약의 적용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특별히 중요하다
20. 위원회는 협약의 국내법으로의 편입을 환영하는 바, 이는 모든 국가에서는 아니고 일부 국가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으로 가는 전통적인 접근법이다. 편입이란, 협약의 조항이 법정에서 직접 인용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며 또한 국내법이나 판례와 충돌이 있을 때 협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편입은 그 자체로, 관습법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이 협약과 합치할 것을 보장할 필요성을 회피하지 않는다. 법률과 충돌할 경우 비엔나협약 제27조에 의거하여 협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가가 연방내 지방정부나 지역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위임할 때, 이러한 종속정부가 협약의 틀 내에서 법률을 제정할 것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21. 일부국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의 보증을 헌법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동권리의 존중을 보장하는 데에 적절하다는 것을 위원회에 시사했다. 그 평가는, 그 적용가능한 권리가 진실로 아동을 위해 실현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법정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여야만 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주요 원칙들을 반영하는 국내 헌법내 아동권리 부문으로의 포섭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는 협약의 핵심 메시지인 ‘성인과 더불어 아동도 인권의 보유자’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섭이 자동적으로 아동권리 존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동 스스로에 의한 권리실행 및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입법과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22. 위원회는 특히, 국내법이 협약의 일반원칙들(제2, 3, 6, 12조)을 반영할 것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통합된 아동권리법령의 개발을 환영하며, 이는 협약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관련 "분야별" 법률 (교육・보건・사법 등)이 일관되게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3.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제41조에 의거하여 협약내 포함된 것보다 아동권리 실현에 더 많이 이바지할 법률조항을 자국 관할권 내에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18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여타 국제인권규약들이 적용될 것을 강조한다.

V. 권리의 법적인 보장

24. 권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위반을 시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협약에 내포되어 있고 여타 여섯 개의 주요 국제인권규약에도 일관되게 언급되어 있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상태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찾을 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과 그 대리인들에게 효과적이고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동친화적인 정보・조언・변호 등의 규정, 자기변호의 후원, 독립적인 이의절차 이용, 법정에서 필요한 법적 또는 여타 지원 등을 포함해야만 한다.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배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39조와 같이 신체적・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재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25. 위 6번에서 언급한대로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충분히 세부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VI. 행정적 그리고 여타 조치들

26. 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점검하는 첫 10년의 경험 및 정부・UN・ UN 관련부처・NGOs・여타 소관기구들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국을 위한 몇가지 핵심 조언을 추출하였다.

27. 위원회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른 단계간, 정부와 (아동을 포함한) 시민사회간에 아동권리를 승인하고 실현하기 위한 각 부문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변함없이, 많은 정부부처들과 여타 정부 또는 준정부 기구들이 아동의 생활 및 권리향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부처는 거의 없다. 이행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모든 단계마다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라 국가인권기구와 NGO들에 의한 독립적인 감시여야만 한다.

A. 협약에 근거한 광범위한 국가전략의 개발

28. 정부가 전체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협약에 근거해서 단일화하는·광범위한·권리에 기반한 국가전략의 기초 하에 일할 필요가 있다.
29. 아동을 위한 광범위한 국가전략 또는 국가계획의 개발은 협약의 틀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전략을 개발 또는 검토할 때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고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든 아동들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야 하고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들과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동과 젊은이 및 그들과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 12번에서 언급된 대로 아동들과의 의미있는 상담은 특별한 아동친화적인 조치들과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성인과정을 아동에게 확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30. 비주류 및 불우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협약의 무차별원칙에 따르면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는 당사국 관할권 내 모든 아동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위12번에서 언급한대로 무차별원칙이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1. 전략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부의 최고위 단계에서 승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국가개발계획과 결부되어야 하며 국가예산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은 핵심 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비주류로 남게 될 것이다.
32. 전략은 단순히 좋은 목적의 나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지지과정의 서술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것은 정책과 원칙의 진술을 넘어서 모든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정치적 권리 전 범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성취가능한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그 광범위한 국가전략은, 구체적인 목표·이행조치들·재정적 인적자원의 분배 등을 수립하는, 교육·보건 등과 같은 부문별 국가활동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전략은 필연적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지만 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수락한 세부적인 의무들을 방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 전략은 인적 재정적으로 적절하게 자원공급을 받아야 한다.
33. 국가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다. 일단 전략이 입안되면 정부 전체에 널리 배포되어야 하며 아동을 포함한 대중들에게도 배포되어야 한다. (적절한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아동친화적인 유형으로 변형시켜서). 전략은, 감시·지속적인 검토· 규칙적인 갱신·의회 및 대중에 대한 정기보고서 등을 위한 장치를 포함해야만 한다.
34. 1990년에 열린 '제1차 세계아동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당사국들이 개발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것을 장려받은 “국가활동계획”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수립한 특정한 위임과 관련이 있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활동 프로그램’은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을 국내인권활동계획 내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35. 2002년 UN 총회 아동관련 특별회기에 대한 결과문서는 또한 당사국에게 “가능하면 2003년 말까지 긴급한 문제로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활동계획을 구체적인 시간표 및 이 활동계획에 기초한 적당한 목표와 함께 개발 또는 강화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적합한 세계’라는, 아동특별회기에서 수립되고 결과문서에서 확인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당사국이 이루어낸 수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제적인 회의에서 특정한 위임을 한 것이 협약에 따를 당사국의 법적 의무를 경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슷하게, 특별회기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협약을 위한 광범위한 이행전략의 필요성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당사국은 2002년 특별회기 및 여타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응답을 전반적인 협약 이행전략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36. 또한 결과문서는 당사국이 “현 활동계획의 이행에서 취해진 조치 및 성취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내에서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승인한다; 특별회기에서 이루어진 위임을 충족하기 위한 감시과정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를 위한 개정된 지침에서 더나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B. 아동권리 이행의 조정

37.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더 많은 조정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앙정부 부처간, 다른 지방 및 지역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조정. 조정의 목적은 당사국 관할권 내 모든 아동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가, 아동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 교육, 보건, 복지 등 - 부처에서 승인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재정, 계획, 고용, 국방 등의 모든 부처 모든 단계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38. 위원회는, 당사국의 각기 다른 정부체계에 적합한 세부적인 장치를 기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다. 장관간이나 부처간 아동위원회 등과 같이 효과적 조정을 위한 공식 비공식 방법들이 많이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협약이행의 시각에서 특히 일반원칙으로 제시된 네가지 조항의 시각에서 정부조직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위 12번을 보시오).

39. 많은 당사국들은 이행 및 아동정책의 조정을 목적으로 정부의 핵심부분에, 어떤 경우 대통령이나 수상의 직속으로 또는 내각 내에 특수부서를 마련하였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위에서 언급한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활동은 아동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아동관련서비스의 책임을 단 하나의 부처에 지우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며, 어떤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아동을 더욱 주변부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높은 권한 - 예를 들어, 수상이나 대통령 또는 내각 아동위원회 등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 - 을 가진 특수부서는, 정부 내에서 아동문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전체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아동권리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서는 협약에 따른 보고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전략의 개발 및 그 이행의 감시 등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C. 지방분권, 연방화, 대표파견

40. 위원회는, 권한위임과 정부대표파견을 통한 지방분권이, 국가구조에 상관없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아동에 대한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당사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경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다.

41. 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자국 관할권 내에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차 언급한다. 권한위임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국은, 위임받은 당국이 협약이행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재정적·인적·여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위임받은 행정부나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합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만 하며, 또한 그 관할 내에서 협약이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존중·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이나 권한위임이 다른 지역간 아동권리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되도록 보장책이 있어야만 한다.

D. 민간화

42. 서비스의 민간화 과정은 아동권리의 승인과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원회는 2002년 전체 토론의 날 주제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부문 및 아동권리 이행에 있어서 그의 역할”로 삼았는데 민간부문을 비즈니스·NGO·영리 및 비영리 협회 등으로 정의하였다. 전체토론의 날 이후로 위원회는 당사국의 관심을 끄는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대로 아동권리를 존중·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비국가(non-State) 서비스제공자들이 간접적인 의무로서 협약에 일치하여 활동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44. 위원회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구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국 관할권 내 모든 아동에게 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승인과 실현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경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2조 1항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제3조 2항). 제3조 1항은 공공 또는 민간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모든 아동관련활동들은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제3조 3항은 관계당국(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이 특히 보건 분야에서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협약에 합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국가 및 비국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약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E. 이행 모니터링 -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

45. 아동관련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상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제3조 1항) 그리고 협약의 모든 조항이 정부 모든 단계의 입법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영향 사전평가 과정 (아동 및 권리향유에 영향을 주는 제안법률·정책·예산분배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과 아동영향 사후평가 과정 (이행에 따른 실제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정부내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정책개발 앞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6. 자기감시와 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의회위원회·NGO·학술기관·전문가협회·아동 집단·독립적인 인권기구 등에 의한,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아래 65번을 보시오)

47. 위원회는, 의회와 대중에게 공식적인 영향분석 성명의 준비 및 발표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한 특정 국가들을 추천한다. 모든 국가들은 제3조 1항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방법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리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통합 및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촉진시킬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F. 통계수집과 분석 및 지표개발

48. 권리실현에 있어서 차별이나 불평등의 확인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항목별로 충분하고 믿을만한 아동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위원회는 통계수집이 아동기 전과정에 걸쳐서 18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키는 바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지표를 보장하는 가운데 관할권 전체에 걸쳐서 통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연구기관들과 협력해야 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가지고 이행을 위한 완전한 과정표를 작성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 대한 보고지침들은 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항목별·통계적, 그리고 여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통계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수집된 통계가 이행 진전사항 평가·문제점을 확인·아동정책개발 지도 등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평가작업은 협약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와 관련된 지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49. 위원회는 자국 관할권 내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연간보고서의 출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을 소개한 당사국들을 추천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출간과 배포 그리고 토론은 이행과정에 많은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과정에 아동과 소수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버전을 포함해서 번역이 필수적이다.

50.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오로지 아동만이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받고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과 면담하고 아동을 조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적절한 보호책과 함께), 제12조에 규정된 필수적인 권리를 포함해서 아동 견해를 듣게 하고 정당한 고려를 받게 하기 위한 아동의 시민적 권리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느 정도까지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G. 예산에서 아동을 중시하기

51. 보고서지침과 당사국 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는 국가 및 여타 예산에서 아동을 위한 자원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4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사회부문으로 분배된 국가 및 여타 예산의 비율 그리고 그 안에서 직·간접으로 아동에게 분배된 비율을 확인해야만 한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하였고 연간 "아동 예산서"를 출간하였다.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계획과 결정 및 예산결정이 아동 최상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주변부화하고 불우한 아동집단을 포함한 아동들이 경제정책이나 재정적 침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

52. 경제정책은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시장경제로의 이전이 아동에게 가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협약의 제4조와 여타 조항들의 이행의무는,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조정의 효과를 엄격하게 감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 훈련과 능력확립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행과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 - 정부관리, 국회의원, 사법부 - 과 아동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및 능력확립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와 종교지도자들, 교사, 사회복지사, 구금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타 전문가들, 경찰,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군대, 대중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이 포함된다. 훈련은 조직적이어야 하며 최초훈련과 재훈련과 같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훈련의 목적은 인권보유자로서의 아동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 협약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 협약 모든 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을 장려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훈련 커리큘럼·행동규약·교육 커리큘럼 등에 모든 단계에서 협약이 반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영되기를 기대한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학교 커리큘럼과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해 아동 자신들 사이에서 촉진되어야 한다(아래 69번과 위원회 일반논평 제1번을 보시오).

54. 정기보고서를 위한 위원회의 지침에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훈련을 포함한 많은 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협약은 서문과 많은 조항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증진이 부모되기준비 및 부모역할교육 등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55. 협약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아동 권리향유를 촉진하는 태도 및 실행의 개발에 대한 기여의 정도를 재검토하는, 훈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I. 시민사회와의 협력

56. 이행이 당사국의 의무이지만 아동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 모든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아동권리 존중·보장의 책임이 국가 및 국가통제를 받는 서비스와 기구들을 넘어서서 아동·부모·확대가족·다른 성인들·비국가 서비스 및 조직들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호(2000) 42번에서 보건에 관해 최대한 확보가능한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 동의한다: "오직 국가만이 협약에 가입하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합치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 보건전문가들을 포함한 개인들, 가족, 지역사회, 정부간 및 비정부 기구들, 시민사회조직들, 개인기업들 - 이 보건권리의 실현을 고려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실행을 촉진시킬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57. 이미 강조한 바대로 (위12번을 보시오) 협약 제12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서 아동견해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협약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

58. 국가는 모든 점에서 NGO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그들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는 인권 NGO, 아동-청소년 주도조직과 청소년 단체, 부모와 가족 단체, 동료집단, 학술기관과 전문협회 등을 포함한다. NGO는 협약의 초안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들이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9. 위원회는 아동인권증진·보호·감시를 맡기는 NGO와의 제휴 및 협력 개발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은 후원을 할 것 그리고 그들과 비공식 뿐만이 아닌 공식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주장한다. NGO들이 협약 제45조 a항 "권한있는 기구"의 정의에 어울리게 협약에 따르는 보고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고 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 실질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찬성하는 NGO 그룹은 보고과정 및 협약 업무의 여타 부분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매우 환영할만하고 강하고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지침에서 보고서 준비과정이 "정부정책에의 참여 및 대중적인 인식을 장려·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는 이행과정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0번을 보시오).

J. 국제적인 협력

60. 제4조는 협약이행이 세계 각국에게 협력하는 실행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UN헌장(제55조와 56조)은 국제적인 경제적·사회적 협력이라는 전반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헌장에 따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서약하였다. 아동에 대한 UN총회 특별회기를 포함하여 UN새천년선언과 여타 세계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히 빈곤퇴치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서약하였다.

61. 위원회는 협약이 아동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국제개발원조의 틀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과 기부국들의 프로그램이 권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당사국들에게 충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GDP(국내총생산)의 0.7%를 국제개발원조에 써야 한다는 UN 목표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를 충족할 것을 주장한다. 이 목표는 2002년 ICFD(개발재정을 위한 국제회의) Monterrey Consensus(합의)에서 다른 원조들과 함께 재차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국제원조를 받는 당사국이 그 원조의 실질적인 부분을 아동에게 분배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책정된 국제후원의 비율과 양을 매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62. 위원회는 개발국과 기부국의 책임분담으로서 지속적인 기반 위에 양질의 기초사회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 우선권이라는 목표를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정 재검토를 위해 열린 국제회의들에서, 자원이 추가배급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는 한 많은 당사국들이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결론이 난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PRSP(빈곤감소전략문서)를 통해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진 노력들을 주목하고 장려한다. 새천년 개발목표 성취를 위한 중심적인 국가주도전략으로서 PRSP는 아동권리에 확실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기부자·시민사회 등이, 아동이 PRSP 및 SWAps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법)의 개발에 있어서 확실한 우선사항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PRSP와 SWAps 둘다, 아동을 권리보유자로 인식하는 총체적이고 아동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그리고 아동관련목적을 개발목표에 통합해야 한다는, 아동권리원칙들을 반영해야 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과정에서 적절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UNICEF, OHCHR, 여타 UN기구와 UN관계기관 등은 이행의 많은 면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당사국들은 협약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따른 보고서에 기술적인 원조에 있어서 그들의 관심사항을 밝히도록 장려받는다.

64. 국제협력 및 기술적인 지원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UN기구와 UN관계기관들은 협약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며 그들의 활동 속에 아동권리를 주류화해야 한다. 그들은 국제협력의 목표가 당사국이 협약에 따를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은행기구인 IMF와 WTO도 국제협력과 경제개발에 관련된 자신들의 활동이, 아동의 최상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것과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K. 독립적인 인권기구들

65.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일반논평 제2번(2002)에서, 위원회는 그것이, 협약이행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아동권리실현 진전을 위해 당사국 위임 내에서 인가해줄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독립적인 인권기구들은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조직들에 보충적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가가 이행에 합치하고 진전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며, 아동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를 향상시킬 프로젝트를 개발할 기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정부가 그 감시의무를 국가기구로 권한위임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구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안건을 정하고 자신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논평 제2번은 독립적인 아동인권기구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42조 : 성인 및 아동에게 협약을 알리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66. 개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아동은 권리보유자로 간주되지 못했다. 그래서 제42조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아동 주위의 성인들, 그들의 부모와 다른 가족구성원들, 교사들, 보모들이 협약의 의미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의 동등한 지위 확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많은 아동들에게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 전체적으로 협약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이행과 감시에 연관된 정부· 독립기구들에 대한 정보 및 그들과 연락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협약 원문은 모든 언어로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OHCHR이 만든 협약의 공식·비공식 번역본의 수집을 추천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문맹인 사람들 사이에 협약을 홍보할 전략도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 내에 UNICEF와 NGO들이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위한 협약의 아동친화적인 버전을 개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환영하고 장려한다; 이것은 아동에게 도움과 조언이 되는 자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68.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는 협약과 인권에 대한 학습을 학교 커리큘럼으로 통합하는 데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제29조 1항)라는 제목의 위원회 일반논평 제1번 (2001)이 이것과 결합하여 읽혀져야 한다. 제29조 1항은 아동의 교육이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개발"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논평은 강조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인권 모범들을 봄으로써 인권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광범위하고 평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매일 생활과 경험 속에서 인권 가치의 반영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69. 마찬가지로, 협약에 대한 학습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들의 신입 및 연수훈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위 53번을 보시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 채택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행조치에 관한 회의 이후에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해 상기시키는 바이다. 위원회는 거기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는 사회변화의 과정으로서, 강연보다는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대화로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위원회는 아동권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이 그 효과와 지속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전문적인 훈련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실질적이며 조직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인권훈련은 참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가들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및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끔 해야 한다."

70. 미디어는 협약의 홍보 및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들이 그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것은 정부와 NGO에 의해 고무될 수 있을 것이다.

제44조 6항 : 협약에 따라 보고서를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1. 협약에 따른 보고가 국가 차원에서 이행의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사국 전체적으로 성인과 아동에게 알려져야만 한다. 보고과정은 당사국이 아동과 아동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형식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보고서가 국가 차원에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 배포되고 건설적으로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은 아동들의 생활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72. 협약은 당사국이 자국 보고서를 대중들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는 진실로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아동 및 장애인들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인터넷은 홍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정부와 의회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이러한 보고서를 반드시 올려야 할 것이다.

73.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단계에서 이행과정을 알리고 건설적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점검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위원회의 권고의견은 아동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배포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인권기구들과 NGO들은 폭넓은 토론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대표단 점검에 대한 요약보고서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이 또한 활용가능하고 토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1차 권고의견(1998)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1998. 6. 5.

18번째 회기

협약 제44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

1. 위원회는 1998년 5월 20일과 22일에 열린 458차~460차 회의에서 북한의 첫 번째 보고서를 심의한 뒤 아래와 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 및 관심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질의서에 대해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16번째 회기에서 다루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보고서 심의 연기를 요청한 후 현 회기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대표단이 위원회와의 회담 중에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 협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장애와 난관에 대해 지적함을 통해 당사국이 제공한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 주목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3.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법정에서 근거법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교육과 보건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감사하게 주목한다.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점을 주목한다. 이점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영양·건강·교육적 후원자료·통계수집·감시·훈련·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후원제공 등의 영역에서 기술적인 협력을 구하는 점을 주목한다.

C. 협약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

6.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통적인 경제적 기반의 붕괴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1995년, 1996년 홍수의 결과로 협약의 이행에서 당사국이 직면한 장애를 주목한다.

D. 주요 우려사항

7. 위원회는 시설아동을 포함한 취약아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영양실조의 결과로 아동사망율의 증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또한 주로 식량·약품·깨끗한 식수 등의 부족으로 기인한 아동 건강상태의 악화에 대해 우려한다.
8. 협약 제4조에 비추어,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예산배분에 대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9. 위원회는, 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시골과 도시에서 특히 가장 취약아동집단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감시할 특별한 기구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10.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정책의 효과와 진전사항을 평가하는 구체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인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국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11. 아동복지를 위해 당사국이 취한 노력을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국가적 전략·정책·프로그램들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에 기초한 접근법을 아직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우려한다.
    더구나 위원회는 협약의 일반원칙이 - 협약 제2조 (무차별원칙), 제3조(아동이익 최우선의 법칙), 제12조(아동견해존중원칙) - 아동과 관련한, 특히 오지에 사는 아동·장애아동·시설아동 등과 같은 취약집단 아동과 관련한 입법·정책·프로그램 등에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2. 협약 제42조에 합치하여 아동과 성인 사이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보급하고 인식제고를 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가정환경과 시설 내에서 여전히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협약 제3, 19, 28조에 비추어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협약 제3조와 9조에 비추어 해결되지 않은 가족 재통합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아동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문제의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적 태도에 우려하며, 장애아동이 보건·교육·사회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을 다루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수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십대자살·성보건·조기임신 등과 같은 청소년 보건문제를 이해하고 밝히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을 우려한다.
18. 협약의 원칙과 규정, 특히 제3, 5, 19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가정내 아동학대와 혹사 현상이 적절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19. 소년사법집행에 있어서 협약 제37, 40, 39조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베이징규칙"과 "리야드지침" 및 "자유박탈아동보호를 위한 유엔규칙" 등과 같은 관련 기준에 합치하는지가 위원회의 관심사항이다.
    위원회는 법률적 지원 및 수용에 대한 사법적 정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17세와 18세 사이의 아동이 형사체계에서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아동은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으나 17세와 18세 사이의 아동이 이점과 관련하여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E. 제안과 권고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아동을 위해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아동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입법을 협약의 원칙 및 규정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규약과 같이 아동권리 영역을 포괄하는 법률을 채택하기를 장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등과 같이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 인권조약들에 가입을 안한 경우 이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모든 분야 및 사회내 모든 아동집단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개별지표들의 확인을 위해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체계는 아동실태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를 하는 데에 그리고 성취한 진전사항 및 아동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것은 아동, 특히 오지아동·장애아동·가정내 학대받는 아동·시설아동 등과 같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아동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립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UNICEF를 포함한 국제협력을 구할 수 있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내 가장 취약집단을 위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는 구체적인 체계 수립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24. 위원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안에 협약이 통합되도록 고려할 것과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판사·변호사·법집행관·군공무원·교사·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담당자·학교행정관·사회복지사·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과 같이 아동과 일하는 전문가 집단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2조에 비추어 협약에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취지로 국제협력이 특히 UNICEF로부터 구해져야 한다.
25. 위원회는, 아동을 법적 주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자국의 법률체계·전략·정책·프로그램 등에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특히 일반원칙(2조, 3조, 6조, 12조)을 통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시설 내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체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및 협약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 특히 제3조와 9조에 비추어 가족 재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2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기를 장려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한 예산 분배는, 무차별원칙과 (제2조) 아동의 최상이익원칙 (제3조)에 비추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보장되어야만 한다.
29. 협약의 원칙과 규정 특히 제3조와 2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지향적인 해결책을 후원하기 위해 시설양육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검토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대로 유해한 관례를 없애기 위해 가정내 아동학대 및 혹사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3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아동에게 미치는 환경오염의 영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 보건·청소년자살·조기임신 등에 대해, 이러한 문제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투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33. "장애아동의 기회평등에 대한 표준규칙"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장애아동의 시설수용에 대한 대체 조치들을 수행할 것,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장려할 인식제고 캠페인을 구상할 것 등을 권고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소년사법체계를, 협약의 원칙과 규정 특히 제37,40,39조에 완전하게 합치하도록 그리고 베이징규칙과 리야드지침과 같은 UN표준 및 "자유박탈아동보호를 위한 UN규칙" 등에 합치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속한 법률적 지원, 사법적 검토, 수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과 같은 아동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당사국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형법 적용을 받을 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구상해야 한다.

    소년사법체계와 관계된 모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국제표준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5.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 위원회의 심의기록 및 권고의견 등을 최대한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북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의견(2004)

아동권리위원회 36번째 회기

협약 제 44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4. 6. 1. 열린 965차 및 966차 회의에서 북한의 2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2004. 6. 4. 열린 97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설정된 기준에 따른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원회 제기 관심사항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서의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표단이 보여준 건설적인 대화에 주목한다.

B.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와 진전사항

3.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 진전을 위해 이루어진 아래의 입법을 감사하게 주목한다:
   (a)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11살 아동을 위한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1999년"교육법"
   (b) 공공장소, 교통, 공공서비스 등을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2003년 "장애인보호법"
   (c) 1998년 소송과 청원에 관한 법률.
4. 위원회는 협약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법률조항들의 개정에 대해 주목한다 - 시민법(1999), 의료보호법(1990), 손해배상법(2001), 상속법(2002) 등.
5. 2001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의 비준.

C.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와 장애

6. 당사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전통적인 경제적 결속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리고 2002년 이래로 이루어진 경제개혁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

1.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조, 42조, 44조 6항)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7. 당사국의 첫 번째 보고서 심의 후 채택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이 입법적 조치와 정책을 통해 이행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는 충분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통계수집(22항), 무차별, 아동최선이익과 아동견해의 존중(11항), 신체적 체벌(13항), 아동학대와 유기(19항), 대리적 보호(29항), 소년사법(34항) 등.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위원회는 그러한 우려와 권고가 본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초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고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 포함된 우려사항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입법

9. 위원회는 국내법령 개정 실적에 주목하면서도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는 부합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법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이미 개정되거나 채택된 법률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과 조정에 대한 국가적 계획

11. 위원회는 1999. 4.28. CRC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NCRC)의 설립을 환영하며 또한 명확한 목표와 시기를 수립한 "아동복지활동을 위한 2차 국가계획 (2001-2010)"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계획이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노력에 대한 조정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계획의 이행과 조정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a) 현재 국가계획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광범위한 계획을 입안해서 "UN 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하고 "어린이가 살기좋은 세상"을 반영할 것.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UN부처와 국제 NGOs, 국내 기증자들, 아동들을 참여시킬 것.

(b) 국가계획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들의 효과적인 조정을 책임지는 중앙상설기구를 설립할 것. 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그리고 조정· 감시· 평가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배분할 것.

이 정부기구는 위원회의 권고의견 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을 포함한 협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3. 1998년 "소송과 청원에 관한 법률"의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위원회는, 소송에 응하는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들이 자신의 위임사항에 관한 소송에 제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게다가 위원회는, 그들의 독립성의 부족, 제한된 접근성, 아동이 이러한 절차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서를 발행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현재의 소송 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Paris Principles"에 합치하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를 고려하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이행을 감시해야 하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제기한 소송을 신속하게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협약상 권리들의 침해로부터의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15.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이행과 협약상 권리에 기초한 접근, 보고절차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 다음 보고서의 초안 작성 등을 포함한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여타 시민사회 부문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을 위한 자원

17. 사회부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아동대상 지출 특히 교육과 건강 부문 지출이 수년간 감소해 왔음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 내에서, 필요하다면 국제 협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통계수집

19. 위원회는, 신뢰성있는 통계의 부재와 협약 관련 분야에서 적절한 국가적인 양적·질적 통계 수집체계가 부족한 결과,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적·질적 통계 수집체계와, 협약에 합치하는 성별·연령, 시골과 도시별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체계는 18세에 달한 모든 아동을 포함해야 하고 특히 취약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조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체계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지표와 통계를,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협약 이행 및 평가 감시를 위한 정책·프로그램·법률 등을 구성할 때 사용하도록 고무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UNICEF, UNFPA,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등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를 권고한다.

국제적인 협력

21. 위원회는, UN 부서 및 NGO 들과의 당사국의 협력이 아동 권리의 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아동이 여전히 인도주의적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사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책 수립 분야에서 UN 부처 및 국제적인 기증인 모임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모든 취약 집단들 특히 아동들에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지역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부문에서 정책과 재정적 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훈련과 홍보

23. 협약의 원칙과 조항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을 알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권리의 주체인 아동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위원회는 아동에게 뿐만 아니라 아동과 일하는 전문가집단 사이에 훈련과 인식을 소개할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24. 이전 권고사항과 협약 제42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에 대해 사회를 민감하게 만들 조치로서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홍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더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뿐만 아니라 의원・판사・변호사・법집행관리・공무원・아동수용시설 종사자・교사・의료종사자・심리학자・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아동과 일하는 전문가집단에게 협약의 규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 관하여 OHCHR과 UNICEF 등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어린이의 정의(협약 제1조)

25. 위원회는, 17세로 규정된 성년의 나이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혼인가능 최저연령이 여자 17세와 남자 18세로 다른 것처럼 몇몇 법적인 최저연령이 차별적이라는 우려를 이전과 같이 반복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년의 나이를 18세로 올리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여자아동의 혼인가능 최저연령을 남자아동의 혼인가능 최저연령까지로 올리라고 권고한다.

3. 일반 원칙(협약 제2, 3, 6, 12조)

무차별원칙

27. 위원회는, 장애아동・다른 사회계층아동・시골이나 오지에 사는 아동 등과 같은 일부 아동집단들이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일부 여자아동들의 경우 여전히 전통적 고정관념의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2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재 법률시행이 무차별원칙을 보장하고 협약 제2조에 완전하게 합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것, 그리고 모든 분야 및 모든 취약집단 내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채택하는 노력을 더할 것을 권고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아동·다른 사회계층아동·시골과 오지에 사는 아동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그리고 여자아동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 나갈 것을 요청한다.

29. 위원회는, 협약 제29조 1항에 관한 일반논평 1호를 고려하여,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

30. 위원회는, 아동이 주로 Youth League와 Children's League를 통해 참가 기회를 얻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아동의 견해 존중은 가정·학교·법정·행정당국·사회 등에서 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한받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아동의 참가는 본질적으로 공식적이고 계급구조 개념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이고 독창적인 참가는 충분히 고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2조에 따라 가정·학교·법정·행정절차 및 여타 비공식 절차 등에서 아동의 견해가 충분히 고려될 것을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이것은, 적절한 법률과 정책의 채택·전문가의 훈련·대중의 인식제고·학교내외에서 특별한 독창적이고 비공식 활동의 수립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시민적 권리와 자유(협약 제7, 8, 13~17, 37a조)

32.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보와, 아동을 포함한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특히 의견·사상·표현·양심·종교·이주·사생활의 자유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서에 관해 정보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서 의견·사상·표현·양심·종교·이주·사생활의 자유 등을 포함하여 협약 제13~17조에 규정된 권리들을 특별히 언급함과 함께, 관련 국내법 조항들을 당사국 18세 이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방식인 일상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고문 및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34. 위원회는, 18세 이하의 사람들 특히 구금되어 있거나 사회기관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제도적인 폭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양한 보고서들에 대해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인 폭력이라도 금지하고 근절하기 6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36. 공공캠페인 등을 통해 체벌이 거의 근절되었다는 정보와 당사국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체벌이 여전히 학교·가정·보호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용인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체벌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긍정적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고 참여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규율을 촉구하는 공공 인식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협약 제5, 7, 18(1~2), 9-11, 19-21, 25, 27(4), 39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보호서비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1976년 "아동양육법"에 근거하여 조기 아동보호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아동의 정신-사회적·인식 발달을 방해하고 부모의 능동적인 개입을 감소시키는 것,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탁아소에 아동을 맡기는 방식의 보편화, 쌍둥이·세쌍둥이의 양육을 국가에 위탁하는 것 등을 우려한다.

더구나 위원회는, 양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탁아소 내 인적 재정적 자원 부족을 우려한다.

39. 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우선적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과 부모가 자신의 자녀양육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을 제공할 것,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축소시킬 것 등을 권고한다.

40. 위원회는 당사국의 조기 아동개발 및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높은 입학율에 주목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보호시설의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간양육을 촉진하고 24시간 양육시설 이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도록 억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보호시설을 위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을 할 것, 그리고 모든 기관들의 서비스 특히 영양·난방·수도·위생 등에서 기본적인 최저기준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

42. 위원회는, 부모가 범죄로 인해 강제노동이나 사형을 당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모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한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아동이 그들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대안양육

44. 위원회는, 부모와 분리되어 아동가정·고아원·고아학교 등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a) 위탁양육·그룹홈(4~6세 아동)·적절한 경우 국내입양 등 시스템을 강화하고 후원함으로써 아동의 시설수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b) 협약 제25조에 합치하도록 시설수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양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도록 고려할 것;
(d) 1993년 아동보호와 국가간 입양에 관한 Hague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

46. 위원회는 가정내 아동학대의 사건 수치가 낮고 가정 밖 학대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보고가 누락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다음의 주장 "아동에 대한 폭력·학대·방임·혹사·착취 등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아니며, 희생자의 사회복귀도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보편화에 대한, 표면상 혼란스러운 정보에 주목한다. 보고된 사건의 낮은 수치는 사실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또한 효과없는 보고체계의 표시일 수도 있다.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a) 아동학대와 방임 현상을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그 특성과 정도를 찾아내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
(b) 아동학대와 방임에 연관된 사회문화적 장애물들을 밝히고 극복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것;
(c) 아동희생자들이 적절한 후원과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
(d) 신원확인·보고·학대사건의 처리 등에서 부모·교사·법집행관리·보호시설 종사자·판사·의료 전문가 등을 훈련시킬 것;
(e) UNICEF 등으로부터 지원을 구할 것.

6. 기초보건과 복지(협약 제6, 18(3), 23, 24, 26, 27(1-3)조)

장애아동

48.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새로운 입법과, "한국 장애인 지원협회"가 1998년 이래로 수행한 적극적인 활동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매우 열악한 생활상태와 그들이 학교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점, 회복조치들이 부족한 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한 점 등에 대해 우려한다.

49.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대한 UN 기준원칙"과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토론의 날"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장애아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b)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항목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장애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것;
(c) 장애를 방지하고 치유할 보호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d)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그들을 정규학교체계에 포함시킬 것;

(e) 정신장애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권리와 특수한 요구에 대해 일반국민과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

(f) 직업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을 위해, 그리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후원을 위해 재정적·인적 자원을 증가시킬 것;

(g) 교사 등과 같이 장애아동과 일하는 전문가들의 훈련을 위한 기술적인 협력을 UNICEF와 WHO로부터 구할 것.

기초보건과 보건서비스

50. 당사국 전역에서 모든 보건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증가하는 영유아 사망률, 아동의 영양결핍과 발육부진, 높은 임신중절율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산모사망율의 놀라운 증가 등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의사·전문의·전문의 보조 등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보건소가 기초적인 약품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골에서는 깨끗한 식수 구하기가 힘들고 위생상태가 열악하며 인분이 비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보건체계의 질과 보건분야지출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면역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설사병·호흡기병·말라리아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b) 가족계획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임방법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c) 건강한 조기습관에 관한 교육과 아울러 영양가 있는 음식과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

(d)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협력을 구할 것.

청소년 보건

52. 위원회는, 발달상·정신적·생식과 관계된 청소년 보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a) 청소년 보건문제의 특성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시행할 것, 이러한 연구를 특히 성건강교육과 아동친화적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보건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초로 사용할 것;

(b) 발달상·정신적 건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그것들을 청소년에게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7.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협약 제28, 29, 31조)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반교육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17세까지의 의무교육이 무료라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려한다:
(a)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및 계절적으로 60~80%의 낮은 출석율;
(b)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한 비상교육비용;
(c) 더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
(d) 정치적인 배경·견해·활동 등이 고등교육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점;
(e) 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것처럼 교육의 목표가 학습과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
(f)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이 학교 교과과정에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단지 "도덕과 법"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인 점.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체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근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수행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겨울동안 학교건물의 적절한 난방 및 장기결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b)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
(c) 일반 대중과 아동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남녀학생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학습 주제들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
(d) 타국으로부터의 자료에 국민이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를 포함하여 아동의 정보에의 접근을 촉진할 것, 학생 교환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e) 협약 제29조와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일반논평 2번을 고려하면서 교육목표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것;
(f) 인권 특히 아동권리를 학교 교과과정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다룰 것;
(g) UNESCO와 UNICEF 등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구할 것.

8. 특별보호조치(협약 제22, 38, 39, 40, 37b-d, 32-36조)

아동과 병역

56. 위원회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 자원입대 최저연령이 16세로 규정된 점을 우려하며, 또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

57. 자원입대하는 아동이 16세에서 18세 사이일 때 입대가 진실로 자발적이어야 하고 가장 나이많은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협약 제38조 3항을 존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협약 관련 의정서 (66번 참조)를 비준할 것과 신병모집과 자원입대 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일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조기 군대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 귀환자

58. 당사국 정보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서 국경 근처 중국 도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북한 아동들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돌아가거나 추방된 아동들이 희생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아동들이 타국으로 국경을 넘는 원인을 평가하고 분석할 것;

(b) 당사국으로 돌아온 아동들을 범법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대우할 것;

(c) 그들의 안전한 본국송환을 위해 중국당국과 협상할 것;

(d) 그들에게 사회복귀와 상담을 위한 필요한 후원을 제공할 것.

경제적 착취

60. 고용과 근로가능 최저연령이 16세인 점을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협약 제1조와(고용가능 최저연령에 관한 규정) 제182조(최악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방지책과 활동에 관한 규정)를 비준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이를 비준하면 18세 이하 아동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아직 ILO의 회원국이 아님을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당사국이 18세 이하 아동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 ILO 국제조약들 비준을 고려할 위치에 서도록 ILO에 가입할 것, 그래서 고용가능 최저연령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매매

62. 위원회는 인신매매 특히 아동매매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에서 정보가 부족함을 주목한다.

63. 협약 제34조와 다른 관련조항들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아동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의 특성과 범위를 평가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

(b) 관련 법률을 통해 18세 이하 소년소녀를 성적인 착취와 매매로부터 보호할 것;

(c)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한 1996년 선언과 2001년 선언에 합치하여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소년사법

64.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17세 이하 아동의 대부분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제37조, 40조에 규정된 보호책들이 완전하게 존중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특히 선고를 내리는 당국의 독립성과 공명정대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17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되는 "공공교육조치"라고 불리는 선고의 유형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더구나 17세 아동은 사법체계에서 성인과 같이 취급되며 협약에서 승인한 특별한 보호조치들의 혜택을 받지 않고 "노동을 통한 교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18세 미만 법위반 아동 모두가 국제 소년사법기준과 협약 37, 40, 39조 및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과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리야드 지침)"에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의 완전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을 재검토 할 것;

(b) 18세 미만 아동이 "노동을 통한 교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

(c) 당사국의 비사법적 접근이 협약 제37, 40, 39조에 규정된 인권과 보호책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공공교육조치" 선고의 특성과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출할 것;

(d)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할 상급당국에 법에 따라 항소한 아동의 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항소의 결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

(e) 구금 대신 교육조치를 선고받은 아동을 포함하여 소년범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f) OHCHR와 UNICEF 등으로부터 기술적인 협력을 구할 것.

9.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6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를 (아동의 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홍보

67. 협약 44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2차 정부보고서 및 서면질의답변서를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할 것 그리고 보고서 및 심의기록,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의 출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문서들은 정부·의회·일반대중·NGO들 내에서 토론 활성화와 협약에 대한인지 제고 및 협약의 이행과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11. 다음 보고서

68.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위원회의 29차 회의 보고서에 언급된 정기보고서 제출에 관한 권고에 비추어, 위원회는 협약 제44조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가 협약 이행 진전상황을 정기적으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아동에 대해 갖는 책임 중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기적으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다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3차, 4차 통합보고서를 4차 보고서 제출시한인 2007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이후에는 협약이 규정한 대로 매 5년마다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연 구 요 약

이 연구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의 현단계를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를 중심으로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의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를 발굴·소개하여 정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기준(CRC/C/58)',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CRC/GC/2003/5)').

연구 추진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출장(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참관) 등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가능성 고려, 자료 분석 기준 통일, 효과적인 시사점 분석틀 구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분석 대상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자료는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나 옴부즈맨 의견서 등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분석을 위한 주요자료인 각국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보고서는 제한된 지면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전반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개괄적 현황을 담고 있다. 이에 정책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내용, 그리고 각 사례별 배경과 정책효과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장단점 파악 등 심층 분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이들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담고 있는 만큼 이에 기반한 연구결과는 향후 세부 인권영역별 심층연구를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각국의 주요 인권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아동관련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아동법을 근거로 구성된 아동위원회가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부처와 의회에 법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함으로써 청소년 인권정책의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관련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낸다. 둘째, 영국 각 지역은 '아동부'와 '아동장관'을 임명하여 '아동'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아동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셋째,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과의 조화이다.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 가능하므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국가가 가족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역할을 강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등이 그 예이다.

넷째,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당제도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수당제도, 가족관련 각종 세금공제제도, 아동급여, 아동양육지원급여, 가족수당, 아동보호 세금 공제 제도 등을 시행한다.

다섯째, 영국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보호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특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히 16세까지는 각종 의약품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여섯째, 영국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내 체벌금지 조항을 아동법에 추가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가정내 체벌 근절운동을 벌여왔고 이러한 결과 2004년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권리제한법을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실천하였다. 일곱째,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난민 가족 아동의 교육과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덟째, 빈곤아동·청소년의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안정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친다. 빈곤아동·청소년들이 생의 초기에 긍정적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아홉째, 법적 보호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6세 이하 성학대 아동이나 범죄 피해자 아동들의 비디오 녹화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열번 째, 각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열한번 째, 위탁아동과 시설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21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각종 훈련비, 주거비용 등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는다.

열두번 째, 청년실업문제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으로서 지역별 교육지역(Education Action Zone)을 선정하여 지역사회가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한다.

프랑스 청소년 인권정책의 긍정적인 면으로 참고할만한 사항은 국내법규와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 가족과 관련된 아동보호 조치, 법적 절차에 있는 아동 보호, 망명아동 보호조치 등이다. 첫째, 프랑스는 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아동매매에 대한 선택의정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서와 최악의 노동조건 금지와 제거를 위한 즉각 조치에 관한 ILO 협약 비준,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등 다양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둘째, 다양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아동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조사위원회, 아동권리 의회대표 등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였다. 셋째, 가족과 관련한 아동권리 보호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가 많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한을 평등하게 하여 아동을 보호하였고, 부모를 알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부모 이혼시 아동 양육비 회수 조치를 강화하였다.

넷째, 아동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 아동 성범죄자의 사회적·법적 감독 및 성범죄 엄벌, 아동 희생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성매매로부터의 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약물남용, 특히 청소년의 흡연 감소 노력을 하였는데, 특히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청소년 흡연 감소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여섯째, 체계적인 모자보건 및 학교보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세 이상 아동의 건강은 학교건강증진 서비스가 담당하는데, 아동·청소년의 건강보고서 작성, 의료검진, 학교환경 전반적인 보건여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일곱째, 법적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디오 녹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후견제도 실시, 특별행정가를 임명하여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 등은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여덟째, 증가하는 망명아동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로 이들을 보호하고 행정가를 임명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에 대한 통합적 정부 조정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사항 철폐이다. 이는 독일정부 또한 아동권리위원회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의주요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다. 둘째,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미혼모 가족지원 대책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지원정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 휴가제도 확대, 주간 대리보호시설 및 제도 확대, 부모 실직수당과 주택수당 지급 등을 실시하며 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없이 인정하는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의 홍보와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배포, 인권교육, 법조인과 교사 등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집단을 위한 훈련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권고 받고 있으나, 한국에 비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넷째,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독일 내의 난민아동과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청소년의 현장직업 훈련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이 외에 독일 현황 검토를 통해 제안할 만한 청소년 인권증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사법 및 행정절차상 15세 미만 아동의 법적 의견표명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 입양결정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절차와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상응하는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옴부즈맨제도 실시, 협약의 지속적 홍보와 이행 촉구,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캠페인, 특별상황에 처한 아동권리 보호, 이주노동자 자녀 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제고, '어린이 국회', '어린이 시·도의회', '어린이와 시장과의 만남' 등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참여권 확대, 미디어와 방송매체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 신장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노력이 주목받는다. 첫째, 중앙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자세와 대조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나 '아동옴부즈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별로 종합적인 아동인권시책을 추진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둘째, 가정을 잃은 아동이 보호시설보다는 가정과 가까운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수양부모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아동양호시설을 설립하였다.

셋째, 2000년 1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학교참여를 위한 학교평의원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학칙을 통해 학교운영에의 아동 참여권과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법무성의 '아동인권전문위원' 제도는 지역·학교·가정에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 권고 등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는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체벌은 일본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기본법이 표방하는 교육의 비폭력성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벌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 이의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체제와 교내 인권 구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여섯째,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후생성의 '주임아동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스웨덴** 정부는 제3차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옴부즈맨 보고서에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문제가 시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양호한 편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정부에 권고한 사항들이 스웨덴에서는 이미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보다 완벽하게 이행하고자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스웨덴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 중 거의 50%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스웨덴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99년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전략은 협약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성인들의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아동·청소년 권리에 기초한 관점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 간다. 중앙정부가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을 볼 때, 2년간의 상황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법안 상정 및 제정, 시행을 위한 재원 배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연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셋째, 아동과 관련된 기존 법률들을 협약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특히 법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아동의 의사를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법과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는 모든 활동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개정된 부모법에서는 아동의 양육권, 거주지와 접근권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표현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과 교육,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아동수당, 부모보험 등의 가족정책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여섯째, 장애아동과 불법이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심지어 추방위기에 있어 '숨어사는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게도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일곱째, 가족중심적 관점과 실천이 중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안전한 가족과 아동의 양육과 보호로 삼고, 부모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청소년 인권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는 아동·가정부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총괄 담당한다.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프로젝트 진행, 법 개정을 위한 제반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행동계획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둘째,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실시에 있어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Life before 18 Project)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정책이 그들의 욕구와 아동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대변하는 아동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 옴부즈맨은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아동의 의사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대변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여론 형성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포럼' 등의 제도적 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노르웨이 정부는 소수민족과 난민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제정과 임시구호소 마련 등 보호기구 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들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범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청소년인권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아동수당 및 캐나다아동세금수당 등의 제도마련과 국가아동의제실행을 통하여 빈곤대책 및 저소득층 부모의 사회참여 도모에 힘쓰고 있다. 둘째, 캐나다는 아동의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웹사이트상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셋째, 체벌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자문위원회(Parental advisory committees)가 학교에서의 대안적인 체벌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을 위한 주거프로그램(RRAP)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원주택프로그램 및 자금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신체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4개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의료세금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아동을 위한 건강 및 복지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캐나다는 NGO단체와 기타 단체들과 함께 아동초기의 건강 및 발달, 부모참여와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충분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개발한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 1997년에 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를 창설하고, 아동·청소년장관을 임명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이 모든 인권 영역에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다는 긍정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했으나, 이들 또한 여전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과 권고를 받고 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아동·청소년인권 분야의 선진 국가일수록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지침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해당 국가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 활용하고 모든 법과 정책·제도를 협약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현단계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시사점에 터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실상부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있어왔으나,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인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총괄·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3년 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위원회가 적절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효과적인 협약 이행 감독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시 유보조항(부모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제9조 3항),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a호), 아동재판에 관한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b, v호))에 대해 적극적인 비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9월 비준과정을 거쳐 발효된 (2004. 10. 24일부터 발효) 아동권리협약의 2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매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권의 국제적 준거 수준으로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국내 법, 정책과 제도를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이 중요하다. 한 예로 일본의 지역 아동권리조례 제정·운영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부천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

여섯째, 소수집단과 소외계층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장애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빈곤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아동과 탈북청소년 인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차 권고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90)' 비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일곱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아동권리협약 관련 캠페인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청소년지도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에게 많은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홉째, 건강과 보건·의료, 가정환경과 양육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보호권 신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천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열 번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NGO 등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사업, 인권모니터링활동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Copyright(c) 2005 NuriMedia Co.,Ltd